

# 민족주의 담론과 ‘내부배제(exclusion from inside)’의 논리: ‘재외동포법’ 논쟁과 ‘지역주의’ 논쟁의 재해석

박종일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I. 민족주의는 ‘내부통합’과 ‘외부갈등’의 이데올로기인가?

‘민족해방’, ‘민족문화’, ‘민족정기’ 등에 포함된 ‘민족’이라는 정치적, 문화적 단위와 그 정신적 표현으로 이해되는 ‘민족주의’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신성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한국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종족적(ethnic)’ 이해와 실천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혹은 시민사회)의 건설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보다 개방적인 새로운 민족과 민족주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임지현 1999; 권혁범 2000; 2004).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한국사회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것이지만 서구의 정치적, 학문적 전통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특히 20세기 초중반에 유럽을 휩쓴 국민국가들 사이의 전쟁은 적어도 유럽대륙 내에서 종족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엄청난 학습효과를 발휘하였고, 따라서 자민족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전후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한국과 같이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독립한 신생국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우선 민족주의가 국민국가(nation-state) 수립기에 수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들 수 있는데,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인정하다시피 국민국가를 통해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경우 그 범위와 참여자의 자격을 규정해주는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 있다 (Linz & Stephen). 즉, 근대국민국가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각 개인이 신분적 구속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동등한 자격을 통해서 국민국가와 일대일로 만나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데올로기적 등가물을 민족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1)</sup> 물론 그 보다 더 중요한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은 흔히 민족독립투쟁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에 확립된 것이 보통이다. 제국주의 지배를 경험한 나라에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로서 민족주의(특히 민족자결주의)의 힘은 가공할 만한 것

1) 칼훈은 이를 근대 이전의 관계적 정체성(relational identity)이 근대사회의 카테고리적 정체성(categorical identity)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Calhoun: chap.2).

이었는데 ‘자민족 독재자의 지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타민족의 식민지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수립기 이후에 민족주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특히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의 역할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민족주의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대답은 ‘그러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단일한 에스닉(ethnic)집단으로 형성되지 않은 대부분의 근대국민국가에서 자민족의 정치적 독립 혹은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는 피를 불러오는 악마의 이데올로기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민주주의로 이행해가는 정치적인 변혁기에 국가권력이 와해된 상황에서 정치엘리트들이 대중적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 경쟁적으로 발생하는 분파적 민족주의는 많은 무력갈등과 희생자를 낳았다(Snyder; Wimmer 2002; Mann).

그렇다면 이런 시각은 한국사회의 민족주의가 구성원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한국사회가 종족구성에서 대단히 동질적인 ‘예외적인 사회’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다른’ 민족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내부적인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별로 없다. 즉, 한국의 민족주의는 대외적으로 이웃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갈등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임지현 2004), 한국사회에 점차 늘어나는 민족타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아직까지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서 통일과 관련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주장 (Paik 1993; 1996)은 위에서 제기한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이 아직 한국사회에서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내부적으로 통합 그리고 외부적으로 독립 (혹은 경쟁과 갈등)이라는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다시 말해, 민족주의는 외부집단 (혹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차별과 갈등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지만 내부집단에 대해서는 통합과 안정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방식의 이해를 인정할 수 있을까? 또, 한국사회에서 쉽게 발견되는 민족주의의 온정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상부상조의 혈연공동체라는 이미지--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 글에서는 ‘혈연공동체를 기반으로 상징하는 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가 가지는 민족내부 역학관계에 주목하여, 외부적으로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민족주의는 통합과 배제의 과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여태까지의 비판이 다종족(multi-ethnic)으로 구성된 국민국가 내부에서 민족주의가 가지는 갈등요소에만 주목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내부적으로는 통합과 안정의 이데올로기로 역할한다’는 가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에 종족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민족 내부에서 집단을 유기체적인 모델로 이해하는 경우 민족전체의 안녕과 존속을 위해 일부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또, 종족적 민족주의라 하더라도 포괄의 과정에는 반드시 배제의 과정이 따른다는 것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사례를 든다. 첫째, 재외동포법 입법화 과정과 그 논쟁을 통해서 해외동포들에게 한국민족 구성원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포괄적인 민족주의 논의가 정치적, 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종족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구성원을 일부 주변화, 배제하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둘째, 지역주의 논쟁과 그 속에서 민족의

우위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례를 통해서 종족적 민족을 강조하는 주장이 민족내부의 위계를 형성시키고 하위의 집단을 반민족이라는 낙인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다는 위협적 전략이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내부문제점에 대한 해석이 민족주의연구 일반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한다.

## II. 민족주의 이론의 검토와 분석틀

### 1. 종족적 대(對) 시민권적 민족주의

민족주의를 선한 종류와 악한 종류로 구분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 민족주의 정치과정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콘(Hans Kohn)이 행한 동/서 유럽의 민족주의 비교연구이다. 콘은 17-18세기 서유럽(영국,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미국을 포함)의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중산계급의 정치적 표현임과 동시에 르네상스 문화의 모델로 회귀하려는 시도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발현된 형태는 합리성과 발전에 대한 낙관 그리고 정치적인 다원주의였다고 파악한다. 또한 서유럽의 민족주의는 사회적 계약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계몽주의의 이상인 사회적 진보의 집단적 실현이라는 목표를 지향했다. 반면, 콘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후발지역이었던 동유럽 민족주의는 19세기에 하층귀족과 대중의 문화적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런 형태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복합요소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첫째, 발전된 서구에 대한 열등감이 권위주의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둘째, 인류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우리 민족'이 선택되었다는 선민의식을 가진다. 결국 이런 조합은 두 가지 형태의 민족주의가 매우 대립적인 형태로 등장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 서유럽의 민족주의는 도구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유의사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인데 반해, 동구의 민족주의는 진화론적이고 감정적이며 유기체적인 구조속의 강제성을 내포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Kohn 1944).

콘의 구분은 중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구분이 가지는 분석적인 유용성은 매우 낮으며 문화적 편견과 정치적 동기가 그 연구의 기반에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권적/종족적 민족주의의 구분은 어떻게 하면 종족적 민족주의의 폭력적 위협성을 부각시키고 보다 덜 위협한 시민권적 민족주의를 내세울 것인가라는 목적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콘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를 분류하여 '어떤 형태의 민족주의가 보다 가치 있고 어떤 형태의 민족주의가 보다 위험 한가' 대비시키려는 의도로 연구를 진행했다" (Yack: 194)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이런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가치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자유의사에 기반한 시민권적 민족주의를 비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종족적 민족주의를 다른 시각으로 조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up>2)</sup>

2) 아무리 민족집단의 종족적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열린 민족주의'와 '닫힌 민족주의'라는 구분에서 '닫힌 민족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구분은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콘의 시각은 역사적, 경험적 적용에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종족적’ 혹은 ‘시민권적’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카테고리는 매우 유동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족적’을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 즉 혈연적 위계와 인종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종족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극소수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광의의 정의를 따를 경우(ethno-cultural nationalism), 그 반대에 위치하는 시민권적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집단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다 (Brubaker 1998). 이런 경험적 구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민족주의가 시민권적 그리고 종족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 민족주의가 전적으로 개방적이며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한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초한 민족집단을 상정하고 공유하는 정치적 원칙에 기초하는 민족주의라 하더라도 각 민족의 독특한 역사에 연유하는 전래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 민족은 없다 (Yack: 196).” 시민권적 민족의 특유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과 연결된 문화적 기억을 무시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민족의식의 기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영국의 사회인류학자인 쟈킨스(Jenkins)도 비슷한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모든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종족적인데 이는 민족주의가 문화와 연결되어있고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종족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146). 따라서 두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분석적인 유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종족적인 측면과 시민권적인 측면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현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종종 부정적인 민족의식(타민족에 대한 부정과 혐오)과 긍정적인 민족의식(애국심)은 같은 민족주의 담론에서 출발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가장 포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유럽의 민족주의도 일상적인 종족중심의 담론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Bilig).

마지막으로 ‘시민권적 대(對) 종족적’이라는 대립은 기능주의적 설명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실제 연구에서 시민권적 혹은 종족적이라는 구분은 특정 민족의식의 역사적 형성물을 전제로 해서 그 결과물이 형성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기능주의적 설명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중국의 정치사상을 연구한 프리드만(Friedman 1994)은 ‘시민권적 혹은 종족적’이라는 구분이 종종 민주화(혹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물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한 민족의 민족성이 근본적으로 약하거나 혹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up>3)</sup>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폐쇄적, 공격적 민족주의와 ‘민족성’은 한 사회의 민족주의 담론이 형성한 극히 제한적이고 특수한 한 시기만을 다루는 것인데 그것을 시공을 초월한 진리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된다. 문화적 특성이 역사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해는 한 사회 내 외부의 다양한 역학관계가 생산하는 민족주의 정치담론과 그 결과를 지극히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3) 영미권에서 90년대에 진행된 독일과 일본의 민족주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이를 잘 나타내는데, 전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통용되어 온 독일민족 혹은 일본민족의 호전성 등은 영국의 수정주의 학자들에 의해 통렬히 비판되기 시작했다.

## 2.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민족주의의 등장

비록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 민족주의는 (특히 최근에 탈식민화된 사회의 경우) 파괴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지만 근대 유럽에서 민족주의 정치담론의 시작은 그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했다. 새로 등장하는 산업사회의 기능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하든 혹은 급증하는 중산계급의 정치적요구가 실현된 것으로 파악하든 민족주의는 동질한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수평적인 사회질서의 바로미터였다. 민족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민족주의 연구에서 겔너(Gellner)와 도이치(Deutsch)의 연구는 그런 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겔너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인구의 동질성과 사회의 평등주의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농업과 구별되는 높은 수준의 분업이 요구되는 산업사회에서 문화적/언어적으로 균질적인 개인이 요구되는데 이는 각 개인이 다른 성원들과 “전제조건 없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다(Gellner: 141)”. 결론적으로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관계적’ 정체성(가족, 친족, 혹은 지역에 연결된 정체성)이 퇴락하면서 민족이라는 다수의 집단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카테고리’ 정체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도이치의 연구도 비슷한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족주의의 등장을 통해서 한 사회에서 집단사이의 불평등은 줄어들고 수직적인 위계는 수평적인 질서로 탈바꿈했다. 즉 민족주의는 기존에 정치과정에 배제되어 있던 많은 위계 집단들을 민족이라는 큰 테두리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치의 장을 대폭 확대시킨 것이다.<sup>4)</sup> 민족주의라는 큰 정치적 모토 아래 모든 개인은 경제적, 사회적 차이와 불평등을 초월하여 같은 커뮤니티의 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평등을 부여받은 것이다.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으로서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유사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민주화이론의 거두인 러스토우(D. A. Rustow 1970 [1999])에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사회통합(national unity)’이라는 단일조건으로부터 출발한다. 미국의 다원주의 정치학자 달(R. Dahl)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민주정치의 단위와 범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다(1989). 린즈와 스테판(Linz & Stepan 1995)도 90년대 이후 민주주의전환에 대한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민족주의 정치담론이 제공하는 정치 공동체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을 들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적 상상을 통해 설정되고 구현되는 사회적 통합이 민주주의를 위한 갈등과 조정의 과정에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요약해 보자면 근대 민족주의는 정치적 지배의 기반을 바꾸어 놓았고 대중적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나아가 이런 역사적 변화는 서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파 재생산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비록 종족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기는 하나 신생 국민국가들에게 민족주의는 정치적 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Geertz 1963).

4) 서구 사회의 참정권 확대 투쟁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결국 동등한 자격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 3.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족주의

정치적 공동체를 확립시킨다는 초기역할과는 달리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의 성립에 해악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내부의 성원들을 단결시키는 동시에 외부자들에게 적대적이 된다는 관찰에서 출발하였다. 칼훈(Callhoun)은 이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민족주의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성격과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주변 민족에 대해 적대적인 매우 호전적 민족주의자뿐만 아니라 민족의 이해관계를 논하는 사람 일반은 객관적인 이해관계의 문제를 민족주의가 내포하는 감정적인 힘에 의존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일부집단을 민족타자로 규정하여 시민권적 권리를 차별적으로 부여하거나 박탈하는데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다 (1997: 126).

잘 알려진 군사주의화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는 국민국가 내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점화시킬 수 있는 갈등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국가들이 종족적 균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정치의 이런 위험성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소수민족(ethnic minorities)이 존재하는 민족국가에서는 근세역사에서 민족주의가 저지른 범죄들이 끊임없이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경계해야 할 민족주의 정치의 문제점은 민족 혹은 소수민족 (ethnicity)의 범위가 객관적인 조건으로 파악될 수 없으므로 문제의 발생과 전개를 예측하기가 무척 곤란하다는 것이다. 베버 (Max Weber)가 일찍이 주장한 대로 민족 경계는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민족의 성원이 되느냐 아니냐는 동일한 혈연관계에 대한 주관적 믿음에 기반 한다 (Weber [1956]1978: 398). '주관적 믿음'이 강조하는 바는 모든 민족구분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평화롭게 보이는 민족/종족간의 경계가 갑작스럽게 호전적인 카테고리로 바뀌곤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왜 평화롭게 공존하던 국민국가 내부의 각 민족구성원들이 민족갈등의 전사로 나서게 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족/종족갈등과 폭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잘 알려진 바대로 폭력적인 민족갈등은 분파로 나뉘어 권력을 점하고 있는 권위주의 엘리트들이 정치적 몰락을 경험하게 되면 쉽게 발생 한다 (Snyder). 국가와 다른 제도들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력이 붕괴하면 각 엘리트 분파들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족/종족주의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Snyder: 68-9). 이런 민족/종족주의에 기반한 호소는 폭력적 사태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보다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유기체적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종족을 말살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위험이 높다 (Mann 2005). 유럽에서 유래한 유기체적 민족주의 (organic nationalism)는 민족을 단일한 불가분의 집단으로 이해하면서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을 지상최고의 과제로 생각했다. 이러한 관념은 오로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소수자들을 제거하고 내부의 일부를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유지, 강화될 수 있었다. 만의 연구에 따르면 민족에 대한 유기체적 관념은 국가엘리트가 분파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쉽게 민족/종족 말살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 4. 분석틀과 세 가지 명제: 민족주의담론에서 나타나는 통합과 배제의 논리

위에서 민족주의를 종족적 대 시민권적으로 구분하는 논리의 빈곤함과 종족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바탕에서 한국민족주의 정치담론에서 나타나는 구분과 그 결과물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위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 민족주의연구는 맥락의 중요성과 기존의 조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시민권적/종족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구분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과 그 조건의 조합이 가지는 특성과 제도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다. 특히 역사적 시점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치 집단을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모으는 작업은 민주주의의 확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와중에 분파적 엘리트와 접합되는 종족적 민족주의는 폭력적인 갈등을 양산하며 민주화의 큰 걸림돌이 된다. (2) 민족주의 정치담론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정한 민족주의 담론/운동으로부터 생기는 통합과 배제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있다. 통합과 배제의 과정은 ‘시민권적/종족적 민족주의’ 양 쪽에서 다 나타난다. 그 과정은 동시에 발생하며 서로 뒤얽혀 있다. 통합과 배제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민족주의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층 높은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민족주의의 성격에 대한 단순한 일차원적 구분에 대한 뛰어난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한국민족주의 담론분석에서 시민권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통합과 배제의 과정을 동시에 나타내는지 보이도록 하겠다.<sup>5)</sup> 첫째, 종족적 민족 혹은 시민권적 민족이라는 개념은 이념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형태가 혼재된 형태의 제도와 정치적 주장이 있을 뿐이지 순수하게 종족적 혹은 시민권적 형태의 민족주의를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한 민족을 종족적 민족 혹은 시민권적 민족으로 구분하는 것은 민족을 정형화된 실재로 취급하여 변화하지 않는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입장인데 사회학적 분석의 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안으로서 한 민족주의 담론이 어떤 종족적 특성이 있고 시민권적 특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가능한 작업이다. 즉, 모든 민족주의 담론은 종족적 특성과 시민권적 특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한국민족주의 담론의 연구에서 종족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담론이 ‘디아스포라’와 연관해서 한국민족주의의 종족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제로는 시민권적 특성과 종족적 특성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제1명제].

둘째,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민권적 민족주의의 개방성과 포용성, 종족적 민족주의의 폐쇄성과 배제성이 언제나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 한다. 시민권적 민족주의의 논의를 받아들이는 경우 오히려 기존에 인정되던 민족의 범주가 오히려 축소되고 일부 성원들이 정치적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5) 본 연구에서 선택하고 있는 두 사례들 (‘재외동포법 논쟁’과 ‘지역주의 논쟁’)이 한국의 민족주의 정치과정에서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는 없다. 즉, 보편적 사례의 분석을 통한 일반화의 모색은 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방법론 논쟁에서 볼 때 ‘전략적 연구사례(strategic research materials)’는 자신의 이론적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타 이론과의 비교와 대비를 쉽게 하기위한 중요한 방법론적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전략적 연구사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는 머튼(Merton)의 글을 볼 것.

경우 기준에 시민권적 권리가 박탈되어 있던 집단이 새롭게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혈연관계와 문화적 특성으로만 인정되던 민족공동체의 성원 여부가 정치적 신념의 공유와 경제적 이주의 자유를 통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민족공동체의 형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시민권적 민족주의의 포용성을 인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민권적 민족주의의 논의는 기존에 인정되던 민족성원을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라는 협소한 기준에 따라 배제시킬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족적 민족의 강조가 공동체의 확장이라는 개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종족적 민족에 포함되는 성원들의 상당수가 모체가 되는 국민국가의 외부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종족적 민족주의의 강조는 정치공동체로서 민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2 명제].

세 번째로 ‘한국민족’의 높은 동질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논리 가운데 하나로 ‘단일민족국가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무해론’이 있다. 즉, 종족적 민족주의가 낳은 불행한 세계사적 사건들--나치의 유대인학살, 구 유고 연방의 인종청소, 르완다의 인종학살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사회와 같이 민족타자의 존재가 거의 무시될 정도로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 높은 동질성의 사회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족적 민족주의가 부정적인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소수민족의 존재가 미미한 사회에서도 종족적 민족주의가 배제의 논리로 작용하는 경우를 보이려 한다. 즉, 높은 종족적 동질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도 유기체적 민족주의관은 민족의 통합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의 일부 성원과 집단을 반(反)민족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족공동체에서 배제시키려는 노력을 종종 보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에 제기되었던 지역주의 논쟁에서 지역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잠재우는 기제로서 종족적 민족주의가 동원된 것 예로 들 수 있겠다. 내부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종족적 민족에서 모든 성원이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부의 차별, 불평등, 배제를 동질성이라는 외피로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제3명제].

<표 1>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정치담론의 통합과 배제의 양상

	자유주의론의 시민권적 민족주의 (Civic Nationalism)	유기체론에 기반한 종족적 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
통합	정치적 단위로서 민족(Demos); 함의한 정치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 낮은 문화적 동질성과 느슨한 통합	문화적 단위로서 민족(Ethnos); 종족적,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높은 동질성과 강한 통합
배제	공유하는 정치원칙의 밖에 놓인 사람들 (예) 재외교포, 공산주의자, 시민권적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 (병역기피자, 탈세자 등)	출생에 따른 국외자, 민족 내부의 적, ‘불순분자’; 감추어진 내부의 분열 (예) 국제이주노동자, 민족의 적으로서 공산주의자/미국추종자, 지역주의자 (ethno-regionalists)
변화의 방향	정치적 원칙의 내용에 대한 논쟁; 민족 커뮤니티 안의 분화와 배제의 진행	민족통일 지상주의; 민족의 순수성과 자주를 내세운 폭력적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

### III. 한국의 민족주의 정치담론 분석

#### 1. '재외동포법' 논쟁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의 통합과 배제의 논리

현재 약 600만 명을 넘어선다고 추산되는 재외동포는 그 수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주변 4강대국--중, 일, 러시아, 미국--에 집중해서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더해져 그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정인섭; 한명숙).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인 1998년부터 법무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재외동포법은 이런 필요에 더하여 1980년대에 계속 제기되었던 재미교포들의 이중국적 허용요구를 일부 반영하여 논의 되게 되었다. 특히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미 이주자 인구 가운데 금융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커지게 되었고 경제제도의 전반적인 개방과 개혁에 맞추어 재외이주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합의가 형성되었다 (정인섭: 13).<sup>6)</sup> 그리하여 법무부는 재외이주민 ('재외동포'로 흔히 불리는 사람들)의 국내거주와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98년 9월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재외동포법)'을 입법예고 하였고 논의와 수정을 거쳐 1999년 8월에 국회를 통과 하였다.

하지만 1999년의 입법회는 곧 '재외동포'의 법적 정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2001년에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된다. 논쟁의 핵심은 재외동포법이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동포의 범위를 매우 작위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이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1) 현재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거주 국민과 (2)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외국국적자와 그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한다. 이 가운데 첫째 집단은 이견이 없으나 둘째 집단은 한국국적이라는 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인 1948년 이라는 시점을 명시하게 되어 그 이전에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재외동포들을 대거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는 일부 의도된 결과이기도 했는데, 입법을 주도했던 관계자의 의견을 보면 재미동포들을 주로 포함시키고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동포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정인섭: 33).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의도는 크게 보아 외교안보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동포들은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자로 포함시키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교포들이 그 동안 북한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많은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국 내 거주와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친북인사들이 포함되거나 북한의 교란작전으로 인해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둘째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중국교포의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큰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주거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이 대규모의 변화를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6)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도를 개혁하는 시점에서 기왕이면 타 인종 보다는 재외동포 금융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낫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러한 입법의도는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중국동포들과 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던 NGO들은 동포의 지위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들을 헌법소원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sup>7)</sup>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들이나 정부수립 이후에 이주한 동포들이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동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차별적인 동포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문 99헌마494).

위헌판정 이후 어떻게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수립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동포에게로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결국에는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변형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위헌판정 이후인 2001년 12월에 제안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서 재외동포는 두 가지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대한민국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한명숙: 10).

이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는 1948년이라는 시점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편의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동포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호적의 기록 확인을 통해 재외동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1922년의 호적제도 실시가 또 하나의 시점으로 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1922년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러시아 이주인의 경우 사실상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차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배제의 논리는 '이주자와 그 직계비속'이라는 용어에 있다. 즉, 재외동포법 해당자는 이주자를 포함한 2세대에 한정되게 되어 이미 3세대 4세대로 진행된 이주동포 사회의 경우 재일, 재중, 재러시아 사회의 경우에는 해당자가 극히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sup>8)</sup>

위에 간략하게 정리한 재외동포법 제정과 개정의 변천사를 보면 시민권적 권리와 종족적 원칙의 임의적인 조합과 변형이 일부의 '동포'들에게 시민권적 권리의 일부를 부여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일부의 '동포'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포'로 호칭되는 재외이주민에게 한국 내 주거와 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는 정치적 움직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과거에는 (1999년 이전에는) 종족적 민족기준이 묵시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는 주거와 경제활동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재외동포법을 통해 시민권적 권리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이를 발전시키면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담당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한국의 시민권 (혹은 그에 해당하는 권리)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재외한국인들에게 영주의 자유와 참정권을 부여하는 논의도 발전될 수 있다. 실제로 재외국민의 참

7) 1999년 8월 12일 중국 출신으로 한국에 체류중이었던 조연섭, 문현순, 전미라 삼인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근거로 재외동포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정인섭 편: 217-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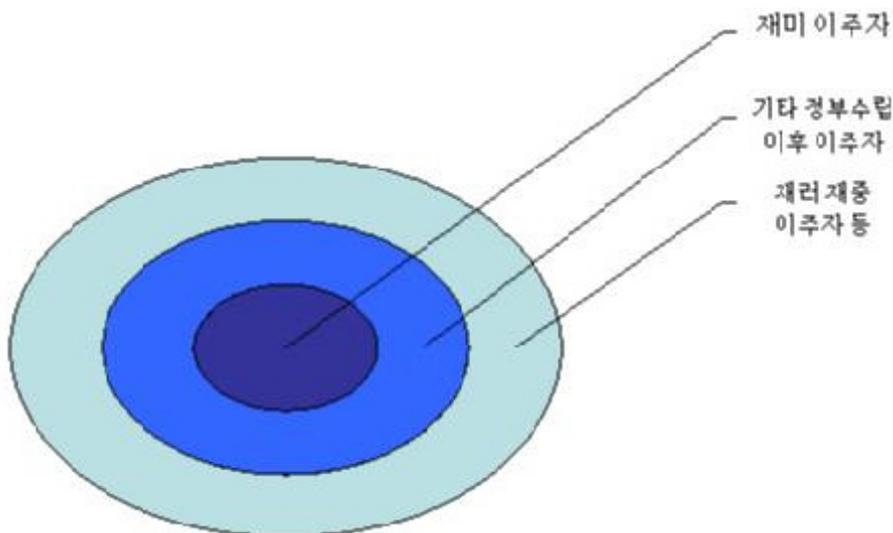
8) 실제로 1999년 시행된 이후부터 4년간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아 입국한 재중, 재러시아 동포의 수는 총 38명에 불과하였다 (한명숙: 5).

정권 문제가 정책수립차원에서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주노동자에게 사회적 권리를 관대하게 허용하자는 논의도 인권단체와 기타 NGO들을 통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해당자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기존의 종족적 원칙도 아니고 시민권적 원칙도 아닌 기형적인 원칙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재외동포법의 논의를 통해서 법률적인 민족공동체의 정의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자라는 좁은 정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지만 한국인이 누리는 사회적 인정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됨으로서 민족공동체의 외연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한국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제한을 가짐으로서 근대국민국가 수립이전에 민족공동체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일부 배제되는 중요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시 말해 엄격한 법률적 정의를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기존에 한국인으로 계속 인정되고 있던 재외동포들의 일부가 재외동포법을 통해 민족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게 되었고 이는 관념의 민족공동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혈연주의의 원칙을 통해 모든 재외이주민에게 주거,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여했다면 이는 민족공동체의 확대라는 결론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육백만 명 이상의 재외이주민이 포함된다면 이스라엘의 건설과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와 견줄 수 있는 혈연원칙에 의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결과물은 달랐다. 이전에는 종족적 기준에 의해 같은 민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던 이들이 종족적 기준과 시민권적 기준의 민족이 자의적으로 조합된 형태를 나타낸 법률을 통해 민족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림 1〉 '재외동포법' 논쟁과 민족주의 담론: 재외동포집단의 통합과 배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종족적 민족주의가 모든 민족 성원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믿음은 신화이며 종족적 민족의 내부에도 분화, 차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흔히 빠지기 쉬운 오

해 가운데 하나가 종족적 민족주의는 내부의 성원들이 모두 동등하게 존재하고 내부의 균열이 최소화된 민족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공유하는 민족문화(언어를 포함하여)와 혈연관계에 대한 신화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성원이 유기체적으로 통합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민족의 범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개인과 하위 집단이 동등한 위치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주변적 존재로 취급되거나 배제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외동포법’의 예는 이를 잘 보여주는데 국가엘리트를 포함하여 정책결정자들은 암묵적으로 재외동포들을 서열적으로 구분하였고 일부 집단에겐 우호적인 정책이 일부집단에게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재미이주민들은 민족공동체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주민들은 주변적인 존재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재미 이주민들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자유를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출입국부터 엄격한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요인과 경제적 글로벌리제이션의 전개는 모든 기존의 민족이라고 인정되던 동질적 그룹을 다양하고 다층위적인 집단으로 나누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한국 내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일본과 미국국적의 해외 동포들에게 준시민권에 해당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중국 혹은 구 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분단상황을 감안한 안보상의 이유와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폭주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Park & Chang). 따라서 이때 민족 내부의 서열화는 경제적, 안보상의 동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논점은 국가가 종족적 민족이라는 집단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종족적 민족주의를 이야기 할 때 국가의 역할은 매우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종족적 대 시민권적이라는 대립은 문화적인 민족과 정치적 민족이라는 대립항으로 종종 치환되곤 하는데 이는 오랜 전통을 가진 종족적 민족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규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형성하고 경영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즉, 민족은 역사에 따라 한 시점에서는 ‘가’라는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시점에는 ‘나’라는 국가를 만들어 다른 민족과 경쟁하며 발전한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족적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고 주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가 민족을 만든다는 것이다--즉, 민족범주를 결정하고 일부를 배제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sup>9)</sup>

## 2. 지역주의 논쟁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의 통합과 배제의 논리

‘민족’이 혈연적 공동체로 이해되어 그에 속한 사람들만이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일부 지역이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위에서 비판한

9) 이 점에서 실재하는 집단으로서 민족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형성된 범주로서 민족을 연구해야 한다는 제도주의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제도주의 접근은 브루베커(Brubaker 1996, 제 1장)를 볼 것.

‘종족적/시민권적’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해보자면, 이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쉽게 규정될 수 있는데 기존의 인식으로는 종족적 민족은 혈연관계 (혹은 문화적 특성)를 연결고리로 삼아 내부의 결속력과 동질성이 매우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단, 종족적 민족주의가 지배적인 경우 혈연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지만 그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즉, ‘민족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그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 매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보자면 일단 그 집단에 속하는 성원들에게는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정치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실제, 한국민족주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내부의 문제보다는 대부분 민족타자 혹은 외부의 민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임지현 1999). 이는 전형적으로 한국사회를 ‘종족적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로 보고 문제를 분석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이론적 논의에서 보았듯이 ‘종족적/시민적’이라는 구분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하더라도 (1) 반드시 모든 성원들이 동질성에 기반한 높은 내부의 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sup>10)</sup> (2) ‘종족적 민족주의’가 배제의 이데올로기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사회에서 실재하는 민족주의 담론분석에서 ‘내부의 동질성’과 ‘외부의 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종족적 민족’으로 규정하는 경우 종족적 특성으로만 그 사회의 민족주의를 이해하게 되는 환원론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족주의가 실제로는 내부적 동질성을 항상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지역주의 논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실제 존재하는 민족내부 균열/차별과 함께 존재하였고 상호경쟁의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즉, 1980-90년대의 한국지역주의논쟁에서 종족적 민족주의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민족공동체에서 내부적으로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일부 성원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가 혈연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여겨지지만 실은 내부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 균열을 감추는 기제로 종족적 민족주의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과 중첩되면서 나타난 ‘지역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 혹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되면서 주목 받았다 (최장집 1993: 400-1). 민족동질성이 매우 높다고 내외적으로 인정되는 한국사회에서 1980-90년대에 불거진 지역에 따른 차별과 대립은 실제 경제적 활동의 영역, 정당의 인적구성, 관료제 내부의 파벌적 구성, 결혼관계 등을 통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만흠; 최영진; Janelli; Yu), 정치담론에서 지역의 문제는 초기에 그 존재가 부정되거나 전근대적인 관행의 잔존으로 치부되어 개혁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다. 즉, 민족의 동질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지역적 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다툼을 금기시하는 대응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정확하게 ‘종족적 민족’을 규정하는 시각과 일치한다. 혈연적 특성이 그

10) 대표적으로 종족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흔히 이해되는 독일민족의 경우 실제 내부의 동질성이 항상 유지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브루바이커에 따르면 독일민족 가운데 카톨릭과 사민주의자들은 종종 민족공동체에서 배제되곤 했다 (Brubaker 2004: 142).

민족의 구성원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내부의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대응책은 내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애써 눈감는 것인데, 종족적 특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치적 억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예로 대만의 경우 대만인과 본토인의 갈등이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나 국민당 정부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도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갈등과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hang 1994: 103-4).

갈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비교적 갈등의 차원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갈등의 원인을 일부 '지역주의자'에게 돌리는 것은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나타난다. 즉, 지역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민족공동체의 안녕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혈연적 연결을 민족성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삼는 민족주의 담론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것인데, 민족을 유기체 (몸)에 비유하여 민족은 분리될 수 없는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만일 한 부분이 전체의 안녕을 해치는 경우 그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본다 (Mann 2005: 63-4). 이를 확장시키면 해가 되는 부분은 절단하고 도려냄으로서 나머지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의 이론적 논의로 돌아가 보자면 이때 민족은 모든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혈연적 연결을 가지는 경우라도 일부는 민족의 적 혹은 해악으로 규정되어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나머지의 통합을 유지하는 동시적인 과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광주민중화운동 이후로 1980년대에 호남의 차별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위의 두 가지 대응방식이 모두 발견된다. 첫째, 혈연으로 연결된 민족 내부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 정치인들의 언술과 학자들의 주장에서 발견된다. 둘째, 보다 공세적인 언술 가운데 호남지역의 운동 엘리트들을 '국가와 민족'<sup>11)</sup>의 안녕을 저해하는 요소로 규정짓고 전체의 통합을 위해 이들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국가의 지배엘리트들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압력과 지역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접한 상황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메타포어를 통해 지역차별에 대한 요구를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교묘하게 분리하여 이를 민족이라는 지고지순의 정치체를 파괴하려는 매우 이기적이고 위협적인 시도로 규정하려 노력했다.<sup>12)</sup> 이에 대항하여 지역주의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지역의 일부 민주화 운동가들은 지역이라는 단위를 생략하고 이를 민족전체의 문제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이들은 지역 내부의 혹은 지역 간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혹은 국민국가)차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이라는 단위가 민족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정확안. 둘째로는 지역간 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경제적 균형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제6공화국 시기에 진행된 3당 합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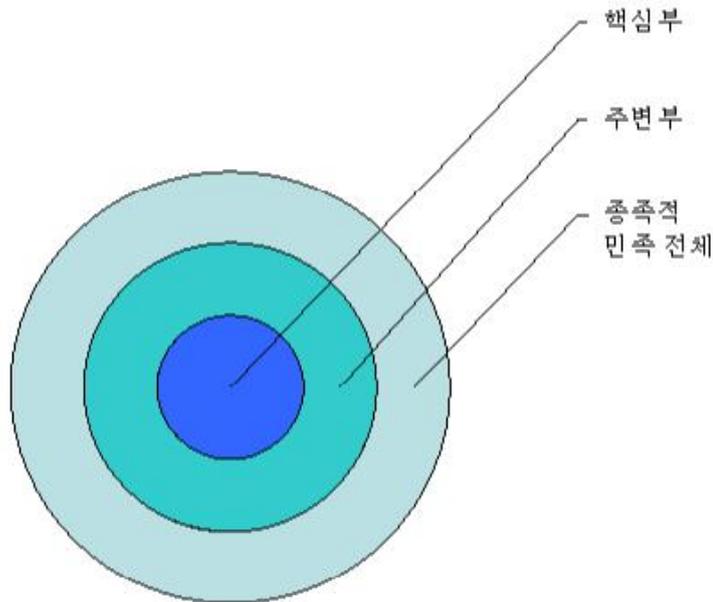
11) 유기체론의 민족주의에서 국가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신채호의 주장에서 국가는 '민족의 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라고 표현되고 있다 (전복희 1996: 164).

12) 대표적으로 이런 시각은 광주민중화운동 발생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관 명의의 '시민에게 드리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Park & Kim 을 볼 것). 지역의 대립을 민족의 수치로 보고 도덕적인 시각에서 무조건적인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입장도 민족이라는 단위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한 종족적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라는 호남을 배제한 정계개편이 이루어진 이후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격차의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제기되었었다. 일부요구가 수용되었지만, 이런 요구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모든 지역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차별의 정치적 성격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지역의 두 가지 대응은 민족 내부의 통합과 순수성의 유지를 위해 지역이라는 작은 단위가 희생해야 한다는 중앙엘리트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지역주의 논쟁에서 민족주의 담론의 통합과 배제



민족이라는 집단이 종족적인 담론이 지배적인 경우 성원들이 모두 동질적이고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동질적인 민족내부에 실제로는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은 시민권적인 권리의 확보로 접근해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종족적 민족의 관념이 압도적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내부의 차별과 배제는 공론화하기 어려워진다. 종족적 민족주의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사회에서 '민족 대(對) 지역'의 구도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1980-90년대 한국의 국가 엘리트들은 종족적 민족주의가 가지는 내부배제와 차별화의 논리를 심분 활용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저항엘리트들은 민족주의가 가지는 내부배제의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 IV. 맺음말

민족과 민족주의 연구에서 시민권적/종족적이라는 구분과 대립항은 분석적인 경험연구에 도움

이 되지 못한다. 정치적 주장 혹은 당위론으로서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시민권적 민족주의를 강화하자는 입장은 사회운동의 제시목표로서 의미가 있지만 세계사의 다양한 ‘민족’ 혹은 민족주의를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누고 평가하는 것은 몰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분석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각 민족주의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통합과 배제의 과정에 보다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적으로 지극히 포용적인 시각이라고 인정되는 시민권적 민족주의담론도 시민권의 대상을 좁게 정의된 정치적 신념과 시민적 의무의 수행 여부에 맞추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정치공동체로서 종족적 민족주의가 규정했던 민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대로 종족적 민족주의도 항상 편협한 배제의 논리로 볼 수 없으며 민족의 범위를 결정짓고 각 구성원이 동일한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기본조건으로 역할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물론 종족적 민족주의가 가지는 위험성을 배제의 논리를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다른 민족에 대한 호전적 태도와 그에 따른 갈등을 넘어서 동질적이라고 인정되는 민족의 내부에서 일부 구성원을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시키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민족주의담론 분석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안으로 부터의 배제(exclusion from inside)”를 예로 들었다. 첫째, 한국 민주화의 최대 장애물로 인식되는 지역갈등을 민족주의의 담론의 배제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엘리트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분석해 보면, 지역의 불평등과 불만을 민족의 통합과 순수성을 위협하는 시도로 규정하고자 했던 국가엘리트의 노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민들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논리에 굴복하여 지역의 불평등을 아예 거론하지 않거나 혹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거론하여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불순한 시도라는 낙인에 노출될 각오를 해야만 했다. 둘째, 재외동포법 논쟁을 검토하면서 “재외동포”라는 지극히 종족적인 기준에 의해 성립된 카테고리가 실제로는 층위를 이루는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층위를 이루는 원칙은 혈연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경제적 정치적 동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해 볼 때, 한국민족주의 담론과 그를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에서 시민권적 민족주의로 이행을 이야기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민족주의 담론은 통합과 배제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각의 독특한 시점과 제도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논의의 진전에 따라 종족적 민족주의의 통합적 기능을 아직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시민권적 민족주의가 특정 상황에서는 배제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때 모든 것이 일차원적으로 열린 혹은 닫힌 민족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으로는 열린 것인 동시에 다른 한 쪽으로는 닫힌 민족주의가 된다는 것을 보다 입체적이고 동시적인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담론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해 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 결정된다고 인정되는 ‘종족적 민족’의 경우에도 국가는 그 범주를 결정하고 내부의 층위를 형성하는 역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위의 논의를 통해 파악되었다. 이주자가 증가와 국경의 의미축소로 이해되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에도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핵심적이다.

## 참고문헌

### 자료집

- 『항쟁사료집』광주오월 민중항쟁 사료전집 1990.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민주화운동자료집』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자료전집 (제1-22권) 1998-1999. 광주시.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 논문과 단행본

- 권혁범. 2000.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  
권혁범. 2004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삼인.  
김만흠. 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8-2: 215-237.  
김정훈 2002. “세계화시대의 통일민족주의” 『경제와 사회』통권 제55호. pp. 169-193.  
박종일. 2006. “시민권적 대 종족적 민족주의의 대립을 넘어” 후기 한국사회학회 발표문.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소나무.  
\_\_\_\_\_. 2004. “국사의 안과 밖--헤게모니와 국사의 대연쇄”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임지현, 이성시 엮음. 휴머니스트.  
\_\_\_\_\_. 2005. ““민족국가=최고가치’ 넘어서자.” 『NEXT』 통권 15호.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구한말을 중심으로』한울아카데미.  
정인섭. 2002.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 정인섭 편. 『재외동포법』. 사람생각.  
진덕규. 2003. ‘고난과 혼돈의 한국민족주의 지형: 공존-연대, 통합-평등의 열린 민족주의 지향해야’ 『자유공론』 제 38권 3호.  
최영진. 1999. 『한국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오름.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한명숙. 2004. 『재외동포정책,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자료집.  
Allcock, John B. 2000. *Explaining Yugoslav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illig, Michael. 1995. *Banal Nation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Brown, David. 1999. “Are There Good and Bad Nationalisms?” *Nations and Nationalism* 5(2): 281-302.  
Brubaker, Rogers. 1996. *Nationalism Reframed: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new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8. “Myths and Misconception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John A. Hall (ed.), *The State of the 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4. *Ethnicity without Group*.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alhoun, Craig. 1997. *Nationalism*.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hang, Mau-kuei. 1994. “Toward and Understanding of the Sheng-chi Wen-ti in

- Taiwan,” in Chen Chung-min et al (eds.) *Ethnicity in Taiwan*, Institute of Ethnology,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 Cumings, Bruce. 1997.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W.W. Norton & Company: New York.
- Dahl, Robert.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 Diamond, Larry, and Marc F. Plattner, (eds.). 1998. *Democracy in East Asi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eds.). *Nationalism and Democracy*. Baltimore.
- Friedman, Edward. 1994.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Westview Press.
- Geertz, Clifford. 1963. “The Integrative Revolution.” *Old Society and New States*. The Free Press of Glencoe.
- Greenfelt, Liah.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nker, Roy Richard. 1998.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St. Martin's Press.
- Habermas, Jurgen. 1996. “National Unific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New Left Review* 1/219 (Sep.-Oct.).
- Horowitz, Donald L. 1985. *Ethnic Groups in Conflic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nelli, Roger. 1995. *Making Capitalism: Th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of a South Korean Conglomerate*. Stanford University Press.
- Jenkins, Richard. 1997. *Rethinking Ethnicity: Arguments and Explanations*. London, Thousand Oaks &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Joppke, Christian. 2005. *Selecting by Origins: Ethnic Migration in the Liberal Stat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Kohn, Hans. 1944. *The Idea of Nationalism*.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Lakoff, Sanford. 2000. “Democracy.” *Encyclopedia of Nationalism*. Vol. 1. Academic Press.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and London.
- Mann, Michael. 2005. *The Dark Side of Democracy: Explaining Ethnic Cleans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x, Anthony W. 2002. “The Nation-State and Its Exclus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1.
- Merton, Robert K. 1987. “Three Fragments From a Sociologist's Notebooks: Establishing the Phenomenon, Specified Ignorance, and Strategic Research Material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13: 1-29.
- Nodia, Ghia. 1994. “Nationalism and Democracy.” Diamond and Plattner (eds.).

- Nationalism, *Ethnic Conflict, and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ik, Nak-chung. 1993. "South Korea: Unification and the Democratic Challenge." *New Left Review* 197 (Jan.-Feb).
- \_\_\_\_\_. 1996. "Habermas on National Unification in Germany and Korea." *New Left Review* 1/219 (Sep.-Oct.).
- Park, Jong-Il & Kim Hoki 2004. "Renegade Region or Symbol of New Nation? Regionalism and Ethnic Nationalism during the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ung-Sun & Paul Chang. 2004. "Contestation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and Ethnic Identities in Global Context."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Rustow, Dankwart A. 1970 [1999]. "Transition to Democracy: Toward a Dynamic Model." Lisa Anderson (ed.), *Transitions to Democ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mid, Andre. 2002. *Korea between Empires*.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in, Gi-Wook 2006.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Unification: Korea."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o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in, Gi-Wook et al. 1999. "The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in Divided Korea" *Nations and Nationalism* vol.
- Snyder, Jack. 2000.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London: W.W. Norton & Company.
- Stepan, Alfred. 1998. "Modern Multinational Democracies: Transcending a Gellerian Oxymoron". John Hall (ed.), *The State of the 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ber, Max. [1956] 1978. *Economy and Society*. Roth and Wittich (ed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immer, Andreas. 1997. "Who Owns the State? Understanding Ethnic Conflict in Post-Colonial Societies." *Nations and Nationalism* Vol. 3 No.4. pp. 631-665.
- \_\_\_\_\_. 2002. *Nationalist Exclusion and Ethnic Conflict*. Cambridge Univ Press.
- Yack, Bernard. 1996. "The Myth of the Civic Nation." *Critical Review* 10, no. 2.
- Yu, Eui-Young. 1990. "Regionalism in the South Korean Job Market: An Analysis of Regional-Origin Inequality among Migrants in Seoul." *Pacific Affairs* 63: 24-39.



# ‘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이철우 (연세대) · 이호택 (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 I. 서론

이 연구는 韓人의 정체성이 어떻게 제도화된 소속 지위로 구현되는가를 주제로 한다. 그동안 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정체성의 내용적 성격을 규명하고 정체성의 준거가 되는 種族性(ethnicity)과 민족적 실존의 역사적 배경과 사실적 근거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한 논의에서 한인의 정체성은 種族的 민족주의에 의해 구성, 추동, 재생산되었다는 점이 유력하게 지적되어 왔다.<sup>1)</sup>

종족적 민족주의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된 관념적 재료이다. 그러나 종족적 민족주의는 다층적 실재 중 한 층위를 구성할 뿐이다. 다른 층위에서는 세계를 국가로 分節하는 국제규범이 민족에의 소속을 국가에의 소속으로써 가로챈다. 그리고 국민국가가 불가피하게 영토국가라는 사실에 의해 영토 내외의 거주를 기준으로 법적 지위가 더욱 세분화된다. 게다가 분단 상황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의 상이한 태도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또 다른 층위에서는 한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여러 집단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차별화하는 제도적, 사회적 구획이 행해진다. 이로써 국내 거주 국민,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朝僑, 재외동포체류자격(F-4) 소지자, 방문취업자(H-2) 등 다양한 범주의 한인이 제도화된다.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추상적 관념과 階序화된 민족(hierarchical nationhood)의 존재 현실 사이의 괴리,<sup>2)</sup> 그리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다층적 실재를 복합적으로 탐구하려는 근래의 문제의식은 한인의 종족주의적 정체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거나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脫)민족주의래의 시민권 담론, 그리고 당위론적 동포정책 또는 그에 대한 규범적 비판 담론의 래수준을 뛰어넘어 한인의 자기상상에 대한 현실인식을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sup>3)</sup> 이 연구

1) G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그러한 지적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규범적 관점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론적 시각에서 민족을 말하는가 - 예를 들어, 원초주의(primordialism)와 구성주의 - 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지 않다. 김경일은 ethnic nationalism을 혈연민족주의로 번역하는데 워커 코노(Walker Connor)의 ethnonationalism 定義에 부합한다. 김경일, “[전문서평] 민족과 민족주의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사,” 『역사비평』 76호 (2006), 500-17면.

2) 계서화된 민족의 개념은 Dong-Hoon Seol and John D. Skrentny,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Vol. 9, No. 2 (2009), pp.147-74.

3) 박명규가 한국의 내셔널 담론에서 식별하는 국민적, 민족적, 종족적 유형은 실천과 제도에서도 나타나며, 여기서 말하는 실재의 여러 층위들을 구성한다. 박명규,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문화』 41호 (2008), 245-62면.

는 그러한 연구사적 진전에 가세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온 포섭과 배제의 행정적 技法에 주목한다.

집단을 구획하고 개인을 소속에 따라 채우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동기화된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다. 가장 始原的인 정치적 결단은 그 결단을 내리는 主權人民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결단의 주체가 그 결단의 효력에 의해 창출된다는 패러독스를 수반한다.<sup>4)</sup> 先存하는 역사적·종족적·문화적 공동체는 이 결단에 의해 주권인민에 포섭되는 집단과 배제되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주권의 작용은 계속하여 결정의 정치적 토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법적 실재를 만들어내며, 그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분배받는 집단들이 세분화된다. 나아가 집단의 구획은 특정 개인의 소속을 판별하고 확인하는 행정적 실천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나 행정적 실천은 포섭과 배제의 정치적 기획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포섭과 배제의 행정적 실천은 합법/불법의 二項對立的 판단이라는 법체계에 특유한 코드에 구속된다. 아울러 행정 실무는 고유한 논리와 동력을 갖는다. 그것은 정치적 결정의 인지적 기초를 이루는 실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실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역으로 羈束되는 反射的 循環(reflexive circularity) 속에서 행해진다. 이렇게 작동하는 다층적 실재들의 상대적 자율성에 의해 단일한 역사적·종족적·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 구획 사이에 모순과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 연구는 그러한 모순과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는다.

이 연구에서는 한민족을 여러 집단으로 계서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과 구분된 집단에 개인을 배속하는 실무의 현실을 탐구하려 한다. 집단을 구분하고 구분된 집단에 개인을 배속하는 작업은 고도의 권력 행사를 수반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결단과 결단의 성문화라는 主權의 작용이다. 한편 그것은 인구를 규칙성을 갖는 실체로서 인지하고 인구에 속한 개인의 속성과 상태를 파악하는 합리성의 작용, 즉 統治性(governmentality)을 기반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타정치와 행정”의 주권적 차원과 통치성의 차원을 동시에 천착하고, 집단의 구획과 개인의 소속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정치적-법적 권력과 生體權力(b작용-power)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의 논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 구획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제도적 창출을 살펴보는 데에서 시작한다. 즉 역사공동체로서 한민족이 어떻게 근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전화했는지, 대한민국의 국가인민(Staatsvolk)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경계지워졌는지를 추적한다. 여기에서는 국가인민의 정당성을 민족에서 찾으면서도 민족의 제도적 존재성이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패러독스가 어떻게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성에 매개되었는지를 성찰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재외한인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법적으로 분리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재구성, 제도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의 소속을 판별하는 방식의 특수성을 검토한다. 이어, 分節된(segmented) 노동시장의 요구에 의해 두 종류의 제도화된 血緣外國人(kin-foreigners)의 지위 - 재외동포체류자격과 방문취업자격 - 가 형성된 과정을 管見하고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행정적 조건을 살핀다. 이 절의 마지막 소절에서는, 민족성원이 동심원적 민족공동체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즉 방문취업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 국적으로 진입하는 데 각각 필요로 되는

4) 자크 데리다, “독립선언들,”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김성호, “헌법제정의 정치철학: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 42집 3호 (2008), 5-27면.

요건과 절차를 분석한다. 이는 중심으로의 진입 정도에 따라 달리 작용하는 통치성과 생체권력의 양상을 보여준다.

본론 마지막 절에서는 분단의 현실에서 초래되는 추상적·원리적 대한민국 국민과 구체적·현실적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전자가 후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두 지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구체적·현실적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 II. 국민의 제도적 창출

글로벌시대에도 국가에의 소속은 여전히 사람의 생존기회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주권평등의 원칙은 이상일 뿐 국가들은 부와 권력에 따라 계층화되며 국적과 시민권에도 위계가 있다.<sup>5)</sup>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는가는 세계 속의 개인의 위치와 운명을 결정한다.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는 국가들이 共謀하여 지구를 분할하고 인구를 나눠가지는 시스템이다. 국민국가로 분절된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에 소속되었는지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소속하는 것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고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4조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는 아동의 국적취득권을 명시했다. 국적은 이처럼 권리로 보장되지만 이는 개인을 국가에 강제로 배속시키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 아동권리협약은 곧바로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 출생에 의해 어느 나라 국민으로 등록되면 그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sup>6)</sup>

출생과 더불어 어느 국가에 소속되고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근대인의 삶의 본질적 조건이다. 국가에의 소속은 오늘날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러나 유례없이 강고한 귀속 지위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다수는 출생에 의해 국민이 되었다.<sup>7)</sup> 서호철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오늘날 일상적으로 현실의 국민/민족공동체를 유지·재생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원 개개인에게 시민자격 또는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함께 국가를 건설하고 그 일원이 되고자

5) Stephen Castles, “Hierarchical Citizenship in a World of Unequal Nation-State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38, No. 4 (2005), pp.689-92.

6) 국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탈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으며, 단일국적자의 국적포기는 무국적 방지 차원에서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

7) 매년 4백만 이상이 출생하는 미국에서 2007년 귀화자 총수는 66만여명, 가장 귀화가 많았던 1996년에는 110만명이었다 (Rytina and Caldera 2007). 연간 거의 5백만이 출생하는 유럽연합(EU)에서는 매년 평균 73만명이 귀화한다. “Romania’s Proposal to Naturalize 1 Million Moldovans Worries the EU,” *Turkish Weekly*, 19 April 2009.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생과 귀화의 건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하는 열렬한 청원이나 맹세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출생’이라는 생물학적 사실 자체이다..... 핏줄에 따르건 출생지에 따르건,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 때로는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 자동적으로 국적민이자 시민권자인 반면, 출생과 무관하게 국민/민족공동체를 선택하고자 하는 희망은 많은 경우 냉정하게 거절당한다. 출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기란 매우 어렵고, ‘귀화’나 ‘naturalizatio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sup>8)</sup>

출생시 국적을 부여하는 두 개의 원리 중 혈통주의(ius sanguinis)는 폐쇄적인 종족적 민족주의를, 출생지주의(ius soli)는 개방적인 시민적(civic) 국민 구성 원리를 표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이다. 서호철의 지적대로 어느 것이나 출생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에 기초해 사람의 지위를 정한다. 또 민족/국민 구성의 종족적 경로와 시민적 경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념형으로서 유용할지 몰라도 특정 사회에 대한 일도양단의 관정 기준으로는 적합지 않다.<sup>9)</sup> 그 이분법적 도식에서 시민적 국민 구성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프랑스가 혈통주의 국적법의 발명자라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 혁명 후의 프랑스는 영토에 대한 절대군주의 임페리움에 의해 사람이 어떤 군주=국가에 충성해야 할지를 정한 앙시앵레짐의 원리를 부정하고 프랑스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를 프랑스인으로 정의하는 ‘인민주의적’ 원리를 택했다.<sup>10)</sup>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는 상호배타적으로 대립하는 원리가 아니다. 출생지주의를 택하는 나라도 해외에서 출생하는 국민의 자녀에게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을 부여한다.<sup>11)</sup> 즉 혈통은 국민 지위를 규정하는 가장 주된 근거이다. 혈통에 의해 지위를 정하는 것이 전근대적으로 들리지만 부여의 대상이 국적일 때 그것은 面對面의 사회가 아닌, 익명의 거대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개개인의 생물학적 뿌리를 추적하는 생체권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의 사정, 그리고 조상과 자손까지를 알고 기록하는 합리적 행정, 고도의 통치성에 기반하는 근대의 산물이다.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을 부여한다고 할 때 문제는 누가 혈통을 물려주는 최초의 국민인가이다. 국가인민(Staatsvolk)은 임의적 결사체가 아닌 역사적 구성물이다. 그것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 동일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고 스스로를 상상하는 집단으로부터 창출된다. 따라서 민족은 국민됨의 기초이다. 한 영토 위에서 동일한 권력체의 지배를 받고 그 권

8) 서호철, “국민/민족 상상과 시민권의 차질, 차질로서의 자기정체성,” 『한국문화』 41호 (2008), 94-95면.

9) 브루베이커는 프랑스와 독일의 시민권제도를 정체성 관념의 두 유형에 대응시켜 이분화한 바 있으나, 후에는 민족주의를 시민적 유형과 종족적 유형으로 나누는 마니교적 이분법을 맹렬히 성토했다. Rogers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Myths and Misconception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in John A. Hall (ed.), *The State of the Nation: Ernest Gellner and the Theory of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0) Patrick Weil, “The History of French Nationality: A Lesson for Europe,” in Randall Hansen and Patrick Weil (eds.), *Towards a European Nationality: Citizenship,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 in the EU* (Basingstoke: Palgrave, 2001), pp.52-58. 이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강력한 민족화(nationalizing) 조치들을 수반했다. 신원등록시 프랑스식 이름만을 사용하게 하는 등.

11) 물론 국적의 대물림을 어떤 조건하에, 어느 세대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나라에 따라 다르며, 그 차이는 영토와 인민 중 어디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느냐에 의거한다.

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민과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는 집단으로서 민족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에서 두 집단은 서로를 매개해왔다.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국민=시민의 공동체는 조직화 단위의 경계짓기를 정당화해야 하는바 정당화는 대개 민족의 이름으로 수행된다. 개인은 前정치적(pre-political) 집단으로 상상되는 민족에 속함으로써 국민의 자격을 취득한다. 민족소속을 뜻하는 nationality를 국적(Staatsangehörigkeit)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는 語法은 이로부터 유래한다. 반면 민족은 前정치적이라는 허구적 믿음과는 달리 국가에 의해 呼名됨으로써 비로소 경계를 가진다. 개인은 민족에 속함으로써 국가에 속하지만 그가 민족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라는 패러독스가 빚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을 정하는 데에서 패러독스는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대한민국 국적법은 출생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父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推定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인 父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이 법률조문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은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 그 대한민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强占에도 불구하고 단절 없이 존재해온 한민족의 국가를 통칭한다는 전제가 있었다.<sup>12)</sup> 이러한 법률 기초자의 생각이 문자 그대로 계승되지는 않았다. 1948년 제헌 및 정부수립 전에 출생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유권해석한 첫 판결은 1996년에야 내려졌다. 이 영순이라는 이름의 북한 공민을 당사자로 한 이 사건에서 사법부는 1948년 5월에 조선과도입법 의원이 제정한 國籍에관한臨時條例(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를 援用했다. 이 법령에서는 “조선인을 父로 하여 출생한 자”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규정했다(제2조). 사법부는 이에 의해 조선국적을 가진 자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발효와 함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석했다.<sup>13)</sup>

1948년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든 조선국적을 가졌든 여전히 남는 문제는 누가 그런 사람

12) 1948년 국적법 제정 당시 이인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취지를 설명했다. “... 우리가 결국 8·15 이전에 ...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정신적·법률적으로 국적을 가졌다. 이렇게 보아서 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정인섭, “법적 기준에서 본 한국인의 범위,” 임원택교수 정년기념 『사회과학의 제문제』(법문사, 1988), 661-62에서 재인용.

13)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선고, 94구16009;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김명기는 법원이 조선국적을 가지던 자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1948년에 세워진 신생국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명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저스티스』 30권 2호(1997), 186-205면.

인가이다. 이는 1963년에 처음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sup>14)</sup> 동법 제2조에서는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써 본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공민으로 규정했다. 그런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법,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의 기초자들은 1948년 이전의 대한민국국적 또는 조선국적을 갖는 사람의 범위가 자명하다고 믿었다. 새 공화국의 국민 또는 공민의 원천은 한민족 또는 조선민족이었고, 그것은 대한제국의 臣民인 자와 그 직계비속이라는 인적 범위와 일치한다. 문제는 개인이 그러한 인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그를 새 공화국의 국민으로 등록시키는 것이다. 혁명 후의 프랑스가 그 이전 시대에 카톨릭 교구별로 작성한 사람 명부에 의존해 최초 국민의 신원을 기록한 것처럼,<sup>15)</sup> 전통시대의 사람 명부가 최초 국민의 신원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으로 쓰이는 것은 당연히 기대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한국은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와 기록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은 신민을 파악하는 데 철저하지 못했다. “2천만 민족, 3천리 강산, 4천년 역사”라는 인민의 은유적 자기묘사가 무색하게 1906년까지만 해도 호구조사로서 파악한 인구는 580만이 채 되지 않았다.<sup>16)</sup> 인민의 막연한 상상이 국가의 공식적 認知에 비해 실제에 더 가까웠다는 점은 일제에 의해 統治化된(governmentalized) 국가의 視線이 누락된 인구를 포착함으로써 확인되었다. 1906-07년 일본인 警務顧問 임시호구조사 결과 인구는 990만으로 파악되었고, 1909-10년의 民籍實査는 1,300만의 인구를 기록했다.<sup>17)</sup> 이 계량화되고 제도화된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1909년 민적법에 의해 편제된 민적, 1923년 그것을 계승한 조선후적에 기록되었다.

일제하의 호적은 다민족의 제국신민을 귀속적 집단법주로 분류하는, 일종의 국내 민족소속(internal nationality)의 성문화였다. 內地와 外地가 다른 호적으로 차별화되고 조선과 臺灣 등 서로 다른 외지의 신민을 별개의 호적에 기재했기 때문이다. 호적으로 차별화된 이 지위는 1932년 이래 소비에트연방이 성문화했던 민족소속(natsional'nost')처럼 본인이 선택하지 못하고 물려받는 것이었지만, 소비에트연방에서는 적어도 최초로 入籍할 때에는 선택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일제하 호적에서는 입적 자체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sup>18)</sup> 그리고 한번 입적되면 다른 호적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이 대한민국 국적법과 달리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로서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41권 2호 (1997), 53-57면;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국 국적법의 개정방향 검토,” 이장희 엮음,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58, 62면; 손희두, 『북한의 국적법』 (한국법제연구원, 1997), 56, 61면. 최초 국민이 누구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으므로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견해로서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43권 2호 (1998), 246-47면.

15) Gérard Noiriel, “The Identification of the Citizen: The Birth of Republican Civil Status in France,” in Jane Caplan and John Torpey (eds.), *Documenting Individual Ident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16) 서호철,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제2장.

17) 같은 글, 제3장; 박명규·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제4장.

에 등재된 가부장적 가족에 편입됨으로써만 다른 호적으로의 이동이 가능했다. 피지배 세계에 대한 일제의 '전망과 구획(vision and division),' 이를 좇아 개인의 신원을 파악, 기록하고 구분된 집단에 배속하는 통치합리성은 모딜리아니의 인물화에서 보이는 뚜렷한 윤곽처럼 제도적으로 경계지워진 종족집단을 창출했다.<sup>19)</sup> 지속적 조사와 인구 증가의 결과 1944년 일제가 마지막으로 행한 國勢調査에서는 2,500만의 인구가 보고되었다. 대한민국은 이 집단을 최초 국민으로 물려받았다. 단절 없는 주권의 역사를 전제로 하는 1948년 국적법이 국민으로 규정한 사람이 식민지적 통치성에 의해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 했음은 아이러니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일제가 만든 호적에의 등재가 최초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또는 1948년 이전의 조선국적의 필요조건이라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는다. 즉 민적이나 조선호적에의 기재는 한민족 성원임을 나타내는 標識일 뿐 한민족 성원이라는 사실이 그로부터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無戶籍 독립운동가를 무국적자나 외국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서 예시된다. 일제 시대에 해외로 망명하여 1948년 국적법 발효 전에 사망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운동가를 무국적자 또는 외국인으로 가정하고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법률안 3개가 2005년 8월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된 검토의견은 그러한 사람의 국적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무국적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일제시대 호적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일용 무국적자가 되나 호적은 국적의 득실 등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일제시대 조선인을 父로 하여 출생하였다면 앞에서 살펴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미군정하의 조선의 국적을 가지므로 우리 국민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임. 즉, 1900년 대한제국 시대에 개정된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제2조에 의하면 특별한 허가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적이탈은 허용되지 않고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 이탈은 1948. 12. 20. 국적법 시행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조선인으로서 일제시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외국국적 취득은 효력이 없음.

또한 법무부의 실무상으로도 일제시대 외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음.

결론적으로, 3개 법안이 새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국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독립유공자는 의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sup>20)</sup> 그들은 일제가 만든 호적에 기

18) 소비에트연방의 내부 민족소속에 대해서는 Rogers Brubaker, *Nationalism Reframed: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New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chap. 2 참조.

19) 이러한 상태를 코코시카(Kokoschka)의 그림과 대조되는 모딜리아니(Modigliani)의 그림에 비유한 것은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139-40.

20)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30, 2005. 8. 19 임인배의원 대표발의;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67, 2005. 8. 24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국적회복에관한특별법안 의안번호 2527, 2005. 8. 30 신기남의원 대표발의. 2005년 11월 3개 법안 각각에 대한 법사위 박기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록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국적자일 뿐만 아니라 설사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라도 조선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가? 이상의 원칙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일반인의 국적 문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호적에의 등재가 조선국적 또는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인정받는 데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는 점은 법제와 행정의 모든 층위에서 타당한가?

### III. 동포의 법적-행정적 창출과 범주화

#### 1.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가 시사하듯이 대한제국은 신민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았다.<sup>21)</sup> 상기 법사위 검토보고는 한민족의 국가의 단절 없는 계속성을 전제로 하는 국적법 기초자들의 입법의도를 존중하여 일제시대의 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제가 부과한 법제에 의거하더라도 한인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다.<sup>22)</sup> 주지하다시피 일제는 제국에 편입된 피지배 인민을 일본국적자로 취급하면서도, 臺灣 및 樺太와는 달리 조선에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 국적법에 의하면 “자기의 지망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 망명하여 현지 국적을 취득한 한인에 대한 대인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제는 한인이 일본국적자가 된 것은 국적법의 적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합의 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관습과 條理에 의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했다.<sup>23)</sup> 이처럼 대한제국의 법제에 따르든 일제의 법제에 따르든 한인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일제시대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여전히 해방 후 대한민국 국민인민의 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태도는 이와 달랐다. 동 조례 제5조는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1945년]

21) 동 법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本國 政府의 特准除籍을 經치 아니하고 外國에 入籍하므로 籍托한 者는 既遂 未遂를 勿論하고 明律 賊盜篇 謀叛條에 照하여 處斷할 事.” 법사위 박기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註 10. 이 법령은 1898년 공포되었고 1900년 2회 개정되었는데 처벌 조항은 제2차 개정시 추가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국적을 취득한 후 귀환한 한인의 치외법권 주장을 일축하고, 외국 귀화를 통한 국적이탈이 불가능함을 각국 정부에 통보했다. 정인섭, “법적 기준에서 본 한국인의 범위,” 650-51면.

22) 검토보고서에서는 “일제의 침략조약은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국제법상 무효이고, 1965.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 한일합방조약 등은 무효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가로서 존속하였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1948. 옷다는 7. 국가가 새로이 창설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가진 국가(정부)가 출범한 것”이라 갈파했다. 여기에서는 국적이(정임시조례에서 조선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 조례를 사법부가 인용한 것이 국가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될 것을 우려했는지 “1948. 옷다는 7. 이전에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명칭을 조선국적자로 보는 것에 불과함”이라 부연했다.

23) 같은 글, 653면; 江川英文·山田鑠一·早田芳朗, 『國籍法』(東京: 有斐閣, 1989), 191면.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여 외국의 국적을 얻거나 일본 호적에 편입되면 일단 조선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했다.<sup>24)</sup> 정부수립 후 법원도 국적의 상실을 인정했다. 상기 법사위 검토보고에서는 1948년 국적법 시행 후부터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1954년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원용했지만, 법원은 1948년 이래 대한민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自進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국적의 취득 시점이 일제시대라 할지라도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sup>25)</sup>

그렇지만 재미한인의 대부분이 1960년대 이후 이주한 사람들이고 소수의 해방 전 이주자들은 한국의 법해석이나 집행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일이 적었기 때문에 해방 전 해외로 떠난 한인의 국적 문제에 대해 법원과 행정부는 일관되고 명확한 취급 원칙을 정할 기회를 결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재중, 재CIS 한인과의 재결합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의 국적 문제를 취급할 실무상의 원칙이 절실했다. 그런 원칙이 하루아침에 정립되어 실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는 없었다.

在中·在蘇韓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다. 입국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목적에 한정되었고,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입국해야 했다. 1988년까지 5,600여명이 입국했는데 대부분은 재중한인으로서, 1981년 제정한 韓中中間離散家族再會事務處理規程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고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이들이 거주국의 여권에 입국사증(비자)을 받아 입국하지 못하고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했던 것은 해당국이 미수교국이어서 정부가 그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절차는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이후 수정되었다. 즉 정부는 기존의 이산가족재회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하고 여행증명서 대신 거주국의 여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입국사증을 발급했다. 다만 북한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행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는 재중 조선족과 재소 고려인을 북한인과는 달리 외국인으로 취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영주귀국자의 국적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드러났다.<sup>26)</sup>

정부는 1989년 1월 독립운동가 김동삼 선생의 유족이 영구히 귀국해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독립운동가 유족의 영주귀국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법무부는 동년

24) 한편 제헌의회 선거를 위한 국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에서는 선거권자인 국민의 자격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요했다 - i) 조선에 호적을 가진 자, ii) 조선인 양친 사이에 출생한 자, iii) 조선인을 부모 하여 출생한 자로서 타국에 국적 또는 시민권이 없는 자. 정인섭, 앞의 글, 666-67면. 이 조항 제3호가 타국에 국적을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했다고 보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정인섭은 이 규정이 선거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국적을 정하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전해왔다.

25) 1925년 자진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으로 취급된다는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 판결. 1905년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의 자로서 1910년 하와이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가 있으나 이는 출생에 의한 외국국적 취득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구별된다. 두 판례는 정인섭 엮음, 『한국판례국제법』 제2판 (홍문사, 2005), 25-26, 45-46면에 소개되어 있다.

26) 정부의 실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의 진술 및 내부자료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처의 인용을 생략한다.

5월 공산권거주동포국적처리방안을 제정하여 영주귀국자의 국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때 법무부의 방침은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이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적법상의 국적회복 또는 귀화가 아닌, 국적판정이라는 절차를 법무부 例規에 의해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영주귀국자의 국민 지위를 인정했다. 국적판정의 결과 대한민국국적을 인정받으면 곧바로 호적에 취적 또는 舊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호적 사무도 정비했다.

이러한 실무에 의해 1989년 말까지 290명이 영주귀국하자 재중한인사회에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민원이 점증했다. 정부는 1990년 6월 외무부 예규로 독립유공자영주귀국지침을 제정하여 영주귀국 절차를 엄격히 했다. 이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신청을 접수하고 국가보훈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외무부에 신청하면 외무부장관은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와 협의 거쳐 선별적으로 영주귀국을 허가한다는 것이었다. 영주귀국이 허가되면 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해 국적판정을 하도록 되었다.

한편 계속되는 영주귀국 희망 민원에 직면한 외무부는 1995년 5월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 외에 일반 국가유공자 및 후손, 국내 존·비속 거주자, 그에 더하여 1988년까지 한중이산가족재회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국내에 잔류한 사람에 대해서도 영주귀국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sup>27)</sup> 그에 따라 1996년 12월까지 영주귀국자는 총 355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도 추진되어 1992년에서 1996년 사이 199명의 사할린 1세가 귀국, 정착했다.<sup>28)</sup>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해당 부처의 예규에 의해 이루어진 영주귀국 및 국적판정의 실무는 디아스포라, 특히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귀환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취지도 없지 않았으나 실무적인 이유가 컸다. 만약 이들이 한국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면 국적법에 의해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해야 할 터인데 그럴 경우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 거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될 터였다. 그런데 당시 중국국적을 이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재중한인의 입국 압력은 영주귀국제도의 지속을 어렵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해외로 이주한 한인에게 영주귀국은 국적을 인정받는 유일한 루트였다. 영주귀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법상의 국적회복이나 귀화도 허가받을 수 없었다.<sup>29)</sup> 재중·재CIS 한인이 의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여, 선별된 극소수에게 국적 취득이 아닌

27) 지침의 명칭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다소의 불일치가 있다. 정부의 내부 보고서 중에는 1990년의 독립유공자영주귀국지침을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이라 칭하고 1995년의 지침을 이 지침을 개정한 것처럼 서술한 것도 있다.

28) 정근식·염미경,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호 (1999), 254면. 1930년대 후반에서 2차대전 종전까지 일제의 전시노동력동원 차원에서 송출된 사할린 한인은 전후에 개별적으로 소비에트연방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소비에트 공민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재소한인과 사정이 판이했다.

29) 유일한 예외로서 국민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만이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또한 혼인빙자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거주국에서 혼인 절차를 경료한 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했다.

국적판정을 받게 하면서도 나머지 250만명에게는 국적판정은 물론 외국인으로서 국적 취득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모순이었다. 남은 사람들은 55세 이상으로 제한된 친인척 초청 방문과 산업연수생 외에 입국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 입국 경로의 폐쇄 때문에 국적을 주장하는 동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1997년 정부는 소위 영주귀국허가 前置主義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당시의 절차가 他수교국 동포와 달리 특정국의 동포에 대해서만 영주귀국허가를 허용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반면 그 특정국 동포에 대해서도 국적 취득의 기회를 차단하여 反韓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행정쟁송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될 때 적법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 재중한인이 계속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일단 영주귀국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이를 확대 적용하여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했으나 결국은 그간의 실무를 대폭 수정하는 쪽을 택했다.<sup>30)</sup> 외무부의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은 폐지되고 1997년 12월 제정된 법무부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국적판정제도는 동년 개정된 국적법에 반영되었으나, 이는 더 이상 중국이나 CIS 출신자를 위해 활용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과 일부 귀환 사할린 한인에게 적용되는 절차가 되었다.

이로써 재중·재CIS 한인의 국적 문제는 분기점을 맞았다.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중한인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중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 날 전에 출생한 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을, 그 날 이후에 출생한 자는 귀화를 해야 했다. 이는 놀라운 擬制이다. 한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동북3성을 중국공산당이 접수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주민들을 편입한 1945년에서 1949년 중 언제였을 터이지만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게다가 많은 한인은 1957년경까지 북한과의 이중국적 상태에 있었다. 이들의 중국국적 취득이 자발적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sup>31)</sup> 흥미롭게도 재중한인에 대해 채택된 이 기준은 1949년 10월 1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할린 한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할린 한인도 1949년 10월 1일 전 출생자는 국적회복을, 그 이후 출생자는 귀화를 하게 되어 있다. 다만 호적(제적)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국적판정에 회부한다.<sup>32)</sup> 재CIS 고려인의 다수는 해방 전에 이미 소비에트연방 공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본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의 입장을 따른다면 당시에는 국적이탈이나 상실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들은 재중 조선족과는 달

30) 법무부는 1992년 영주귀국허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가 외무부와 안기부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31) Jeanyoung Lee,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Minority in Chin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9), chap. 3; 이진영, "재중 한인의 국적과 이중국적 관련 논쟁에 대하여," 재외한인연구와 국적문제,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1. 26.

32)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2009. 8. 31).

리 대한민국국적을 계속 보유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실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관념적이나마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재중, 재CIS 한인은 이제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국적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고 국적이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이나 귀화도 할 수 없는 기묘한 상태에 있던 이들은 지금은 국적이 없지만 과거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상태에 도달했다.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는 실제로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허가를 얻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다.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은 허가대상자를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그 친족, 국내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 1980년대 입국해 체류 중인 자, 인도적 고려가 요구되고 친척 등의 도움으로 생계 등 재정능력이 보장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특히 5천만원 이상의 자산 또는 기능이나 자격, 일정 보수를 받는 직업과 함께 내국인의 재정보충 및 신병인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국적법이 해외에서도 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이들은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해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영주귀국허가지침이 소송으로 다투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폐지하고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으로 이를 대체했지만 실제로 쟁송에 직면한 것은 후자였다.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던 2003년 저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선족 한인의 대규모 국적회복 신청이 접수 거부되자 신청인 중 일부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자기들이 자진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는 이중국적 상태에 있으나 한중수교 이후 정부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라는 차별적 내부규정을 통해 국적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국동포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국적 상태가 아니고, 설사 이중국적 상태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해소할 입법이나 조약체결의 의무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기회가 없지 않으며,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은 법무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5년 6월 이 지침이 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으로 바뀌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시했다.<sup>33)</sup>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을 대체한 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은 모든 외국국적동포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 요소가 덜하고 재산·직업 요건에 대한 규정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중국에서는 현지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없게 하며, 심사의 기준도 까다롭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중국 출신, 특히 조선족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다음의 표가 보여준다.

[표 1] 연도별 국적회복 건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적회복	926	911	1,748	2,001	4,675	648	1,783	3,740

33)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이 결정에서 현재는 기본적 사실인식에서도 오류를 범했다. 즉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정부가 중국동포를 외국인으로 취급한 것으로 오인했다.

중국동포 귀적회복	789	650	1,519	1,761	4,338	507	1,514	3,289
-----------	-----	-----	-------	-------	-------	-----	-------	-------

[표 2] 연도별 귀화신청 및 귀화허가 건수<sup>34)</sup>

연도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귀화신청				638	4,066	3,709	6,696	10,859	19,565			
귀화허가	93	193	156	232	724	2,972	5,986	7,261	12,299	7,477	8,536	11,518
중국출신 귀화허가					602	2,694	4,627	5,682	10,543	6,649	7,364	9,256

## 2. 동포의 법적-행정적 창출과 계서화

### 가. 동포의 정의

1990년대의 법적 변화 중 하나는 정서적 유대를 상징하는 ‘同胞’라는 용어가 법에 의해 專有되었다는 사실이다. 유교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박애의 표현으로 사용되던 동포가 같은 종족에 속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은 일제시대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공담론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뜻하는 용어로서 ‘僑胞’ 또는 ‘僑民’이 前정치적 종족을 뜻하는 동포보다 더 널리 쓰였으며, 이는 1960년대 이후 미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대한민국과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던 재일한인을 한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에 두는 관념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이 바다 건너에 있다는 지리적 관념은 ‘해외교포’라는 용어를 보편화했다. 1990년대에 들어 이러한 용어 사용은 크게 수정되었다. 해외교포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재외동포’가 공공담론을 장식하게 된 것이다.<sup>35)</sup> 재외동포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통치화된 시선에 포섭된 인적 범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재외국민만을 통계로써 포착하던 외무부가 1991년부터 재외한인 전체를 통계에 포함시키고, 현황 분석의 대상을 일본·미주·구주에서 중국 및 구소련으로 확대한 데에서 드러난다. 이후 김영삼 정부 아래 재외동포는 정부의 공식적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1993년 집권과 더불어 신교포정책을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1990년대 초 구 공산권 거주 한인을 정책 대상에 편입한 데 병행하여, 교포 또는 교민과 병용되기 시작한 동포라는 용어를 정부 행정의 유일한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1995년 대한월 발표된 재외동포사회활성화지원방안은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국가의 인적 경계를 넘는 ‘초국가적’ 동포 개념을 공식화한 것은 재미한인의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국민의 지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국내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

34) 두 표의 수치는 연도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현재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의함.

35) 이상 동포라는 용어의 변천과 등장에 대해서는 Jaeun Kim, “The Making and Unmaking of a ‘Transborder Nation’: South Korea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heory and Society*, Vol. 38 (2009), pp.133-So 참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이사장은 ‘해외’를 지리적인 견지에서만 이해하고 이를 ‘재외’로 대체한 것,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는 ‘교포’의 본래적, 문리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동포’로 대체한 것을 비판한다.

다.

재외동포활성화지원방안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와 경제활동의 편의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재외동포에 대한 문화와 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후자는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는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자”로 정의했다. 이러한 혈통주의적 정의는 같은 해 경쟁적으로 제출된 2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에도 반복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를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선조를 기준으로 1/4이상의 혈통을 가진 자”로 정의했다.<sup>36)</sup>

재외동포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일 때 정권이 바뀌어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고, 재외동포사회활성화지원방안이 약속한 국내 체류와 경제활동의 편의는 금융위기를 맞아 재외동포를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김대중 정부가 고안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의해 실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법률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하여 입법예고되었으나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수정되어 제출, 통과되었다. 이어 대통령령(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은 외국국적동포를 다시 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i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부수립 이전 이주자 중 외국국적 취득 전 국적을 확인받지 못한 중국과 CIS 거주 한인을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정의하는 소위 과거국적주의를 택한 결과 재중·재CIS 한인들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배제의 효과는 법률 규정이 아닌, 시행령에 의한 것이며, 소위 혈통주의를 취했다 해도 동일한 시행령 조문에 의해 같은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앞에서 본대로, 대한민국의 국가민인이 창출되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과 한민족공동체의 성원, 그리고 대한제국 신민 및 그 혈통적 후손은 동일한 것이 되었다. 즉 과거국민은 곧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인 것이다. 역으로 말해, 한국은 과거국적만으로도 종족성원을 포섭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특수한 조건은 집단의 종족적 자기상상을 가부장적 법제로 제도화하고 세밀한 신원기록으로 객관화한 식민지적 통치성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 특수한 조건은 종족주의적 문법으로 초국가적 민족성원을 법제화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2001년 헝가리가 제정한 인근국거주헝가리인에관한법률(Act on Hungarians Living in Neighbouring Countries)은 血緣國(kin-state)이 血緣外國人(kin-foreigners), 즉 자국적을 갖지 않는 민족성원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우대하는 법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기에 특히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다.<sup>37)</sup> 국경을 맞댄 6개국에 거주하면서

36) 재외동포기본법안, 의안번호 821, 1997. 11. 5 김원길의원 대표발의.

37) 이 법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루마니아와 분란이 야기되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베니스위원회가 개입,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Venice Commission,

거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종족적 마자르인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단기 취업허가, 복지, 교육 혜택을 부여한 이 법률은 특수한 지위 부여의 대상이 되는 혈연외국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1조 ① 이 법률은 헝가리 국민이 아닌 자로서 크로아티아공화국, 유고슬라비아연방,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또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헝가리 민족에 소속함을 선언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 a) 자발적 포기가 아닌 사유에 의해 헝가리 국적을 상실하였을 것
- b) 헝가리의 영구체류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

동 법률은 2003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영어번역본에서는 상기 “헝가리 민족에 소속함(of Hungarian nationality, 원어로는 magyar nemzetiségűnek)”을 “헝가리 종족적 출신(of Hungarian ethnic origin)”으로 수정했다. 마자르어에서 민족소속을 나타내는 용어 nemzetiség은 영어의 nationality와 마찬가지로 민족소속을 뜻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근국의 마자르 소수민족성원에게 헝가리 국민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 때문이었다.<sup>38)</sup> 아무튼 이 법률에서 취하는 ‘헝가리인(마자르)’의 정의는 종족성을 기준으로 한다. “민족에 소속함” 또는 “종족적 출신”은 동유럽의 민족소속 분류 체계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본인의 선언에 따른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자가 선언만으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마자르인이라는 인증이 필요하다. 동 법률은 인증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i) 헝가리어 구사 능력 또는 ii) 거주국에서 마자르 민족성원임을 선언하는 자로 등록되었거나, 마자르 민족성원을 통합하는 거주국 소재 단체의 등록된 회원이거나, 거주국 소재 교회에 마자르 민족성원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요한다(제19조 제3항 및 제20조 제2항). 인증의 요건은 원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격요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응달하여 개정 법률에 규정되었다. 또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거주국 소재 마자르인 단체의 추천을 요했는데 이것이 거주국 사회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개정 법률에서는 추천 요건을 삭제했다.

과거 합스부르크제국을 구성했던 나라가 종족성에 기초해 동포를 정의할 때 그것은 문화적 기준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동일혈통의 신화를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도구적 동기에서

Report on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National Minorities by Their Kin-State, CDL-INF (2001) 19. 이 법률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앞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던 때였다. 따라서 헝가리Kin에 대한 논의는 순수한 학문적 관심 이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재외동포법에 비판적인 논마니은 재외동포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in이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헝가리K사례 주목을 받는동유럽빔란이사 in을 학계에 처음 소개한 것은 재외동포법에 대한 대표적 비판론자인 정 인섭이었다. “유럽빔란 것동포 지원in빔란검토 -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논의와 관련r,” 『국제법학회 논총』 48권 2호 (2003), 189-217면. 재외동포법과 직접 비교주목시도한 것으로는 Chulwoo Lee, “Reaching Out to Compatriots Abroad: Making Sense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the Hungarian Status Law,”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Migration and the Household in East Asia,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 Korea Migration Research Network, Seoul, February 2-3, 2007.

38) 흥미롭게도 영어번역본에서만 수정을 했을 뿐 헝가리 원문은 수정되지 않았다. 2003년 법 개정에서는 단기 취업허가와 거주국 현지에서 이익을 공여하는 내용의 몇 개 조항을 삭제했다.

수혜자가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었다.<sup>39)</sup> 이에 비해 한국의 재외동포법은 종족성을 표현하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합의된 종족의 경계를 포착하고 있다. 반복하거니와, 이는 폐쇄적인 왕국에 속한 인구집단을 “전체와 하나(omnes et singulatim)”로 재구성해낸 식민지적 통치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현재와 과거를 관통해 민족과 국가의 성원을 동시에 확정된 한 민족국가의 특이한 경험을 보여준다.<sup>40)</sup> 종족의 경계가 합의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政體(polity)의 개별 구성원과 그들이 누리는 멤버십의 대물림을 물샷틈없이 기록하는 행정실무가 확보한 강고한 체계모니를 뜻하는 것으로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설득력이 없지 않을 것이다.

#### 나. 동포의 분류와 계서화

재외동포법이 과거국적의 개념을 가지고 종족의 합의된 경계를 포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의 의도에서 부린 작문의 기교에 의해 250만 재외한인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통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2001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03년 말까지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을 받았다. 개정시한을 앞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 끝에 법률은 결국 개정시한을 초과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된 재외동포법과 그 시행령은 외국국적동포에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동포 지위의 대물림을 3대로, 즉 과거국적자의 손자녀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법규에 의한 포섭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통한 배제는 지속되었다. 외국국적동포라 해도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출입국관리법규가 정하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이 단순노동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다발국가에서 오는 동포의 단순노동행위 종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증발급 심사 단계에 장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7년 말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 중 중국이나 CIS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이 시정된 것은 2008년 1월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지침이 개정되어 일정 직업 종사자와 일정 회수 이상 출입국한 사람에 한해 자격 부여가 가능하게 된 때부터였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다국적기업 임직원,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상당 규모의 개인기업 대표, 언론사 임직원, 기자, 변호사, 대학교수, 회계사, 기술연구개발 종사자, 기타 전문직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전문지식이나 숙련노동력을 요하는 D와 E형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이수한 자 등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7월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45,909명 중 1,731명이 ‘한국계 중국인’이었다.<sup>41)</sup>

출입국관리법제는 전문지식 또는 숙련노동력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

39)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로마(Roma, 종족집단으로서 집시를 뜻하는 공식 용어)가 마자르인임을 주장하면서 수혜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40) 통치성은 인구집단을 총체(omnes)로 만듦과 동시에 그에 속한 사람의 개별주체성(singulatim)을 확립한다. Michel Foucault, “*Omnes et Singulatim: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 Sterling M. McMurrin (ed.),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 2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81).

4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09. 7.

을 부여하는 것에 병행하여, 미숙련노동력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자격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갔다. 산업연수(D-3)와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에 의함)처럼 여러 나라의 외국인노동자 중 쿼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同胞性’에 기초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첫 형태는 방문동거체류자격(F-1)을 변형해 적용하는 취업관리제였다(F-1-4). 4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 하여금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으로 2002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아직 혈연외국인을 일반 외국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취업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일반 외국인에 타당한 것 - 2004년 이후에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E-9) - 으로 전환해야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더욱 진화하여 동포만이 누리는 체류자격을 낳은 것은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에 이르러서였다. 일부 제조업까지 포함 32개 업종에서 최장 5년까지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체류자격(H-2)은 이제 재중한인의 국내 진입의 가장 중요한 루트가 된 동시에 수입된 외국인노동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2009년 7월 현재 고용허가제에 의해 수입된 노동자가 18만명임에 비해 방문취업자는 31만명에 달했다.<sup>42)</sup>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종족적 귀환이주(ethnic return migration)는 몇 개의 차등적인 범주로 나뉜 계층화된 민족(hierarchical nationhood)을 탄생시켰다.<sup>43)</sup> 이것의 법제화는 두 개의 에스니즌십(ethnizenship)을 作出했다.<sup>44)</sup> 재외동포체류자격(F-4)과 방문취업자격(H-2)이 그것이다. 이 둘은 전문지식 및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으로 분절된(segmented) 이주노동시장의 구조에 조응한다.

그렇다면 민족=대한제국의 신민이라는 등식 속에 과거국적으로부터 분화된 여러 지위 - 국적과 상하급 에스니즌십 - 중 하나를 얻기 위한 기술적,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 3. 書面實在와 생물학적 진실

앞에서는 식민지적 통치성에 의해 민족=국민의 뚜렷한 경계가 확정되었음을 강조했다. 집단의 종족적 자기상상을 가부장적 법제로 제도화하고 세밀한 신원기록으로 객관화하는 행정실무와 그에 익숙해진 인민의 일상은 민족에의 소속은 자명하고 국가는 민족의 無媒介의 外化이며 민족과 국민은 일치한다는 믿음을 가져다주었다. 공산권 디아스포라와의 재상봉은 그러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동포와의 만남이 초래하는 혼란스러움, 레토릭과 현실의 불일치, 법제 내부의 불일치, 법제와 실무의 불일치로 인한 의문만은 아니었다. 누가 한인인가,

42) 같은 자료.

43) Seol and Skrentny, 앞의 글. 설동훈과 스크렌트니는 계층화된 민족이 다소 특수한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계층화가 발생하는 배경과 양상은 각 민족에 고유하지만 민족이건 국가건 그 성원 사이에서 차등적인 법적 지위범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주권, 인민과 영토의 모순을 내장하는 국민국가체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Chulwoo Lee, “Nation-State v. Nation-State: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forthcoming Vol. 40, No. 2 or 3 (2010).

44) 에스니즌십은 헝가리를 비롯해 국민이 아닌 종족성원에게 일반 외국인과 다른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유럽의 사례에 착안하여 바우뵉이 고안한 개념이다. Rainer Bauböck, “Stakeholder Citizenship and Transna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 Normative Evaluation of External Voting,” *Fordham Law Review*, Vol. 75 (2007), p.2396.

누가 귀환할 동포인가, 누가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판단해야 하는 현실은 한인의 正體가 자명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법과 행정, 관료의 실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불편한 인식을 가져다주었다.

민족은 평등하고 동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부터, 입국 자체가 어려운 후진국 국적자에 이르기까지 중심에서 바깥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구조를 띠, 불평등한 지위범주로 계층화된 집단이 되었다. 동심원의 바깥에서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갖추고 보여주고 입증해야 한다. 밖에서 안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정도를 달리하여 요구되는 ‘연고’이다. 특히 요구되는 연고는 국민과의 혈연관계이다.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서부터 방문취업자격을 얻는 데 이르기까지 혈연적 연고는 일관되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는 민족=국민 지위의 문서화가 가부장적 가족을 단위로 형성된 혈연의 연결망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그런 연결망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민족의 성원이자 과거 또는 현재의 국민임을 주장하는 첩경이다. 따라서 호적(제적)등본은 어느 경우에도 필요로 되는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또 신원 입증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김재은이 지적하듯이 호적은 “남한이 유일하고 정당한 승계자임을 주장하는 역사적인 한민족 政體(polity)에의 확실한 멤버십을 확립”하는 으뜸의 書面實在(papereality)이다.<sup>45)</sup> 무호적 독립운동가의 국적 문제에서 보듯이 호적이 국적, 과거국적 또는 민족에의 소속을 창설하는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sup>46)</sup> 그렇지만 호적은 기록되지 않은 것의 부존재에 대해 상당한 추정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록된 것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따라서 호적, 작금의 공식어로 말하자면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역사적인 한민족 정체에의 확실한 멤버십”을 가지는 사람임을 부인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민사신분과 그 변동을 물샐틈없이 파악하고 기록한 일제의 統治化된 행정의 결과물을 물려받았다 해도 한반도의 반쪽에 있는 기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민족성원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북한에 있는 구호적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특정인이 민족성원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수하다. 호적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신원을 입증해야 하는데,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혈연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된다. 공산권 한인과 재회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된 통로는 친척의 초청이었다. 취업관리제를 통한 조선족노동력 수입을 방문동거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한 것도 민족은 혈연의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념에 기대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었다.<sup>47)</sup> 남한에 호적이 없는 북한 출신의 재외한인은 연고를 주장할 친척 또한 없는 경우 민족적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

호적에 기록이 있거나 친척의 초청이 있으면 방문취업제로 입국이 가능하다. 방문취업제 실무

45) Jaeun Kim, 앞의 글, 140, 154면.

46) 노영돈은 정인섭이 호적이 곧 국적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으나, 정인섭은 최초 대한민국 국민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호적이 가졌던 중요한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47) 국민과의 혈연을 바탕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것은 공통된 현상으로서 시민적 국민주의와 대립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특징이라고만 말해서는 안된다.

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연고동포’라 하고 국내 거주 국민과의 연고를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을 ‘무연고동포’라 부른다. 무연고동포는 국가별로 할당된 쿼터의 범 2회 실시하는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sup>48)</sup> 무연고동포로서 방문취업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와 한국어시험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국적국들이 원초주의적 민족관념에 따라 민족소속을 등록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헝가리의 예에서 보듯이 타국에 있는 혈연 소수민족(kin-minorities)을 접근하는 구 공산권 국가의 정책과 법제도 그런 식의 민족등록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민족정체성의 제도화는 다른 나라의 통치성에 좌우되고 서로의 통치성에 의존하는 상호통치성(inter-governmentality) 또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통치성을 조건으로 한다.

거주국에서 파악한 신원과 민족소속을 고려하는 태도는 상급의 에스니즌십, 즉 재외동포체류 자격의 부여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본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호적(제적)등본이 필요하나 이를 결여한 사람은 중국의 호구부와 거민증, 구소련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통해 동포임을 소명할 수 있다.<sup>49)</sup> 다만 이 자격은 엘리트 직업에 속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서 동포성 심사의 기준을 더 높이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필터링이 가능해서인지 동포성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가? 한국국적을 갖지 않는 재외한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으로서 국적법 제7조에 의해 특별귀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일정기간 거주함을 요하지 않고 생계유지능력 등 귀화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법 제9조에 의해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전술한대로 재중 조선족은 1949년 10월 1일 전에 출생한 경우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적회복 역시 국내 거주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법 제6조에 따라 간이귀화하는 경우로서 국민의 배우자가 된 결혼이주자와父 또는 母가 국민이었던 자, 즉 동포 2세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요구되는 거주기간은 일반귀화에 비해 짧은 2년 또는 3년이지만 생계유지능력 등 일반귀화의 요건이 적용된다. 네 번째는 법 제5조에 의해 일반귀화하는 방식인데 부모도 한국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해외이주 3세대나 택할만한 경로이다. 이 가운데 동포성이 전제가 되는 것은 국적회복과 과거국민의 자녀임에 기초한 간이귀화,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으로서 특별귀화하는 경우이다.

국적회복은 국가공동체의 과거 성원이었던 자의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귀화에 비해 수월하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재중한인의 국적회복은 귀화와 차이가 그리 크지 않게 취급된다. 전술했듯이, 1997년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국적회복 신청자와 귀화 신청자 모두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이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지위를 가질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귀화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생계유지능력을 소명하기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자산 보유를 증명하는

48) 2009년에는 총 3만명이 배정되어 중국에 25,503명이 할당되고 나머지는 CIS 거주 한인에 공화국별로 차등 배분되었다. 법무부장관 고시, 2009. 4. 13.

49)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2009. 8. 31).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리고 그런 요건 자체가 없는 선진국 동포의 국적회복과 비교할 때 현저히 차별적이었다. 이 요건은 2005년에 제거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적자와 달리 중국과 CIS 한인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을 반드시 입국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는 지속되고 있다.<sup>50)</sup>

국적회복 신청자는 본인, 간이귀화 신청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가장 확실한 서류는 호적(제적)등본이다. 호적 기록이 없다고 해서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련국의 공적 증서 또는 공증서도 제출할 수 있으나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때처럼 거주국에서 조선족 또는 고려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국적을 입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 출신의 경우 호구부, 상주인구등기표 등을 제출하지만 이는 동원해야 하는 입증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하다. 입증은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의 혈연, 중국의 가족과 한국의 가족이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접합점을 찾는 데 주안점이 있다. 가계도 또는 족보, 왕래한 편지, KBS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확인서, 친척과 함께 특히 조상의 묘지에서 찍은 사진 등이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sup>51)</sup> 친족관계임을 보증한다는 친척의 인우보증서도 첨부 서류의 하나이다. 혈연이 증명되어야 하는 관계의 범위는 본인은 6촌, 부모 세대는 4촌이다.<sup>52)</sup> 매우 주목되는 것은 공인의료기관을 통한 유전자 감식이 활용된다는 점이다.<sup>53)</sup> 근래에는 접수 건수의 약 15-20%에서 유전자 감식결과가 활용되는데 주로 국내 연고가 희박해지는 동포 2, 3세의 연고를 입증하기 위함이라 한다.

유전자 감식에 대한 의존도는 특별귀화에서 더욱 크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이 국내에 재정착하는 초기의 경로는 영주귀국과 국적판정이었다. 이때에는 영주귀국자에 대한 예우와 독립운동가 귀환이 불리일으키는 민족주의적 정서 때문에 대상자의 신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영주귀국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특별귀화가 대체한 1997년을 전후하여 정부 당국이 중국의 신원 서류 위조 실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서류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특별귀화자 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유족으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신원을 위조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았다.<sup>54)</sup> 법무부는 특별귀화 신청을 접수하면 국가보훈처에 후손여부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귀화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특별귀화에서 보훈처의 판단은 절대적이다. 보훈처는 중국기록전문가, 족보학자, 독립운동 연구가, 유전자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운

50) 현재의 실무준칙인 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도 국내 신청의 경우 적법하게 입국, 체류 중인 때에 한해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국외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은 담고 있지 않다. 업무처리지침에서 어떻게 규정하든 현재의 실무는 국외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국적법과 그 시행령에 반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행정쟁송과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질 때 취약하다.

51) “국적회복 - 중국동포 회복,”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2009. 8. 31).

52) 2008년 2월 지침 개정으로 4촌에서 6촌으로 확대.

53) 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5조.

54) 특별귀화는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면 세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우대되는 유족은 손자녀 세대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동가후손확인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와 보훈처 공훈심사과는 출입국/국적 절차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중국측 문서를 심사한다. 개인별 존안자료에 해당하는 檔案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심사는 현지조사를 수반하기도 한다. 국가보훈처의 유전자 감식은 몇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7년 12월 보훈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검사가 가능한 모든 대상자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1년에 약 200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1건당 검사대상자는 2인 이상).

국가보훈처의 심사 실태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ff the record]

#### IV. 추상적 국민, 구체적 국민, 무국적자: 북한이탈주민

##### 1. '귀순자'에서 '이주자'으로

앞에서 본대로, 남한과 북한은 모두 1948년까지 단절 없이 지속되어온 한민족 국가에 속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조선국적의 보유자로 간주하고 이들로부터 자국민을 도출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국민/공민으로 기록하고 규정한 사람에 대해 주권을 주장한다. 냉전이 종식되기 전 남한 정부는 600여명의 북한 '귀순자'를 받아들여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했다. 1994년까지도 북한인의 남한 진입은 1년에 10건을 넘지 않았다. 이 소수의 북한인의 대한민국의 국민적 인정하기 위해 법률이 특별히 정한 절차는 없었다. 북한인의 대한민국의 국민적 인정은 헌법의 영토조항, 그리고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란단체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의 反面으로서 암묵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 경위에 대한 적극적 설명은 없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민이 문제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문도 없었다. 그러나 제3국, 특히 중국을 통한 입국이 보편화되고 북한이탈민의 이미지가 '귀순자'에서 '이주자'로 바뀌자 의문시되지 않았던 북한인의 취급 방침에 혼란이 생겼다. 추상적·원리적 국민과 구체적·현실적 국민 사이의 괴리가 뚜렷해졌다. 초기의 혼돈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한영숙 사건이 있었다.

일제시대에 북한 출신자로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한영숙은 上海에서 자랐으며 동북3성에 거주하던 한인과는 달리 조선족으로 분류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의 신분을 유지해왔다. 1988년 후반 대우 합작회사에 근무하던 한영숙은 회사가 부여한 시찰 기회를 이용하여 입국했다. 외무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한 그는 체류기간이 경과하자 귀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무부에 국적의 확인을 구했다. 법무부가 국적을 확인해주자 그는 주민등록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북한적 중국동포라는 새로운 유형의 동포가 등장한 것에 대해 매스컴이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정부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그의 국적을 부정했다. 그리고 그를 불법체류자로 취급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해외에서 영구히 귀국한 국민은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여권 무효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한영숙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영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를 닦으며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의 판단을 얻었지만 말소를 취소하는 데 꼭 필요했던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중국에서 외국인인 그는 거주허가 기간이 지나 중국으로 귀환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이 여론을 자극하자 정부는 교육지책으로 그를 영주귀국자로 취급해 정착토록 했다.<sup>55)</sup>

한영숙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엄상익은 이를 소재로 쓴 수기에서 한영숙을 “경계선의 여인”으로 묘사했다.<sup>56)</sup> 북한적이지만 북한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재중동포지만 조선족도 아닌 이 경계선의 여인은 한국에서도 국적을 박탈당해 외국인으로 취급된 것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처우를 받았다. 북한인에 대한 실무는 조금씩 체계화되었으나 후술하듯이 한영숙 사건에 내재하는 논리적 모순은 朝僑의 취급에서 여전히 나타난다.

한영숙이 입국할 무렵부터 정부는 조선족에 대해서는 중국 여권을, 북한 공민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하게 함으로써 양자를 분리했다. 그러나 북한인의 신원은 더 이상 자명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족과 탈북자는 혼재했고 그들의 신원은 전략적, 선택적으로 表象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당국은 한편으로는 書面으로써 그것이 표상하는 실재를 대신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배제의 행정으로 대응했다. 이영순 사건은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 사건은 북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정부수립 후 거의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이끌어냈다는 의미를 갖는다.

1930년대 강원도에서 태어나 1960년까지 북한에 거주하던 이영순은 중국으로 이주해 조선족 남성과 결혼 후 이혼, 다시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살다가 1992년 남편과 중국 여권에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귀환하지 않고 여관과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남편이 취객에 맞아 사망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영순은 가해자와 합의된 합의금 수령을 둘러싸고 사망자 전처 소생의 딸과 분쟁을 겪게 되자 북한이 발급한 해외공민증과 중국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거류증을 우편으로 전달 받은 후 중국대사관에 가서 신원을 밝히고 시비를 가려달라고 해 영사로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은 후 남대문경찰서에 귀순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영순을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보고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동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발했다. 이에 이영순은 본인이 국민임을 주장하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영순이 원하던 무효확인판결대신 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했다라도 그 여권이 위조일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판단과 더불어 일제시대 출생한 한인은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해 조선국적을 가지다가 1948년 7월 17일자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유권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이다.<sup>57)</sup>

이영순 사건이 보여주듯이 누가 북한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아울러 귀찮은 이주자이자 정치적으로도 대량 수용이 곤란한 북한인을 적절히 받아들이는 행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당시 시행되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이미 입국한 북한인에 대한 복지 제공을 규정할 따름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되었다.

55) 서울고등법원 1994. 2. 3 선고, 93구15146; 『조선일보』 1994. 2. 4, 30면; 1994. 8. 28, 27면.

56) 엄상익, “경계선의 여인,” 『엄마, 합의합시다』 (나남, 1996).

57)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선고, 94구16009.

[이하에서는 정인섭·박정해·이철우·이호택,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 중 이호택 집필 부분의 일부를 발췌, 편집, 가필하여 게시한다]

## 2. 보호와 국적판정

### 가. 국적 확인의 실천으로서 보호

1997년은 민족성원을 분류하고 경계를 획정하고 소속을 판정하는 제도의 진화에서 중요한 고비를 이루었다. 전술한대로 국적법의 개정에 즈음해 재중·재CIS 한인의 국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정리되었고, 그에 따라 국적판정, 국적회복, 귀화 등의 절차가 어떤 조건에서 발동되는지 분명해졌다. 재중·재CIS 한인이 국민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국적판정은 북한인임을,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국가소속을 밝히는 데 사용되게 되었다. 한편 같은 해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보호’라는 개념 아래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는 여러 단계의 조치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보호신청자가 북한인인지를 판단하는 행위가 수반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는 데에는 보호와 국적판정이라는 두 개의 절차가 주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인정은 아니지만, 보호 및 지원의 전제로서 북한이탈주민인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행하는 근거가 그들의 국민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인 이상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일용 보호대상자의 국적을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결정 받은 사람은 국적확인 효과로서 가족관계등록의 창설과 주민등록을 행하게 된다(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인 여부와 보호 및 정착지원의 필요여부를 심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하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한다(제8조). 보호결정이 국적확인 의미로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적인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보호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보호결정은 재외 북한이탈주민과 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그 의미가 다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강제북송의 방지와 입국을 위한 보호조치가 주된 내용이며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정착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주장하면서 보호신청하는 경우 강제북송의 위험과 열악한 인권상황 때문에 그가 북한이탈주민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할 여유 없이 임시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일용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하여 입국하게 한 후 관계기관에 의한 정밀조사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호결정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사후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여부가 의심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것은 그 효과로서의 국적인정에 대한 취소의 의미도 갖게 되므로

북한이탈주민은 국적판정의 방법에 의하여 다시 그 국적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법은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시행할 것을 규정한다(제3조 및 제4조 제1항). 이는 은신하고 있어서 보호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사람을 배제할 뿐 아니라, 헌법 제2조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의무가 아닌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규정함으로써 북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sup>58)</sup>

가장 특이한 것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법 제9조 제4호). 이로써 한영숙과 같은 북한 교포, 즉 朝僑는 물론 탈북 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게 된다.

#### 나. 국적판정에 의한 국적확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자세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6.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러나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들의 대한민국 국민자격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외출생 朝僑 등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북한 공민은 국적법 제20조의 국적판정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을 신청하여 국적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재북 화교와 같이 북한지역에서 외형상 중국국적자로 살다가 북한을 탈출하였으나 한국정부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도 보호되지 못하고 중국정부에 의하여도 중국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 재중 朝僑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탈북 후 신변안전을 위하여 중국여권이나 중국인 신분증을 취득하여 외형상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나 중국국적이나 여권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등 보호가 거부되거나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국적판정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적판정제도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으로, 중국 및 사할린동포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국외로 이주한 자와 그 비속으로서 출생이력면에서는 대한민국 혈통으로 추정되면서도 혈통의 연원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경과의 입증이 어려운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sup>59)</sup> 그러나 국적판정신청자는 북한이탈주민이 대부분이다.

법무부 국적난민과 제공자료에 의하면, 국적판정신청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비보호 대상인 조교가 대부분이고, 2008년부터 북한적자/밀입국자, 북한적자/위변조, 북한적자/비보호 3가지로 분류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판정과 판정불가로 내리고 있는데, 신청 및 판정결과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58) 같은 견해, 이광수, “재외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 2008. 8. 18.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재외탈북자의 법적 지위’ 발표자료집, p.82.

59)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3헌마806 결정 참조

〈표 : 국적판정 신청접수〉

구 분	계	말입국자	위변조	비보호
2008년 접수	43명	10명	27명	6명

〈표 : 국적판정 심사결과〉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접수 건수	50	49	61	47
판 정	49	35	48	36	34(4명 심사중)
판정불가	1	14	13	11	5

### 3. 보호거부, 판정불가, 무국적: 사례 연구

탈북이탈주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전 혹은 이후에 외국 예컨대 중국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판정이 불가로 되고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한 탈북자들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고 주장되는 국적의 국적국이 이들의 국적을 부인하는 경우 이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도 인정되지 않고 주장되는 외국국적도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무국적자가 된다. 더러는 탈북자들이 보유하거나 취득한 외국국적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여 외국국적을 주장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상 무국적사례는 1) 북한에서 중국 국적의 화교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중국국적보유여부가 증명되지 않고 심지어 중국정부가 자국민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송환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탈출루트로 탈출하여 입국하였으나 탈북과정에서 취득한 위조여권 내지 해외공민증과 외국인거류증 때문에 중국인으로 여겨져 국적판정 불가되었으나 중국국적 소지사실도 증서의 위조사실도 증명되지 않은 경우, 3) 중국여권과 거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뒤 위 중국여권상 인적사항과 동일한 북한 해외공민증과 외국인거류증을 제출하여 조교신분으로 국적판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거류증은 체류기간이 지난지 오래고, 중국여권과 거민신분증을 소지하였으며, 가족도 대부분 중국 국적자라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중국국적자로 인정되어 국적판정불가되었으나, 본인은 계속하여 취득한 여권이 탈북과정에서의 신변안전이나 대한민국 입국의 수단으로 불가피하여 브로커를 통하여 만든 비정상여권이라거나 중국송환시 강제복송의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탈북자임을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4) 20~30년전 탈북하여 중국 국적을 취

득하였고 북한 국적에 대한 증빙도 부족한 채로 국적판정을 신청함으로써, 외국 국적 보유자로서 국적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정불가 되었으나 한때 북한국적을 가졌었다는 사유로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에 해당되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도 어렵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한국인임을 주장하면서 출국을 거부하고 체류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 [유형 1] 북한 내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

##### (1) 김 모씨 (남, 46세)

###### (가) 탈북경위

1963년 평양에서 중국인인 부친과 북한인인 모친사이에서 태어났다. 3세였던 1966년 중국인 부친이 종파분자로 몰려 일가족이 함경북도 경성군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성장하였고 1990년 부친이 사망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워지자 북한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에 가면 어떻게든 살 방법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1992년 5월 중국으로 건너갔다.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부친 사망 직후인 1991년 둘째 누나가 경성군에서 만난 처지가 비슷한 화교남성과 결혼하여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귀국하여 호구를 취득해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에 살고 있었는데, 누나가 친척방문동의서를 써주어 가족방문형식으로 중국으로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여러 차례 주중한국공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던 끝에 2004년 연길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자 일행을 만나 다른 탈북자 18명과 함께 몽골을 경유, 2004년 10월 입국하였다. 김씨는 입국시 가명을 사용하여 한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46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국내 입국하였다.

###### (나) 국적문제

김씨는 출생과 함께 어머니 국적을 따라 북한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름을 가지고 순탄하게 살 수 있었으나, 성년에 해당되는 만 17세가 되던 해에 그의 부친의 뜻에 따라 화교가 되었다. 그의 부친은 1966년 경성군으로 추방된 이후 자녀들에게 차후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당국의 위해를 항상 걱정하였는데, 성인이 되던 해에 중국식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자녀들을 모두 자신의 호적에 올려 화교로 만들었다. 17세 이후에 북한에서 받은 상주외국인체류증은 중국으로 간 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낡아서 버렸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조사기관(대성공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받던 과정에서 다른 탈북자 2명이 김씨의 부친이 중국인이었다고 조사관들에게 이야기해주었고, 조사관들이 출생 및 성장경위를 상세히 밝히라고 하기에 있었던 일 그대로 자술하였더니 국가정보원은 김씨를 탈북자가 아닌 불법입국(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한 중국인으로 판정하여 법무부로 인계하였다. 2005년 3월 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음으로써 소관부처가 된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측의 판단을 근거로 3일 뒤인 2005년 3월 7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장의 결정으로 김씨를

단동행 ‘동방명주호’에 실어 중국으로 국비강제퇴거시켰다. 그러나 중국 단동항변방검사소에서 신원불명을 이유로 김씨를 2005년 3월 11일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서울출입국사무소는 김씨를 보호조치하는 한편 김씨에 대한 국적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에서는 김씨의 신원(국적)확인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주한중국대사관 영사와 면담 및 2차례 신원확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출국한 자가 아니므로 신원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이후 1차례 신원확인 협조 공문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다. 국적확인절차가 지연되자 보호해제, 재수용의 우여곡절 끝에 2007년 2월 15일 이래 일시보호해제 중이다. 김씨는 아직 국적관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국내에 체류 중이다.

법무부 측은 국가정보원측의 판단을 근거로 김씨를 중국인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중국정부로부터의 국적확인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도 “김씨는 중국 국적자로 봐야 하지만, 증명 서류가 없어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하나, 김씨 본인과 김씨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언제까지 무국적자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법무부가 이미 2005년 3월 김씨를 중국으로 강제추방시켰으나 중국 공안이 중국인으로 볼 수 없다고 돌려보낸 점과 2005년 5월 법무부가 외교통상부로부터 김씨의 공식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김씨가 중국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므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여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체류실태

김씨는 현재 보호일시해제상태이나 보호일시해제 결정서에는 “국적: 중국”, “해제이유: 중국 국적을 확인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보호일시 해제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취업금지”가 명시되어 있어 김씨는 현재까지 탈북자도, 외국인도 아닌 무국적 탈북자 상태로 취업, 의료, 생계 등 모든 측면에서 최저 수준의 생활도 어려운 상태로 지내고 있다.

그는 취업금지에도 불구하고 점차 막막한 생계 때문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사장 일용직 노동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한 공사장에서 다른 노동자에게 구타를 당해 갈비뼈 3개가 부러져(우측 5,6,7번 늑골 골절) 2007년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6주가 넘도록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국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었고, 쫓겨나면서 밀린 일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일반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주민등록말소자나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는 다일천사병원에서 치료받고 요양하였다.

### (2) 정 모씨 (여, 47세)

#### (가) 탈북경위

1962년 평양에서 출생하여 북한공민으로 생활하다가 25세 때 화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이 중국이라도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라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정 씨 본인을 포함하여 남동생 1명, 오빠 2명에게 화교증을 받게 하였다. 정씨의 어머니는 북한 공민이었고 아버지는 18세 때 북한에 들어와서 그 후 계속 북한에서 생활한 화교였다. 정씨가 화교증을 받을

때, 가지고 있던 북한 공민증은 안전부 외사과에서 회수해가서 그 후로는 화교증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당시에는 화교증이 뭔지 잘 모르고 중국인이 된다는 생각도 없었으며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화교증을 내주는 사람도 경제가 힘들어서 보따리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화교증을 받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싫으면 언제든지 다시 공민증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였다.

2005년(당시 44세), 화교증으로 북한 내 중국 대사관에 가서 중국 여권으로 바꾼 후,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나가서 식당 등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중국신분증을 만들지 않고 중국여권만 가지고 살았으며 거류증 검문이 있을 때는 잠시 몸을 피하기도 하였으나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언니가 탈북해서 한국 가라고 권유하였다. 그때는 탈북이 뭔지도 몰랐고, 본인은 중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 나왔으니깐 다른 경우에 속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지만 언니는 먹고 살기 위해 화교증을 낸 것이고, 조선에서 태어나서 살고 교육받고 어머니도 조선인이니 탈북자와 같다고 한국행을 권유하였다. 이에 북한에 거주하는 하나 밖에 없는 딸(25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파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탈북하게 되었다. 2008년 10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도착하였고, 이제 한국에 가니까 중국 여권은 필요 없겠다 싶어 중국 여권은 오는 길에 버렸다.

#### (나) 국적문제

2009년 4월 국정원에서 나왔으며 북한 '화교'이기 때문에 국적은 받지 못하였다. 국정원에서는 정씨가 북한의 학교 제도,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고, 조선에서 나고 자란 것은 인정하지만, 화교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미안하지만 국적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중국 대사관에 가서 아버지 신분을 밝히고 중국국적을 확인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으나, 본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인 생각에 비록 아버지가 화교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북한공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 호구가 남아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본인 자신은 북한인이기 때문에 중국국적을 가질 마음이 없다고 한다. 국적을 얻기 위해 노력해 보고 싶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만 심하게 받고 있다. 직업소개와 국적문제 해결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다) 체류실태

사회에 나온 지 이제 3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한국의 물가에 대한 개념도 없다. 죽을 각오 하고 왔는데, 너무 순진하게 모든 걸 다 말해버려서 국적을 받지 못해 후회가 된다. 누가 심문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탈북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화교증 이야기를 했다. 국정원에서 자살할 결심까지 했는데 북한에 있는 딸과 어머니를 생각해 참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우울증, 불면증, 두통, 심리적 불안 등에 심하지만, 심리치료가 뭔지 들어 본적도 없어서 지금까지 받아볼 생각은 못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성실히 살았고, 탈북하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상황이 좋아진다면 꼭 돈을 벌어서 본인이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견디고 있다. 국적이 없는지라 의료보험도 없고, 탈북 과정에서 산을

넘다가 넘어져 다친 무릎이 불편한데, 한국정착지원협의회에서 만난 장로님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도 받고 다일 천사 병원도 다니고 있다. 현재 정씨는 국정원에서 소개해 준 신림동 소재 한 교회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행히 숙소는 불편하지는 않으나,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중국으로 내쫓지 않고 교회로 안내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으로는 돌아갈 마음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적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조선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생활하고, 어머니까지 조선인인 나에게 왜 국적을 주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 (3) 진 모씨(남, 36세남) · 강 모씨(여, 32세)씨 부부

#### (가) 탈북경위

남편 진씨의 경우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주하신 화교이며,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한 아버지 역시 화교증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북한출신이지만, 결혼 후 화교로 바꾸었다. 부인 강씨의 경우, 아버지는 화교, 어머니는 조선공민이다. 함북 청진시에 살던 이들 두 부부는 모두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화교인 부모를 따라 출생시로부터 화교로 등록되어 화교증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북한에서 나오기 전까지 중국에 가 본적이 없고, 북한에서 화교 학교를 다녔으나, 중국어를 조금 배웠다는 것 이외에는 일반 북한 학교와 차이는 없었다. 비록 화교증을 가지고 살았으나,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본인은 북한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에 산적이 없으므로 완전한 중국인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화교로서 따로 받은 차별은 없었고, 다만 명절 때 술, 사탕 등의 음식을 조금 더 받았다.

북한을 떠나기 위하여 2005년 부인과 함께 북한에 있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중국 여권을 만들어서 북한을 나왔다. 중국말도 할 줄 몰랐고 중국에 살 수 없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 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중국에 거주도 없고 중국 여권도 북한에서 만들었으므로 그 여권은 북한과 중국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국에 거주가 없으므로 안 될 거라 생각하였다. 본인은 북한에 오래 살았고 중국말도 잘 모르고 북한 사람과 같으므로, 당연히 한국에 가면 국적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 (나) 국적문제

이들 부부는 출생 시로부터 북한 국적이 아닌 화교로서의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사례와 구별된다. 다만 본인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므로 스스로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록 화교증을 가지고 생활했다라도 중국말도 모르고 중국에 거주한 적도 없어 중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2007년 태국에 간 이들 부부는 태국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을 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와 국가정보원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씨의 할아버지가 중국인이며 3대째 화교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심사를 끝내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진씨 역시 할아버지가 중국

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의 밀입국자’로 분류되어 2007년 12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을 시도했기 때문에 강제 퇴거 대상”이라며 “중국 국적이 있으니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에 아무런 연고도 주소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강씨는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도 이 땅에 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 (다) 체류실태

진씨, 강씨 부부는 2008년 4월 경 2009년 4월까지 1년기한으로 일시보호해제되어 되었으며 G1 비자를 얻어 체류는 허가되었으나 취업은 금지되어 있다. 보호해제조건에 취업금지가 있으며 G1비자로는 취업할 수 없으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여 탈북자단체의 지원으로 취업사실을 출입국사무소 공문통지한 뒤 취업하였다. 2009년 4월 목동출입국사무소에 보호해제 및 비자 연장신청을 위해 찾아갔더니 주로 취업사실이 문제되어서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어렵게 연장허가를 받았고, 여전히 취업금지 상태이나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여 현재 화성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다. 회사의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약 10%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장은 혹시 단속에 걸릴까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부인 강씨가 장이 안 좋아 배앓이를 자주하고 몸이 많이 불편한데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약국에서 약만 가끔 지어먹고 있다. 국적이 없으니 늘 떳떳하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 우울, 두통이 있으며 가슴이 늘 답답한 상태이다. 어떻게 할지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직업소개와 국적문제 해결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4) 장 모씨(여, 68세)

장씨는 먼저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들어온 아들과 딸을 뒤따라 2002년 입국했다. 그러나 북한인 남편과 결혼한 화교라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하고 있다. 95년 중국으로 건너갔던 장씨는 중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으나, 당시 중국 다롄시 당국은 “문화대혁명 때 재외국민 호구를 다 말소했다”며 장씨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2004년 통일부와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재판부는 “중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한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외국인등록도 되지 않아 사실상 무국적 상태이다.<sup>60)</sup>

[유형 2] 탈북 후 위조여권이나 중국인신분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 (1) 김 모씨(남, 56세)

##### (가) 탈북경위

김씨는 1953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1988년 함흥철도국 소속 승무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

60) 한겨레신문 2008.2.27.기사 참조; <http://hani.co.kr/arti/society/rights/272430.html>

연히 발생한 철도사고로 처벌의 위협을 느끼자 밀입국으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으로 탈출했다. 탈북 후 19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자 주중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였으나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던 김 씨는 1995년 2월 베트남으로 밀입국,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다시 망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급기야 밀입국 혐의로 베트남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다. 이후 김씨는 이송 도중 탈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1995년 6월 0.5t짜리 쪽배를 타고 충남 서산 앞바다에 도착, 마침내 한국 밀입국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김 씨가 중국정부가 발행한 ‘중국인 거민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탈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으로 강제퇴거하고자 하였다. 3년 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정부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김 씨는 소송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소송을 취하한 후, 강제송환을 면하고자 결국 또다시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심하게 된다. 김씨는 1998년 4월 18일 일본으로 밀항, 일본 해상보안청에 체포되어 일본 오무라 외국인 수용소에 2년간 수감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그가 중국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이 중국정부로부터 ‘자국민’이라는 회답을 받았고, 그에 대한난민 신청도 기각되었으므로 그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김 씨의 사정을 접한 일본의 「북조선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종교단체 등이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과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일본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철회와 한국정부의 탈북자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1년 2월 한국정부가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외국인신분으로 1년간 한국에 일시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마침 중국정부가 김씨가 탈북자라고 확인을 반복함에 따라 2002년 3월 탈북자 지위가 인정되었다.

#### (나) 국적문제

김 씨가 탈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중국인 거민증’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는 중국체류 탈북자 중 신변안전을 위해 위조 거민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자신도 북한과 중국의 합동수사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위조 거민증을 사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김씨와 같이 위조여권이나 위조거민증을 소지한 탈북자의 경우 위조 사실을 증명하기까지는 한국국적이 인정되지 않고 위조여권이나 거민증에 기하여는 중국국적도 인정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중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송환은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고 한다. 김씨는 제2의 고향으로 믿고 찾아온 남한 땅에서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며 왜 남과 북은 모두 자신에게 죽음 밖에 선고하지 않는지 반문하고 있다.

[유형 3] 탈북 후 중국여권이나 중국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 (1) 윤 모씨 (남, 68세)

##### (가) 탈북경위

윤씨는 1941년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북한에 땅이 있어 어린 시절 어려움 없이 자랐으나, 22

세 때인 1962년 소유한 땅으로 인해 가족이 숙청을 당해 평안남도 성춘군으로 쫓겨났다. 그 후 저수지를 짓는데 인력 동원으로 차출 당해 가는 도중 밀입국으로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의 5촌 숙부 집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지냈다. 1964년 12월 중국 대약진으로 인해 살기 힘들어지자 북한에 다시 밀입국해 들어가서 중국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가서 살았다. 하지만 탈북 했다가 다시 돌아 온 것이 발각될까봐 고향에 돌아 가지 못하고 계속 신분을 숨기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일 년 반 후 다시 중국으로 밀입국해 도망나왔고, 그 후로는 북한에 가지 못했다. 그러나 1991년 당시 알고 지내던 북한조교책임자의 권유로 심양의 북한영사관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해외공민증’을 만들었고,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거류증’ 가지고 체류 연장하면서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면서 KBS 라디오 방송을 자주 들으면서 사연도 보내곤 했는데,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어 신청을 해서 남한에 거주하는 삼촌을 찾게 되었다. 이에 삼촌이 중국으로 방문을 왔고, 한국으로 초대를 해 줄테니 중국여권을 만들라는 삼촌의 재촉에 어렵사리 중국 여권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2003년 삼촌의 초대로 한국에 처음 오게 되었다. 당시 비자를 연장하면서 3년간 한국에 있었으나 노무현 정권에서 본인을 탈북자로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아 탈북자 신청 하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2007년 2월 재입국하였다.

#### (나) 국적문제

윤씨는 중국으로 밀입국 탈북하였으나 조교로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해외공민증’,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거류증’도 얻었고,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여권도 발급받아 중국인신분으로 입국한 사례이다. 윤씨는 중국여권으로 2번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7년 2월 두 번째 입국한 뒤 2007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신청 하였으나, 2008년 4월 요건미비를 이유로 국적판정 불가되었고, 2008년 4월 재신청하였으나 2009년 1월 북한적 불확실을 이유로 국적판정불가 통지를 받았다. 윤씨는 2009년 2월과 3월 국적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대통령에게 2회 보냈으나, 2009년 3월 국적난민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2차에 걸쳐 국적판정 불가되었고 중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국적판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절차에 의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받았다.

#### (다) 체류실태

삼촌의 초대로 한국에 입국 했을 때 삼촌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 80만원씩 받고 경비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했었다. 한국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월 100만원은 받았을 것 같다. 그러나 공장이 망해서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현재는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매달 54,000원씩 내며 거주하고 있다. 비용은 예전에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내고 있다. 한 방에 20명이 거주하여 비좁긴 하지만, 북한, 중국에서 생활했던 집과 비교하면 가장 위생적인 곳이다. 쉼터에서 아무 소일거리 없이 그냥 지내고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이 든다. 심리치료 서비스 같은 것 보다 현재 취미도, 목적도 없이 정신적으로 공허하며 매우 적정한 상태이므로 활동거리가 필요하다. 직업소개와 국적에 관한 법률상담 그리고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중국국적을 지닌 아들(32세)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나, 같이 지낼 경우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냥 교회 쉼터에서 지

내고 있다. 현재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험도 없고 참고 있다. 만약 상태가 심해진다면 치료를 위해 중국에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작년 중국에 있는 아내(조선족)가 사망하였으나, 중국 여권으로 출입국한다면 스스로를 중국 사람이라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결국 가지 못하였다. 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편지도 써보고, 출입국사무소도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안내도 못 받고 매우 답답하다. 국적취득불가 연락을 받았을 때 담당자가 중국에 가서 뭔가를 해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 아마 국적포기를 해오라고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 포기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나마 더 힘든 상황이 되므로 선불리 국적 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꺼려진다.

## (2) 이 모씨 (여, 67세)

### (가) 탈북경위

이씨는 북한에 파견 나온 조선족과 결혼 한 후, 함께 1960년대 중국으로 탈출하여 살았다. 북한에서 결혼한 남편은 중국인이었지만, 본인은 북한인으로 중국에 갈 수 없었으므로, 같이 도강하여 중국에 정착하였다. 자녀는 1남 2녀로서 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몇 년 지나서 외국인 거류증을 받고 조교로 거주하였다. 현재 아들을 제외한 두 딸은 한국에 나와 있으며, 큰 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받고 군산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였지만, 본인은 한민족으로서 늘 한국에 가기를 바랬었다. 이에, 한국에 가기 위해 3-4년 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위조 여권을 만들었는데 중국 비행장에서 탄로가 나서 결국 쫓겨 나게 되었다. 그 1년 후에 중국 정부는 조교로 오래 산 사람들 중 몇 명에게 중국 국적을 주었고, 이 때 중국 국적을 받았다. 친 부모는 돌아가셨지만, 외삼촌이 한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한국에 가서 살다 죽은 후에 한국에 묻히고 싶었다. 한국에 빨리 오고 싶어서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초대부탁을 하지 않고 H-2-B 비자를 받아 한국에 나왔다.

### (나) 국적문제

중국국적이 있으면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2008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자 탈북자로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 (다) 체류실태

다행히 결혼한 딸이 군산에 거주하고 있어, 딸과 함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 북한 관련 신분증으로는 거류증, 조교 증명서, 북한여권 등이 있었고, 법무부에 다 제출했었으나 다시 돌려받지는 못하였다.

[유형 4] 해외에서 출생한 조교출신의 북한이탈주민

## (1) 윤 모씨(남, 47세)

#### (가) 탈북경위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교로 북한에서 생활한 적은 없다. 북한 국적의 부모님이 1953년에 중국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중국에서 거류증을 4년마다 갱신하면서 생활하였다. 1993년에 한국의 동원수산에서 중국 조선족 대상으로 선원 모집하러 왔을 때, 중국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 원양 어선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 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는 시절이라, 지방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간단히 그 지역 사람이라는 것만 말하면 중국 여권을 쉽게 만들어 줬다. 이에, 출국 수속을 받고 3년간 배를 타고 다녔다. 그 후에는 중국에서 신분증도 나오고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여권 만드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당시 배를 타면서 한국도 여러 번 거쳤다.(출입국 기록 다 남아있을 것임). 그 후, 2002년 다시 배를 타기 위해서는 중국 여권이 필요했으므로, 중국 여권, 신분증 만들어서 배를 탔다. 선원이 되는데 나이 제한이 있어서(35세 미만), 나이도 고쳐서 중국 여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3년에 배를 타다가 울산항에 한번 정박했고, 2004년 4월에 다시 울산항에 정박했을 때(SK 상선) 다시 배로 돌아가지 않고 도망쳤다. 2005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을 하였다.

#### (나) 국적문제

중국에서 조교로 생활하면서 한국 어선을 타기 위해 중국 여권을 만든 윤 씨는 형제 모두 배를 타기 위하여 중국 여권을 만들었으나, 2002년 한국 국적을 신청한 윤씨의 동생은 한국 국적을 받았고, 2005년 신청한 윤씨는 국적을 받지 못해 무국적자로 남게 되었다. 중국여권을 만들지 않고 밀입국으로 들어온 윤씨의 누나 역시 한국 국적을 얻었다. 윤씨의 동생은 1996년에 부산에 배가 정박시 도망쳐 2002년경 북한이탈주민 보호 신청을 했는데 2005년 경 국적을 취득하였고, 당시 면접에서 중국 여권을 위조했던 사실도 모두 이야기했는데 문제없이 한국 국적을 받았다. 윤씨도 2005년 5월 경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을 하였고 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조교 거류증, 중국여권, 및 동생과 같이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윤씨의 동생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배를 타다가 한국에 왔고 배를 타기 위하여 중국 여권을 만들었던 사실을 밝혔음에도 한국 국적을 받았으므로 윤씨도 중국여권을 만들었던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타던 배에 본인의 신분증(중국 여권)이 남아있다고 진술 하였으므로, 경찰서에서 배에 연락하여 신분증 등을 찾아주었다.

그러나 윤씨는 2007년 10월, '북한국적 불확실'이라는 이유로 국적판정 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재신청하였고, 그 후 대성공사에 가서 3일간 다시 조사받았으나, 얼마 뒤 연락이 와서 거짓증언을 했다 하여 국적난민과에 가서 마지막 면접을 하라고 하였다. 당시 면접관들이 한국에 2003년에 입국했으면서 왜 2004년에 왔다고 거짓말 했냐면서 면접하다가 나가버렸다. 실제 2004년에 마지막 입국 하였고, 울산 출입국 관리소에 보면 기록이 다 있을 것이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당시 타던 배에 연락해서 신분증까지 찾아주었으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거짓말 했다면서 나가버려서 매우 억울하였다. 또한, 한국에 유학 온 딸이 있었는데, 면접관들이 딸의 유학 서류를 보니 부모가 이혼했다고 나와 있던데, 왜 혼인관계라고 했냐면서 거짓증언을 했다고 화를 냈다. 유학서류에는 아빠는 이혼하고 러시아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왜 배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하였다. 이에 딸과 확인해 보니 딸이 한국에 올 때

유학원에서 만들어준 서류에 부모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왜 그런지 딸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윤씨와 똑같은 케이스인 동생은 한국국적을 얻었는데도 자신을 국적을 얻지 못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고 한다. 조교로서의 거류증, 중국 여권 등 모든 신분증은 대성공사에 다 제출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하나도 없다.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대성공사에 가서 찾아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서 찾으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탈북자 인정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면, 그냥 중국 여권 가지고 배를 타면서 지낼 텐데, 이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너무 원망스럽다. 왜 국적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이유를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동생도 함께 찍힌 부모님 환갑사진까지 제출했는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 중국에서 살던 동네 사람들도 다 자기가 조교인지 알고 있는데, 설령 중국에 간다 해도 이제 반역자나 다름없어 가봤자 매우 한심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에서 조교로 살기 위한 거류증 역시 4년마다 연장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그 기간도 지났다. 이제 정말 국적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중국에 조교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연세도 많고 편찮으신데 2004년 이후 한 번도 찾아뵙지도 못하여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 (다) 체류실태

입국 이후 지금까지 약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일하며 공장현장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막노동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 사람도 꺼려하는 일이라 사람이 모자라 일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으나 불규칙하다. 중국 여권도 가져가 버리고, 설령 중국에 간다고 해도 조교증 갱신 기간도 지났고, 한국 여권도 주지 않으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고 화만 난다. 조선족인 아내와 중국국적을 가진 딸 모두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데 여기저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어렵게 만나고 있다. 무국적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그것 때문에 받는 차별은 없지만 가끔 불법 체류자 단속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 만약 단속에 걸려 중국으로 쫓겨나게 된다면, 그나마 가끔 보는 가족과 이별해야 될까봐 염려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하다. 의료보험도 없으며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정도이다. 직업소개와 무국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2) 김 모씨(남, 57세)

##### (가) 탈북경위

1952년 중국 국적의 부친과 북한 국적의 모친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생활한 '조교' 즉 중국 거주 북한 국적자이다. 김씨는 중국에서 조선족중학교까지 졸업한 후, 모친 및 형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1977년 결혼하였고, 딸과 아들을 낳았다. 김씨 가족은 중국에서 벼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살기가 빠듯하였기에 부인이 먼저 단기종합 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2000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부인은 2005년 3월경 김씨에게 한국에서 일을 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김씨는 2005년 7월 부산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당시 북한국적자로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할 필요가 없었지만, 입국에 관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브로커에게 속아, 중국 동포인 손 모씨 명의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 (나) 국적문제

2006년 11월 비자 연장을 위해 수원출입국사무소에 손 모씨 명의의 중국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였다가 자신이 북한국적 조교임을 자수하였고, 2006년 11월 수원남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며 여러 관련 기관이 합동 조사한 결과 김씨가 북한국적자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2008년 10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는 2009년 4월 중국 국적취득자인 것 같다는 이유로 판정불가통보를 하였다.

#### (다) 체류실태

김씨는 당진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거나, 경기도 양주군 고추간조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였으나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일을 그만 두고 쉬다가 2006년 1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로 계속 일하게 되었다.

[유형 5] 탈북후 10년 이상 해외 체류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 (1) 김 모씨 (여, 40세) 가족

##### (가) 탈북경위

김씨는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20년간 탈북자로 중국에 살았다. 김 씨의 어머니 유 모씨(여, 71세)는 조선족 남편과 북한에서 결혼해서 오빠(한국으로 탈출하다 잡혀서 보위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언니(현재 한국국적을 받고 한국 거주)를 낳고 1969년 중국에 잠시 나가 김 씨를 낳았다. 하지만 김 씨가 1살 때,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와 북한인과 재혼하여 동생(현재 한국 국적 받고 한국 거주)을 낳고, 그 후로 계속 북한에서 초,중,고를 다니며 18세까지 생활하였다. 계속 북한에서 거주 중, 오빠가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군대도 못가고 대학교도 못 가게 되자, 먼저 중국으로 탈출하였고, 김씨가 18세인 1987년경, 어머니 및 남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탈북하였다. 이 때 의붓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고, 남동생은 6세였다. 언니는 당시 북한에서 결혼 한 상태라 북한에 남았다.

그 후 김 씨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중국 화북에서 바느질, 돼지 축사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2007년 한국으로 탈출하기까지 약 20년간 탈북자로서 중국에서 생활하였다. 중국에 살면서 조선족과 혼인하여 현재 15세 된 딸(중국 호구를 얻었고, 현재 한국에 같이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임)이 있다. 당시 운이 좋게 호구를 올려주는 기회가 있어서 중국에서 김씨, 어머니, 남동생 모두 중국 호구를 받고 생활하였고 남동생은 중국에서 2년간 군대생활도 했다.

그 후 2004년, 어머니와 남동생은 먼저 한국으로 탈출해 한국 국적을 받았다. 사실 그 전에 김씨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한국행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모두 붙잡혔었다. 다행히 세 명

모두 다 중국 국적이 있어서 북한으로 이송되지 않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졌다. 2004년 어머니와 동생이 다시 탈출 시도했을 때, 김씨는 또 잡힐까봐 무서워서 탈출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중국에 남았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어머니와 동생이 그 후 2007년 브로커를 통해 김 씨와 김 씨의 딸을 몽고를 통해 탈출시켰고 드디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 (나) 국적문제

중국에 약 20여 년 간 오래 살아서 북한관련신분증은 아무것도 없고, 중국여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으로의 국적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국적 취득 후 조선족 남편도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국적을 받지 못한 이유로 계속 떨어져서 살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김 씨와 함께 탈북하여 중국에서 호구를 받고 중국에서 초, 중, 고를 다니고 군대도 2년간 다녀온 남동생과, 마찬가지로 중국 호구를 받았던 어머니는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국적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2004년 한국에 와서 북한이탈주민으로의 국적판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북한 관련 신분증(공민증)이나 중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 인터뷰 시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이야기했으나 별 문제없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2007년 한국에 온 김 씨만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무국적자로 남게 되었다.

#### (다) 체류실태

현재 대전에서 식당일을 하면서 어머니 및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아침 10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하고 한 달에 100만원씩 받고 있다. 2004년 들어온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받기는 했으나, 10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돼 정착관련 지원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모(탈북자) 앞으로 나온 새터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 살면서 호구도 받았으나, 그래도 북한에서 태어나 18세까지 산 북한 사람으로 한국에 가서 인간답게 사는 게 꿈이었다.

현재 15세 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나, 국적이 없어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아주 많이 된다. 어머니가 국가에서 약간의 새터민 생계 보조를 받고 있다. 작년에 북한에서 계속 거주하던 언니를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빼내왔고 언니는 국적을 받았다. 현재 위가 좋지 않아 소화불량이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다. 의료보험은 없고, 병원에 가야 할 때는 국적을 받은 언니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직업소개와 국적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고 자녀교육문제에 관한 해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 [유형 6] 국내 입국한 무국적 탈북2세

##### (1) 재중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적

북한이탈주민이 해외에서 낳은 자녀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중국인 남성과 사실상 결혼하여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방치되고 있다. 중국 전역에 북한이탈주민 자

녀의 수는 1만여 명에서 2만 여 명 사이로 추정된다.<sup>61)</sup> 중국은 인구증가를 막기 위하여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취하고 중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기 위하여는 호구라는 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나 부모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호구에 등록하지 못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호구가 없고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농촌의 경우 부모가 학교를 설득해 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하지만 졸업장은 받을 수 없고 중학교 이상의 진학은 불가능하다. 중국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의료혜택에서도 제외되고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아무 기록이 없어 범죄 대상이 되더라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무국적자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국적법은 제4조에서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양 부모나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국적자인 경우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하고, 제6조에서 “중국에서 출생한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이 분명하지 않으며 중국에 정착한 경우,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부모 중 1인이 중국인인 경우 중국의 국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주민 내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한국의 국적이 인정되므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국적법 제2조 1호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인 부모가 한국에서 취적을 하고 부모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면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1998년 6월 14일 이전 대한민국 국적법은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자녀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았으나, 1998년 6월 14일 이후 법이 개정되어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인 어머니가 1998년 6월 14일 이후에 낳은 아이는 남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만 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다. 다만, 1998년 6월 14일 이전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만으로 한국인이 될 수 없고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보호 즉,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법은 북한지역에서 살다가 북한지역을 벗어난 사람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는 부모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적한 경우는 그의 호적에 입적된다. 나이가 많은 자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도 출생신고 가능하며 인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있는 경우의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의 취적에 관하여는 아직 선례나 이론이 없다.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의사 기타 출산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증명서는 병원의 의사가 작성하거나, 출산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다. 중국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상에는 어머니의 본명이 아니라 가짜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중국에서 그 가짜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데 통일부에서 이를 입증하여 주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

61) “중국 내 ‘무국적’ 북한이탈주민 2세대”, 조선일보, 2008. 3. 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07/200803070005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07/2008030700058.html)

증명서가 없다면 그 아이가 출생신고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맞다는 것을 증인들이 증명하여도 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입국문제에 관하여는, 중국에 있는 중국호적에 등록되어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중국인 자격으로 일반적인 중국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단 입국하여 한다. 즉, 중국여권과 일반 비자(조정, 여행 등)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 자녀가 중국에서도 취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취적한 후 중국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한국여권을 발급받는다 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출국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중국국적과 한국국적을 아울러 갖는 이중국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국적도 향유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중국에서 재중 북한이탈주민은 체포와 강제송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출생자녀를 호구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국적을 실제로 누리기 위하여는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재중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 국적도 북한이탈주민인 부모가 한국에 입국하여 취적하고 자녀도 취적하고 입국하기 까지는 이론적인 것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 (2)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국내에 입국한 경우 그 부나 모가 북한이탈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부나 모인 북한이탈주민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그 부나 모의 북한적 확인이 곤란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판정되지 못한다. 2007년 11월 김모군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아이가 북한이탈주민 일행을 따라 중국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중국 조선족이고 어머니는 1998년 10월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이었는데, 어머니가 2003년 11월 중국공안에 체포 복송되어 총살된 뒤, 아버지는 2006년 6월 한국에 먼저와 아이를 중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밀입국 탈출시켰다

그러나 제3국 이민국수용소에 도착한 아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중국인이 밀입국했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올 수 없었다. 여론의 압력이 있어 어렵게 한국에 올 수는 있었으나 중국인으로서 방문비자를 얻어 입국한 형식이었다. 2009년 6월 아이는 어머니가 북한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한국 국적을 판정받고자 법무부에 국적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의 국적을 얻게 될 것이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어머니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증거가 가능할 것인지 논란될 것으로 예상된다.

## V. 결론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때 일각에서는 재외동포법이 혈통이 아닌 과거국적을 기준으로 동포를 정의한 결과 많은 동포가 제외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혈통과 같은

모호한 기준으로 동포를 정의하고 우대하는 것은 국제규범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거국적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혈통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혈통과 과거국적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경계짓는 과정이 혈통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혈통에 의거한 것은 대한민국 정책결정자의 선택이 아니었다. 대한제국의 신민이 민적과 조선 호적에 기록되고 일본제국 내의 민족소속 구분이 그렇게 문서화된 순간에 한민족의 경계는 뚜렷한 선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입된 사람들의 지위가 대물림되고 그 변동이 기록됨으로써 민족이 재생산되었다. 대한민국 국가인민의 정당성을 민족의 정체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이었다. 일제에 의한 주권의 단절을 부정하면서도 그로부터 승계한 통치성을 대가로 하여 민족은 한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 국민이 만든 법제에 의해 민족의 경계가 소급적으로 승인되고 정체성과 공동체적 상상은 제도화된 실재가 되었다.

이러한 경계 획정은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하는 정치적이고 국제법적인 실재에 눈감았다. 처음에는 그 획정이 승인되기 전에 수백만이 해외로 떠나 외국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 또한 반영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약 2,500만명이 추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했다. 그 중 1할에 달하는 재중·재CIS 한인은 그들이 추상적으로 소속된 국가와 접촉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그 국가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리고 외국 귀화에 따른 국적상실을 규정한 국적법의 작용에 의해 이미 분리된, 그러나 탈영토화된(deterritorialized) 민족의 성원으로 남아 있는 디아스포라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그 디아스포라의 성원들은 조건의 차이에 따라 계서화되었다.

국민이건 민족의 성원이건 그 신분을 확인하는 일은 2,500만의 추상적 국민과 접촉 없이 살아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도전이었다. 고도로 통치화된 식민지 지배권력이 작성한 세밀한 신원 기록도 모두 손에 넣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그에 기록되지 못한 또는 기록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로부터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관할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일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누락만을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기록되었어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은 많은 난점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국민과 상하급의 에스니즌, 그러한 자격을 결여한 디아스포라, 그 바깥에 있는 완전한 타자로 구분되는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또는 위치해야 하는가는 문서의 존부와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어느 위치를 주장하고 어느 위치로 이동하려는가에 따라 원용할 수 있는 문서는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 기준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의 혈연이었다. 주장하는 지위에 따라서는 書面實在化된 혈연을 생물학적 진실로 대체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민족의 멤버십이 어떻게 분류되고 “카드와 코드에 奉安”되었으며,<sup>62)</sup> 어떻게 주장, 입증, 인정되는지를 탐구의 과제로 삼았다. 종족적 민족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그러나 단순화할 수 없는 韓人의 삶이 가로놓인 다층적 실재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였다.

62) 서호철, “국민/민족 상상과 시민권의 차질, 차질로서의 자기정체성,” 96-97면.

#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이동기 (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 1. 머리말 - 분단 독일 ‘탈민족’론의 규정 조건들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독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다.”<sup>1)</sup> 니체가 이 말을 한 것은 독일통일 15주년이 되는 해인 1886년이었다. 니체의 이 언급은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19세기 유럽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자국의 ‘지체된 민족(Die verspätete Nation)’(Helmuth Plessner) 형성과 혼란스런 독일 정체성 및 문화를 목도하며 나온 회고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것은 오히려 20세기 후반 독일이 ‘재’통일되기 이전 분단 독일에서 전개된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숭한 담론들의 등장을 예언하는 말이었다. 독일 역사와 문화의 ‘특수한 길(Sonderweg)’을 주장하는 논의야 점차 찾아들고 있지만 민족 정체성과 민족공동체의 향방을 둘러싸고 독일인들이 역사적으로 전개한 무수한 지적 사유와 정치적 상상은 그 자체로 매우 ‘특수’하다. 특히 20세기 후반 냉전과 분단 시기 독일은 유례없는 민족 담론의 백화제방(百花齊放)을 경험했다. 독일적 정체성을 자문하는 오랜 문화적 전통에 더해 나치즘의 파국과 분단의 현실은 독일인들로 하여금 민족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민족 재통합의 경로를 모색하는 다양한 주장과 사유실험들을 자극했다.<sup>2)</sup> 그런데 새로운 민족적 기대지평을 공동의 사유공간으로 확장하는 논의 못지않게 독일민족의 ‘정상화’가 탈민족(postnational)/초민족(supranational) 정체성과 정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

1)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을 넘어서』, 제 8장 244절

2) 분단 시기 독일의 민족담론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Heinrich August Winkler, “Nationalismus, Nationalstaat und nationale Frage in Deutschland seit 1945”, H. A. Winkler & Hartmut Kaelble ed., *Nationalismus - Nationalitäten - Supranationalität*(Stuttgart, 1993), pp. 12-33, Florian Roth,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Die Bundesrepublik zwischen neuer Ostpolitik und Wiedervereinigung(1969-1990)*(Baden-Baden, 1995), Bettina Westle, *Kollektive Identität im vereinten Deutschland. Nation und Demokratie der Deutschen*(Opladen, 1999)을 참조하라. 한편 서독 민족중립주의자들의 다양한 민족관에 대해서는 Alexander Gallus, *Die Neutralisten. Verfechter eines vereinten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1945-1990*(Düsseldorf, 2001), 서독에서 민족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대해서는 Jürgen C. Heß, “Die Bundesrepublik auf dem Weg zur Nation”, *Neue Politische Literatur*, 3/Jg. 26, 1981, pp. 292-324, Werner Weidenfeld (ed.), *Die Identität der Deutschen*(Bonn, 1983). 한편 탈민족 담론에 대해서는 Jens Hacker, *Deutsche Irrtümer. Schönfärber und Helfershelfer der SED-Diktatur im Westen*(Berlin, 1992)을 참조하라. 그는 많은 부분에서 사후적 규범적 평가에 매달려 학문적 균형을 잃었지만 그래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장한 흐름도 작지 않았다.

분단 서독에서 전개된 탈민족 담론과 정치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분단 독일의 탈민족 지향의 흐름들을 규정한 몇가지 요인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나치즘의 긴 갈색 그림자: 홀로코스트로 인한 독일민족주의의 정당성과 흡인력 상실. “본은 바이마르가 아니다.”(Fritz Rene Allemann)

둘째, ‘제 4제국’에 대한 유럽 주변국들의 두려움과 우려: “우리는 독일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것이 들인 것이 기쁘다.”(François Mauriac)

셋째, 전망으로서의 유럽통합과 현실로서의 유럽공동체(EG): ‘독일적 유럽’이 아니라 ‘유럽적 독일’!

넷째, 서방통합과 동방정책의 효과: 탈민족주의자들은 브란트의 동료일까 ‘아테나위의 자식’일까?

## 2. 탈민족론들의 발전 양상과 특징

### 1) 탈민족론의 등장: 과거청산이 아니라 서방통합의 논리적 귀결

서독 탈민족론의 등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애초 그것이 전쟁과 학살이라는 민족사적 과거에 대한 반성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49년 분단 이후 1970년대 중후반까지는 서독 여론 사회에서 누구도 분명하게 홀로코스트의 경험으로부터 탈민족 지향을 도출해내지 않았다. 독일분단은 냉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나치즘의 파국적 발전의 연장으로 이해되었다. 그런 한 독일의 재통일은 오히려 나치 과거를 민족사적으로 극복하는 전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분단 초기 국면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민족 간 화해와 통일,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주장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나치즘의 핍박을 직접 받고 전후 그것의 극복을 주창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전후 누구보다도 민족적이었던 서독 사민당 당수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를 비롯해 민족중립주의를 주창한 다양한 조류의 민족적 정치가들은 다시는 독일 땅에서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했다.<sup>3)</sup> 물론 1950년대 민족 지향의 정치와 사상적 조류에 극단적 민족주의나 극우 정치세력이 함께 결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체는 적어도 1950/60년대까지는 나치즘의 파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곧장 민족적 전망에 대한 회의적 입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서독 정치무대를 뜨겁게 달군 학생운동과 재야운동(APO-Bewegung)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흔히 이해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1950년대 후반 ‘신좌파(Neue Linke)’로서 자기정체성을 찾아 나갈 때 오히려 민족문제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sup>4)</sup> 물론 1965년을 기점으로 서독의 비판적 학생운동은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3)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A. Gallus, *Die Neutralisten*, pp. 57-295.

4) 서독 68운동과 68세대에서 나타난 민족문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동기,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체: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독일연구, 역사, 사회, 문화』 vol. 17, 2009. 6, pp. 65-107.

않아갔다. 그러나 그들, 다시 말해 68세대 다수가 탈민족적 지향을 분명하게 확립하기 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어쨌든 극단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곧장 탈민족 사유로 귀결 되지 않았다.

오히려 탈민족 담론의 초기 양상을 규정지은 것은 아데나워의 서방통합정책이었다. 동서냉전 블록 형성에 조응하며 추진된 아데나워 정부(1949-1963)의 서방통합정책은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독일통일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였고 실제로는 하나의 독일이라는 민족 통합적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서방통합정책은 사실 그 자체로 독일 근대외교사의 '혁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민족적 전통(‘특수한 길’)과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극단적 민족주의의 극복 뿐 아니라 정치문화 및 일상문화에서 탈민족화를 초래했다. 이 혁명과 단절은 경제성장에 기초한 서독 사회의 물질적 복리와 결합하여 서독 사회에 새로운 지향과 정체성의 근거를 마련했다.<sup>5)</sup>

이에 조용해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1960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및 자유주의적 주간지 ‘디자이트(Die Zeit)’를 통해 독일 통일 요구가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유에 대한 민중의 기본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한 민족 국가적 차원에 대한 권리는 사실 소실될 수 있다.” “앞으로 통일 없이도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은 다 이룬 셈이다. 오스트리아가 만약 자유로운 자기결정을 통해 독일에 병합할 권리를 제기했다면 자유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단연코 그렇지 않다. 병합은 오스트리아에게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오스트리아는 자유롭다.” 통일을 유예 내지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동독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야스퍼스가 오스트리아의 경우, 즉 1955년 중립국으로 주권과 통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확보한 예를 초점으로 동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은 아데나워가 1958년 잠시 숙고 내지 시도했던 ‘동독의 오스트리아 식 해결’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런데 야스퍼스는 사실 아데나워가 추구한 독일정책의 기본 원리, 즉 ‘통일이전에 자유’ 내지 ‘자유를 통한 통일’의 기본 관점과 구상을 더 밀어붙여 “자유는 절대적인 요구이고 통일은 상대적인 것이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보기에 통일과 자유는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서로 분리 가능한 목표였다.<sup>6)</sup> 야스퍼스는 국민국가로서의 독일이라는 정치적 가정과 단호히 결별하고 연방공화국(서독)을 궁극적인 정치적 사회화 형식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동서독간 하나의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에 기반해 동독 주민의 자유 확대 내지 삶의 개선을 정치적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곧 서독의 체제 내 모든 정당들과 여론사회에서 십자포화를 받았다. 아직은 다만 골로 만(Golo Mann)같은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유사한 주장을 전개했을 뿐이다.<sup>7)</sup>

5) H. A. Winkler, “Nationalismus”, p. 16.

6) Karl Jaspers,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München, 1960), p. 110, 같은 저자 *Wohin treibt die Bundesrepublik? Tatsachen - Gefahren - Chancen*(München, 1966); *Antwort zur Kritik meiner Schrift “Wohin treibt die Bundesrepublik die Bundesrepublik?”*(München, 1967).

7) Golo Mann, *Deutsche Geschichte des 19. und 20. Jahrhunderts*(Frankfurt am Main, 1966), p. 1048,

## 2) 1970년대 동방정책 시기 탈민족론의 발전

서방통합과는 달리 1969년 이후 빌리 브란트 주도의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동방정책은 더 직접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자기인정과 분리된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했다. 동방정책은 무엇보다 1945년의 전후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반위에서 추진되었다. 그런 한 동독을 국가로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그 출발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여론사회에서 동방정책 구상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지하며 동방정치가들을 동반했던 상당수 자유주의적 또는 좌파적 지식인들은 동방정책의 발전 속에서 동독의 인정을 통한 연방공화국의 자기인정이라는 결론에 함께 도달했다. 이를테면 1972년 비판적 자유주의 계열의 주간지 ‘디자이트(Die Zeit)’의 편집자 테오 쉰머(Theo Sommer)는 동방조약들의 승인 결과가 지닌 함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전후 유럽에 생겨난 현실들의 인정은 동시에 연방공화국의 자기인정을 의미한다. 연방공화국은 마침내 자신의 존재와 있는 그대로 화해하고 이제부터 자신의 국가이성(Staatsräson)에 대해 솔직해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sup>8)</sup>

분단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여전히 하나의 민족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많은 자유주의적 사민주의적 경향의 지식인들은 ‘독일 민족’의 지속적 존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1969년 이래 서독 사민당 계열의 대표적 지식인인 쿠르트 존타이머(Kurt Sontheimer)는 야스퍼스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연계하여 분단 독일에서 하나의 민족정체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sup>9)</sup> 비록 앞선 시기의 민족 통일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야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지만 “하나의 민족을 일상적으로 갱신하는 국가 내에서의 공동생활이라는 추진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그의 논거였다. 정치학자 존타이머는 분단이라는 조건하에서 독일인들은 두 개의 국가주민(Staatvolk)으로 갈려 각기 서로 다른 정치 질서와 사회 체제에 속하게 된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동서독 간에는 정치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다. 공동의 역사나 언어, 문화전통 등에 의거한 정체성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독일민족은 죽었다”는 확인 뒤에 따르는 것은 물론 ‘연방독일국민’ 정체성에 대한 강조였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독일민족 정체성과는 구분되는 분단국 서독에 대한 정치적 정체성이 단순히 정치적으로나 지식담론의 차원에서 당위나 규범으로만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초 서독인들이 하나의 단일한 독일 민족 정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된 서독 정체성’을 강하고 내재화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이는 무엇보다 루쯔 니트함머(Lutz

8) F. Roth,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p. 112에서 재인용.

9) Kurt Sontheimer, “Nation und Nationalismus in der Bundesrepublik” (1969), Hans Steffen ed., *Gesellschaft in der Bundesrepublik*, 2. Teil(Göttingen, 1971), pp. 130-152; *Deutschland zwischen Demokratie und Antidemokratie. Studien zum politischen Bewußtsein der Deutschen*(München, 1971); *Die verunsicherte Republik. Die Bundesrepublik nach dreiβig Jahren*(München, 1979); *Der unbehagliche Bürger*(Zürich, 1980); “Gibt es ein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Barbara Baerns ed., *Die DDR in Deutschland*(Köln, 1986), pp. 324-335.

Niethammer)와 게르하르트 슈바이글러(Gerhard Schweigler)였다.<sup>10)</sup> 이를테면 서독 사회사 전통의 좌파 역사가 니트함머는 실증적 연구에 기초해 서독인들이 “서독 국가와 준-민족적 동일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의거해 서독 사회를 일종의 국가민족(Staatsnation)으로 보았다. 하여 그는 서독(연방공화국)을 “숨겨진 민족(Krypto-Nation)” 내지 “준(準)-민족으로 다져진 국가사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민당계열 내지 비판적-대안적 정치입장을 지닌 지식인과 학자들은 1970년대 내내 독일에서의 ‘이중-민족화(Bi-Nationalisierung)’ 경향을 확인하고 선전하는데 열심이었다. 한스 몸젠과 불프강 몸젠 형제, 발데마르 베손(Waldemar Besson), 마리오 라이너 랩시우스(Mario Rainer Lepsius), 정치학자 에버하르트 슬츠(Eberhard Schluz), 에른스트-오토 챔필(Ernst-Otto Czempiel) 등등.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지식인들의 탈민족적 관찰과 주장들이 동서독 간의 접촉과 교류가 본격화된 때 나왔던 것이다. 동서독 간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민족 이질화의 심화가 거듭 확인되었다. 물론 그들은 동독에서도 서독과 유사한 일국적 정체성 내지 동독-국민 형성이 얼마나 진행 중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독 문제에 대해 그들은 유사한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 이를테면 존타이머는 “통일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동독 사람들의 상황 개선에만 매달릴” 것과 서독인들의 구체적인 정치적 책임은 단지 서독에만 해당되며 서독인들이 서독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아마 동독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 너머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sup>11)</sup> 존타이머는 동독의 전체주의적 지배성격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동독이 미래에도 여전히 사회주의국가로 유지할 것이며 동독주민들의 다수가 그 체제에 순응해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의식을 발전해갈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같은 탈민족적 관찰은 동서독 간 대화와 협력정치의 기본틀과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전혀 조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1970년대 동독 국가 지도부는 ‘현실적 서방정책’을 내세우며 동서독간 국가통일을 완전히 포기했을 뿐 만 아니라 ‘이(二)-민족’ 테제를 공식적 입장으로 표명하며 선전했다. 한편 1970년대 브란트와 슈미트 사민당 총리들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한 민족의 지속적 존재를 부정할 적도 없고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독 정부의 ‘실용적 동방정책’은 통일논의의 전면 유보를 그 주요 전제로 갖고 있었다. 결국 동서독 간 교류가 과연 민족지향의 동방정치가들이 기대했던 대로 민족 간 결속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탈민족론을 제시한 동방정책의 지식인 지지자들이 진단한대로 동독과 서독의 ‘이-민족화’ 경향을 새로운 독일정치의 조건으로 전제해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이

10) Lutz Niethammer,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für die BRD(1971)”, *Deutschland danach. Postfaschistische Gesellschaft und nationales Gedächtnis*(Bonn, 1999), pp. 74-169; Gerhard Schweigler, *Nationalbewusstsein in der BRD und DDR*(Düsseldorf, 1973); Erich Kitzmüller Heinz Kuby Lutz Niethammer, “Der Wandel der nationale Frag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3 u. 34/1973, pp. 3-31.

11) K. Sontheimer, “Reden über Deutschland”, *Reden über das eigene Land; Deutschland 6*(München, 1989), p. 45: “Volk und Nation im Nachkriegsdeutschland”, *Die Mitarbeit. Zeitschrift zur Gesellschafts- und Kulturpolitik*, Jg. 18/1969, p. 104.

‘이-민족화’의 대변자들은 그 문제에 더 천착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을 만났다. 그것은 1970년 후반부터 서독 정치와 여론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재-민족화’ 경향이었다.

### 3) 1979-1983년 탈민족론의 강화: ‘재-민족화’ 경향과의 대결

1978/79년부터 1980년 초반까지 서독 정치와 여론 사회는 두 가지 중요한 계기를 통해 민족 문제에 대한 새롭고 격렬한 토론을 경험했다. 제2차 냉전의 개시와 연방공화국 건국 30주년을 맞이한 서독정체성 질문이 그것이다. 전통적인 민족 보수주의에 더해 뉴라이트(Neue Rechte) 그룹들, 그리고 학생운동과 평화운동에서 성장한 한 흐름인 민족좌파(Nationale Linke)들은 독일의 분단문제가 국제적 냉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인이라고 보며 독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유럽에서 평화가 달성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방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통일논의를 원천 배제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을 통한 독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분단 독일의 양쪽에는 아직 강력한 민족 감정과 공속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를 일깨우는 것이 정치와 지식인들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탈민족 지향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유럽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는 것은 독일통일이 아니라 유럽분열의 극복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공동의 유럽안보체제’(Egon Bahr) 확립을 통한 ‘유럽의 유럽화’(Peter Bender)에 의거해 유럽적 해결만이 평화의 유일한 과정이라고 확신했다. 민족으로의 회귀 또는 ‘재-민족화’(Arno Klönne)는 분단 독일에서 불가능하고 바람직 하지도 않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군사블록 간 대결이라는 국제적 조건도 그렇지만 특히 이미 서독에서 발전한 삶의 현실과도 동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강제적인 전(全)독일(gesamtdeutsch) 의식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독일 민족주의의 재등장과 이데올로기화 된 민족의식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그들은 심각히 우려했다. 이제 서독의 탈민족론의 대변자들은 새롭게 현실로 등장한 ‘재-민족화’ 경향에 맞서 적극적으로 극단적 민족주의의 극복이라는 비판적 역사의식의 문제를 자신들의 탈민족론을 채우는 내용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서독정체성의 현재적 확인이 비극적 민족사의 역사적 극복이라는 민주적 과제 및 평화를 위한 미래의 유럽구상과 접목됨으로써 서독 탈민족론은 고유의 색깔을 제대로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탈민족론은 좌파-자유주의 여론 사회에서 공동의 정치적 지향과 사유 운동의 근거로 발전할 수 있었다.

## 3. 1980년대 헌법애국주의 논쟁

### 1) 돌프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

“나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요!” 1969년 사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로 연방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구스타프 하이네만(Gustav Heinemann)은 “연방공화국을 사랑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이후에도 서독 여론사회에서는 ‘간단치 않은 조국(Schwieriges Vaterland)’에 대한 불편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표현되었다. 그러나 1979년 서독 건국 30주년을 전후해 서독의 자기인정과 서독 주민의 집단적 자기정체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것과 민족의식 및 초민족 지향과 어떤 관련을 맺을지가 중요한 지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분단 독일에서 국가정체성과 (탈/초)민족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1980년대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 논쟁에서 특수하게 나타났다.

서독에서 헌법애국주의를 처음 설파한 정치학자 돌프 슈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는 오랫동안 야스퍼스와 함께 친교를 나누고 같이 지적 작업을 수행했다(잡지 ‘Die Wandlung’의 공동편집자)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는 이미 1947년, 그리고 다시 1950년대 후반부터 헌법국가에 대한 애국주의적 감정에 대해 논했고 ‘친국가적 태도(Staatsfreundschaf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sup>12)</sup> 1979년 서독 건국 3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글에서 슈테른베르거는 이제 더 확연히 서독의 국가발전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헌법애국주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sup>13)</sup> 그에게 있어 헌법애국주의는 먼저 지난 30년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해온 자유로운 공화국 서독이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매개물이었다. 슈테른베르거는 독일 분단의 현실에서 독일인들에게 조국이란 곧 헌법(기본법)이며 낡은 조국애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헌법애국주의를 제안했다. 그가 보기에 독일에서 민족감정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독일인들은 언젠가 될지 모를 미래의 독일통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헌법 또는 완전한 헌법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조국이다.” 그는 18세기 말 까지 모든 형태의 애국주의는 법과 공동의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된 ‘헌법적 애국주의’였음을 역사적으로 환기시키며 아리스토텔레스나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에 의거했다.<sup>14)</sup> 슈테른베르거가 생각했던 이 헌법애국주의는 단순히 헌법의 조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국은 “우리 모두를 이 나라의 시민으로 속하게 하고 우리가 매일 참여하며 계속해서 형성

12) 이미 1947년 슈테른베르거는 조국에 대한 공화주의적 이해와 헌법애국주의에 대한 개념적 구상을 선보였다. “조국이란 개념은 정치헌법에서 비로소 구현된다. 조국은, 레오폴트 랑케가 일종의 보수적인 신비주의 방식으로 민족체를 이해했던, 또는 다르게 말한다면 이성적 능력은 배제된 ‘어둡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궁’이 아니다. 조국은 밝은 빛 아래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조국의 실제 헌법에 활발하고 자유롭게 성숙하게 참여할 때에만 조국을 사랑할 수 있다.” Dolf Sternberger, “Begriff des Vaterlandes”(1947), *Ich wünschte ein Bürger zu sein: Neun Versuche über den Staat*(Frankfurt am Main, 1967), p. 37; “Das Vaterland”(1959),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Frankfurt am Main, 1990), pp. 11-12; *Staatsfreundschaft. Schriften IV*(Frankfurt am Main, 1980), pp. 211-245.

13) Dolf Sternberger, “Verfassungspatriotismus”(1979),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Frankfurt am Main, 1990), pp. 13-16; “Verfassungspatriotismus. Rede bei der 25-Jahr-Feier der ‘Akademie für Politische Bildung’”, *Ibid.*, pp. 17-31.

14)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가 지닌 사상사적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Volker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erspektiven für eine weltoffene Nation*(2006, Wiesbaden), pp. 191-194, Jan-Werner Müller, *German Intellectuals, Unification and National Identity*(New Haven, 2000), pp. 93, Jörg Pannier, *Das Vexierbild des Politischen: Dolf Sternberger als politischer Aristoteliker*(Berlin, 1996)를 참조하라.

해기는 살아있는 헌법에서 채워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헌법애국주의는 단순히 성문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정부, 의회, 야당, 관료, 노조 등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에 필요한 충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만의 표출은 국가에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슈테른베르거의 생각이었다. 대신 공화국의 시민은 국가와 헌법을 방어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화주의적 헌법애국주의가 과연 민족적 애국주의의 대체물이나는 것이다.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는 19세기 이후 확산된 국민국가에로의 충성 요구를 넘어선 논의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헌법 질서의 차별성과 소속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단 독일에서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상대화 내지 주변화했다. 그의 글에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이 지닌 역할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흔히 이해되는 바의 민족 지향적 애국주의와는 구분된다. 그렇지만 슈테른베르거는 동독 시민들과의 민족적 연대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헌법애국주의는 독일의 민족 정서와 나란히 병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며 독일인들이 민족적 공속감을 지닐 필요를 여전히 인정했다.<sup>15)</sup>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폭정하에서는 애국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지적했기에 동독인들이 서독인들과 구분되는 동독 애국주의를 가지며 독자적 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결국 슈테른베르거는 집단적 공동체로서의 충성과 결속을 헌법국가적 공화주의 영역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편 ‘이 국가상태’를 당연시하지 않음으로써 민족주의적 경향이 아닌 동서독간 집단적 연대와 결속의 정치적 상상과 정체성의 논거를 제공하였다. 그렇기에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는 1990년 통일이후 많은 보수-자유주의적 지식인들과 우파 정치가들에 의해 동서독을 통합할 민족적 애국주의로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 2)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

이에 반해 하버마스는 1980년대 후반 역사가논쟁의 와중에서 이 헌법애국주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탈민족적 독일의 자기의식”의 표현이라고 간주했다.<sup>16)</sup> 하버마스는 서독이 서구정치문화를 수용하고 법국가적 질서를 확립하고 서방에 정치적으로 긴밀히 결합된 것을 전후 시대의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슈테른베르거와는 달리 하버마스는 서독의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애국주의가 국민국가적 틀에서 입증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헌법애국주의는 특수주의적 자기정체성으로서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인습적이고 탈-민족적인 정체성’을 채우는 내용이 되어야 했다.

15) V.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p. 195, Wolfgang Bergem, *Identitätsformationen in Deutschland*(Wiesbaden, 2005), p. 160, 원준호, 「헌법애국심과 통일독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 2002년 10월, pp. 200.

16) 이하 내용은 다음 저술들에 기초했다. J. Habermas, *Eine Art Schadenabwicklung*(Frankfurt am Main, 1987); *Die nachholende Revolution*(Frankfurt am Main, 1990), pp. 149-175, Rainer Nickel, “Verfassung und Verfassungspatriotismus”, Hauke Brunkhorst & Regina Kreide ed., *Habermas-Handbuch*(Stuttgart, 2009), pp. 377-378, V.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p. 202-215.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국민적 전통을 의문시하고 역사적 연속성을 극복하여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치문화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에서는 슈테른베르거적 의미의 특정 국가나 헌법에 대한 충성 또는 민주적 국가의 방어를 넘어 다원주의적이고 다문화주의적인 시민적 자유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의사소통의 확장과 민주적 절차의 정착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보편주의적인 헌법 원리를 공유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 기반을 둔 탈민족적 정체성의 단초들은 단지 독일연방공화국을 넘어선 발전 속에서만 전개되고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버마스는 국민국가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서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가 유럽통합 과정을 위해 유용한 개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하버마스에게 있어 이 보편주의적인 정치규범으로서의 헌법애국주의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가치나 정체성에 의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과 질서에 대한 복종과 같은 인습적인 정치윤리가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아우슈비츠! 정치문화와 역사의식에서의 파시즘의 극복은 특정한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고 그것으로부터 탈민족적 정체성은 법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에 의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독의 특수한 정체성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민족사적 연속성의 완전한 단절과 극복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적 의사소통과 학습과정을 전제한다. 결국 하버마스의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는 흔히 비판받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민족적 정체성도 부정하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세계 보편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가공동체 성원의 집단적 자의식과 특수한 민족적 정체성을 오히려 내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비판적 민족의식의 모든 확정적 내용들이 “보편주의적 가치지향의 필터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1980년대 후반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를 둘러싸고 전개된 뒤이은 논쟁을 결산하기는 아직도 쉽지 않다.<sup>17)</sup> 한편으로 역사가 논쟁의 맥락에서 민족사의 단절과 자기 성찰적 정체성에 동의하는 많은 자유주의적 좌파 지식인들과 여론사회가 하버마스의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를 지지하였다. (Günter Grass, M. Rainer Lepsius, Martin Broszat, Kurt Sontheimer, Wolfgang Mommsen, Hans-Ulrich Wehler, Karl Dietrich Bracher 등) 오랫동안 분단독일에서 이민족화 내지 탈민족화 과정을 관찰하며 그것의 현실적 함의를 성찰하던 그들에게 하버마스는 적절한 정치사상적 개념과 관점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 특히 주로 보수적 지식인들에게 이 개념은 감정이 결여된 인위적 구성물에 불과했다. 특히 동서독을 잇는 민족(국가)적 연대의식, 공속감, 역사적 정체성의 문제없이 애국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 또한 강했다. (Hermann Lübe, Martin Walser, Hans-Peter Schwarz, Hagen Schulze, Karl-Rudolf Korte, Ralf Dahrendorf, Axel Honneth 등)

결국 1989/90년 예기치 않은 동독붕괴와 독일통일이 이 탈민족 애국주의 개념의 영향력을 약

17) 이 논쟁에 대해서는 Florian Roth,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Die Bundesrepublik zwischen neuer Ostpolitik und Wiedervereinigung*(1969-1990)(Baden-Baden, 1995), pp. 301-317, Jan-Werner Müller, *German Intellectuals*, p. 97-98, W. Bergem, *Identitätsformationen*, pp. 164-167, Volker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p. 211-215.

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통일 후 하버마스로부터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 또는 더 분명한 민족적 애국주의로 -물론 민족주의와는 구분되고 보편주의적 내용을 담고- 다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보수 지식인 및 우파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그럼에도 초민족적 유럽통합의 전망 속에서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는 여전히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의 중요한 지적 공유 지점이자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 통일 이후 유럽통합의 정치적 과정이 의미있게 전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체되고 굴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통일 독일에서는 이제 우파든 좌파든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내 조국도 사랑할' 나름의 근거 하나쯤은 마련된 셈이다.

#### 4. '기대하지 않은 통일'과 '탈민족' 정치

##### 1) 1989년 11월 콜 정부의 독일정책 전환

1980년대 분단 독일, 특히 서독에서 '탈민족' 논의는 지식인과 여론사회의 담론으로 끝나지 않았다. 1982년 헬무트 콜 수상 주도의 기민련/기사련/자민당 연정은 그 이전 1970년대 사민당/자민당 연정 시기의 동방정책과 그 정신을 철저히 계승하면서 '실용주의적 독일정책'의 기초를 이어갔다.<sup>18)</sup> 동독 체제가 자체 붕괴의 문턱으로 막 들어선 1989년 10월 말까지 서독의 보수-자유 연정은 아직 동서독간 상호협력의 상호주의적 '연계(Junktim)'를 통해 동독 내정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공세적 통일강령을 통해 동독 체제를 흔들고자 하지도 않았다. 물론 콜 수상은 규범적이고 명목적인 차원에서 몇 차례 공식적 선언과 연설들을 통해 독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실제 정책과 활동에서 그는 '이(二)국가주의자(Zweistaatler)'들과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콜 수상 또한 당시 전망이 보이지 않는 독일통일보다는 유럽통합의 현실정치적 확장과 강화를 더 중요한 독일정치적 과제로 간주했다. 그렇기에 그는 당내 전통적 민족보수주의자들 및 하나의 단일한 민족적 정체성에 기초해 독일의 재-민족(주의)화를 추구했던 뉴라이트 그룹들로부터 연신 비판받았다. 그렇지만 동독 체제의 붕괴가 현실로 들어난 1989년 11월 28일 콜 수상은 독일통일 '10개 조항 강령'을 제시하며 순식간에 모든 민족 재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쥐 수 있었다.

##### 2) 사민당과 녹색당의 탈민족 대안들

반면 1980년대 내내 이(二)국가상태나 '이(二)민족-테제'에 의거해 초민족적/탈민족적 지향을 독일의 정치적 미래 구상으로 적극 선전한 정치가들은 두 좌파 야당에 몰려 있었다. 먼저 사민당의 지도적 정치가들은 독일에서 이국가상태가 장기 지속하는 것을 '정상적인' 현실로 받아들였다. 사민당이 내건 '제 2기 동방정책'은 독일문제의 해결 보다는 유럽평화체제 구축과 유럽공동

18) 이에 대해서는 이동기,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 - 1980년대 서독 콜 정부의 동방정책 계승」, 『역사비평』 83, 2008년 여름, pp. 350-373.

체 구상을 겨냥했다. 1980년대 후반 사민당의 주요 정치가들 중 가장 민족적이었던 브란트조차도 ‘재통일’이란 용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국민국가가 재탄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극히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민족의 현재와 미래, 다시 말해 하나의 단일한 독일민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다. 빌리 브란트처럼 여전히 하나의 단일한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동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공속감에서 찾는 이들이 한 켠에 있었다. 그들은 동독주민들과의 민족적 결속과 연대를 여전히 강조하며 기본법의 통일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새로운 차기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던 오스카 라퐁텐으로 대표되는 사민당내 탈민족 지향의 정치가들에게 ‘독일민족’이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승인할 뿐 아니라 동독의 독자적 시민권을 인정할 것도 주장했다. 결국 1989/90년 겨울 독일 통일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국면에서 사민당은 ‘통일되지 않은 채 통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sup>19)</sup> 당시 사민당 당수이자 원내총무였던 한스 요헨 포겔(Hans Jochen Vogel)과 브란트 등은 콜의 애초 통일구상, 즉 국가연합을 통한 연방국가로의 독일통일 및 통일독일의 나토(NATO)에로의 잔류 그리고 곧 1990년 1월 중순 그 구상의 변화, 다시말해 국가연합 단계의 포기를 통한 급속한 통일 추진 등에 모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이에 반해 좀 더 젊거나 더 좌파적인 다수의 사민당 정치지도자들, 특히 라퐁텐을 비롯한 ‘브란트의 손자들’은 시종 완강하게 탈민족 전망의 해결책을 고수했다. 그들은 이미 현실적 정치일정으로 들어선 독일통일 자체를 거부하거나 최대한 유예시키면서 유럽통합을 통한 독일문제 해결 또는 이중적 국가연합을 통해 독일통일과 유럽통일의 동시적, 병행적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버마스과 그라스를 비롯한 상당수의 좌파 지식인들이 연이어 성명과 의견을 제출하며 국민국가로의 급속한 재통일이 지닌 ‘사회적 문제’와 ‘재-민족(주의)화’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노선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들은 연이은 선거패배와 정치적 지지의 상실로 그 의미를 잃어갔다. 결국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의 제국의회 앞에서 헬무트 톨이 독일통일을 선언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브란트는 통일의 또 다른 주역으로 빛을 발했지만 같은 자리에 서 있던 라퐁텐은 어색한 미소를 지니며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민당과는 달리 녹색당은 콜의 통일공세에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980년대 전반기 평화운동에서 출발한 ‘민족좌파(Nationale Linke)’ 그룹들이 일찍이 정치적으로 배제, 소외된 뒤 녹색당은 탈민족 지향이 정치적 함의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녹색당의 다양한 정파들은 동독에 대한 평가, 군사동맹 문제 그리고 통합유럽의 구체적 상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을 갖고 있었지만 독일문제가 이미 1945년 5월 8일 이후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그들은 -사민당 내 좌파들과는 달리, 또는 그들보다 더 분명하게- 독일 분단을 나치 독재의 전쟁과 학살에 대한 ‘정당한 징벌’로 인지하였다.<sup>20)</sup> 게다가 그들은 독

19) Daniel Friedrich Sturm, *Uneinig in die Einheit. Die Sozialdemokratie und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1989/90*(2006, Bonn)

20) 녹색당 내 중심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대서양주의자(Atlantiker)’ 분파의 대표 정치가 요슈카 피셔가 1987년 서베를린에서 행한 한 연설은 당시 녹색당 정치가들의 민족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독일문제는 1945년 5월 8일 이후 더 이상 열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두 번의 전쟁, 칠천만 명이 넘는 사망자들, ---, 아우슈비츠와 여타 절멸수용소에서의 민족살해 그리고 1945년 5월 8일 4대 열강 군대의 독일제국의 완전한 궤멸로 독일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Zwischen Wiedervereinigungssillusion und Nato-Austrittsfiktion, Rede von Joschka Fischer

일과 유럽의 평화 정착은 오히려 독일 분단을 국민국가적 방식으로 극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국가상태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블록해체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1989년 겨울에도 녹색당의 ‘탈민족’ 정치가들은 콜의 통일정책에 반대하며 동독의 개혁, 그것을 위한 서독 정부의 시급한 경제적 지원, 개혁된 동독의 정치적 주권 인정, 그리고 그것을 통한 유럽통합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과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1990년 2월 초에 들어서야 요슈카 피셔(Joschka Fischer)를 비롯한 ‘현실주의자들(Realos)’과 안트예 풀머(Antje Vollmer) 중심의 ‘출발(Aufbruch)’ 그룹은 동독 주민들이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통일지향의 현실에 떠밀려 그제서야 비로소 ‘생태 국가연합’안을 제시하며 교조적인 이(二)국가론과 단절했다. 그것은 동서독간 ‘민족 결합’(통일이 아니라!)을 수용하되 동독이 ‘서독의 시칠리’가 되지 않도록 “확장을 통한 부유함”이 아니라 “차이를 통한 부유함”의 원칙을 제기한 것이었다.<sup>21)</sup> 뒤늦게 그들은 연방주의적 정치 원리를 환기시키며 독-독간 결합과 유럽통합의 동시적 발전을 내세웠던 것이다.

애초 동독의 민주혁명을 주도했던 시민운동과 반체제 운동가들 또한 같은 시기에 유사한 구상을 통해 흡수 통일에 반대하며 이중적 국가연합에 의존하며 동독의 자생적, 독자적 발전을 보장하고 주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최초이자 최후의 자유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이 기본법 23조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지함으로써 동서독의 모든 탈민족 대안 구상들은 역사의 에피소드가 전락하고 말았다.

### 3) 독일통일과 탈민족주의자들의 한계

그런데 흔히 이해하듯 이 모든 과정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붕괴로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먼저 당시 탈민족 지향의 다양한 독일문제 해결책들이 정치적 의미를 잃은 것은 서독 콜 수상의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실용적이면서도 권력지향적이었던 통일정책의 추진 탓이다. 이미 콜은 한편으로는 11월 말 ‘10개조 통일강령’에서 단계적 방식의 국민국가적 통일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우파 민족보수주의자들과 뉴라이트 그룹들의 지지를 끌어냈을 뿐 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통합의 장기적 전망(“독일은 우리의 조국이고 유럽은 우리의 미래다”)을 그 나름으로 제시하고 군사동맹 문제를 아예 통일논의에서 일시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탈민족/초민족 지향의 독일문제 해결 주창자들의 예봉을 꺾어 버렸다. 이에 반해 동독의 반체제 운동가들은 민족문제의 존재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서독의 탈민족 좌파들은 동독 주민들의 현실적 민족 지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서독의 풍요에 대한 물질적 욕구의 기형적 발현쯤으로 보았고 새로운 공격적 민족주의로의 진화 가능성이라는 허수

---

zu den Grundsätzen einer neuen Deutschlandpolitik, gehalten am 20. November 1987 in der Urania Berlin, Archiv Grüne Gedächtnis(이하 AGG) 1337, p. 5; Protokoll der deutschlandpolitischen Debatte der Fraktion Die Grünen im Bundestag am 16. Juni 1984, AGG, B. II, 1. Nr. 2715.

21) Grüner Aufbruch 1/90, Ökologische Konföderation beider deutscher Staaten; Gemeinsamkeit in Autonomie, AGG, Die Grünen im Bundestag 1983-1990, Bd. II. 1: Deutsche Einheit-Umweltpolitik-Sozialpolitik, Antje Vollmer, “Tips für David. Plädoyer für eine ökologische Konföderation”, Frank Blohm & Wolfgang Herzberg ed., *Nichts wird mehr so sein, wie es war. Zur Zukunft der beiden deutschen Republiken*(Leipzig, 1990), pp. 117-125.

아버를 밀치느라 바쁘기만 했다. 또 독일 땅에서의 민족적 결속과 유럽대륙의 지역적 통합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 둘이 각각의 독자적 차원과 동력을 지닌 분리된 문제임을 보지 못했다. 탈민족 좌파들은 1980년대 내내 민족좌파들이 독일통일과 유럽평화정착의 이중적 과정으로서 제시했던 국가연합안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콜을 비롯한 우파 정치가들과는 달리- 1989년 가을/겨울에도 동독 내 민주화 운동과 민족 전망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다. 그들은 동서독 간 분단문제의 복합성과 민족적 과제의 현실정치적 역동성과 함의를 방기한 채 미래에 걸려 있는 유럽통합이라는 신기루에 의지하다가 결국 '기대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통일 국면을 빈손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뒤늦게 국가연합안에 매달렸지만 1990년 1월 중순 이후 국가연합은 이미 통일론이 아니라 반(反)통일론이 되었다. 그들의 탈민족 정치는 미래지향적 지평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반(反)민족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1989년 10월 말 고르바초프가 베를린에서 개혁에 주저하던 당시 동독 수상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를 질책하며 언급했던 "너무 늦게 오는 자는 삶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은 탈민족 정치가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말

전후 분단 독일에는 “좋은 의미의 독일적인 것은 탈독일적인 것(Gut deutsch sein heißt sich entdeutschen)”<sup>22)</sup>이라는 니체의 이른 경구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주목할 것은 비판적 지식인들과 여론사회로 하여금 ‘독일적인 것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추동한 것은 애초부터 서방통합을 통한 서독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정치문화의 서구화에 대한 자의식이 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아데나워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그 연방공화국 자의식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식의 이데올로기화한 체제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전통적 민족사의 단절과 반성에 기초해 있었다는 점에서 서독의 탈민족론자들은 사실 ‘아데나워와는 다른 자식들’이었다.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론에서 보듯 보편주의적 규범과 가치는 민족 또는 국가 특수적 경험과 정체성을 매개로 확보되는 것이었다. 물론 흔히 이해하듯 서독의 탈민족적 지향과 정체성이 처음부터 나치즘의 파국적 결과로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독의 경우 탈민족론자들은 스스로 세워둔 ‘민족’이라는 허수아비와 맥락없이 싸운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부터 현실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과거사 변호론적인 ‘재-민족화’ 조류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비판적인 탈민족 역사의식을 채워나갔다.

아울러 이 탈민족론자들이 동독의 국가적 인정과 체제 존중을 누구보다 더 앞서 그리고 철저히 주장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상대의 인정을 통한 자기존재의 인정의 과정을 통해 서독의 탈민족론은 서독의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의 존재를 확인해나갔다. 동서독 간 교류협력은 민족 간 유대를 만들어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질성을 확인하며 자기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양 체제 내에서 발견되는 양상은 균질적이지도 균형적이지도 않았다. 서독 탈민족론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동독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동독정체성이 아니라 ‘독일정체성’을 찾아 나

22)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I』, 제 1장 여러 가지 의견과 잠언, 323절

서고 있었다. 통일 전과 통일과정에서의 서독 탈민족론자들의 비극은 민족정체성을 넘어선 그 동서독 정체성 간의 비균질성과 불균형을 그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한편 통일 후 동독주민들의 비극은, 서독 탈민족론자들이 진단한대로 서독에서는 이미 '독일정체성'이 아니라 서독정체성이 더 강했다는 사실이다.

탈민족론은 애초 하나의 단일한 집합적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부과나 강제적 지속에 대한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현실로 존재하는 다양한 지향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탈민족론의 의의라면 그것은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초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문제는 분단 일국적, 민족적, 초민족적 정체성의 공존을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한 정치공동체 내 다양한 주체'들'의 서로 다른 정체성'들'의 현실적 형성 과정과 양상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끝)

# 한국 민족공동체의 형성과정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 1. 민족공동체의 개념

민족이란 “언어의 공동, 지역의 공동, 혈연의 공동, 문화의 공동, 정치의 공동, 경제생활의 공동, 역사의 공동”을 객관적 요소로 하여 공고히 결합되고, 그 기초위에서 주관적 요소인 민족의식이 형성되어 더욱 공고하게 결합된 역사적 범주의 인간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족은 사회학적으로는 結社體가 아니라 共同體(Gemeinschaft)이다. 민족은 넓은 의미로 문화공동체(Kulturgemeinschaft)의 특성과 생활공동체(Lebensgemeinschaft)의 성격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역사적 범주의 인간공동체”라 하여 “역사적 범주”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인류와 더불어 영구불멸의 실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회학적으로는 스펜서(Herbert Spencer)와 그 후계 인류학파에 의하여, 인류사회의 진화과정에서 수많은 “가족”(families)이 결합하여 “씨족”(clans)을 형성하고, 수많은 씨족들이 결합하여 “부족”(tribes)을 형성하며, 수많은 부족들이 결합하여 “민족”(nations)을 형성함이 밝혀졌다. 인류는 민족형성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문명”(civilization)의 단계가 시작된다는 학설이 정립되어 보편화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민족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들에 대해서는 서구사회학의 개념처럼 근대의 민족만을 “민족”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적합도가 매우 낮다. 적어도 민족을 ①원민족(proto-nation) ②전근대민족(premodern nation) ③근대민족(modern nation) ④신민족(new-nation, nation in the making; 남태평양 지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형성 중의 신민족) 등으로 세분해서 개념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민족일지라도 조건 여하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소멸될 수도 있다. 예컨대, 만주족은 1911년까지 중국을 지배하며 통치했던 역사가 매우 오래고 막강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00년도 채 안되었는데 거의 소멸되어가서 극소수의 소수민족으로 되었다.

한국민족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동화정책”이라는 미명하의 “한국민족말살·소멸정책”으로 언어·문자·국토·성명·민족문화·정치주권·민족경제·민족역사와 민족의식의 소멸·말살정책이 강행되어, 민족소멸의 위험 속에서 도탄에 빠져 더욱 고통 받게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몇 십년 더 계속되었으면 한국민족은 거의 소멸·말살되었을 터인데, 천만 다행하게도 1945년 8·15 민족해방으로 한국민족은 다시 소생하게 된 것이다.

## 2. 한국 원민족의 형성

한국 원민족이 최초로 형성된 것은 고조선 고대국가의 형성 시기이다. 고조선은 처음에 B.C. 30세기~B.C. 24세기 경 ①“한”부족 ②“맥”부족 ③“예”부족의 3부족이 연맹하여 형성하였다.

“한”부족은 원래 한반도 한강 유역에서 기원하여, 이미 신석기시대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벼농사를 시작하여 농경단계에 들어갔으며, 남성 군장의 지휘를 받는 군장사회(chiefdom)를 형성한 부계사회의 선진적 부족이었다. “한”부족은 천손의식을 갖고 태양을 숭배했으며, 『후한서』에동이 9족 가운데 “陽族”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부족이었다.

“맥”부족은 원래 백랑수(대릉하)유역에서 기원하여 농·목 생활을 하다가 따뜻한 동남쪽으로 이동한 곰토텐부족이었고, 여신을 숭배하였다. “맥”부족은 옥장식 문화를 크게 발전시킨 부족이었고, 부족장은 여성부족장으로서 모계사회의 말기에 있었다. 신석기시대 말기 요서지방 紅山문화유적은 “맥”족이 만든 유적 유물이었다. 맥부족의 홍산문화는 고조선 개국에 흡수되었다.

“예”부족은 원래 예강(지금의 눈강)유역에서 기원하여, 범(호랑이)을 신처럼 숭배하는 범토텐 부족이었다. 처음에는 목축을 주로하여 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한”부족의 군장세력은 한반도의 남·북동·서로 분화되어 나가다가, 북쪽으로 이동한 “한”부족 주류의 하나가 대동강 유역에서 지배세력으로 정착했을 때, 더 나은 정착지를 찾아 천천히 이동해 들어온 “맥”족 및 “예”족과 대동강 상류부근에서 접촉하게 되었다. 3부족은 가장 먼저 농경사회에 들어간 “한”부족을 중심으로 B.C. 30세기~B.C. 24세기에 부족연맹을 형성하였다.

이 때 부족연맹의 방식은 “한”족에서 왕을 내고, “맥”족에서 왕비를 내는 혼인동맹에 의거하였다. “한”족에서 왕을 내었기 때문에 후에 고조선의 통치를 받은 모든 후국 부족들은 왕을 “han” 또는 “gahan”이라고 불렀다. 고조선에서는 지방장관이나 제후를 “ga”로 불렀기 때문에, “ga·han”이 “gahan”(gahn, Kahn)이 된 것이었다.

“한”부족 군장과 “맥”부족 군장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자, 이를 “단군”이라는 이름의 제왕으로 추대하고, “조선”이름의 국가를 개국하였다. “예”부족은 고조선 국가에 연맹하되, “예”족 군장이 제후·소군주처럼 자율권을 갖고 스스로 자치하는 후국으로 연맹에 참가하였다.

단군은 고조선 개국과 동시에 수도를 “아사달”로 정했는데, 첫 “아사달”은 대동강 중·상류 유역의 “강동군”으로 비정된다. 고조선은 처음 1~3개의 고을로 구성된 작은 “성읍국가”로 개국했으나, “맥”족과 “예”족의 도움으로 원래의 그들 지역으로 비교적 빠르게 영역이 확대되었고,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를 2차로 요동의 개평현 지역, 3차로 요서의 조양 지역으로 천도한 흔적이 있다.

『삼국유사』는 고조선이 2회 천도했다가 최후로 다시 “아사달”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고조선은 ①전조선 ②후조선 ③위만조선의 3왕조를 거치면서 약 2천년간 존속하였다. 그 사이에 고조선의 구성 주민들은 “한”·“맥”·“예”족은 물론이요, 고조선 안에 포함되어 그 통치를 직접 받은 부족들은 모두 언어의 공동, 문화의 공동, 영역의 공동, 신앙의 공동, 정치의 공동 등이 형성되어 “한국 원민족”이 형성되었다.

원래 전조선의 최성기에는 한반도와 만주의 요동 및 요서 일대가, 고조선의 통치 아래 들어갔었으나, 후조선 시기인 B.C. 284년 경 고중국계 燕의 장수 秦開의 군대의 침략을 받고 요서지

방의 광대한 영토를 빼앗겼다가 수복하였다. 뒤이어 고중국에서 秦이 고중국계 소왕국들을 통일하고 B.C. 214년경 만리장성을 수축하더니, 다시 후조선을 공격하여 燕에게서 수복한 땅을 빼앗겨서 후조선의 영역은 축소되었다.

이 무렵 燕이 빼앗아간 고조선 지역에 살던 고조선 유민 衛滿이 무리를 이끌고 망명해 왔으므로 서변 방비를 맡겼더니, B.C. 194년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후조선 왕조를 멸망시키고, “위만조선” 왕조를 수립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고조선 후국들이 대부분 독립했으므로 위만조선의 영역은 더욱 축소되었다.

진이 망하고 漢이 중국을 통일하자 漢武帝가 18만의 대군을 이끌고 B.C. 110년 위만조선을 침공하였다. 위만조선은 용감히 대항해 싸우다가 B.C. 108년에 멸망하였다. 한무제는 위만조선의 영역에 漢四郡을 설치하였다.

고조선은 B.C. 3세기부터 B.C. 108년까지 燕·秦·漢의 연이은 무력 침략을 받고 200여년간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중과부족으로 패전하여 위만조선 때에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漢의 지배를 거부한 고조선 국가와 고조선 문명권이 속했던 고조선 원민족과 다수의 후국들이 영토를 빼앗기고 새 정착지를 찾아 이동하게 되어 B.C. 2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민족대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고조선 역사에서 전조선 왕조가 후조선으로 교체되었을 때, 종래 후국이었던 부여·구려·辰·東胡·山戎 등 다수의 후국들이 차례로 독립해 나가 후조선의 직접통치지역이 축소되었다. 위만조선이 B.C. 108년 멸망하자 한반도와 요동지역에서는 부여·句麗·辰 등만 남았고, 요서지역에서는 종래의 후국 동호·산융·실위·철륵 등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고조선은 해체되고 위만조선의 영역은 한사군이 되었으나, 독립한 후국 가운데서 “구려”가 “고구려”로 크게 강성발전하면서 위만조선의 옛 영토에서 고중국 한 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요동의 전부와 요서의 대부분을 수복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고조선의 성립과 해체의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고조선에서는 한국어어와 문화를 비롯하여 민족 구성 요소의 공동성이 확립되고 융합되어 한국민족의 “원민족”이 확고부동하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한국민족의 “원민족”을 잊거나 잃어버리는 것이다.

### 3. 한국 전근대민족의 형성과 발전

위만조선이 멸망하자 고조선의 후국이었던 독립한 扶餘에서 高朱蒙 세력이 역시 고조선 후국이었던 句麗로 들어가 B.C. 1세기(일설 B.C. 37년)에 高句麗를 세우고 실력을 길러 매우 강성한 국가가 되었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영역을 회복하려고 漢四郡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마침내 A.D. 313년에 마지막 남은 낙랑군을 몰아냄으로써 위만조선의 영역을 모두 회복했을 뿐 아니라 부여까지도 통합하여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고조선과 부여를 계승하여 종래 고조선의 요동영역 안에 있던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였다.

고조선 후국이었던 辰은 후조선 멸망 때 후조선 準王이 남하해 들어가 馬韓을 세우자, 마

한·진한·변한으로 분화되었다.

진한에서는 朴赫居世가 시조가 되어 B.C. 57년에 新羅가 건국되었다. 신라는 처음에는 사로의 6촌 연합으로 출발했으나 결국 진한 영역 전부를 통합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마한에서는 고구려가 부여를 병합할 때 남하한 부여족 일부가 十濟 소국을 세웠다가 濫祚세력이 B.C. 18년경에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여 百濟를 건국하였다. 백제는 결국 마한 지역을 모두 통합하여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변한에서는 부여에서 내려온 왕족과 加 귀족세력이 12개 변한 소국을 통합 재분할해서 6개 加羅연맹국을 수립하였다. 변한의 초기 왕족은 후조선왕족이었으나, 6가라의 지배자들은 부여족 지배층이었다.

B.C. 1세기 경에 부여·고구려·양맥 세력의 일부가 남하하면서 제주도에 耽羅國을 수립하였다. 같은 시기에 울릉도에는 우산국이 세워졌다.

고구려·백제·신라의 3국은 강성한 큰 나라였으므로 각각 자기들의 주도 아래 한국 전근대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 때 그들이 동일한 한국 전근대민족이었다는 증거는 무엇보다도 고구려·신라·백제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사실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전근대민족의 통일은 신라에 의하여 일단 실행되었다.

고구려는 가장 강대했으나 서북방에서 수·당 등 중국계열 왕조의 무력침략에 대항하기에 집중하느라고, 남쪽의 신라 및 백제와의 통일에는 힘을 집중할 수 없었다.

반면에 신라는 A.D. 512년에 于山國을 병합하고, A.D. 532년에는 금관가라(김해 지방)를 병합했으며, A.D. 562년에는 大加羅(고령지방)와 그 밖의 가라국들을 병합하였다.

신라는 이어서 백제의 병합을 적극 추구하였다. 고구려는 강성하므로 신라가 단독 병합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백제도 단독으로는 병합 통일할 실력이 부족함을 안 신라의 金春秋 등은 唐과 신라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붕괴시켜 백제영토는 신라가 소유하고 고구려 영토는 唐이 소유하는 구도의 군사동맹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唐은 강성한 고구려만 멸망시켜 병탄하면 약한 신라와 백제는 뒤이어 병탄되어 만주와 한반도가 唐에게 “천하통일”된다고 계산하고, 처음에는 단독으로 고구려 침략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당의 고구려 침략이 연전연패로 끝나자, 당은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고구려를 서북과 동남에서 협공하여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마저도 병합하여 “천하통일”을 달성하는 전략을 취하여, 야심을 감추고 신라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A.D. 660년 당의 蘇定方이 지휘하는 13만명의 당나라 군대와 김유신이 지휘하는 5만명의 신라군이 백제 수도 사비성을 향해 공격하였다.

백제는 장군 階伯이 지휘하는 5천명의 결사대를 편성하여 대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계백의 백제 결사대는 중과부적으로 대부분 전사하고 백제는 멸망하였다. 백제에서는 자발적 독립군이 출현하여 道琛과 福信을 지도자로 하고, 일본에 가 있던 왕자 豊을 추대하여 한 때 신라군을 대파하고 세력이 크게 떨쳤다. 그러나 내분이 일어나서 복신은 도침을 죽이고, 왕자 풍은 복신을 죽였으며, 풍이 불러온 倭의 邪馬台 후원군도 A.D. 667년 白村江 전투에서 패전하였다.

백제를 멸망시키자, A.D. 661년 羅唐 연합군이 대병력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나당 연합군은 평양성을 포위하고 6개월 이상 공격했으나, 淵蓋蘇文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은 이를 잘 방어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나라 선봉대를 전멸시켜 승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 도중에 A.D. 665년 연개소문이 병사하자, 그의 아들들과 집권층 내부에서 극심한 권력투쟁이 일어나 사태가 급변하였다. 연개소문의 맏아들 男生은 권력투쟁에서 동생 男建·男産에게 패하자 당에 투항해 버렸다. 연개소문의 아우도 권력투쟁에서 패하자 12성을 갖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이에 당은 李世勣의 대병력이 반역자 男生을 향도로 하여 신라군과 연합해서 왕검성을 더욱 치열하게 공격하였다. 고구려의 보장왕은 1년간을 저항하여 싸우다가, 지방군이 견재함에도 불구하고, 항복하기로 결심하여 男産을 보내서 항복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男建이 불복하여 저항이 계속되다가 왕의 신임하는 군사책임자 승려 信誠이 당군과 내통하여 비밀리에 성문을 열어 주어 버렸다. 이에 고구려는 8년간의 저항 끝에 반역자들의 배신 활동이 주원인의 하나가 되어 A.D. 668년에 멸망하였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자, 唐은 공주에 熊津都督府를 두어 구백제지역을 직접 통치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A.D. 663년에 일방적으로 신라에 鷄林大都督府라는 관제를 통보하면서 신라 文武王을 계림대도독에 임명하였다. 이것은 당이 구백제지역을 직할식민지로, 신라를 반식민지 종속국으로 개편하려는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A.D. 668년 평양(왕검성)에 安東都護府(도독부 보다 상위의 기구)를 두었다.

이것은 당의 안동도호부가 구 고구려지역을 통치함과 동시에 신라인 鷄林大都督府와 구백제지역의 熊津都督府를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어 고구려·백제·신라(즉 한국 전근대민족)를 사실상 唐의 통치지역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민족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는 매우 위험한 절대절명의 순간의 하나였다. 한국원민족이 전근대민족 형성기에 唐의 식민지와 반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빠진 것이었다.

신라는 뒤늦게 이 큰 위험을 깨닫고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신라는 투항해 온 고구려 보장왕의 서자 安勝을 A.D. 670년에 “고구려왕”에 봉한 후 고구려 독립군과 연계하여 唐軍을 공격케 하는 한편, 신라군 자신도 당을 몰아내기 위해 웅진도독부의 당군을 공격하였다.

당나라 군대의 군정 아래 있던 구백제인들은 당군에 대항하여 신라군을 도왔다. 백제 독립군의 잔여세력들도 신라군을 도우며 당군에 대항하고 당군을 공격하였다. 신라군은 백제유민들과 백제독립군의 적극적 도움을 받으며, A.D. 671년 石城의 결전에서도 당군 5천명을 전사시키고 대승을 거두었고, 마침내 웅진도독부가 설치되어 있는 泗泚城을 함락시켜 점령해서, 신라의 지방 관제로서 所夫里州를 설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백제유민들과 백제독립군 세력이 당과 신라가 전쟁에 들어갔을 때,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주역이었지만, 백제유민과 독립군이 언어가 동일한 신라와 협력하고 언어가 전혀 다른 민족인 당군에 대항하여 싸운 것은 삼국시대에 한국 전근대민족이 견고하게 형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고구려 독립군의 활동은 더욱 격렬하였다. 왕검성(평양)이 함락되어 보장왕이 생포되고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견재한 지방 城들에서는 승복하지 않고 격렬한 무장항쟁을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大兄 劔牟씨가 지휘하는 고구려 독립군은 평양성 부근까지 진출하여 끊임 없이 당군을 공격하고 패전시켰다.

이에 견디지 못한 당은 A.D. 668년 안동도호부를 평양으로부터 압록강 건너 요동지역의 遼東城(遼陽)으로 옮겼다. 검모잠의 고구려 독립군은 A.D. 669년 마침내 평양을 탈환 수복하였다. 당의 대군이 들어오자 남쪽 재령지방으로 내려가서 신라에 투항한 安勝을 추대하여 고구려를 재건하려 했으나, 안승은 검모잠을 의심하여 죽이고 다시 신라에 투항함으로써, 검모잠의 고구려 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고구려 유민들의 독립운동은 만주의 城들에서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견디지 못한 당은 A.D. 677년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에서 다시 후퇴하여 新城(撫順)으로 옮기었다.

고구려의 지방 城에 있던 장군 大祚榮은 고구려유민들과 일부 말갈족을 거느리고 당군에 항쟁하다가 A.D. 698년 東牟山에 수도를 정하고 渤海를 건국하였다.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동북방면으로는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회복하였다.

신라의 “통일”에 의하여 고조선 원민족의 중심갈래인 고구려·백제·신라·가라는 하나로 통일되어 한국민족의 “전근대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신라는 A.D. 679년에 탐라국에도 관리를 보내어 통일을 알리고 “통일신라”에 복속시켰다.

그러나 신라통일은 한국 전근대민족 형성에 다음의 몇 가지 큰 문제를 남겼다.

(ㄱ) 한국 전근대민족의 영토(지역의 공동)가 대동강 이남과 원산만 이남으로 축소되고, 만주와 요동·요서의 광대한 지역이 한국 전근대민족의 “지역의 공동”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려시대에 평안도의 서해안 의주까지를 수복하고, 조선왕조 세종 때에 와서야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한반도 전부를 수복하였다.

(ㄴ) 고구려의 유민을 전근대민족 형성에 다 포함하지 못하였다. 고구려가 멸망당하자 고구려 유민의 일부는 唐의 지배를 거부하고 언어와 문화가 공동인 통일신라 영토로 피난해서 대동강이 남, 예성강유역, 한강 이북까지 내려와 정착했으며, 松岳(지금의 개성)은 고구려 피난민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유민의 다른 일부는 압록강 이북에 남아 있다가 고구려 유장 대조영을 도와 발해 건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후에 발해 멸망 때 발해의 왕족·귀족들은 고려에 들어왔지만 발해의 백성들은 다수가 만주 지역에 남게 되어 결국 한국민족에 다 들어오지 못하였다.

(ㄷ) 구 고구려의 영토에 남아있던 말갈·거란·여진 등 후에 만주족이 된 부족들을 한국민족의 형성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만주족”으로 분립하게 작용하였다. 말갈족이 고구려유민의 지배를 받으면서까지 唐으로부터 분리하여 “발해”의 신민이 된 것은, 만일 만주의 영토를 잃지 않았으면 이들이 결국 한국의 전근대민족에 포함되어 동화 융합되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만주족은 그 후 遼·金·淸 등의 대제국을 수립하였다. 만주족은 古朝鮮祖語를 공통조어로 한 언어를 갖고 스스로 자기들을 “단군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으며, 한국민족과는 형제관계의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기록하였다.

통일신라가 쇠약해졌을 때 궁예가 “후고구려”를 개창하자 고구려유민들의 중심지인 松岳의 주민들은 모두 이를 지지 성원하였다. 그러나 궁예가 국호를 “마진”이라고 고치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며, 다시 국호를 “태봉”으로 고치는 등 후고구려가 아님을 명백히 하자, 고구려유민 후예세력들은 王建을 추대하여 “고려”(고구려와 동일)를 건국하고 “송악”을 수도로 정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후백제”도 건국되어 “후삼국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후삼국의 분립은 고조선원민족의 후예들의 “전근대민족”형성의 도도한 역사 대세에 거슬리는 반작용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래갈 수는 없는 것이었으며, 조만간 강자에 의해 다시 통일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를 통일하여 한국민족의 “전근대민족” 형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한국민족의 “전근대민족”은 고조선 해체 후 수십 개의 분열된 소왕국들을 ① 3국으로 통일한 삼국시대를 형성 제1기로 하고 ② 신라의 삼국 통일을 제2기로 하여, ③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제3기로 해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민족의 “전근대민족”은 ① 3국시대 ②통일신라시대 ③ 고려시대를 거쳐 크게 형성 발전되었으며, ④ 조선왕조 시대에도 전근대민족으로 발전하였다. 1592~98년 “임진왜란”의 도요토미 일본 침략군이 조선을 침략하여 한국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양반의 압제 하에 시달리던 평민과 노비층은 이 기회에 편승하여 조선왕조 양반체제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왜군 격퇴에 분투하였다. 이것은 서양 중세역사에서 다른 나라 침략군이 들어오면 이에 편승하여 농노들이나 피압박신분이 신분해방의 봉기를 일으킨 유형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침략군의 잔인한 공격 앞에서 양반관료들은 자기 가족만 데리고 도주하기에 급급했는데, 조선왕조의 상민(평민)과 노비들은 애국적 양반유생이 나오면 그에 협력하고 그러한 양반이 없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편성하여 관군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의병이 용감히 싸워 조선왕조와 한국민족을 구하였다. 이것은 조선왕조시대에 한국의 “전근대민족”이 형성 발전된 명백한 증거의 하나가 될 것이다.

#### 4. 한국 “근대민족”의 형성과 수난

한국 전근대민족과 조선왕조는 19세기 중엽 西勢東漸의 추세 속에서 일대 민족적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다. 선진 자본주의 열강은 저렴한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의 확대를 추구하여 개항·개국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利權(concession)들을 강요했으며, 조선이 약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아예 조선을 정복하여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전락시키려고 하였다.

우선 일본은 1856년경부터 “征韓論”을 정립하여 한국을 침략 정복해서 “식민지”화하여 일본의 영토 확장과 국부 증강의 방편으로 삼자는 정책이 입안되었다. 1868년에 수립된 일본의 명치유신 정부는 1869년 각료회의에서 정한론을 통과시켜 채택하였다. 뒤에 일본 명치유신파들이 1871~73년 구미시찰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부국강병의 근대국가 수립을 먼저하고 “정한”은 서양열강의 한 나라에라도 맞설 수 있을 때 다음에 하기로 선후가 바뀌어졌지만, “정한론”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실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연기된 것뿐이었다. 일본의 “정한론”은 “한국을 정복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이므로, 한국민족에게는 심각한 민족적 위기를 조성한, 매우 큰 도전이었다.

둘째, 러시아가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얼지 않는 軍港을 설치하려고 “南進정책”을 추구하여 발칸반도에 진출하려다가 크림리아 전쟁(1853-56)에 패전하자, 청국과 1860년 북경조약을 체결해서 “연해주”를 얻은 다음 해군기지항 블라디보스톡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 항구도

겨울에 몇 개월 결방하므로, 전혀 얼지 않는 해군기지를 부산·진해·마산 또는 한반도 남해안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조선왕조에 대해 강력한 압력과 남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한국민족과 조선왕국이 제정러시아의 종속국 상태에 떨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셋째, 중국(청)이 종래 허례에 불과했던 “조공의례”를 근거로 삼아 갑자기 “宗主權”을 주장하면서 조선은 自主之邦이 아니라 중국의 強國이라고 주장하고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국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참으로 심각한 도전이었다. 이에 한국민족은 자주독립국가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라도 전근대민족을 “근대민족”으로 전화·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여기서 “전근대민족의 근대민족으로의 전화 발전”이라 함은 이미 전근대적 민족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족 공동체 구성요소 중에서 전근대적 요소를 폐지하거나 근대적으로 개혁함은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전근대민족으로부터 “근대민족”으로의 변혁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신분제의 폐지이다. 전근대민족 내부에서 근대민족으로의 전화 발전을 저지해 오던 중세적 신분제도가 폐지되어,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원칙이 실행되면 전근대 민족 성원의 장벽 없는 폭넓고 깊은 사회적 소통과 더욱 공고한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서 “근대민족”이 형성된다. 중세적 사회신분제 폐지가 근대민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둘째, 자본주의의 발흥과 국민경제의 성립이다.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공장제도의 대량생산과 자본주의 경제조직이 수립되고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일시켜 산업 자본주의가 성립 발전하면 “근대민족” 형성을 크게 촉진한다.

셋째, 민주제도의 수립과 국민국가의 성립이다. 전근대민족의 성원이 시민권과 국민주권 및 참정권을 갖고 국가가 국민국가로 발전하면 전근대민족도 근대민족으로 전화 발전하게 된다.

넷째, 국민교육의 보급과 민중의 문화적 발전이다. 성원들이 보편적 국민교육을 받고 민족사와 민족문화 등 자기 민족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각종 과학적 지식을 갖게 되면 성원들의 근대민족으로 결합이 더욱 촉진된다.

다섯째, 민족의식의 고양과 민족주의의 발흥이다. 고양된 민족의식과 근대민족주의의 형성은 전근대민족을 “근대민족”으로 변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세기 중엽 한국민족의 최대 위기 속에서 “근대민족”의 형성을 성취한 것은 개화파의 개화운동과 동학의 농민혁명운동의 성과였다. 초기개화파들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모든 부분의 대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집권은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아 실패하였다.

1894년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서 수 천 년 묵어 온 사회신분제도의 폐지를 아래로부터 스스로 실행해 나가면서 근대국가로의 길을 완강하게 저지하고 있던 전근대적 구체제(ancien regime)를 붕괴시켜 버렸다. 이 기초 위에서 온건개화파 정부가 위로부터 법제적으로 사회신분제를 폐지하고, 정부와 국가기구를 근대체제로 제도화하였다. 근대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언문”을 國文으로 격상시켜 국한문혼용제도를 수립하였다.

1896~98년에는 개화파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운동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하

고, 의회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시민권 제정과 국민의 자발적 정치활동이 크게 발전하였다.

한국의 “근대민족”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화기”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정한론”을 몰래 실천해나가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가 정한외교와 침략정책으로 한국 근대민족의 근대자위무력과 산업자본주의체제 수립 부문은 극력저지하고, 이를 돌파할 대한제국 정부의 능력도 부족하여, 한국 “근대민족”의 실력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는 “정한”의 목적으로 1904~1905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자, 1905년 11월 한국을 “보호국”이라는 이름의 수식민지 상태에 떨어뜨려 “통감부”를 설치해 지배하고 한국민족을 압제하였다.

한국 근대민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의병무장항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화과가 선도하는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의병운동은 한국인들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사랑이 최고도로 표현된 애국운동이었으며, 일제의 완전식민지로의 병탄을 약 3년간 지연시켰다.

애국계몽운동은 한국 근대민족의 실력을 모든 부분에서 크게 배양하여,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식민지로 강점되어 나가는 최후의 5년을 도리어 “대각성의 시대”, “대분발의 시대”로 전환시키고 대대적인 “민족역량 증강의 시대”로 역전시켰다.

특히 한말 구국교육운동의 대성공은 수십만 명의 청소년 세세대에게 신지식과 함께 철저한 애국주의 교육을 실행하여, 한국민족의 미래의 국권회복과 새 독립 발전을 스스로 기약하였다.

## 5. 일제의 한국민족 말살·소멸 정책과 한국민족의 광복·분단

일제는 한국을 완전식민지로 강점한 후, 식민지정책을 “사회경제적 수탈”과 “한국민족 말살정책”을 양대 골간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수탈은 한국을 ①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한 식량공급지로 개편하고, ② 원료공급지로 만들며, ③ 일본공업제품의 독점적 상품시장으로 개편하고, ④ 일본의 자본수출에 따른 식민지 초과이윤의 수탈지로 만들며, ⑤ 저렴한 노동력 공급지로 개편하고, ⑥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兵站기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⑦ 백주에 식량과 물자를 지정하여 강탈해가는 이른바 “공출제도”정책, ⑧ 노동력의 강제동원인 이른바 “징용”정책, ⑨ 12~40세 이하의 배우자 없는 한국여성에 대한 여자정신대·중군위안부의 징발정책 등을 강제 집행하였다.

이 가운데 ①~⑥은 서구 제국주의를 포함한 모든 제국주의자들의 공통의 수탈정책이었고, ⑦~⑩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여기에 더 추가한 극악한 수탈정책이었다.

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同化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민족 말살·소멸정책”을 강제 집행하였다. 다른 민족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민족에게 “동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민족 말살정책일 뿐 아니라, 일제의 이른바 “동화”정책은 한국민족을 일본민족과 대등하게 “동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등과 차별을 두어서 민족으로서의 “한국민족”은 지구상에서 소멸시키고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붙어있어 한반도에 거주하는 “조선정”은 일본제국과 일본민족에게 예속시켜

차별받는 식민지 노예적 천민층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민족이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언어·지역·혈연·문화·정치·경제생활·역사의 공동성으로 공고히 결합하고 그 기초위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공고히 결합된 역사적 범주의 인간 공동체”로서, 이것이 말살·소멸되면 민족도 말살·소멸되는 것이다.

일제는 1910년 8월 무력으로 ① 한국의 “지역”(국토)을 빼앗고 ② 정치(주권)의 공동을 소멸시켰으며 ③ 경제생활을 예측시켜 착취하였다.

일제는 ④ 한국어(민족어)와 한국문자(한글) 말살·소멸 정책을 강행하였다. 일제는 1910년부터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한국어”를 박해하다가 1937년부터는 농민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을 엄금하고 일본어만 전용하도록 강제하였다. 농민들의 우편물 발송 때나 면사무소 서류 제출 때에 일본어를 전용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지불식간에 한국어를 한마디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질과 벌칙을 가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은 반드시 일본인 교사로 담당케하였다. 1940년까지는 한국어 신문·잡지들은 모두 폐간시켰다. 1942년에는 한국어의 씨앗까지 없애야 한다고 연구단체인 “조선어학회”까지 강제해산시키고 학자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또한 일제는 ⑤ 한국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강행하였다. 일제는 한국의 고유하고 독특한 민족문화와 문화재를 조사해서, 한국민족문화는 “열등한” 것이라고 거짓을 교육 홍보하여 금지 소멸시키려고 하고, 귀중한 문화재들은 파괴하거나 일본으로 약탈해 갔다.

일제는 ⑥ 한국성명 말살정책을 “創氏改名”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실시해서, “혈연” 공동의식의 소멸과 개인의 민족성 자체도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일제는 ⑦ 한국역사 왜곡·말살 정책을 강행하였다. 한국역사에서 고조선은 신화에 불과하고, 한국사는 북방은 중국 식민지 漢四郡과 남방은 일본식민지 任那日本府의 종속적 상태에서 시작한 他律性和 停滯性的 역사라고 교육하고 홍보하였다. 일제는 한국역사의 자랑스러운 측면은 모두 말살하고 수치스러운 측면은 침소봉대해서, 한국역사를 한국민족은 당연히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열등한 민족이라는 거짓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일제 어용사자들은 이러한 목적의 한국역사 왜곡에 충실히 복무하였다.

또한 일제는 ⑧ 한국인의 “민족의식” 소멸정책을 강행하였다.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민족”임을 자각하여 “민족의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조사하여 소멸시키도록 하였다.

일제는 ⑨ “일본숭배사상” 주입정책을 강행하였다. 일본의 과장 날조된 역사와 모든 “일본식” 문화를 최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숭배하도록 강제 교육하고 선전하였다.

또한 일제는 ⑩ 일본 종교 신앙 정책을 강제하였다. 한국인도 집집마다 일본神을 모신 가미다나(神棚)를 만들어 세워 매일 아침 여기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일제는 한반도 전국 각지의 구렁에 神宮이나 神社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일제는 ⑪ 한국인이 일본“왕”과 일본의 臣民임을 강제 복창하고 맹세케 하는 의식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1937년부터는 한국인들에게 매일 일본 왕과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해 최경례를 하는 소위 “동방요배”라는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1937년부터는 “황국신민의 서사”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인들에게 한국인은 일본과 일본 “천황”의 臣民으로서 충성을 다 받치겠다는 맹세를 큰 소리로 복창하고 다짐하도록 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민족말살·소멸정책은 서양제국주의에는 없었던 일본제국주의의 독특한 식민지 정책이었으며, 이 때문에 한국민족은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다. 또 이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세계 각국 제국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반인간적인 극악한 제국주의였다.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을 근대화정책·개발정책·시혜정책이라고 강변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한국민족은 극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 아래서 36년간 민족말살·소멸의 위협 속에 빠져 온갖 탄압과 수탈을 당하면서 완전히 무권리한 상태로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1945년 8월 해방과 광복을 맞은 것이다.

한국민족은 한국독립운동과 연합군의 승리로 1945년 8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자유와 해방·광복을 맞았으나, 일제 식민지강점의 여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의 연합국은 한국을 일제식민지였던 전리품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서로 자기의 권익을 한국에 심고 넓히려고 하여, 결국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에서 한반도분할을 약속하고, 일제 항복직전인 1945년 8월 13일 극비리에 미·소 양국 수뇌 사이에 북위 38도선 분할 군정이 확정되었다. 한국민족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

이에 1945년 8월 15일 한국민족의 해방과 광복은 38도선 남북분단이라는 멍에를 동반해 찾아 왔으며, 한국민족은 다시 “민족통일”의 새 과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 ■ 차 례 ■

<b>박찬승</b> (한양대 사학과) “탈식민, 해방과 ‘민족’ ‘민족주의’ 담론” .....	1
<b>박명림</b> (연세대학교) “한국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역사적 이론적 고찰: 거시역사적 해석과 미시분석적 접근의 결합을 중심으로” .....	23
<b>김성보</b> (연세대학교, 한국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 형성과 민족 정체성” .....	45
<b>김귀옥</b> (한성대 교양학부, 사회학) “월남민, 소수자, 그리고 민족정체성” .....	55
<b>윤건차</b> (카나가와대) “재일과 민족” .....	71
<b>박광성</b> (중앙민족대학교, 중국 북경)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	85
<b>정준영</b> (방송통신대) “스포츠와 민족정체성: 월드컵의 사회사” .....	93
<b>박준규</b> (인류학박사, 전남대)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족경계 넘나들기” .....	95
<b>안창모</b>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남과 북의 건축문화와 민족정체성 - 전통건축과 민족건축을 중심으로 -” .....	127
<b>박종일</b>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민족주의 담론과 ‘내부배제(exclusion from inside)’의 논리: ‘재외동포법’ 논쟁과 ‘지역주의’ 논쟁의 재해석“ .....	147
<b>이철우</b> (연세대) · <b>이호택</b> (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	167
<b>이동기</b> (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	207



# 탈식민, 해방과 ‘민족’ ‘민족주의’ 담론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 1.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민족’문제, ‘민족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탈민족주의론, 동아시아공동체론, 대한민국 애국주의론 등은 그러한 논쟁을 이끌고 있는 담론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국제적으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 한중일 삼국간의 역사 및 영토 분쟁, 남북한 관계 및 북미관계의 급격한 변동 등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외국인 100만 시대의 도래, 정치적 민주화의 정착과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과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의 해소 등이 있다.

이 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논쟁구도의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해방 직후의 민족, 민족주의 담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민족’을 둘러싼 담론은 일제에 의해 해체될 뻔하였던 ‘민족’을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민족’ 담론은 이에서 머물 수는 없었다. 분단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단일민족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담론은 이후 최근까지 남한 사회의 민족담론의 당연한 전제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자본주의 민족’론을 제기하고 있었다. 한편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새로운 민족주의론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극우파, 중도우파, 중도좌파의 정치인들은 각기 민족주의에 자신들의 정치사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민족주의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방 직후의 민족 담론, 민족주의 담론을 차례로 살핌으로써, 오늘의 민족주의 논쟁에서 참고가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해방과 ‘민족’ 담론의 복원

### 1) 해방 이후 ‘단일민족’ 담론의 등장

최근 한 사회학자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에쓰닉 내셔널리즘’으로 표현했다.<sup>1)</sup> 즉 혈연에 바탕을

1) 신기욱 지음, 이진준 옮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2009, 창비

둔 종족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단일민족’설을 들었다. ‘단일민족’이란 말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

식민지시기에 한국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아주 드물게 보이는 편이다. 예를 들어 보면, 이광수는 「조선민족론」이라는 글에서 “조선민족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단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인 된 이는 누구나 분명히 의식하여 일점의 의심도 없는 바다”라고 말하였다.<sup>2)</sup> 또 중국 관내에서 1937년 민족진선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본래 우리 민족은 순수한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진선을 결성하기에는 남보다 용이할 것이다”는 대목이 나온다.<sup>3)</sup> 그밖에는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을 아직 찾지 못하였다.

물론 한말에 처음 ‘민족’이란 용어가 들어온 직후부터 혈통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은 사실이었다.<sup>4)</sup> 예를 들어 대한매일신보의 한 논설은 “자기 집 혈통 중에 다른 인종이 들어옴을 허락하지 아니함이 가하니 인종의 분간을 먼저 없어지게 하면 애국심이나 독립심이 어디서 나리오”라고 할 정도로 한국민족은 단일한 혈통을 유지해왔다는 의식이 강하였다.<sup>5)</sup> 어떤 이들은 ‘2천만 민족은 동일한 단군의 자손’(二千萬民族은 同一檀君子孫)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황성신문은 “오호라 우리 대한의 삼천리강산은 모두 백두의 지맥이요 이천만 민족은 동일한 단군자손이니 그 혈맥의 연락과 聲氣의 밀접함과 痛癢의 상관이 사생영육과 이해화복에서 어찌 다름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sup>6)</sup>

이와 같은 주장들은 한국민족은 ‘단일한 민족’이라는 가정 위에서 서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혈통을 기초로 한 단일민족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 민족은 다종족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단재 신채호는 1908년에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한 「독사신론」에서 “東國 民族을 대략 6種으로 分하니 一曰 鮮卑族, 二曰 夫餘族, 三曰 支那族, 四曰 靺鞨族, 五曰 女眞族, 六曰 土族”이라 하였다. 그는 이 가운데 “부여족은 즉 我 神聖 種族 檀君子孫이 是也라, 四千載 東土의 主人翁이 된 者요”라고 덧붙이고 있다. 즉 “6種 중에 형질상, 정신상으로, 타 5종을 정복하며 타 5종을 흡수하여, 東國 民族 世位에 據한 자는 실로 부여족 1種에 불과하니, 蓋 4千載 동국역사는 부여족 성쇠소장의 역사”라고 주장하였다.<sup>7)</sup>

또 1910년대 박은식은 「몽배금태조」에서 “조선족과 만주족은 모두 단군대황조의 자손으로 옛날에는 남북을 할거하여 서로 경쟁도 있고, 서로 교통도 있다가 필경은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 두만강과 압록강이 하늘이 준 경계가 되어 양쪽 땅 인민들이 감히 이를 넘지 못하고 이에 섞여 살지 못한 지 천여 년이라. 이에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가 불통하여 막연히 서로를 전혀 다른 異族처럼 보게 되었다”고 하여, 조선족과 만주족은 모두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sup>8)</sup>

2)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2, 329~330쪽 (이 글은 『동광총서』 1,2권(1933년 6,7월)에 실린 것임)

3) 필자미상, 「民族陳線의 第一段階」 『한민』, 1937.6.30 (민국19년 6월 30일)

4) 한말에 ‘민족’이란 용어가 들어오기 전에는 ‘동포’라는 말이 쓰이고 있었고,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族類’라는 말이 쓰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찬승,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창간호, 한림대 한림과학원, 2008.9. 를 참조할 것.

5)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10일 논설 「내외국인의 통혼을 금할 일」

6)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3월 13일 「凡今之人은 莫如兄弟」

7) 단재신채호전집간행위원회, 『개정판 단재신채호전집』 상, 473~475쪽

1920년대 동아일보는 또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여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라는 사설에서 ‘민족’에 대해 “민족은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의 공통적 생명 곧 국민적 고락을 한가지로 맞본 경험과 국민적 운명을 한가지로 개척한 사실이 없으면 도저히 민족적 관념을 생하지 못하니 이 없이 어찌 언어와 습관과 감정과 예의와 사상과 애착 등의 공통연쇄가 有할 수 있으리오. 이는 곧 민족을 형성하는 요소로다”라고 하여 민족을 역사적 경험을 같이한 공동체로서 인식하였다.<sup>9)</sup> 그런데 이 글은 또 “민족은 역사적 산물인 고로 혈통관계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천하의 많은 민족 중에 순연히 자기의 혈통만 고수하여 일점(一點)이나 타 민족의 혈(血)을 혼(混)치 않은 자 능히 있지 못하다. 오직 공동생활의 역사로 공통한 문화를 有한 자는 곧 한 민족이라 칭할지니”라고 하여, 혈통보다 문화적 공통성을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런데 1933년 이광수는 앞서 본 것처럼 “조선민족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단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인 된 이는 누구나 분명히 의식하여 일점의 의심도 없는 바다”라고 말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이 혈통을 강조하고,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30년대 일본에서의 ‘단일민족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1910년 이래 혼합민족설과 단일민족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sup>11)</sup> 이광수는 일본 민족과는 달리 한국 민족은 의심의 여지없는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민족론은 1930년대 중반 미나미 지로 총독이 부임하여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혼인을 장려하면서 불온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인=단일민족론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 단일민족 담론을 처음 꺼낸 것은 안재홍으로 여겨진다. 안재홍도 1930년대에는 ‘민족’이란 “그 문화와 전통과 취미와 俗尙과 정치와 경제상의 껍박한 공통적 이해 따위 - 공동한 자연적 테(紐帶)의 안에 일정한 특수 생활경향을 형성한 집단”이라고 하여, 민족을 주로 역사문화적 공동체로 이해하였다.<sup>12)</sup> 그런데 1945년 9월에 발표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에서 그는 민족 성립의 요소로서 1)동일혈연체, 2) 일정한 공간에서의 협동적 생활의 영위, 3) 운명공동체로서의 생활협동체 등을 들었다. 그는 우리 민족은 주변의 여러 민족과 혼혈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형적을 모를 만큼 순수한 혈연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 우리 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진일퇴하면서 그 지역과 풍토를 기반으로 일정한 기질과 성능을 갖추고 연마하여 왔으며, 공동문화의 유대에서 결속되고 성립된 운명공동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그 혈액의 순수 단일한 점에서, 그 동일 지역인 5천년 조국을 지키어 온 점에서, 동일언어·동일문화로써 강고한 운명공동체로서 존속하는 점에서, 단연 독자적 생활협동체로서의 조국을 재건하여 국제협력의 일 분담자로 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박은식전서』 중, 단국대출판부, 1975, 199쪽

9) 『동아일보』 1920년 4월 6일자 사설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여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

10)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2, 329~330쪽 (이 글은 『동광총서』 1,2권(1933년 6,7월)에 실린 것임)

11) 오구마 에이지 (조현설 옮김),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003

12) 『조선일보』 1932년 12월 2일자 사설 「조선인의 처지에서」(『민세 안재홍선집』 1, 463쪽)

13)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 2, 16~19쪽

안재홍 이후 단일민족론을 언급한 것은 중국에서 임정의 일원으로 막 귀국한 신익희였다. 신익희는 12월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든 우수한 단일민족이다. 우리 중에는 왜국과 같이 아이누도 에비스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분열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각자에게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sup>14)</sup> 이어서 김구도 ‘단일민족론’을 언급하였다. 김구는 1945년 12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임시정부 개선 환영대회에서 “지금 우리 국토와 인민이 해방된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독립 주권을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대한 임무이외다. 우리가 이 임무를 달성하자면 오직 3.1 대혁명의 민주 단결 정신을 계속 발양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동포가 단결해야 하고, 좌파와 우파가 단결해야 하고, 남녀노소가 다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 개개인의 혈관 속에는 다 같이 단군 할아버지의 성스러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극소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한국 동포는 마치 한 사람같이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sup>15)</sup> 또 같은 달 23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순국선열추념대회에서 한 연설의 서두에서는 “시조 단군께서 다스림과 가르침으로 문명을 여신 뒤로 유구한 역사가 근 5천 년에 이르는 동안, 흥망의 역사가 어찌 한두 번이리오. 그러나 대개는 같은 민족이 이어받았고, 혹 외세의 침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그쳐, 단군의 후손이 한 갈래로 이어 온 계통은 언제나 뚜렷하였으니, 일제에게 당한 강제 병합은 그야말로 역사에 보지 못한 초유의 비극이라”고 하여 ‘시조 단군’과 ‘단군의 후손’을 언급하였다.<sup>16)</sup> 이와 같은 김구, 신익희의 ‘단일민족론’은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12월 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가 발표되자 신탁통치에 반대를 표명한 정당, 단체들은 신탁 반대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단일민족론’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천도교 청우당은 “저들은 조선민족이 아직 자주독립할 만한 자격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가진다면 우리는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純然한 단일민족으로서 유구 5천년 독립의 역사와 문화가 자존한다는 그 점을 正視하라고 강조하는 일방, 조선민족의 통일이 아직까지 지연되기는 주로 미 소 양군의 남북분주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역설한다”고 밝혔다.<sup>17)</sup>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인민당도 반탁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조선은 오랫동안 일제하에 눌러 있었으니 주체적 능력이 자력으로 독립수준에 達치 않는다는 원칙적 추측에서 나온 것이라 하면 이것은 4천년동안 통일적 단일민족의 국가로 독립하여 찬연한 문화를 발전시켜 온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능력을 불고한 바가 아닌가”라고 하였다.<sup>18)</sup> 당시 경성대학의 백남운 이하 500여 명의 교직원들도 신탁반대를 표명하는 성명서에서 “우리 조선민족은 신라로 통일된 지 于今 1,300년에 달한 단일민족이다. 우리의 언어 급 문화의 공동체를 예로부터 완성한 세계사적 민족이며 36년 이전까지는 이 민족의 통치를 받은 일이 없는 완전한 독립민족이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19)</sup> 이러한 반탁성명서들에 나오는 ‘단일민족론’은 한국민족이 단일민족으로서 오랫동안 국가를 스스로 유지해왔

14) 『서울신문』 1945년 12월 8일 「신익희, 국기 친일파 국내분열 등에 관해 기자회견」

15) 도진순 편, 『백범어록』, 돌베개, 2007, 49쪽

16) 같은 책, 52쪽

17) 『자유신문』 1945년 12월 30일 「천도교청우당, 반탁결의문을 발표」

18) 『자유신문』 1945년 12월 30일 「조선인민당, 반탁성명서 발표」

19) 『서울신문』 1945년 12월 31일 「경성대학교직원, 신탁반대를 결의하고 성명서 발표」

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1946년 들어 미소공위가 열렸지만, 6월 들어 미소공위는 장기휴회에 들어갔다. 이는 잠정적인 경계선으로 생각했던 38도선이 민족 분단의 경계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은 정읍발언을 통해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이른바 ‘단독정부설’을 언급하였다. 이에 한국독립당의 엄항섭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여 韓國의 모든 문제는 自決하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美蘇共同委員會는 우리와 긴밀한 협조 위에 신속히 진행되어 友邦聯合國의 韓國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요즘 항간에는 單獨政府 樹立說이 유포되고 있으나, 우리 黨으로서는 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일민족이 분단정부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sup>20)</sup> 미국에 있던 김용중도 그해 10월 유엔에 공개서한을 전달하면서 “단일민족인 조선인은 이러한 분할(미소의 38도선 양분)을 감수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sup>21)</sup>

하지만 분단정부의 수립은 점차 현실화되었고, 1948년 봄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가 발표되었다. 이에 김구는 남북협상을 통해 분단정부 수립을 막아보려는 최후의 노력을 하게 된다. 김구는 평양으로 떠나는 길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과거 미소 양국의 힘으로서 조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상이 같고 피부가 같고 언어와 피가 같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앉아서 같은 민족정신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나 하여 보자는 것이 진의이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깨끗이 조국통일독립에 바치려는 것이 금차 이복행을 결정한 목적”이라면서,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른 이국 사람의 환경아래 있다 하더라도 5천년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다. 우리는 서로 같은 피와 피를 통해서 서로 통사정하여 보는 길밖에 이제는 남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였다.<sup>22)</sup> 이처럼 김구, 김용중, 한독당의 ‘단일민족론’은 단일민족이 분단정부를 세울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펴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한편 남쪽에서 분단정부 수립에 참여한 이들도 단일민족론을 강조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초대 국무총리가 된 이범석은 취임 회견에서 남북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단일민족이므로 이 강도가 양단되면 완전한 국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됨을 잘 알기 때문에 국가민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신생정부의 제일 중대한 과업은 강토 完整과 민족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적극 추진 준비함에 있다”고 말하였다.<sup>23)</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범석이 국토가 분단된 상황에서는 완전한 국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 이승만도 1948년 9월 30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단군시조의 전통적인 역사와 단일민족으로서 찬란한 문화를 승계하여 온 우리 대한민국은 역대 순국선열의 끊임없는 가호와 세계 민주주의 제 국가의 절대한 동정적 성원에 의하여 이제 바야흐로 국권을 회복하고 신생 자주독립, 민족적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

20) 『서울신문』 1946년 6월 5일 「남조선단정설에 관해 한독당 반대 담화 발표」

21) 『동아일보』 1946년 10월 25일 「朝鮮人は 單一民族 分割은 甘受 못한다 金龍中氏 UN에 公開狀傳達 (워싱턴)」

22) 『경향신문』 1948년 4월 17일 「김구, 남북협상에 임하는 결의 표명」

23) 『서울신문』 1948년 8월 3일 「국무총리 이범석, 취임소감 피력」

진 우리 민족은 전 세대를 통하여 동일한 혈통과 강토를 계승 보유하여 왔으며 공동한 문화와 운명을 창조 擔荷하여온 우수한 단일민족”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임을 강조하였다.<sup>24)</sup>

한편 이승만과 안호상 등이 주장한 일민주의에서도 “원래 우리 민족은 피가 같고, 전통이 같고, 언어가 같고, 習俗이 같고, 생활방식이 같은 단일민족이다. 단일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만민평등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라는 一民主義는 전 민족이 같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 하여, 단일민족설을 강조하였다.<sup>2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직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단일민족’ 담론은 민족의 분단 위기 앞에서 “단일민족은 결코 분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분단 정부 수립 이후에는 “단일민족이므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단일민족 담론은 ‘민족’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손진태는 1948년에 낸 『조선민족사개론』의 서설에서 “조선사는 조선민족사이니, 우리는 유사 이래로 동일한 血族이 동일한 지역에서(비록 삼국시대 말년에 영토의 北半과 그 주민을 離失하기는 하였지만)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운명 하에서 공동한 민족투쟁을 무수히 감행하면서 공동한 역사생활을 하여 왔고, 이민족의 혼혈은 극소수인 까닭이다”라고 말하였다.<sup>26)</sup> 그는 민족의 특징으로 동일한 혈족, 동일한 지역, 동일한 문화, 공동의 역사생활 등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강조한 것은 동일한 혈족이었다.

이처럼 혈통을 강조하는 단일민족론은 이범석, 안호상의 경우에도 보인다. 이범석은 한 민족을 형성하는 요소는 혈통, 영역, 문화, 운명의 4가지라고 보고, 이들 요소가 오랜 시간에 걸쳐 민족을 형성,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혈통이었다. 그는 혈통의 공통성을 민족 형성의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했고, 이 점에서 “우리 민족은 자랑스러운 전형적인 단일민족”이라고 보았다. 그는 희귀한 단일혈통, 오랜 동일 영역 유지, 공통의 문화소유, 철저한 공동운명 등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한국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빈틈없이 훌륭하게 형성된 민족이라고 생각하였다.<sup>27)</sup> ‘희귀한 단일혈통’을 강조하는 ‘단일민족’론이 등장한 것이다.

일민주의자 안호상은 일민주의의 뜻을 풀이하면서 이는 ‘한겨레’ 곧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겨레주의’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우리 민족이 동일혈통, 동일운명을 가진 민족임을 특히 강조하였다. 여기서 동일 혈통, ‘한 핏줄’은 ‘일민’의 절대적 요소라고까지 그는 강조하였다. 안호상의 일민주의는 한국 민족주의 가운데 혈통을 가장 강조한 민족주의였으며, 이는 이후 한국 사회에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다.<sup>28)</sup>

하지만 해방 이후 모든 사람이 단일민족론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1959년에 나온 진단학회

24) 『시정월보』 창간호, 「1949년 01월 05일 李承晩대통령, 제1회 78차 국회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 3~8쪽

25) 『동아일보』 1949년 01월 27일 「大韓國民黨과 韓國民主黨, 民主國民黨으로 합당할 것을 결의하고 공동성명서 발표」

26) 손진태, 『조선민족사개론』, 1948, 3쪽

27) 이범석, 「민족론」 『민족과 청년』, 백산서당, 1999, 30~31쪽

28) 안호상, 『일민주의의 본바탕』, 일민주의연구원,, 32쪽

편 『한국사』의 「총설」의 의견은 달랐다. 이 글은 “현재 발달된 민족은 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도 결코 온전한 단일인종(협의)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역시 수개 이상의 다른 요소가 섞여 있다. 즉 한인(漢人)·몽고인·만주인·왜인(倭人) 기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잡다기한 복합체는 아니다. 그래서 그 주된 기본적 요소는 언제나 우세(優勢)로 자약(自若)하고 뚜렷하여 늘 지배적 지위에 있어 다른 요소를 융합하여 왔다”고 쓰고 있다. 한국 민족은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가운데 주된 종족이 있다는 견해였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주된 종족으로서 ‘예맥’족을 거론하였다.<sup>29)</sup> 이와 같은 ‘다종족 구성, 주종족 주도론’은 일찍이 한말에 신채호가 『독사신론』에서 말한 바였다.

## 2) 사회주의자들의 ‘자본주의 민족’론

한편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은 위에서 살펴본 민족주의자들의 민족관과는 상당히 다른 ‘민족’ 개념을 갖고 있었다. 1948년에 나온 『사회과학대사전』의 ‘민족’에 대한 해설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민족의 단초는 자본주의의 최초 단계와 동일하다. 여러 종족간의 상업적 상호관계는 민족의 통일운동을 환기한 것이다. 계급적 추진력인 근대 부르주아지는 봉건적 경제제도를 깨뜨리고, 봉건 제후의 모든 장벽을 없애는 대신, 민족이란 이름으로서의 인간통일체를 만든 것이 근대 자본주의사회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동시에 민족의 형성과정이었다. 따라서 민족은 자본주의와 같이 발생하고 발전하며 소멸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sup>30)</sup>

즉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이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것이며, 자본주의의 소멸과 함께 민족도 소멸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 사전은 스탈린과 프로이드를 인용하면서, “자본주의적 사회와 민족이란 동일한 운명을 가진 특정한 계급의 인간집합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관은 이미 1930년대부터 나타난 것이었다.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유기체적이고 영속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민족은 자본주의시대에 형성되었으며, 또 자본주의의 소멸과 함께 민족도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1)</sup>

이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관은 해방 이후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다. 사회주의자였던 이정식도 1945년에 쓴 「‘민족’의 레닌주의적 개념」이라는 글에서 스탈린의 「민족과 식민지문제」라는 글을 인용하여, “민족이란 언어와 영토, 경제생활, 문화의 공통성에 표시되는 심리적 정신상태의 공통성에 의해서 결합된 인간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라고 하였다. 그는 스탈린을 인용하여 민족형성에 있어서는 언어, 영토, 경제생활, 문화의 어느 한 요소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모든 공통성과 모든 제 지표는 경제적 사회적 제 관계와 교통 등이 충분히 발전된 시대에

29) 진단학회편, 『한국사』 「총설」, 을유문화사, 1959, 7쪽

30) 『사회과학대사전』, 1948

31) 황영, 「민족주의 지도원리의 비판」, 『신계단』 6호, 1933.3. 7쪽

있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봉건제도의 경제적 분산성을 파괴한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케 되었다. 민족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범주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어떤 특정한 시대, 즉 생성하는 자본주의시대의 역사적 범주이다. 봉건주의의 掃清과 자본주의의 발전의 과정으로 동시에 민족형성의 과정이다. 구라파에서는 사태가 이와 같다. 영국인, 불국인, 독일인, 이태리인 등은 분산적 봉건제도를 극복한 자본주의의 승리의 前進期에 비로소 민족으로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식민지에서의 민족 형성도 근대 이후에 비로소 가능했다고 보았다. 즉 “우리는 모든 식민지의 민족운동을 분석할 때에도 동일한 확증을 찾을 수가 있다. 왜 그러나 하면, 혁명적인 민족투쟁의 발전과 또 이 투쟁을 위한 여러 부족의 통일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이러한 나라에도 침투함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즉 식민지에서도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부족이 통일되어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침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sup>32)</sup> 그러면 식민지 조선에서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이에 대해서 인정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관에 대해 안재홍은 1945년 9월에 발표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에서 우선 민족과 민족주의는 그 유래가 매우 오랜 것으로,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33)</sup>

### 3. 해방 이후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의 제기

#### 1)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

안재홍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논설 집필에 들어가 9월 22일 이를 탈고하였다. 이 글은 그의 ‘신민족주의’ 이론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민족주의 이론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는 1930년대의 민세주의를 발전시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재홍은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에서 우리 민족은 “그 혈액의 순수 단일한 점에서, 그 동일 지역인 5천년 조국을 지키어 온 점에서, 동일언어·동일문화로써 강고한 운명공동체로서 존속하는 점에서, 단연 독자적 생활협동체로서의 조국을 재건하여 국제협력의 일 분담자로 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민족자존의 생활협동체로서의 주도 이념인 민족주의는 거룩하다고 주장하고, 이 점이 바로 그가 신민족주의를 제창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말하였다.<sup>34)</sup>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유물사관이 사회발전의 도정을 규정하는 하나의 準繩(法式)은 될 수 있지만, 오랜 시일 동안 풍토·역사 등 국제 관련 하에 구체적으로 鍊成되어온 과정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각 민족은 그 자

32) 인정식, 「민족의 레닌주의적 개념」 『혁신』 1, 1945.12 (『인정식전집』 4, 11~15쪽)

33)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 2, 16-19쪽

34)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 2, 16~19쪽

체가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의 현재의 사태와 그 전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민족의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한편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각자의 민족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새로이 세워야 할 나라의 국체와 정체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성격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 인민에게 적당하고 타당한 법이란 그 인민의 과거 문화의 총화인 역사의 소산이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 국제추수주의는 하나의 공식으로 추락할 뿐이라고 보았다. 그는 무조건 국제주의를 추수하는 것보다는 민족의 개성을 적정하게 발휘하여 전 국제협동의 분야에서 각각 독자의 이채를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sup>35)</sup>

그는 국경의 철폐나 민족의 해소는 미래의 전망으로서는 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인공적으로 국경이나 민족을 부인 말살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2차 대전의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국가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이미 과거의 잔재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소련에서도 최근에는 여러 형태로 러시아적 요소가 강화되고 찬미되는 등 러시아적 민족의식의 고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한국도 민족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독일이나 일본의 민족주의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민족주의는 너무 주관적이고 배타 독선적이며 인위적으로, 즉 기획을 통하여 강대한 민족을 만들고 천하의 지배권을 탈취하려 한 데에서 결국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또 일본 민족주의 경우에도 독립자존에 머물지 않고 과대와 自大의 습성이 되어 정복적 침략적 의욕을 고무함을 국책·국풍으로 함으로써 그 출발이 잘못되었으며, 결국 대륙경략과 세계 제패를 부르짖음으로써 복멸하게 되었다고 보았다.<sup>36)</sup> 여기서 그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밖으로 인류대동의 이념에 적응하고, 안으로 민족자존의 의도”를 갖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그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배타독선에 폐에 흐르는 완고한 국수주의적 경향에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38)</sup>

그는 민족주의는 祖國 故土의 단일 혈연집단으로 엄숙히 존재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관계를 맺을 때에는 반드시 국제협동·인류대동을 추진하여 세계 일가를 자유의지로써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우호적이고 국제주의적인 국민일지라도 하나의 강대국이 하나의 이민족을 포용하는 경우, 그것을 반드시 지배적이며 예측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고 말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은 반드시 독립자주, 독립자활의 정치적 체제를 자력으로 보장받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변함없이 존귀하고 준엄한 현실 객관의 존재라고 보았다.<sup>39)</sup> 이를 통해 보면 그는 민족주의는 인류 대동, 세계 일가를 지향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민세주의에서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병존을 강조한 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민족과 민족국가는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35) 같은 글, 20-21쪽

36) 같은 글, 22-28쪽

37) 「국민당선언」 『민세안재흥선집』 2, 61쪽

38) 「국민당 정강·정책해설」 『민세안재흥선집』 2, 76쪽

39) 「역사와 과학과의 신민족주의」 『민세안재흥선집』 2, 242쪽

해방 이후의 시점에서 볼 때 과거 자본주의 국가의 민족주의가 침략주의로 흘렀다가 그것이 퇴폐화하고 패배하면서 다시 본원적인 형태의 민족주의로 환원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류 생존의 단계에서 민족주의는 당연히 源本的인 理念으로 지배적 지위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하여, 민족주의는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 근원적인 이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sup>40)</sup>

그러면 그가 말하는 신민족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그는 과거의 민족주의는 왕실·귀족, 지주·자본가, 군벌·종파 등이 富·權·智 등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노동을 면제받는 이른바 지배와 피지배, 압박과 피압박, 착취와 피착취가 존재하는 계급분열 및 대립적인 독점지배계급 본위의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였기 때문에 이것을俱소한 민족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보았다. 그는 이제는 均등사회·공영국가를 지향, 완성하는 신민족주의, 즉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존립되는 전 민족 동일운명의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국민당의 강령 안에 ‘國民皆勞와 大衆共生을 이념으로 신민주주의의 실현을 기함’이라는 조항을 넣었던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민족 내부의 공존공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계급투쟁의 지양 청산을 주장하였다. 그는 신민족주의의 특색은 “폭력에 하소연하는 계급투쟁을 지양 청산시키며, 적색지배를 도입하는 공산모략을 방지 극복하고, 동포와 조국과 자유를 위하여 전 민족이 협동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자주, 독립국가로서 민족문화를 양양 심화하면서, 국제협조의 노선에 병행 쌍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sup>41)</sup>

안재홍은 일제 지배 하에서 한국인은 전 민족이 계급을 막론하고 굴욕과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또 쏠 민족적으로 초계급적으로 해방되었으므로 역시 계급을 뛰어넘어 통합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급독재는 분열된 여러 계급의 대립 투쟁을 전제로 비로소 요청되는 것인데, 동일한 피예속·피착취의 운명에서 다함께 해방된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계급독재가 현재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 성립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는 또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가 남아 있고, 또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시점에서, 다시 민족 내부의 분열이 있다면 이는 민족사를 다시 불행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모든 진보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지주(地主), 자본가, 농민, 노동자 등 모든 계층을 통합하여, 만민공생을 이념으로 하고, 계급독재를 지양(止揚)한 신민주주의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의 신민족주의란 안으로는 민족 내 각 계층의 협동의 공동체를 세우고, 밖으로는 국제협동의 분담자로서의 굳건한 민족국가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42)</sup>

국민개로, 만민공생의 이념은 ‘신민주주의’ 혹은 ‘다사리이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신민족주의의 중심 내용이었다. 안재홍의 이와 같은 계급투쟁 지양론, 만민공생론 등은 식민지 시기 그의 신간회 운동론, 즉 민족협동전선론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민족 내부의 계급투쟁보다는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민족협동전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다.<sup>43)</sup>

40)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 2, 23쪽

41) 「역사와 과학과의 신민족주의」 『민세안재홍선집』 2, 242쪽

42)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 2, 55~58쪽

43) 이에 대해서는 박찬승, 「일제하 안재홍의 신간회운동론」 『한국근대국가형성과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86을 참조할 것.

## 2) 김구의 자유주의적, 문화적 민족주의론

해방 이후 귀국한 김구는 1947년 『백범일지』를 발간하면서 그 부록으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김구는 이 글에서 자신의 민족관, 민족주의, 정치사상을 밝혔다. 주지하듯이 김구는 이 글에서 자신의 소원은 오로지 ‘대한독립’에 있다고 밝혔다. 즉 완전하게 자주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70평생 자신이 가져온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해방 이후 좌우의 대립에 대해서 “이른바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난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sup>44)</sup> 이에서 보면 그는 민족을 혈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혈통에 기초한 민족은 영원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구는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받지 아니하고 남에게 의뢰도 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며,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롭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을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sup>45)</sup> 이는 1910년대 박은식이 말한 ‘민족평등주의’의 사상, 3.1운동 당시 한용운이 말한 ‘민족자결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구는 자신의 정치이념은 한마디로 ‘자유’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유와 자유 아님이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보았다. 즉 자유가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한 개인 또는 한 계급에서 온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 개인에서 오는 것을 전제 또는 독재라 하고, 한 계급에서 오는 것을 계급독재라고 하고 통칭 파쇼라고 한다고 설명하였다.<sup>46)</sup>

물론 김구는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독재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라고 보았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조선에서 행해온 계급 독재는 유교, 그 가운데에서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정치에서의 독재만이 아니라 사상·학문·사회생활·가정생활·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독재였다고 보았다. 그는 공산당이 말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독재정치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보았다.<sup>47)</sup>

그는 어느 한 사상이나 종교로써 국민을 속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또 나라를 쇠퇴하

44) 김구, 「나의 소원」 『백범일지』 (이만열 옮김, 역민사, 1997), 365~366쪽

45) 같은 책, 367쪽

46) 같은 책, 368쪽

47) 같은 책, 369쪽

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가진 나라에서 높은 수준의 문화가 탄생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산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않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않는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백 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 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 발달하고, 또 철학으로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리하고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sup>48)</sup>

위의 글에서 김구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문화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임을 알 수 있다. 김구는 독재를 배격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알아보는 한 절차 또는 방식이지 그 내용은 아니다. 즉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에 복종, 이 세 가지가 곧 민주주의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sup>49)</sup> 그는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정치가 아니 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십분의 언론 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라고 말하였다.<sup>50)</sup>

위에서 본 것처럼 김구가 말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될 것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민족의 각원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라고 말하였다.<sup>51)</sup> 즉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주장하되, 그 자유는 이기주의적인 자유가 아니라 남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김구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민족주의는 한말 이래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한국의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전개해 온 민족주의론의 가장 성숙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3) 백남운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

백남운은 해방 직후에 낸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책에서 “대체로 민족은 국가형성의 기초인 만큼 국가 성립의 맹아 형태가 부족적 정치조직의 내부에서 배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국가적 자기형성의 경향과 의식을 가진 민족의 기원은 삼한 때부터로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의 민족이 과연 근세적인 민족의식을 가졌는지

48) 같은 책, 370쪽

49) 같은 책, 371쪽

50) 같은 책, 372쪽

51) 같은 책, 374쪽

는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민족의 인종학적 기원은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근대적 의미의 민족의식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민족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못한 시대에는 민족주의의 원칙적 주관 요소가 결여된 만큼 객관적 요소가 구유(具有)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민족주의는 육성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봉건기구가 붕괴되는 이조 말기에 이르기까지는 근세적 민족의식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민족주의도 육성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sup>52)</sup>

백남운은 개항 이후 일본, 청국과의 근대적 외교관계 수립, 서양문화의 유입 등의 상황에서 외래자본주의의 공세에 대한 대외적 수세, 자주 독립의 의욕 등으로 말미암아 봉건적 신분제를 철폐한 민족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가 고조되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소극적인 내적 민족주의가 1910년까지도 지도적인 이념이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1910년 이후 일제의 압박 아래에서 민족주의는 그 이념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sup>53)</sup>

그는 민족주의란 “영토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민족의 요구에 적응한 정부를 스스로 조직함으로써 민족국가를 완성하는 권리를 각 민족에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의 민족국가를 완성하려는 것이 민족주의의 기본 속성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를 ‘외적 민족주의’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 외적 민족주의는 1) 지배국가의 압박을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며, 2) 그 정치형태는 광무년간의 내적 민족주의와는 달라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표국가인 미국식의 정권형태를 취하려 하며, 3) 후진사회인 만큼, 주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재현하려는 의욕이 사회해방의 노력보다 훨씬 농후하여, 계급대립의 관계를 민족통일의 개념으로 포섭하려 하며, 4) 전통적인 문화를 비판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그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려 하며, 사회문화의 창건을 기도하기보다는 국수적인 국민문화를 강화하려 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sup>54)</sup>

한편 그는 흔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공산주의가 민족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공산주의 이론의 완성자인 마르크스는 아일랜드 민족의 민족운동을 원조할 것을 강조한 바 있었고, 공산주의 이론의 정치적 성공자인 레닌은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자를 사회운동자의 맹우로서 적극적으로 원조할 것을 주장하고 또 민족자결권을 강조하였으며, 스탈인의 민족정책은 민족의 외교권과 군사권에까지도 자결권을 부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민족을 무시한다는 비난은 날조의 구실이 아니면 무식을 고백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만일 공산주의자의 부주의로 그러한 인상을 주었다면 공산주의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였다.<sup>55)</sup>

결론적으로 그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공통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연합’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는 문화정책면에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전자가 국수문화 또는 국민문화를 강조하는 데 대하여 공산주의는 사회문화를 제창하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양자의 정치적 대립을 가져올 만큼 커다란 차이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 정

52) 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 재론』, 도서출판 범우, 2007, 43~44쪽

53) 같은 책, 45쪽

54) 같은 책, 46~47쪽

55) 같은 책, 49쪽

치형태에서 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후자는 프로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조선의 현 단계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합성 민주정권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전자는 자본주의적 경제를 재현하여 '국민주의'로 나아가려 하고, 후자는 사회주의적 경제를 실현하여 계급대립을 해소하고 명목적인 단일민족을 명실상부한 무계급의 단일민족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백남운은 당시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의 재현이나 공산주의적 경제의 수립은 모두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아도 보았다. 그는 조선에 필요한 것은 '민주경제'를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연합 토의할 역사적 임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당시로서는 '연합성 민주정권'의 수립이 역사적으로 요청되는 시기라고 주장하였다.<sup>56)</sup> 백남운의 이와 같은 주장은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으로 흔히 말해지며,<sup>57)</sup> 중도좌파 민족주의론의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4) 민족청년단의 민족지상·국가지상주의론

해방 이후 일본의 파시즘은 물러갔다. 하지만 파시즘의 사상적 뿌리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해방과 독립이라는 상황 변화는 그간 민족운동에 참여해왔던 민족주의자들에게 민족통일, 단결, 부국강병 등을 목표로 한 파시즘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국가지상'과 '민족지상'을 들고 나온 것은 민족청년단이었다. 민족청년단을 조직한 것은 1920년 청산리전투의 지도자로 참여해 이름을 날렸으며, 1940년대 초에는 광복군 참모장과 제2지대장으로서 활약했던 이범석이었다. 그는 1946년 6월 귀국하여 10월 민족청년단을 창설하였다. 이범석은 해방 직후 좌우의 대립 속에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독립은 민족의 단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민족의 단결은 민족과 조국에 이바지하려는 순정한 정열과 의지, 예지를 기초로 한 민족 주류의 조직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그는 민족주류의 형성을 위해 청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난 날 독일이나 이태리, 터키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나라 청년들의 결속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청년의 쫓기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독립의 터전을 닦자"는 생각에서 민족청년단을 만들었다.<sup>58)</sup>

이범석은 민족청년단을 결성하면서 5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것은 1) 民族至上·國家至上, 2) 對內自立·對外共存, 3) 着眼遠大·着手卑近, 4) 非政治·非宗派·非軍事, 5) 科學的·組織的運動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족지상·국가지상의 원칙이다. 그는 세계사적 현실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이익 추구를 위해 다른 민족과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유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현실에서

56) 같은 책, 55~61쪽

57) 이에 대해서는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6을 참조할 것.

58) 이범석, 「나와 청년운동」 『민족과 청년』, 백산서당, 1999, 82~83쪽

“오직 건전한 민족정신에 의한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 절대 지상과제”라고 생각하고 위의 민족지상·국가지상의 원칙을 설정했다고 설명하였다.<sup>59)</sup>

그는 당시의 세계사를 민족주의의 시대로 파악하였다. 즉 파시즘과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있지만, 그 기반은 모두 민족세력의 신장에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sup>60)</sup> 여기서 그의 민족주의는 민족지상주의로 나아간다. 그는 “우리가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일은 민족을 떠나서 개인이 없다는 것이다. (중략) 외족의 지배하에 있는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복리를 위한 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 개인의 인권이 보장될 리 없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sup>61)</sup>

여기서 그의 ‘민족론’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는 한 민족을 형성하는 요소는 혈통, 영역, 문화, 운명의 4가지라고 보고, 이들 요소가 오랜 시간에 걸쳐 민족을 형성,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혈통이었다. 그는 혈통의 공통성을 민족 형성의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했고, 이 점에서 “우리 민족은 자랑스러운 전형적인 단일민족”이라고 보았다. 그는 희귀한 단일혈통, 오랜 동일 영역 유지, 공통의 문화소유, 철저한 공동운명 등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한국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빈틈없이 훌륭하게 형성된 민족이라고 생각하였다.<sup>62)</sup>

그는 또 “인류의 역사는 거의 번영과 권세 또는 영예와 생존을 위한 족속 대 족속의 투쟁으로 시종하였다”면서, 여기서 족속은 아득한 고대에는 씨족이었고, 다음 단계에는 종족이었으며, 민족이 형성된 이후에는 민족을 가리킨다고 말하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주의와 주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민족과 민족의 투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역사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투쟁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본디 투쟁하려는 의욕은 자아 발전의 의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아의 발전을 위해 타 아를 침략하는 경우 이는 옳지 못한 투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는 자아의 발전을 위한 의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sup>63)</sup> 자민족의 발전을 위해 타민족을 침략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민족 간 투쟁론은 그가 말하는 민족지상주의의 위험한 측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이같이 위험한 측면은 그의 혈통에 대한 숭배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우리는 히틀러가 억지로 純血운동을 벌였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민족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유대인을 배척함으로써 민족적 결속에는 심대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예를 보아도 피의 순결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sup>64)</sup> 이같은 혈통주의는 얼마든지 인종적 배타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그는 민족이 생존의 공동체라면 국가는 생활의 공동체라면서, 국가는 민족의 복리를 위해 권력을 집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필요하

59) 같은 글, 84쪽

60) 「민족론」, 같은 책, 55쪽

61) 같은 글, 53쪽

62) 같은 글, 30~31쪽

63) 같은 글, 31~34쪽

64) 같은 글, 48쪽

다면 권력이나 무력을 발동해서라도 민족의 복리에 배반되는 내외의 온갖 요소를 배제하고 민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반조치를 강구하게 된다고 보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세우려는 국가는 완전한 주권국가인 동시에, 단일민족국가이며, 제도적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라고 말하였다. 즉 주권은 삼천만 민족에게 있고, 온 동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문화적으로 권리와 지위와 책임이 기본적으로 균등한 국가 바로 ‘민족지상’의 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아직 한국민족에게는 국가가 없으니 국가 수립이 지상의 요구이며, 이를 위해 모든 민족이 희생적, 헌신적으로 분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5)</sup>

그는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인의식이 민족의식에 앞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인의식이 확대되면 민족의식에 대립되는 당파의식과 계급의식이 생기게 된다면서 ‘개인의식’을 비판하였다. 그는 “우리는 먼저 개인의식이 창궐하는 것을 철저하게 소탕해야 한다. 민족의 복리를 위한 투쟁의 길이 아무리 요원하고 험난해도 우리는 이것을 배반하고 구차하게 개인의 이익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sup>66)</sup>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개인의식을 비판하면서 민족의식으로 먼저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상에서 그의 민족지상, 국가지상주의를 살펴보았다. 민족의 혈통을 강조하는 등 배타성이 강하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적 침략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파시즘적 성향이 분명 있었다. 또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는 민족과 국가의 자유와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직 한국민족이 독립된 국가를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민족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만을 강조하고 있음도 역시 파시즘과 유사하다.

이범석이 민족청년단의 이념으로서 ‘민족지상 국가지상’을 설정한 배경에는 역사학자 정인보·황의돈, 철학자 안호상, 사회학자 강세형 등의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sup>67)</sup> 아마도 이 가운데 특히 독일 예나대학 출신의 안호상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레고리 헨더슨은 “민족청년단은 미국인과 한국인 양쪽으로부터 파시스트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훈련소는 나치스 세대의 예나대학 졸업생으로서 헤겔학도이며 히틀러 유겐트의 숭배자인 안호상박사의 정신적 지도하에 있었다”고 쓴 바 있다.<sup>68)</sup>

하지만 ‘민족지상 국가지상’이란 용어는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광복군 시절 같은 광복군의 제1지대장 김학규는 광복군의 기관지에 실린 글에서 광복군의 첫 번째 당면 과제로서 “민족해방지상, 국가독립지상의 원칙 아래에서 전민족의 인력, 물력을 광복군 군사운동에 총집중하여 적군에게 총공격을 개시할 것”을 제기하였다.<sup>69)</sup> 물론 이는 해방 이후의 이범석이 주장한 민족지상, 국가지상주의와 구체적 의미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민족과 국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큰 틀에서는 거의 같다고 여겨진다.

65) 「민족과 국가」, 같은 책, 56~62쪽

66) 「민족론」, 같은 책, 45~46쪽

67) 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편, 『철기이범석평전』, 삼육출판사, 1992, 126~127쪽

68) Gregory Henderson, 『철기이범석평전』, 136쪽

69) 김학규, 「한국광복군의 당면공작」 『광복』 제1호, 14쪽

그런데 사실은 ‘민족지상 국가지상’이라는 말은 1920년대 중국의 국가주의자들이 만든 용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1919년 5·4운동을 전후하여 曾琦·李璜·余家菊 등은 프랑스에 유학하여 당시 프랑스가 러시아혁명과 마르크스주의의 파급을 억제하고 국가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보고 국가주의사상을 보다 철저히 갖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중국 국민당이 러시아와 제휴하고 용공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 반감을 갖고 독자적인 국가주의적 정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1923년 12월 파리 근교에 모여 ‘중국청년당’을 결성하였다. 1924년 9월 그들은 귀국하여 중국국가주의청년단의 이름으로 『醒獅』라는 잡지를 내는 등 선전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9년에는 제4차 당대표대회를 열고 중국청년당의 이름을 공개하였으며, 이후에도 기관지를 중심으로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지상 민족지상’을 표방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와 봉건군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밖으로 強權(外勢를 의미-인용자)에 저항하고, 안으로 國賊(봉건군벌을 의미-인용자)을 제거한다”는 혁명적 구호를 내걸고, 국가지상·민족지상을 반복적으로 선전하면서 강렬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드러냈던 것이다. 국가주의자들은 민족의식과 민족의 부흥을 강조하고, 특히 민족정신, 국혼 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국가주의란 개인·민족·종교·계급·당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주의”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국가는 最高 無上의 것으로서 개인의 도덕과 책임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 국가를 옹호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개인은 국가에 의해 존재하며, 국가가 없으면 개인은 없으므로, 개인을 희생하여 국가에 盡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sup>70)</sup>

이범석이 중국청년당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범석은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을 숭배하고 있었다.<sup>71)</sup> 따라서 그가 국민당의 주변 정당이던 중국청년당에 대해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국청년당의 이름을 본 떠 민족청년당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족지상·국가지상’의 구호는 중국청년당의 그것을 그대로 빌려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지상·국가지상의 민족주의론은 극우파 민족주의론의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5) 정부수립 후 이승만·안호상의 일민주의론

1948년 9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一民主義로써 민족단일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민주의를 제창하였다.<sup>72)</sup> 이승만은 “한 백성(一民)인 국민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제창한 것이었다. 그는 일민주의의 목표를 혈통과 운명이 같은 한 겨레, 한 백성의 핏줄과 운명을 끝까지 유지, 보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

70) 吳雁南 外, 『中國近代社會思潮(1840-1949)』, 제3권, 제10편, 제1장 「國家主義的 傳統」 189~216쪽 ; Chester C. Tan(譚昌霖) 『Chinese Political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Doubleday & Company, Inc. New York, 1971, 290-298쪽. 이 책은 민두기교수에 의해 『중국현대정치사상사』로 번역되었다.(지식산업사, 1977)

71) 정인보는 이범석이 장개석의 모범으로 하여 행동과 사상을 본받아 왔다고 말하였다. 정인보, 「이장군 논설집에 부쳐」 『민족과 청년』, 백산서당, 1999

72) 『동아일보』 1949년 1월 29일

민의 나라, 일민의 세계를 만들어 세계의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 행복과 명예를 누리도록 한다는 데 설정하였다. “흠어지면 죽고, 멍치면 산다”, “나누어지는 데에서 죽고 일(一)에서 산다”는 구호는 일민주주의의 상징적 표어였다. 이승만의 일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돈 숭배주의’와 공산주의의 유물론을 모두 배척하고, 양자를 지양하는 사회경제체제를 지향하였다. 이승만은 일민주주의의 4가지 강령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1) 경제적으로 빈곤한 인민의 생활정도를 높여 부유하게 하여 누구나 같은 복리를 누리게 할 것, 2) 정치적으로 대다수 민중의 지위를 높여 누구나 상등계급의 대우를 받게 할 것, 3) 지역의 구분을 타파하여 대한국민은 모두 한 민족임을 표방할 것, 4) 남녀동등주의를 실천하여 민족의 화복 안위의 책임을 삼천만이 똑같이 분담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 貧富同等·貴賤平等·地域無別·男女同權은 이승만 스스로에 의해 일민주주의의 4대 강령이라고 일컬어졌다.<sup>73)</sup> 결국 이승만이 말하는 일민주주의는 우리 민족이 동일혈통, 동일운명을 지닌 공동체로서, 남녀상하·지방과당·빈부귀천을 없애고, 균일정치(민주정치)·동일교육(민족교육)·통일경제(민생경제)를 달성하여 자유·진리·공정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요약되었다.<sup>74)</sup>

이같은 일민주주의의 강령을 보급하기 위해 1949년 9월 ‘일민주의 보급회’가 만들어졌다. 이사장은 尹錫五가 맡았으며, 국무총리였던 이범석은 명예회장이 되었다. 일민주의 보급회는 일민주주의에 대해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언제나 하나요, 둘이 아니다. 이 하나인 우리 민족은 무엇이고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貧富同等·貴賤平等·地域無別·男女同權의 확고한 일체감에 입각하여 공동과업을 추진한다면 모든 차등과 대치를 초월하여 전국민에 복리가 도래할 것이라는 웅변한 경륜이시다. ‘一民’이 두 글자는 대통령의 거룩한 투쟁사의 출발이요, 또 귀추일 뿐만 아니라 전민족의 역사적 이념에 근거한 만큼 실로 민족국가의 국시라 하겠다. 따라서 일민주주의는 어떤 정당·단체에 의하여서만 실천될 바 아니요, 전국민의 좌우명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선전하였다.<sup>75)</sup>

실질적으로 일민주주의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간 것은 문교부장관이자 일민주의 보급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安浩相이었다. 안호상은 1950년 2월 『일민주주의의 본바탕(本質)』이라는 책자를 펴냈다. 안호상은 일민주주의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먼저 2차대전이 끝난 시점에서 바야흐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외래관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소화하여 고유한 민족 사상에 맞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의와 사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오늘날 사람마다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참된 주의요 지도원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과거 고구려 신라 백제 3국은 신라의 화랑주의에 의해 통일되었는데, 화랑주의는 단군의 홍익인간, 즉 ‘사람을 크게 유익하게 함’이라는 사상을 받아 민족과 조국에 대한 의리의 정신을 중심으로 삼았다고 보았다. 그는 “이제 남북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면 다시 화랑정신을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화랑정신만으로는 안 된다. 또 민주주의만으로도 안 된다. 민주주의는 흘러가는 사상일 뿐, 영원히 우리 민족의 지도원리가 되기는 너무나 빈약하고 천박하다. 민주주의로써는 공산주의를 쳐부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민족

73) 『경향신문』 1949년 4월 22일 「李承晩 대통령, 一民主義 정신과 민족운동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

74) 『一民主義概述』, 일민주의보급회, 1949

75) 『민주중보』 1949년 12월 16일 「경상남도 일민주의보급회 부위원장, 일민주주의는 國是라고 주장」

의 영원한 지도원리로서 일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76)</sup>

안호상은 일민주의의 뜻을 풀이하면서 이는 ‘한겨레’ 곧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겨레주의’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우리 민족이 동일혈통, 동일운명을 가진 민족임을 특히 강조하였다. 여기서 동일 혈통, ‘한 핏줄’은 ‘일민’의 절대적 요소라고까지 그는 강조하였다. 안호상의 일민주의는 한국 민족주의 가운데 가장 혈통을 강조한 민족주의였으며, 이는 이후 한국 사회에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호상은 더 나아가 “가정이 가족의 집이라면 국가는 민족의 집이다. 민족은 어떠한 개인과 계급보다 더 귀중하며, 국가는 어떤 단체나 정당보다 더 크다. 민족과 국가를 가장 높게 또 귀중히 여김은 인생의 본성이요, 한 백성 일민의 본務이다”라고 말하였다.<sup>77)</sup> 민족과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계급, 단체보다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안호상은 일민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78)</sup> 먼저 정치에서는 남녀, 상하의 차별을 없이 하는 균일정치, 민주정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민주의의 정치는 먼저 항상 민족과 백성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정치, 어떤 개인과 계급, 종파와 당파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정치를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일민주의의 나라 안에서 각 개인은 다 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민족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과 나라의 자유를 피로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일민주의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1) 지방과 파당의 차별의식을 없애는 교육을 할 것, 2) 민족주의로써 교육할 것, 3) 진리를 교육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민족교육’은 정체를 몰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일민주의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민족교육에서의 민족주의는 결코 남을 배척하는 주의나 남을 숭배하는 주의가 아니며 항상 남과 친선을 도모하는 주의라고 말하였다.

일민주의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1) 빈부귀천의 차별을 없애고, 2) 균일경제, 민생경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일민주의의 민생경제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이 그 이상인데, 이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경제와는 다르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본주의는 소수의 부자만이 잘 살고, 다수의 빈자는 못살게 되니 이는 결국 계급갈등을 가져와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없게 한다고 보았다. 또 공산주의는 폭력적 수단으로써 빈부의 차별을 없애려 하지만, 결국 공산주의 경제는 다 같이 평균적인 가난뱅이로 평범한 거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민주의는 모든 부자를 가난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난뱅이들을 부자로 만들려는 것이며, 자본주의와 같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소유를 주거나 공산주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일민주의는 소유와 이익을 절대로 승인하며 보장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와 이익을 돌려줄 것인가. 그는 누구나 일을 부지런히 하면 할수록, 또 이익이 나면 날수록 그것을 모두 일하는 이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그의 소유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76) 안호상, 『일민주의의 본바탕』, 일민주의연구원, 11~23쪽

77) 같은 책, 32쪽

78) 이하의 설명은 『일민주의의 본바탕』을 요약한 것임.

그는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즉 모든 이가 최저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을 해야 하며, 일 잘하고 일 많이 한 이에게는 더 많이 분배하고, 일 못하고 적게 한 이에게는 적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안호상의 일민주의의 사상을 정치, 경제,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민주의는 결국 민족과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족의 하나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차별과 차등을 가능한 한 없애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앞서 본 이범석의 민족지상, 국가지상주의와 비교할 때, 일민주의는 대외적으로 배타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민족주의임을 알 수 있다. 일민주의의 현실적 목표는 대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내적인 것에 있었다. 즉 첫째는 북한과 남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사상적으로 대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일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제3의 이념을 택하였다. 그것은 전통과 민족, 국가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파시즘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파시즘과 대결해온 민족운동가와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민주의의 두 번째 목표는 남한의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일민주의의 내용은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경제 부문에서 ‘다 같이 일하고,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했지만, 자본가들 특히 금융자본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와 산업의 국유화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없었다. 결국 일민주의는 이탈리아나 독일의 파시즘이 그러하였듯이 처음에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국가사회주의’의 틀을 쓰고 나왔지만, 결국은 자본주의를 용인하고 자본가들과 결탁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이승만이 일민주의를 제창한 이후 국회에서 이승만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1948년 10월 여당으로서 대한국민당을 결성하는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한국민당은 ‘一民主義’를 黨是로서 표방하였다. 黨의 政綱도 一民主義에 따라 1) 우리는 계급과 지역, 성별을 초월하여 민족완전통일로 자주독립의 국권신장을 기함, 2)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의 각 방면에서 국민 균등의 복리증진을 기함, 3) 우리는 민족정기의 문화를 계승 발휘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세계문화에 공헌함을 기함 등으로 되어 있었다.<sup>79)</sup> 그러나 이승만이 대한국민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고, 1949년에 다시 대한국민당을 확대 결성하고 한국민주의당의 내각책임제 개헌 반대에 앞장서는 등 이승만 지지운동을 계속하였지만 이승만은 끝내 대한국민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당은 20명 정도의 의원밖에 당선시키지 못함으로써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이후 자유당 결성운동에 밀려 유명무실한 정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후 여당이 된 자유당은 더 이상 일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승만은 1949년 10월 여순군인봉기가 있는 후 공산주의자들의 색출을 빙자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 법은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되었다. 박정희정권 이후에도 이 법은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서 이용되었고, 아직까지도 국가주의의 상징으로서, 파시즘의 유물로서 남아 있다.

79) 『경향신문』 1948년 10월 12일 ; 『자유신문』 1948년 10월 10일

## 4.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해방 직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민족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을 살펴보았다. '민족'에 대한 담론은 주로 '단일민족'론과 '자본주의민족'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단일민족론은 해방 이후 민족의 분단 앞에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으며, 분단 정부 수립 이후에는 남북통일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혹은 남한 내 국민들의 단결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자본주의 민족론은 사회주의자들이 스탈린의 이론을 원용하여 전개한 것으로, 1930년대부터의 사회주의자들의 자본주의 민족론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방 후 민족주의론은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중도우파의 안재홍은 신민족주의론을 제기했고, 보수우파의 김구는 자유주의적, 문화적 민족주의론을 제기했다. 중도좌파의 백남운은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극우파에 속하는 이범석은 민족지상·국가지상주의를 제창했고, 역시 같은 극우파의 안호상·이승만은 일민주의를 제창했다. 이처럼 해방 이후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주의 등 다양한 정치사상과 결합하면서 분화하고 있었다. 또 민족주의 그 자체도 신민족주의처럼 개방적인 민족주의도 있었고, 민족지상주의처럼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성격의 민족주의도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해방 직후의 민족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면서 이후 보다 풍부한 사상을 내포한 민족주의로 발전해갈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안재홍, 백남운, 김구, 이범석·안호상 등이 역사에서 퇴장하면서 한국민족주의의 다양성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이승만의 일민주의의 유물이라 할 전통과 민족, 국가를 강조하는 파시즘적인 요소만이 남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 4.19를 계기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등이 되살아나면서 한국 민족주의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 이후 한국의 민족주의는 박정희 정권측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야당과 민주화운동 진영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민중운동 진영의 민중적 민족주의의 세 갈래로 발전해가게 된다. 이와 같은 구도는 1980년대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1990년 이후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탈민족주의의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민족주의 담론은 다시 새로운 분화를 시작했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은 1) 세계시민과 보편이념을 지향하는 탈민족주의론 2) 신자유주의 입장에 선 탈민족·신국가주의론(뉴라이트 계열), 3)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시민적 민족주의 혹은 시민적 애국주의론, 4) 신자유주의와 탈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민중적, 통일지향적 민족주의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들은 1) 탈민족주의의 수용 여부, 2) 신자유주의의 수용 여부, 3)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들을 둘러싼 각 진영 간의 논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우리는 해방 직후의 민족,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역사적 이론적 고찰: 거시역사적 해석과 미시분석적 접근의 결합을 중심으로\*

박명림 (연세대학교)

## 1. 문제의 제기

200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건국 60주년을 맞아 국가건설에 대한 많은 이론적 경험적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건국’ 견해 및 담론과 ‘정부수립’ 견해 및 담론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바 있었다. 그러나 기실 이러한 논란은, 정치적 의도와 차원을 벗어나면, 이론적 경험적 차원 모두 객관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먼저 대한민국 건국론은 당시의 정부수립 주체 누구도 신생 국가의 창설에 해당하는 건국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식장에 걸린 중앙청의 펼침막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고 있었지 건국을 경축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건국절 제정 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파당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시기에 1948년을 제1의 건국으로 보고 제2건국을 추진한데 대해, 실질적 법제화가 아니라 단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회개혁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성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그런 한나라당이 다시 건국절 제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자기부정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건국절 제정시도는 임시정부 이래 내려오는 건국운동-국가수립운동으로서의 독립운동을 부인하는 역사단절에 해당한다. 즉 역사적으로 매우 긴 배경과 기원, 연원을 갖는 대한민국의 등장과 건국을 1945년에서 48년 사이의 매우 협소한 건국운동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오랜 건국-독립-광복운동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48년 건국 자체만을 기릴 경우에 또 다른 문제는 마치 48년 정부수립에의 참여와 거부를 놓고 참여세력만의 업적을 기리게 되어 거부세력, 즉 김구를 포함한 임시정부 주도세력에 대한 배제와 건국업적 독점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가형성의 넓은 기반과 지평을 확보해야할 근대국가로서는 국민통합에 반하는 매우 퇴행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북한에 대한 배타적 정통성 독점의 관점을 의미한다. 48년 건국절의 제정은 마

---

\* 본 발표는 2008년의 한 학술회의에서의 발표를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아직 초고 중의 초고이기에 발표자의 동의없는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본고는 발표자의 두 한국의 국가형성 및 헌법제정에 대한 기존의 논문과 견해 사이의 연결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치 냉전과 좌우갈등의 혼돈 속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려 이에 반대했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민족내 모든 세력을 반대한국으로 낙인찍게 될, 사관을 1948년의 친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으로 돌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건국 60년을 지나 이제 48년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식민시기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대한민국 내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존, 화해, 통일, 통합을 지향해야할 건국 60년에 이 세 차원 모두의 대립을 증폭시킬 건국절 제정과 기념은 이 세 차원 모두에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해악적이었던 것이다. 물론 48년 자체의 건국 정신만을 기릴 경우 그 이후 대한민국이 추가하고 확장해온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등의 국가정신을 후퇴시키는 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1919년 ‘임시정부 건국론’으로 회귀해서도 안된다. 이점 역시 한국의 대안담론과 진보세력이 문제를 크게 잘못 짚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경험적 차원에서 보자면 첫째는, 임시정부 건국론=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론은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갖춘 ‘건국준비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즉 스스로 건국과제를 자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된다. 즉 임시 정부 스스로 아직 국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미 대한민국 건국은 끝났기 때문에 1948년은 정부수립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배치된다. 동시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을 우리는 추가로 지적할 수 있다. 즉 만약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여길 경우 그것은 다른 독립운동에 대한 인정의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며, 무엇보다도 진보세력이 추구하는 통일운동 및 담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미 1919년에 끝난 건국을 단지 계승했을 뿐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북한의 존재가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을 이탈한 괴뢰, 또는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과제는, 공존과 평화통일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정통성 독점과 부인의 이분법으로 빠져들게 된다. 전형적인 자기분열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좀 더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지평에서 접근하고 해석할 때가 되었다. 이 때 역사적이라는 의미는 한국의 구체적 궤적과 특성을 함의하며, 보편적이라는 언설은 일반적이며 이론적이라는 지평을 함축한다.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현실적 구성요소를 갖춘 중앙 정부 수립 없는 국가형성=건국은 불가능하다. 즉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자체도 앞선 여러 근대국가건설 운동의 산물이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임시정부를 포함한 일련의 연속적 국가수립 운동의 귀결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 최초로 국민, 주권, 영토를 갖는 근대국가로 등장한 대한민국의 건설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물론 두 흐름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진지하게 모색된 바 있다.<sup>1)</sup> 이에 바탕해 본고는 대한민국의 국가건설(state-making)과 국민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에 대해 사실적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명하려는 문제의 초점에는 근대국가와 국민형성의 역사적 경로와 의미, 정체성(identity)이 포함된다. 시기적으로는 짧게는 1945년부터 1953년 한국전쟁의 종전 시점까지이나, 길게는 전후(前後)의 거시역사적 범주를 포괄하려한다. 요컨대 한국의 국가형성을

1) 두 흐름을 통합하려했던 논의들에 대해서는 “특집: 이승만과 제1공화국- 분단과 건국의 담론을 넘어”, 《역사비평》 83호(2008년 여름), pp.33-212.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건국 60주년 기념학술대회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그 지도자들》(2008년 11월 26일),pp.1-176

둘러싼 미시적 접근해석과 거시적 접근해석을 결합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해명하려는 주요 이론적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때 ‘이론적’ 질문들이라는 언명은, 담론의 진보성이나 보수성, 또는 대한민국 비판과 인정 여부는 본고가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첫째 1948년 등장한 대한민국을 근대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를 구성하는 필수요건, 예컨대 영토, 주권, 국민이 구성요소(qualifications)에서 결여되어있었는가 아닌가? 또 그것을 ‘정부수립’담론과 연결할 수 있는 이론적 교차지점은 무엇인가?

둘째 1948년의 정체를 근대국민국가라고 할 때 그것의 등장과정과 요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거시역사적 단계와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또 그것들은 미시적 과정에서 어떻게 불려나오고 역할하며 활용되는가?

셋째 국민국가 대한민국이 등장 전후 국민형성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한 기제는 무엇이었는가?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물리적 폭력과 이데올로기적 교의, 교육, 선전과 홍보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특별히 반공주의가 민족주의

셋째 일반 인민들이 국가건설과정에서 국민으로서의 동일체 의식을 갖게되는 계기와 기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나머지 동일민족의 절반에 대한 ‘비’(非) 국민인식을 갖게 되었는가?

넷째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은 국민정체성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전쟁으로 인해 확인된 국민들의 대적국(對敵國) 반응을 통해 볼 때 국민형성은 적어도 1948년 시점에서는 통일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것은 아닌가?

다섯째 민족정체성과 국가/국민정체성의 충돌 사이에서 강력한 민족주의를 뚫고 어떻게 국가/국민정체성은 민족정체성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현대한국에서 국가/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최초로 충돌한 이 국면에서 이중정체성 중 더 우월한 것은 어느 것이었는가? 왜 국가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은 민족정체성을 압도하였는가? 요컨대 민족(우선)주의와 국가(우선)주의는 왜 후자의 우위로 귀결되었는가?

여섯째 한국의 국가건설, 국민형성과정은 왜 다른 일반적 경우와 달리 정의 통합이 아니라 ‘적대’와 ‘통합’이 병진한 부의 통합이었는가? 분단과정과 국가·국민형성과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대내 통합의 정도와 대북적대의 정도가 거의 비례적으로 높아진 부의 통합은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일곱째 한국전쟁과 국가건설, 국민형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국가형성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은 한국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끝으로 한국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 국민정체성에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어떤 특수성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들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능하였으며, 또 다른 경우들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 2. 역사적 조건, 국가건설 운동, 그리고 국가형성: 거시 역사적 이해를 위하여

우리가 규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1948년 근대국가 등장의 거시적 과정 또는 단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건국과 정부수립 담론을 결합하기 위한, 동시에 국가형성과 민족주의에 관한 일반이론과 한국사례를 결합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써 전근대국가에서 근대국가로의 이행을 일련의 연속적 계기로 파악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요컨대 전근대국가(pre-modern state), 이행국가(transitory state), 식민국가(colonial state)를 거쳐 등장하는 근대국가=분단국가(modern nation-state)로의 이행의 거시-역사적 조건과 요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한국의 근대국가 등장은 명확히 분리된 단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분획과 구별, 그리고 일정한 단절적 비약적 연속 역시 분명하다는 특성을 보여왔다. 그것들은 ① 전통시대(19세기 이전), ② 근대 이행(19세기), ③ 식민시기(일제 통치시대), ④ 국가(기구) 건설 시기(1945-48년, 또는 1945-53년)를 말한다. 이들은 하나의 단절되고 연속된 계기를 구성하며 1948년, 또는 1953년의 국가건설로 수렴되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두 한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즉 5단계로서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면, 1948년/53년에서 통일까지의 시기는 또 하나의 단계를 구성하며 통일 이후로 연결될 것이다.

이 때 사실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이론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문제는 세 단계별로 각각 첫째로는 근대국가/근대국민/근대민족 형성의 시원적 원형(proto-type)의 존재 유무, 둘째는 48년 이전의 단일 근대국가 형성 또는 존재 여부, 셋째 주권상실시기의 국가형성 노력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한국의 국가건설을 거시-역사적으로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논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제는 전통한국에서 존재해온 이른바 역사적 국가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 역사적 국가란 오랜 시기동안 예외적으로 정치적 단위와 종족적 단위가 일치해온 경우를 말한다. 중국 및 일본과의 역사적 자연적 경계의 명확한 획정으로 인해 한국민족은 고려의 등장 이후 천년 동안이나 “단일 종족=단일 정치단위”, 즉 ‘역사적 국가’(historic state. Eric Hobsbawm)로서 아주 장구하게 존재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종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국민들은 독립되고 분리된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일치는 세계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종족이 다수의 정치단위를 형성하거나, 하나의 정치단위가 다수의 종족으로 형성된 사례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다.

이 때 ‘역사적 국가’(historic state)로서의 한국의 특수한 경험과 세계의 보편성의 중층적 고려를 통한 비교적 객관성의 담보지점은 어디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근대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주의를, 서구의 경험에 바탕한 지배적 민족주의 이론과는 달리, 하나의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sup>2)</sup>로서만 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2)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y*, ///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소개에 대해서는 Anthony Smith. /// 참조. 한국민족주의에대한 최근의 포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신기욱///

근대적 동원을 통한 상상의 공동체 이전에 실질적인 역사적 자원과 토대를 갖추었으므로, 즉 원형 민족주의(proto-nationalism)를 갖는 토대를 갖추어 근대 국민국가수립운동이나 민족주의 분출의 토대가 매우 강력하게 존재했었다는 점이다.<sup>3)</sup> 민족주의를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시원주의(primordialism)나 근대 이후 위로부터의 엘리트에 의한 동원과 창조로 보는 근대주의(modernism) 모두를 지양 또는 통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의 한국경로라는 것이다.<sup>4)</sup> 역사적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근대 이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단위에 맞게 국민과 민족을 위로부터 창조해내었던 유럽의 사례와는 결정적으로 상이하였던 것이다. 유럽이 '국가→민족'(state to nation)의 경로를 밟아왔다면, 한국은 '민족→국가'(nation to state)의 경로를 밟아왔던 것이다. 또는 중화체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국가→국가(state to state) 경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5)</sup>

즉 한말 이래 근대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동원된 강력한 엘리트 민족주의는, 비록 그것이 위로부터의 동원이었다 할지라도,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원형민족주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원형적 민족주의는 역사적 국가로서의 장구한 경험으로 인한 것이었다. 종족과 국가, 종족단위와 정치단위, 둘의 결합이 근대 이후 그토록 강력한 한국민족주의를 창출해내었던 것이다. 즉 한국에서 민족국가는 단순한 근대 이후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중화체제하에서의 한국의 독립과 생존의 역사 역시 단순한 조공국가의 차원을 넘어 새롭게 해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제1차 세계화, 근대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초기 부르주아와 시민계층, 근대 입헌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포함하는 근대국민국가 건설의 최초 단계가 발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시민의식 발전, 헌법 및 법률체계, 국제 만국공법질서참여, 근대 국가기구창설 노력을 포함한 다양하고도 많은 직접적인 근대국가건설노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한국국제의 등장으로 최초로 한국이라는 국호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한국의 경우 이 시기 근대국가형성과정에서 가장 특이하였던 점은 동아시아 전체의 서구와의 접촉 및 상호작용과, 그런 가운데 동아시아 내 중일 관계 역전 및 한국의 위상변동을 포함한 역내 상호작용이라는 이중 상호작용에 직면하였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이중 상호작용은 동아시아 전체 지역질서를 해체하는 동시에 그 구성요소인 한국을 더욱 큰 외부압력과 위상 변동으로 몰아넣었다.<sup>7)</sup> 이 과정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건설운동, 공화주의 운동은 한국의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통시대의 왕조국가를 대체하는, 근대국가체제와 국민을 갖는 단일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식민시기 이전에, 즉 자치의 시기에 단일 국민국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던 점은, 이념적 분화를 포함해 식민시기 단일대안국가의 실패로 연결됨은 물론 1945년 이후의 단일정체, 단일국가 건설의 역사적 정치적 경험과 자원을 추출할 수 없는

3) Hobsbawm, ///

4) 시원주의와 근대주의에대한 정리에 대해서는 ///를 참조

5)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

6) 중화체제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해석과 논의에 대해서는 ///

7) 이 시기의 국가건설운동에 대해서는 강만길, 김도형, 박찬승, 정용화, //// 를 참조.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점은 이 세 시기 국가건설 운동의 인적 구성과 사상적 흐름이 일정 정도 연속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아야할 요소로 보인다.

두 번째 단계는 국권을 상실한 식민시기의 국가건설 노력이었다. 오랜 역사적 국가의 향유 경험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망국에 직면하자 주권회복을 위해 한국민들은 매우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특히 오랜 시기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선진문명의 전수국가로 여겨온 열등 일본에게 급격히 역전, 사상 최초로 식민 상태로 돌입하자 이 급전(急轉)에 대한 집합적 분노와 저항은 가누기 어려웠다. 강한 저항을 통한 이 때의 민족 정체성 의식 강화와 계층분화, 국제연대노력, 이념분화, 사회경제발전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근대 국가형성의 직접적인 저변이 되었다.

그렇다면 식민국가 시기 단일한 대안국가(counter-state)의 실패와 근대 국민국가형성노력의 분열은 바로 그 원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하는가? 단일대안국가<sup>8)</sup> 구축의 문제와 관련해 흥미 있는 점은, 식민시기 국가형성 노력으로서의 민족독립운동은, 흥미롭게도 오랜 역사적 국가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광범한 이념적 정치적 분열 상태를 보이며 상호 경쟁하였다. 경쟁을 넘어, 일부는 상호 격렬하게 적대적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 상태는 2차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단일 국민국가형성에 저해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일 대안국가 구축의 실패와 단일 국민국가 건설의 실패를 곧바로 연결하는 해석은, 냉전이라는 훨씬 더 압도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국가건설에서 식민시기 민족독립운동, 한말 국가건설 운동은 물론 역사적 국가의 전통마저 제압한 압도적 요인은 무엇보다도 국제냉전의 한반도로의 급속하고도 전면적인 확산이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은 임시정부라는 한국국가의 원형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정신, 체계, 원리, 조항, 구조를 포함해 거의 모든 면에서 1948년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모태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상의 정부를 자임하기는 했지만, 국민, 영토, 주권이 모두 결여되어있었기 때문에 아직 국가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헌법과 정부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안국가에 가장 근접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임시정부의 거의 모든 것이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되었다는 점이었다. 헌법정신, 체제, 조항, 기본구조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일치하였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헌법의 전문에 임시정부의 계승을 명문화하기 까지 하였다. 국가형성의 가장 결정적 통과요소가 헌법의 제정이라고 할 때 1948년 한국 국가의 수립은 한말 이래 진행된 이른바 헌법혁명(constitutional revolution)의 명백한 귀결이었던 것이다.<sup>9)</sup> 따라서 임시정부는 대안국가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원형정부(proto-government)였던 것은 분명했다.

---

8) Anthony Smith///

9) 헌법혁명의 개념//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 한시준, 서희경, 신우철, 박명림을 참조.

### 3. 국가건설의 미시 과정 · 성격 · 해석

#### (1) 이중성격 - 근대국가이자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

1948년 38선의 남과 북에 등장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각각 하나의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었다. 근대국가의 핵심적 구성요소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설명틀에 비추어 볼 때 남한과 북한의 두 정체는 국가성(stateness/statehood)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는 ❶ 주어진 영토에서의 폭력의 합법적 독점과 질서유지능력, ❷ 국제공동체에서의 주권의 인정 문제에서 결여되어있지 않았다. 물론 근대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의 요소에서도 결여된 바 없었다. 따라서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중앙권위구조를 갖는 두 정체를 근대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남한과 북한은 보편적 일반적 측면에서 근대국가라고 하여 이것이 곧 이 두 정체의 모든 항구적 핵심적 성격을 드러내는 정의는 아니었다. 따라서 다른 하나의 특성은 구체성 또는 개별성으로서의 역사적 국가에 반하는 분단국가로서의 존재요 성격이었다. 남한과 북한의 리더십과 국민들이 그토록 분단을 저지하려 하였던 이유는 오랫동안 종족단위와 정치단위의 일치로부터 오는 역사적 국가로서의 특성 때문에 민족의 분단(division)과 정체의 분할(separation)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분단은 한국민족에겐 식민에 못지않은 민족주의의 배반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개념적으로 말해 분단국가(divided state)라는 표현은 출발부터 원천적인 형용모순이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특정 정체는 공식적으로 분단되는 순간 서로 다른 두 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단’국가란 사실 현실에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의 본질과 정면충돌하는 표현인 것이다. 아니면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여, 일민족=일국가 신화에 빠져 민족분단을 국가분단으로 등치한 사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강조하였듯 하나의 민족이 여러 국가를 만든 경우도 많으며, 하나의 국가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이는 일반적 보편적 경로와 맞지 않는 이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두 한국은 1948년 이전에 하나의 근대국가로 존재해온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근대국가를 건설한 경험을 갖는다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즉 분단될 수 있는 단일 근대국가를 향유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두 한국이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의 근대국가로서, 또는 적어도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해왔을 것으로 당연시해온 한국의 기존 역사해석과 담론에서 이러한 견해와 해석은 일견 충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나 견해가 아니라 엄정한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 하나의 민족이 여러 (근대)국가를 형성한 경우도 여럿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국가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사례 역시 허다하다. 즉 일민족 일국가는 결코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경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국에서는 ‘분단’국가라는 언술이 현실 영역과 학문 영역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용되어왔는가? 그것은 관념과 생활, 문화, 권력공동체로서의 민족의 분단을 국가의 분단으로 의제한 결과였다. 동시에 민족과 국가, 종족 공동체와 정치 공동체가 천년 이상 일치해온 역사적 국가의 경험 때문이었다. 동시에 통일추구에 대한 강렬한 집합적 희원을 담는 표현

이었다. 사실 한국의 경우는 분단의 원인이나 유형, 주체 모든 면에서 민족분단이라기 보다는 지역분단, 또는 국제분단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두 한국민들에게 두 근대국가, 두 권력실체의 등장은 천년 이상을 지속해온 '민족국가'의 분열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두 한국을 의심의 여지없이 분단국가로 이해하도록 안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두 한국은 등장 이후 사실상 한 국가의 분열과 대립처럼 밀접한 맞물림과 대립과 관계동학을 보여주었다. 근대국가로서의 보편성과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이 결합하여 빚어내는 특별한 동학은 이후 두 한국의 집합의식, 발전양태, 국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둘은, 오랫동안의 단일 공동체 정체성과 역사로 인해 마치 동근원성(同根源性)을 갖는 실체처럼 상대의 정체성과 존재를 상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로 인해 강박당하는 연결쌍생아(conjoined twins)로 존재하고 기능하였다. 이른바 적대하면서도 공생하고 공생하면서도 적대하는 관계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였다.<sup>10)</sup>

## (2) 근대국가건설의 과정 - 설명 ; 국민형성의 과정과의 중첩의 측면에서

식민시대 대한국가 형성에 실패한 한국민들은 2차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즉각적으로 독립국가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비록 한국민들의 관념과 의식의 영역에서라도 대한국가(counter-state)로 존재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근대국가의 상관관계; 제국주의 협력, 독립운동과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 정당성의 근원으로서의 반제투쟁. 반제투쟁의 하나로서의 임시정부, 항일빨치산. 각각의 역사적 정당성의 근거. 과장과 확대의 문제.

임시정부에 대한 부인은 식민시대 대한국가에 대한 부인이라기보다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인공을 포함한 일체의 토착적인 중앙권력 수립노력에 대한 부인을 의미했다. 이 점은 사실상의 국가권력 역할을 수행한 점령당국(occupying authority)으로서의 배타적 독점적인 권력행사를 의미했다. 이 점은 한국만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점령한 세계 모든 곳에서의 거의 일반적 현상이었다. 두 점령 당국은 비록 본질상 국가는 아니었지만 속성상 국가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했다.

그 점에서 분단의 기원, 따라서 두 근대국가의 등장 직접적 요인은 의심의 여지없는 미소 분할점령이었다. 비록 단일대한국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한국민족 내부의 어떤 사회적 종족적 지역적 분화와 권력 갈등을 기원으로 하여 두 개의 국가가 등장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 분단의 단초가 놓인 것도 아니었다. 전형적인 국제적 분단으로서의 한국 분단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즉 한국의 분단은 내부의 어떤 이념적이며 종족적이며 문화적인, 심지어 지역적이며 정치적인 분화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려 천년 이상이나 사실상의 단일민족=단일국가를 유지해온 존재를 분할하였음을 의미했다. 그 점에서 전형적인 인위적 분단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국제적 분단의 과정과 일치하는 한국 근대국가의 최종 등장에 대한 의미의 해석 문제이다. 1948년 등장한 한국은 1945년 해방 직후 상황의 하나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해방 직후 한국 국가건설의 최초 상황은, 우파의 대표세력이었던 임시정

10) Barrington Moore, Jr

부와 이승만의 해외 체류를 전제로, 아직 좌파의 이니셔티브에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건국준비위원회와 인공, 인위는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좌파 우세는 매우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였다. 먼저 이승만과 임정으로 두 대표적인 우파의 현장부재였다는 점을 전제해야한다는 점이다. 헤게모니를 다투는 비상한 국면에서 특정 정치지도자와 그룹의 현장 부재는, 때로는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로 초기 국면을 주도한 좌파들조차 이승만과 김구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승만을 좌우 모두를 아우르는 초기 건국조직의 대표로 추대할 만큼 권위와 지위, 역량을 인정하고 있었다. 동시에 귀국 이전부터 임정에 대한 사실상의 대안국가로서의 인정과 승복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삼입/// (동시에 인공에 대한 부인은, 미군정은 물론 김구조차 그러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좌파 일변도의 독점적 우위지형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좌파우위로 해석해왔던 경향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방직후 전체 상황이 좌파주도였건 것은 부인하기 어려웠다. 38선 북부 지역이 민족주의 우세에서 좌파우세로 전이하였다면, 남부 지역은 좌파우세에서 우파우위로 역전되었음을 의미했다. 이 역전과정은 점령세력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즉 국가형성의 가장 큰 힘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부로부터 온 것이었다. 국가건설의 초기 조건과 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형성 과정은 외생적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국가건설과정과 주체, 정신의 내면을 보면 내생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헌법구상은 거의 그대로 대한민국 헌법에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헌법혁명으로 설명가능하다. 이 점은 하나의 역설이라 할 수 있다. 한국민들의 자주적 자생적 국가형성노력은 부인하였지만 그의 근대국가구상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자주성과 자율성을 허용하는 역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헌법은 미국 관계자들이 일종의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였을 만큼 미국적요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권력구조 역시 미국정부형태와는 거리가 멀었다.

\* 분단국가 등장의 이해; 상이한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동시 진행과정. 그럴 때 과연 국가건설(=단정단선)의 인식문제와 관련해 남한을 과연 단선단정을 먼저 갔다고 공격할 수 있는가? 분단의 계기의 선취문제 - 전부 북한이 앞서감. 국가형성과 정치현실에 대한 정치사상적 정치이론적 재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형성의 시퀀스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정당성 논쟁 문제를 넘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함의 및 시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독립-자치”의 선취와 “분단-상호 이격(離隔)”의 선취 사이의 자기분열을 이해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독립의 선취가 분단의 선취로 이어진 이른바 혁명적 탈식민주의, 민족주의의 민족성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이후의 통일 주장이 갖는 민족주의의 허구를, 정치이념이 아니라 정치현실로 파악해야하는 근거를 갖게 된다.

① 초기 독자 공산당과 맹아국가(embryonic state)의 창립= 분단된 독립통치기구의 등장을 의미 ;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년 10월 10-13일) 및 북조선 5도 행정10국의 수립

(1945년 11월 19일). 명백한 독자노선의 추구==일지역 사회주의론=민주기지론

- ⑥ 탈식민개혁=독자변혁노선의 실천; 46년 봄 급진토지개혁을 통한 독자사회발전 추구, 남한과의 완전한 유리. 혁명의 선취
- ⑦ 공식 정부 수립의 준비= 헌법과 정부구성 ;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이 훨씬 먼저 앞서나갔다. 북한은 최소한 1947년 9월 내부적으로 헌법 작성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시작(중요한 것은 한국문제의 유엔이관 시점이라는 점). 물론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소련과 동구의 헌법 및 그 초안들을 거의 모두 번역하여 참조. 1947년 11월 18-19일, 북조선 인민회의 제3차 회의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조직을 결정 - 김두봉 의장 헌법제정문제 공식 제기. (남한을 명백히 의식). 1948년 2월 10일 이미 헌법초안 발표. 남한은 아직 선거조차 있기 이전.
- ⑧ 공식 정부의 수립 시점;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정부'를 훨씬 먼저 수립해놓고 단정수립=분단의 길을 먼저 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 정부수립만 지연하고 있었다. 물론 소련군정과 북한리더십은 내부 토론에서 이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남한보다 나중에 공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섯 가지 점에서 북한이 먼저 앞서 나갔다는 점이다. 초기 맹아정부의 등장, 국가건설의 준비과정으로 사회변혁과 개혁조치, 국민통합의 기제로서의 선전과 이념교육, 군대의 창설, 헌법제정 모두 북한이 앞서 나갔다. 이 점에서 이승만의 정읍발언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선언적 표명을 제외하면 근대 국가 창설의 다섯 차원 모두에서 북한이 앞서 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이 점은, 대한민국 국가건설에 대한 민족주의적 통일주의적 비판은 적어도 북한과의 균형 위에 진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 (3) 근대국가건설의 분석

- ① 그렇다면 1948년 수립된 한국은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근대국가란 무엇인가? ; 국가성(stateness, statehood) 및 주권(sovereignty)의 정의와 2대 속성 - 합법적 폭력의 대내적 독점과 국제공동체에서의 대외적 인정. 우리에게 국가의 본질과 관련하여 국가성, 정당성(legitimacy), 합법성(legality)의 문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당시 인민들은 국가건설(집중)과 이념분열(분화)의 동시 진행과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 ② 분단국가의 국가성과 주권의 문제; 주권국가(sovereign state), 결손국가(broken state), 의사국가(quasi state) 중 무엇인가? 의심의 여지없는 주권국가였다.
- ③ (근대) 국민국가의 정의 주어진 영토에서 폭력의 합법적 독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인간공동체(Max Weber). 근대국가의 기본요소, 즉 국가성(stateness)의 2대 요건 내적으로는 폭력의 유일한 합법적 독점(合法性), 외적으로는 주권(sovereignty)의 국제적 승인(主權性). 즉 국가 없이 주권 없다.<sup>11)</sup>
- ④ 국가형성 근대국가는 철저하게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 따라서 근대국가와 전통국가의 핵심 차이는 주권과 영토의 일치 여부. 국가형성은 주어진 영토에서 폭력·권력의 합법적

11) Otto Hintze, J.P.Nettl, Theda Skocpol, F.H.Hinsley

독점을 구축해나가는 과정. 즉 경쟁세력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과정.<sup>12)</sup> 두 한국의 1945년에서 1948년의 정치현상은 전형적인 국가형성의 과정. 한국의 국경형성과정은 네 가지의 유형중 인위적인 분할(demarcation) 유형에 해당한다.

- 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내부 사회적 갈등과 길항의 산물이 아니라, 즉 내생적 경로가 아니라 그러한 점을 내포하였으되 왜생적 국가형성의 경로를 밟음.(Maurice Godlier)

한국의 국가형성 요인 자체는 냉전과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의 패퇴 및 냉전으로 인한 미소분할점령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국가형성의 조건은 도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국가형태와 성격, 이를테면 정치체제(혼합정체)와 경제체제(균등경제)는 전혀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었다. 후자는 전적으로 한국의 식민시대 근대 국가건설 운동 시기의 체제 구상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 점은 국제정치와 헌법 분석을 포함해 향후 매우 깊이 연구되어야 할 점. 45년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도한 단절은 잘못 된 것. 대통령제-혼합정체는 임시정부-식민시기 시절부터의 사실상의 합의. 이승만의 전환은 계기적 요소에 불과. 경제체제의 경우는 미국 시장경제체제와는 더욱 거리가 먼 혼합경제-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최초 국가건설 시점의 미국의 국가형태와 성격에 대한 불개입은 국가건설 완성 시점-한국전쟁 종전에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시장경제로의 전환 압력을 통해, 균등경제로부터 국가성격의 전환을 시도.

#### 4. 근대국가의 보편성과 분단국가의 특수성(?); 공통의 속성, 상이한 경로

한국의 국가형성의 특징은 두 가지 점에서 추가될 수 있다. 이점은 한국의 국가정체성을 결정지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나는 국제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분단 요인이었다.

##### (1) 헌법의 영토조항 삽입과 그 의미 ;

고전적 국가요소(qualifications), 헌법이론에 따른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의 삽입? 건국헌법 영토조항(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삽입과정 - 북한의 중앙정부성 주장(제 102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에 대한 명백한 대응. 당시 남한 건국의 교부들(founding fathers)의 인식은 분명했다. 즉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성과 전 한반도성을 주장하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헌법은 결코 남한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본 조항을 설치한 것”<sup>13)</sup>. 그는 북한헌법 초안을 입수하여 참조. 특수성에 대한 특수성의 대응. 왜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성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헌법의 이 특수조항이 갖는, 정

12) (Charles Tilly).

13) 유진오, 《헌법해의》

치현실적 의미를 넘어, 정치사상적-헌법이론적 의미는 심대하다.

## (2) 국제질서와 국가정당성의 문제 - 유엔의 결정들과 대한민국의 전한반도 중앙정부성의 문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의 범위와 근거의 문제(1947년 11월 14일, 19458년 12월 12일의 유엔결정에 근거). 그러나 바로 이에 근거해 한국정부와 유엔-미국은 심각한 논란을 야기. 실제의 해석은 유엔과 미국이 옳다. 대한민국은 다만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승인된 합법정부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넘어, 1947년 11월 14일과 48년 12월 12일의 유엔결정에 근거하여, 항상 북한에 대한 배타적 통치주권까지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한반도에 걸친 남한의 주권성과 통치성은 유엔에 의해 단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으며, 한국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 유엔승인과 전한반도에 걸친 독점적 정체성의 획득은 남한으로서는 남북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이를 통해 남한은 북한에 대해 공세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의 국민들은 오랫동안, 그리고 대부분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지금까지도 남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나 지금에나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1991년 이후에는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남과 북은 동일한 유엔 회원국가로서 유엔현장의 완벽히 동등한 적용을 받는다 - 그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는 초기 격렬한 정당성 경쟁이 초래한 사실 왜곡이었다.

그리고 유엔과 미국은 바로 이 점을 들어 남한의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부인해왔다. 유엔의 국가형성 시점의 결정에 따르면, 남한은 단지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 가능했던 지역에 대해 유효한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정부로 수립되었음”(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 원문 그대로)을 선포 받은 상태였다.<sup>14)</sup> 남한은 헌법의 영토조항은 물론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지 못한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시기 미국과 한국의 격렬한 충돌 시점에 이는 다시 문제가 되었으나 미국과 유엔의 입장은 더 강경하게 변해있었다.<sup>15)</sup> 결국 미국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법적 관할권을 현재까지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16)</sup>

14) Y.H. Chyung, ed., *The United Nations and the Korean Question* (Seoul: The U.N. Association of Korea, 1961), p.8;

15) 1950년 10월 12일 유엔 총회 임시위원회(소총회)의 결정. 결정은 “유엔이 한반도 전역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정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는 없다”고 명백하게 선언하며 통일에 따른 남한의 북한 통치권을 부인하였다. 원문을 보자. “Interim Committee on Korea,.... 3. Recall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a lawful Government having effective control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that there is consequently no government that i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having legal and effective control of other parts of Korea,....” Y.H. Chyung, ed., *The United Nations and the Korean Question*, pp.186-189.

### (3) 헌법·법치와 정체성의 문제 -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논란의 의미 ;

여순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안보위기 시점에 제정, 즉 국가수호-안보-반공문제와 직결. 국회에서의 격렬한 논쟁. 영토조항에 헌법적 근거를 이미 확보. 현재와의 문제의 동일성.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상황의 충돌에 대한 이해. 논란의 결정적 초점은 두 가지. 하나는 무엇보다도 헌법의 추상적 정체성 규정을 국가보안법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겠다는 것. 따라서 사실상 분단국가-분단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삽입된 것. 최근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은 이것이 한국의 헌법적 질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두 번째 문제는 법치(rule of law)-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어떻게 특수한 하위법적 질서가 헌법의 근본정신 - 인권 보장, 민주주의 -과 충돌하면서 역으로 헌법질서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가? 즉 법치와 민주주의(democracy)의 관계,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원칙적으로 법치는 민주주의 없이도 가능하다-하버마스). 만약에 영토조항이 사실상 헌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이라면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되는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가 갖는 정치 이론적 의미를 우리는 과연 헌법해석학의 수준으로 돌파가능한가? 당시의 논란은 왜 오늘날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는가?

이 법의 제정은 헌법에 못지않은 근본법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삽입///

### (4)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의 문제 ;

냉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분단국가 한국은 이론적으로는 주권국가였으나 국제정치의 현실에서의 주권행사 - 특히 대외적 주권행사 - 와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서독, 일본, 대만 등 처럼 사실상의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라고 할 수 있었다. 왜 사실상의 반주권국가인가? 그 이유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 모두에서의 주권행사의 제약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sup>17)</sup>

## 5. 국가건설과 국민형성; 국민정체성의 창출과 주조

### (1) 과정

국가는 어떻게 대중을, 인민을 특정의 국민으로 주조, 형성해나갔는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을,

16) 미국 의회조사국, "북한의 국제적 승인에 관련된 법적 분석"(1996년 12월 6일) 《전략연구》 제IV권 2호(1997년 6월), pp.191-192

17) 반주권성(semi-sovereignty),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의 개념은 샤프츠슈나이더(Elmer Schattschneider)의 미국 국내정치개념(semi-sovereign people)을 독일을 사례로 국내국제정치에 적용하여 발전시킨 카첸스타인으로부터 빌어왔다. Peter J. Katzenstein, *Policy and Politics in West Germany - The Growth of a Semisovereign Stat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pp.8-10

일반 인민을 국민이자 시민으로 만들어간 요인과 과정은 무엇인가? 근대국가의 국민형성의 자원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역사적 자원, 정치적 자원, 사회경제적 자원, 정신-이념적 자원, 국제적 자원.

- 1) 역사적 -민족적 자원; ; ❶ 단기적 즉각적 자원의 동원; 대한제국, 항일 독립운동,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❷ 장기적 거시적 자원의 동원; 단군, 홍익인간, 화랑도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고전고대로부터의 역사적 정당성 확보를 추구하려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당성, 정통성의 문제와 직결.
- 2) 정치적 자원; 보통선거의 도입과 의미 선거는 민중동원과 체제창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민주적 메카니즘. 국민을 체제창설에 참여시켜 동의를 추출하는 최선의 방법의 하나임.<sup>18)</sup> 1948년 5·10총선의 의미 선거는 기본적으로 “긴 과정의 마지막 의식”(last ceremony)<sup>19)</sup>. 즉 미시적으로는 지난 3년의 점령, 개혁, 갈등, 제도도입의 귀결이지만 거시적으로는 근대 국민국가건설 및 국민형성을 위한 한국민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었다.
- 3) 사회경제적 자원; 토지개혁 토지문제는 구체제 해체와 신체제 건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 처음에는 좌파가 강력히 추구하였으나 결국 미군정과 남한국가에 의해 실현됨. 미군정과 남한은 북한의 급진개혁을 의식, 급진적 방식과 보수적 방식의 중도개혁노선을 채택,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진보적인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사례에 속함. 한국에서 평등주의의 확산과 자본주의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함.<sup>20)</sup>
- 4) 정신-이념적 자원; 민주주의의 학습과 홍보, 교육. 방대한 홍보자료와 전단, 신문을 통한 침투효과 극대화 추구. 동시에 반공주의의 만연된 동원과 일상화. 반공과 반북, 반소. 여기에서 한국 국민형성의 이중성이 초래하는 특수성이 존재함.
- 5) 국제적 자원의 확보 노력 - 국가의 3요소인 주권과 직결된 문제; 유엔, 민주주의, 미국, 자유, 실용주의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특별히 유엔의 인정을 받는 민족 내의 일등국민, 세계시민이라는 우월의식을 심어주려 노력. 북한주민들은 국민이 아닌 비국민으로 전략. 진영내 정체성의 확보.

==> 보통선거, 사회경제개혁(토지개혁), 의회제 도입은 일반적으로 근대시민혁명의 산물. 그렇다면 미군점령과 남한의 국가건설은 최초 ‘좌파혁명’을 저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구의 ‘시민혁명’에 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함. 온건개혁을 통한 혁명적 결과의 초래가 남한국가형성의 과정이었음. 개혁이 혁명을 대체한 것임.

## (2) 분석과 해석

- 1) 종족, 민족으로서의 정체성(ethnicity)과 국민(nationhood)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불일치,

18) (Goran Therborn)

19) Antonio Gramsci

20) (Eric Hobsbawm)

괴리, 충돌,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현실로서의 두 국가, 두 국민(의식)과 역사적 하나로서의 민족의식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하였는가? 국내국민형성을 통한 분단국가 정당화를 위해 동원한 국제냉전, 반소이데올로기가 기여한 측면은 무엇이었는가? 월남과 월북은 국민정체성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 2) 적대의식의 충만과 부정적 통합(negative integration); 대내적 통합과 남북 적대가 상호 비례적으로 강화되는 이중과정으로서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 즉 한국은 반공이라는 부의 통합(negative integration)의 요소와 민주주의라는 정의 통합(positive integration)의 요소(Hans-Ulrich Wehler)의 결합으로 출발한 국가. 상대공산국가와의 '적대'와 자신으로의 '단결'의 두 과정이 동시에 결합되어 진행됨. 국가형성은 곧 특정 근대국가가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에 대해 충성의 대상을 획정하는 국민형성(nation-building)의 과정에 상부(相符). 따라서 적대와 단결은 상호 상승적으로 높아짐. 이러한 양면의 결합이 나중에 격렬한 체제 경쟁과 빠른 발전을 결과한 측면도 존재함. 남한에게 북한문제, 북한에게 남한문제는 체제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자 동원요소.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
- 3)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론이자 학술언어인 냉전정체성 만들기(the making of cold war identity)와 냉전원수만들기(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sup>21)</sup>는 남과 북에서 어떻게 병행할 수 있었는가? 동일 민족 절반은 냉전원수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자신 역시 타자에 의해 냉전원수가 되어가는 과정의 병으로서 타자규정이 곧 자기규정이 되는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상대를 냉전원수로 만들면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공고히 해나갔던 것이다.
- 4) 그런데 이러한 냉전정체성은 국제적 냉전정체성(global cold war identity)의 확대, 침투에 따른 지역적 국내적 (냉전) 정체성(regional-local cold war identity)의 형성 문제는 어떻게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있었는가? 진영정체성의 획정을 통한 민족해체. 북한과 공산주의 자들에 대한 반민족적 악으로서의 형상화와 낙인찍기 전략(stigmatization)
- 5)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한 위로부터의 동원(mobilization from above)의 문제인가 아니면 대중적 참여와 지지(popular support)의 결합은 어느 정도였는가? 둘 사이의 순서와 계기(sequences)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가능한가? 북한으로서의 점령당했을 때 인민들이 보였던 지지-저항-중립의 三分 현상, 三分 반응은 국가의 국민형성 노력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 동시에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 사이에서 여전히 국민정체성이 이념적 선호의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 6) 건국 전후의 광범한 학교교육의 급증, 언론과 선전, 홍보, 대중 집회를 통해 새로운 의식과 생활에 대한 강조를 통한 새 국민으로의 (재)탄생을 요구하고 주입하려 노력하였다.<sup>22)</sup> 교육과 언론, 홍보를 통한 국가의 침투노력은 광범하고도 집요하였다. 교육은 그 자체 문자해독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공식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지지하는 국민을 만들어 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자 과정이었다. 그 점에서 교육은 국민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제를 의미했다. 국가건설은 한마디로 하나의 급진적 질서 대체라는

21) (Ron Robin, Peter J. Kuznick and James Gilbert)

22) 박찬표, 임종명

혁명적 과정을 의미했다. 과거 일련의 혁명, 파시즘, 좌우신생체제들의 궤적과 행로가 보여 주는 바는 신체제 등장 이후 일련의 신구결합을 보여준다. 오랜 민족적 전통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련의 신사고체제와 가치를 주입하고 확산시키려 노력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전형적인 사례였다.

## 6. 한국전쟁과 국가건설 · 국민형성의 문제

### (1) 사실과 설명

- 1) 민족 분단의 고착 전전의 유동적 잠정적 분단에서 전후의 고정적 항상적 분단으로 변질. 휴전선은 이념적 계급적 분할선을 넘어 사실상 새로운 국경선으로 등장. 국경으로서의 휴전선. 남북 분단 국가시대의 개막. 국경형성의 역사적 유형에 비추어 보아 1945년의 직선=38선이 단순한 분획(demarcation)에 해당한다면, 1948년은 이 분획이 내화한 계기, 그러나 1953년 곡선=휴전선은 거대한 폭력과 희생을 치른 뒤 등장하여 역사적 국경형성의 과정과 요인을 3년 동안 압축하여 응축한 내장의 계기. 즉 국경으로서의 휴전선, 국경형성의 계기로서의 한국전쟁이라는 점이다.<sup>23)</sup>
- 2) 국가범위와 국민범위의 일치 계기. 사실 두 한국의 국가건설은 엄밀한 의미에서 1948년이 아니라 1953년에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국경으로서 현실적으로 고착되는 것은 1948년이 아니라 1953년이며, 동시에 두 한국의 국민심성 속에 휴전선이 분할선으로 고정되는 것 역시 이 때이다. 따라서 48년의 38선은 아직 잠정적 분할선이었다면 53년의 분할선은 비로소 고정적 항상적 분할선으로 등장하여 사실상의 국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48년의 분할선이 외생적 국경요소였다면, 53년은 외생, 내생 요소가 착종되면 내화한 국경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민형성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 즉 국민의식을 확고하게 구축한 것도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부터였다. 국민으로서의 관념과 의식이 확고해진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남한과 북한의 구성원들은 자기체제에 대한 충성을 확고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민형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의식의 범위 형성. 국가영토(territorial boundary)와 집합적 국민정체성 및 집합의식=국민됨(nationhood)이 비로소 일치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한국전쟁. 나아가 국민의식 속에 국가와 정권, 정부가 일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이승만 체제로서는 커다란 정치적 이익이자 소득.
- 3)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역사적 자료 ; 남침을 동원한 국민교육의 효과는 최고. 정당성의 최고 역사적 재료로서의 한국전쟁. 반공주의와 김일성 일인 독재의 심화 계기. 둘 다 승리한 전쟁으로 치부 승전과 기존체제의 강화. 물론 학문적으로는 “비긴 전쟁”. 특히 북한은 “미제와 남조선의 북침저지”라는 허위의 자원을 김일성 리더십 기반, 선전 및 강화의 자료로

23) 국경형성의 유형에 대해서는 S. Jones, & A.Giddens

항상 동원하고 호출(mobilization & interpellation).

국가형성의 한 요소는 군대형성과 관련된다. 즉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비로소 자기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군대를 갖추게 되었는바 이점은 1948년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것이었다. 1948년 시점에 한국은 아직 하나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물리력의 수준이 낮았다.

- 4) 국가의 변화; 전쟁과 군사혁명(military revolution)<sup>24)</sup>. 전쟁은 군사부문의 규모, 조직, 단결심, 애국심, 대외 접촉기회 등의 놀라운 발전을 초래, 이른바 군사혁명을 추동. 산업혁명이나 민주혁명에 앞서 군사혁명이 먼저 존재하여 근대국가의 외형을 선도적으로 정초. 탈식민 저발전 사회에서 군대의 역할을 비대칭적으로 제고시킴. 향후 군사쿠데타의 조건은 한국전쟁으로 이해 놓였음. 동시에 과거의 친일조직에서 국가수호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 국민과의 일체성과 충성심을 높이는 계기.
- 5) 진영정체성의 문제. 한국국민은 다른 국민정체성과는 다른 하나의 정체성을 추가로 향유. 그것은 국제자유진영의 일원이라는 정체성. 동시에 다른 하나의 국민의식은 친미의식. 반공과 친미는 한국전쟁이 국민의식과 정체성에 유증한 역사적 쌍생아. 그것은 남북적대와 한미동맹이 현실에서 한국전쟁의 역사적 쌍생아였던 것과 동일한 현상. 국민정체성이 국가형성과 동시에 국제차원을 내함(內含)하게 된 사례에 해당.

## (2) 분석과 해석

- 1) 국민통합과 국민정체성 형성의 성공. 세계사에서 거의 완벽한 부정적 통합의 사례. 이질 요소의 완전한 뿌리뽑음과 척결을 통한 이념적 정화(정화)의 성공. 그 점에서 한국전쟁은 국가건설전쟁이자 국민형성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통합과 배제의 이중주.

\*\*\* 국민정체성 형성과정과 잔인성의 문제; 한국의 국민정체성 형성과정은 일종의 국민적 이념적 정화과정과 일치한다.<sup>26)</sup> 다른 나라, 이를테면 문화적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혼성사회서 국가건설-국민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종정화(racial purification), 종교정화(religious purification)과정이 없는 대신 이미 문화적 인종적 역사적 언어적 종족적으로 완벽히 동질사회(homogeneous society)였기 때문에 국민일체성을 위해 남은 것은 단지 이념적 정화(ideological purification)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오랜 동질성이 이념적 갈등과 잔인성의 정도를 높였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국민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단일) 민족정체성을 파괴한데 대한 파괴주체에 대한 응징과 절멸의지의 확인, 즉 정체성을 파괴한 절반을 절멸하여 원래의 단일성(oneness)과 동질성(homogeneity)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들은 내부의 파괴자에 대해 더욱 잔인해지기 때문이다. 과거의 단일성과 동질성을 정상이요 패러다이스로 여길 때 현재의 분열과 대결은 더욱 참을 수 없게 된다.

---

24) 군사혁명의 개념과 근대국가 건설에 대해서는 .....

25) C.Tilly

26) Anthony Giddens

- 2) 대안정체성 구축의 실패 ; 전시 북한(남한)의 교육과 점령정책,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짧은 경험과 국민형성을 고찰할 때. 이러한 정체성의 대체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점령기간의 단기성으로부터 연유하였지만 다른 한편 그것은 대안정체성의 존재에 따른 내적 투쟁과 기대를 반영하는 면도 있었다. 상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전쟁이전에 형성된,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적대의식이 끼친 영향 역시 컸다.<sup>27)</sup> 그러나 여기에서 일제하의 이념적 분화를 대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 3) 가공할 적대의식의 장벽을 구축. 적대의 정도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심화되었다. 대외적 적대는 대내적 단결과 통합을 증진시킨다는 사회학의 갈등이론을 확인하게 된다.<sup>28)</sup>
- 4) 적대의식의 충만과 부정적 통합 봉인; 대내적 통합과 남북 적대가 상호 비례적으로 강화되는 관계를 최종적으로 봉인. 남한에게 북한문제, 북한에게 남한문제는 체제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자 동원요소.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 내적 통합과 상호 적대의 비례 증진이라는 기묘한 관계를 통해 적대적 공생, 또는 공생적 적대(symbiotic antagonism)를 진행.<sup>29)</sup>
- 5) 보편의식의 상실 국내냉전의 심화. 남한과 북한은 사상과 인식의 외눈박이. 심각한 이념적 왜곡으로 인해 보편성을 통해 자신을 보는 정상기준을 상실. 가장 강한 반공이 가장 강한 정당성을 갖는 집단주의구조 유증. 북한 역시 가장 강한 반남, 반미가 가장 강한 정당성을 갖는 이데올로기 형성. 반공주의와 민주주의, 반공주의와 자유주의를 분리해낸 집합적 지혜가 남한 민주화를 추동한 시민사회의 덕목·서독을 제외하면 모든 분단국가들(동독, 두 중국, 두 한국, 두 베트남) 중 최고로 민주주의 저항과 발전의 역사를 보임.
- 6) 사회의 균등화와 균질화 ; 과거의 전통적 반상주의 철폐.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의 변전. 평등주의와 의식의 놀라운 확산과 계급의 소멸. 국민계층적 일체감 상승. 국민형성 및 평등화 기제로서의 전쟁.
- 7) 강력한 단체정신(esprit de corps)의 형성 단일한 국민정신을 형성, 절대적 고통은 이후 근대화의 추동에 큰 정신적 자양분이 됨. 교육,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서 제3세계에서 가장 빠른 놀라운 혁명적 발전을 이룸. 1950-60년대의 북한이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의 발전에서, 60년대 이후는 남한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서 빠른 성취를 보여줌.
- 8) 자유민주주의라는 소극적 방어적 이념의 적극적 공세적 이념으로의 전환.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해방 직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혁명적 좌파와 급진민족주의에 맞서기 위한 하나의 소극적 방어적 국가건설이념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무력침공에 맞서 생명을 바쳐 수호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이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국민통합과 정체성의 표상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스스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현자로서 자임하려하였고 일정 정도 성공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반공정체성이 북한 부인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1948년 이전과는 달리

27) 서주석, 김동춘

28) Lewis Coser

29) Barrington Moore,////

1953년 이후에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이른바 자기충실성(self-authenticity)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sup>30)</sup> 이점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중대한 변화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자기모순과 자기분열의 요소를 안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교육해야하는 측면 하나와,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저항의 공간을 열어놓은 셈이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시점에 형성된 이러한 지형은 이후 국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외형을 갖출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런 점에서 4.19는 이승만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이승만이 뿌린 씨앗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 7. 결론에 대신하여

- 1) 역사적 단계 대한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국가 및 국민 형성의 연속과 단절의 지점과 요소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석할 것인가?
- 2) 한국 국가의 이중성에 대해: 근대국가와 분단국가의 어떤 측면이 어떻게 드러나고 만나며 이후 역사에서 전개되는가?
- 3) 식민국민(colonial nation)에서 분단국민(divided nation)으로? 그러나 사실상 분단국민이라는 개념과 정체성은 존재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하나의 근대국가 국민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 문제는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다. 그들은 헌법상은 국민이었지만, 국가보안법상은 반국가단체의 성원이었고, 국제법상은 유엔회원국으로서의 독립국가의 국민이었다. 또는 다른 유엔회원국의 (해외)동포였다. 따라서 탈북자를 ‘국민의’ ‘귀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반국가단체 성원의’ ‘귀순’으로 볼 것인지, ‘해외동포의’ ‘귀국’으로 볼 것인지는, 헌법을 포함한 너무나도 중요한 실정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직 전혀 검토된 바 없다.<sup>31)</sup>

강조할 필요도 없이 하나의 민족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나 두 개의 국민이 되었을 뿐이다. 하나의 민족이 여러 국민을 구성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다만 한국의 경우 특수한 것은 그것이 바로 역사적 국가였던 경험 때문이었고, 이 점은 끝없는 단일국민국가 형성의 의지와 노력 -전쟁을 포함하는 -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 4) 국민정체성이 민족정체성을 압도하고 적대하는 두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민족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일련의 시원적 요소들(primordial conditions)이 (냉전과)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요소의 등장 앞에서 거의 無化되고 있음을 본다. 민족(성)의 절멸을 추구하는 국가(성)의 압도 현상에서 우리가 (단일)민족주의의 경험을 (단일) 근대국민국가로 등치시키기

---

30) 박명립

31) 발표자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초안 작성 당시의 논의////

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말을 바꾸면 민족주의는 민족을 구성하는 시원적 요소들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구성, 재구성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통일 이래 국가와 민족, 정치적 단위(political unit)와 종족적 단위(ethnic unit)가 예외적으로 일치해온 역사적 국가(historic state)로서의 한국의 장구한 민족주의와, 지극히 근대적 현상이나 과거에 가져본 적이 없이 갑자기 등장한 두 국민국가와의 조우는 너무도 불편하고 갈등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해석의 논점을 제공한다. 결국 국가(우선)주의(=국가건설노선)와 민족(우선)주의(=통일노선) 사이의 갈등에서 민족을 토대로 하여 국가의 영토범위로 형성되는 국민정체성은 민족정체성이나 종족정체성을 넘어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게다가 중화체제가 한중일이라는 사실상의 국가에 근접한 행위주체 사이에 존재했던 반(半)근대국제체제로서의 국가간 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 6) 대한민국의 국민은 전형적으로 냉전, 분단, 전쟁으로 만들어진 근대적 현상이자 국제적 정체성의 산물. 그것은 장구한 사회 내 균열과 갈등의 해소과정에서 내부적 계기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님. 그 어떤 내부 사회적 이념적 요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적 역사적 선재요소로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북한국민조차 하나의 근대국가국민으로서 존재해온 적은 없었다. 다만 그들의 국민으로서의 존재는 과거 민족으로서의 존재와 일면 충돌하면서, 일면 그것을 동원하면서 진행된 이중과정의 산물. 한국의 분단이 냉전의 산물이었음을 고려할 때, 즉 한국의 민족분단이 세계냉전의 산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외생적 형성이었으며 내생적 형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 7) 단일정체성(single identity)과 이중정체성(dual identity)의 문제; 북한과의 상관관계에서 존재(=전체), 관계, 부분, 이 세 요소의 공존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민족으로서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기본적인 길항과 내면적 갈등을 안은 채 존재해 온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남남갈등의 근원적 뿌리. 이미 정리되었던 국민정체성이 단일민족정체성이 복원 노력과 함께 파괴되거나 적어도 이완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국가정체성의 장벽을 높이 쌓아 민족정체성의 틈입을 막아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한국의 정체성의 중층성을 혼성정체성(hybrid identity)이나 복합정체성(multiple identity)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8) 국가건설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와 국민 정체성의 구조(architecture)를 파악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1948년 이후, 특히 1953년 이후 한국의 국제적 정체성은 무엇보다 친미적-친서방적 집합의식의 증대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아왔던 진영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대한 국민적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겠다. 주권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이다. 한국국민의 국제적 정체성이 친서방-친미로 재편되면서 일련의 탈중국, 탈일본, 즉 먼 서방국가와의 연대를 추구하는 동안 동양의 전통적 주군국가(suzerain)의 문화와 영향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 한국민들은 강한 반중, 반일정서를 갖고 있었다. 전자는

반공과 연결된 것이었지만 후자는 식민경험이 연결된 것이었다. 어쨌든 이를 통해, 지역적 소속을 제외할 경우 동아시아정체성은 현저하게 벗어나 있었다.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집합의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철저하게 탈동아시아-친서방의 의식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탈동아시아의 계기가 주어지게 된 것은 두 가지의 문제가 한국의 국민적 정체성의 확립에 중요하였음을 알게 된다. 하나는 냉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식민경험이었던 것이다. 냉전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이 필수적이었고, 식민경험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의 이탈과 적대도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탈중국, 탈일본의 국가전략은 국민정체성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한국의 국민은 대부분 친미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80년대의 반미-탈미 움직임은 당시의 과도한 친미-친서구 정체성에대한 반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요컨대 과도한 친미가 반미의 근원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한국민의 세계내 위상을 결정하여 주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국민들의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부동해졌다. 물론 국가의 주권 역시 그러하였다.

- 9) “동근원성”(同根源性)에 대한 파괴로부터 발원하는 극도의 적대의식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동질성과 동근원성을 파괴한 절반의 자기는 오랜 타자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파괴자이자 이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멸을 통한 자기복원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은 이전의 자기의 절반이자 오늘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제거하려 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갈등보다 더 격렬하며 중요적이다. 전형적인 근린증오, 근친증오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타자로 인해, 또는 직전 자기의 절반으로 인해 규정되는 정체성에 대해 왜 과거의 자기로서 포용하지 않느냐는 물음은 정체성의 경쟁이 정통성의 경쟁으로 전화되기 때문에 어렵다.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정체성은 부인되며 동시에 그것은 정통성의 상실로 연결된다. 요컨대 이러한 상태에서의 인정투쟁은 생사투쟁이 된다. 여기에 이념갈등과 민족주의가 개재될 때 갈등은 더욱 생사투쟁의 극점과 최고수준의 폭력으로 치달는다.
- 10)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의 밀도(density)와 관련된 것이다. 밀도는 통합의 정도 및 국가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의 관계, 즉 충성도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것은 곧 국가가 하나의 단위로서 얼마나 강력한 지배적 권력(despotic power)과 하부구조적-침투적 권력(infrastructural power.)을 갖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1948-53년 이후 두 한국의 국민정체성은 최초의 전통국가에서 근대국가로의 이행시기였던 대한제국 시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짙어졌다. 그것은 아마도 국가정체성, 권력 강도, 문자보급률 등 전근대적인 민족-종족적 요소에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제질서와 근대적 요소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정체성의 확립은 국민들에게 일종의 단체정신(esprit de corps)을 갖게 해주어 하나의 단위로 一絲不亂하게 단결하도록 해주었다. 대한민국 시기는 근대 이후 최고도로 국민정체성의 강도와 밀도가 높아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분단과 전쟁이었다. 망국과 식민경험의 민족정체성이 분단과 전

32) Michael Mann

쟁으로 해체 및 재구성되는 점에 대한 구명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11) 국민정체성에 바탕한 단결심으로부터 발원한 동원과 참여는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문제는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단일 정체성과 의식의 문제였다. 즉 그 존재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참여와,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전쟁이라는 적대의 정점, 폭력대결의 최고수준을 경험한 집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의 공동운명체 같은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 12) 자기 정체성의 완화와 타자정체성의 수용은 정체성의 공유(sharing)로 연결되며 이는 고전적 사회학과 정치학이 문제 삼는 정체성과 연대(solidarity)의 단위(unit)에 관한 문제임. 국가정체성에서 단순히 민족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결합하느냐의 문제. 요컨대 분단의 완화가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갖는 이중적 의미의 파악. 남북 사이의 통합의 정도의 진행, 즉 적대의 완화와 내부의 이념갈등의 증대라는 반비례성이 반복될 것. '남북 사이의' 적대가 완화되면 될수록 남한 내부의 갈등의 증폭은 심화될 것임. 통일은 적과의 통합, 따라서 분단완화시의 내부갈등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 우리는 이 점을 지혜롭게 넘을 수 있어야한다. 우리사회가 경제적 발전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이성과 지혜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 형성과 민족 정체성

김성보 (연세대학교, 한국사)

## 1. 머리말

이 발표는 분단의 조건 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국가 구성원의 정체성을 '인민'과 '민족'으로 이중 규정하면서 발생한 딜레마를 다룬다. 분단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족 정체성과 국민(인민) 정체성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 분열의 양상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는 어떤 양상을 드러냈는지 살펴보고, 이를 대한민국(이하 '남한') 및 동서독과 비교함으로써 그 성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말, 일제하에 한국의 국가건설운동은 1민족 1국가 건설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외국군의 분할주둔과 냉전의 국제적 조건 속에서 1948년에 한반도에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수립되었다. 하나의 민족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는 상황에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또한 남북의 체제 차이를 반영하여, 국가 구성원의 정체성이 북한에서는 '인민'으로, 대한민국(이하 '남한')에서는 '국민'으로 상이하게 개념화하였다.<sup>1)</sup>

분단국가에서 발생하는 국민(인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분열은 남북한과 동서독에 함께 나타나지만, 그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민족주의가 금기시되었던 동서독의 예를 든다면, 서독에서는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민족 정체성 대신에 '헌법 애국주의'에 기초한 시민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었고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인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아예 민족 자체를 구분하여 스스로를 사회주의 민족으로 규정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제시되는 정체성의 분열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다.<sup>2)</sup> 물론 사회 내면에서는 민족관념이 유지되었지만 그것은 공론화될 수 없었고 통일의 과정도 소련·동유럽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동독이 무너지고 이를 서독이 흡수하며 유럽 통합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가인 남북한에서는 분단의 고착화와 상호 대립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념은 거의 도전을 받지 않았다. 여전히 남북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뿌리 깊으며, 다만 한반도 주민은 원하지 않는 분단상황으로 인해 서로 다른 체제에 살고 있다는 관념이 강하다. 여전히 남북의 두 정부는 언젠가 하나로 합쳐야 할 과도적 존재로 인식되어왔으며

1)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2009.

2) 에드가 볼프룸 지음, 이병련·김승렬 옮김, 『무기가 된 역사—독일사로 읽는 역사전쟁』, 역사비평사, 2007, 155~180쪽 참조.

따라서 고정불변하지 않는 분단정부에 자신의 정체성을 위탁할 국가 구성원은 많지 않았다. 남한의 경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더욱 그러하였다. 위로부터의 주입에도 불구하고 밑으로부터 그런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동의는 남한의 경우 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민족 정체성이 어떤 다른 집단 정체성도 압도한다는 점은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에서는 아예 조선은 ‘단일민족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 조선 인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다만 남쪽이 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어 언젠가는 해방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그런 점에서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에서는 국민(인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다른 체제·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민족 정체성과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 정체성의 미분화가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정체성의 미분화로 인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 전제 위에서 공존과 장기적인 통합을 모색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같음을 강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공존하기 어렵게 하는 현실이 반복되어왔다.

이 발표는 그러한 시각을 전제로 하면서 남의 국민 정체성과 구별되는 북의 인민 정체성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과 융합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지점에서 긴장관계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남북 각각의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과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남북간 평화공존과 장기적 통합의 길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전망해본다.

## 2. 인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구조적 한계

### 1) 인민 정체성의 복합적 요소 - 혁명성, 민족성, 국제성

북한에서 남한의 국민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답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가진 개인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그것은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민(公民)’이라고 할 수 있다. 공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 신앙과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지며 노동과 휴식,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그리고 공민은 법 준수, 노동, 국가재산을 아끼며 조국을 보위하는 의무 등을 지닌다.<sup>3)</sup> 그러나 북에서 공민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 아래 국가와 개인 사이에 설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뿐이지, 이 개념이 북한 주민의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북한 주민의 집단 정체성은 ‘인민’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인민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은 해방 이후 좌우대립과 남북 정부 수립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 1945년 8월의 해방 당시 한국(Korea)의 주민 집단 또는 그 출신을 호칭하는 용어는 인민, 국민, 백성, 민족, 겨레, 동포, 민

3) 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조항(『북한법령집 1』, 31~33쪽).

중, 대중 등 다양하였다. 그러나 9월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면서, 인민은 좌익의 용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우익은 그 대신 국민이라는 단어로 국가건설의 주체를 호명하였다. 좌익이 인민이라는 용어에 집착하게 된 것은 해방 이후 각지에서 밑으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민위원회’를 토대로 하여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우익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봉대하여 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강조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이는 남북의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남한의 헌법에서는 주권의 원천과 국가구성원을 국민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반해 북한 헌법에서는 주권의 원천을 인민으로 파악하였다.<sup>4)</sup>

1948년도에 배타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두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남북 각각이 주장하는 정당성의 근거는 상이하였다. 북은 남북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를 통해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유일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다. 북한 지역에서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공동 추천한 후보자를 북한 공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남한 지역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지하선거를 통해 인민대표를 선출한 다음,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에 보낼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 취해졌다. 북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43.4%(572명 중에서 248명)가 항일운동으로 체포·감금 경력이 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항일운동 경력자가 50.2%에 달한다고 힘주어 발표하였다.<sup>5)</sup> 최고인민회의는 ‘남북 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전조선 통일적 최고 립법 기관’으로 탄생한 것으로 선포되었다.<sup>6)</sup>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매국노 리승만을 괴수로’ 하는 ‘괴뢰 정부’라고 비난하였다. 북한 정부는 이미 조선 전체 인민을 대표하며, 다만 남쪽을 ‘괴뢰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니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과 제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뜻을 따라 통일을 하는 과업이 남았을 뿐이었다.<sup>7)</sup> 이에 반해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과 국제연합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일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북은 인민에게서 정당성을 찾고, 남은 국가의 계승성과 국제적 인정이라는 점에서 정통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남북 각각이 자신의 정당성 또는 정통성을 찾는 근거가 다른 만큼, 국가 구성원의 정체성도 인민과 국민으로 구별되었다.

그런데 인민이라는 개념은 막상 정확하게 북한의 주민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인민은 사전적 정의에 따른다면 “나라를 이루고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켜 가는데서 주체로 되는 사람들”로서 “혁명의 대상을 제외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괄”된다.<sup>8)</sup> 노동자, 농민 등 근로계급보다는 광범한 포괄성을 지니지만 혁명의 대상이 되는 친일파나 민족반역자 등은 명확히 배제하는 점에서 막연한 민족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혁명의 주체를 표현하는 용어이니 만큼 혁명의 성격이 바뀌면 인민의 범주도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다. 한편 인민은 반민족적 부류를 제외한 대다수 민족 구성원을 포괄하기 때문에

4) 김성보, 앞의 글.

5)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1』, 국토통일원, 1988, 100쪽.

6) 김일성, 「정권 이양에 관한 성명 (1948.9.8)」, 『김일성선집2』, 1953, 261쪽.

7) 김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경축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 (1948.9.12)」, 『김일성선집2』, 1953, 257~258쪽.

8) 『조선말대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99쪽.

인민 자체가 민족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전세계 인민, 조선 인민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용어는 일국 일민족 단위를 넘어 국제주의적인 연대감을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인민이라는 용어는 혁명성, 민족성, 국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집단 정체성은 내적 응집력을 해치지 않는 한, 개방적이고 혼성적일수록 그 집단의 대외 적응력과 내적 발전을 촉진하기 마련이다. 1946년 8·15해방 1주년 기념보고에서 김일성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끝으로 우리는 해방된 우리 조선 인민들의 위대한 민주주의개혁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의 해방자인 소련과 붉은 군대로부터 앞으로도 성의있는 원조가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만세!  
인민의 정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만세!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의 영원한 친선 만세!  
조선 인민의 해방자 붉은군대 만세!  
조선 인민의 벗이며 해방자인 위대한 쓰딸린 대원수 만세!  
조선민족해방 만세!”<sup>9)</sup>

위의 문장에서 ‘인민’과 관련한 당시 김일성과 북한 정권의 어법을 읽어낼 수 있다. 북한에 1946년 2월에 수립된 정권과 향후 한반도 전체에 수립할 공화국은 모두 인민의 이름으로 수립될 것이다.(이 시점에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 자체가 놀랍다) 인민 정권의 수립은 소련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되, 그 후원은 어디까지나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의 ‘벗’으로서의 연대감의 발로이다. 그리고 결국 조선민족은 해방될 것이다. 국가의 정당성을 인민에게서 찾으며, 대다수 주민에게 자신이 역사의 주체, 건국의 주체인 인민임을 자각하게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소련과 조선의 관계는 인민 친선의 차원으로 설정하여 민족감정의 훼손 없이 수용하며 이를 통해 결국 조선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여 조선인의 민족의식에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어법이다. 혁명성, 민족성, 국제성을 포용하는 인민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북에 친소적이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로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체제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기 이전 시점에는 인민 개념 속의 혁명성, 민족성, 국제성 3자가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상호 견제 기능을 함으로써 어느 하나의 도그마에 빠지지 않게 하는 역동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인민’의 개념을 이룬 시기인 1947년도에 이론적으로 정리한 최창익(崔昌益)은 인민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상정하였다. 그는 “역사는 인민의 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역사발전에 있어서 언제나 인민들이 그 주동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인민들은 반민주적 반동분자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최후발악을 격파하면서 새 세기를 창조하려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부단히 전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인민의 범주와 역할은 시대적 과제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본계급민주혁명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근로인민이 자

9) 김일성, 「8·15 1주년을 기념하면서 조선동포에게 고향», 『김일성장군 중요논문집』, 북조선로동당출판사, 1948, 124쪽.

본가에게서 동원되어 투쟁하였으나 자본가가 권력을 잡은 뒤에는 배제되고 착취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전세계근로인민은 “진정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하여 총궐기”하였다고 서술하였다.<sup>10)</sup>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인민투쟁사 중심의 역사인식은 편협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이 몰락하고 탈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신생국들이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그 시대의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었다 하겠다.

이 혁명성은 민족성에 의해 일정하게 견제받는다. 혁명성이 기본적으로 배제의 논리라면, 민족성은 기본적으로 내적 통합의 논리로서 작용하였다. 친일 민족반역자 등은 인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었지만 그 외의 다양한 계급, 계층은 인민이라는 범주 속에 포괄되었다. 이는 계급의 논리를 넘어선 것이었다.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김일성은 일제하에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가 미약하며 건국, 경제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 활용하는 실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민족반역자는 법에 정해진 틀 안에서만 규정하도록 하였다.<sup>11)</sup> 한때 매국노로 부르던 김구와 손을 잡은 것도 민족의 논리를 통해서였다. 김일성의 해방 이후 언술을 보면,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민족주의적 언술이 자주 표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만년에 빛나는 문화예술의 전통을 가진 우수한 조선민족”, “조선민족은 동양에 있어서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전통을 가진 우수한 민족”, “조선민족의 민족적 고귀한 민족성” 등의 표현은 그가 본래 민족주의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sup>12)</sup>

그런데 민족성은 국제성에 의해 견제되었다.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국제주의의 제약을 받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었다. 그 대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단결을 전제로 하는 ‘애국주의’가 장려되었다. 특히 건국 초기에 국제주의에 의한 민족주의 제약은 강도가 높았다. 1946년 8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채택한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에 의하면, 북조선에서 공민증 발급대상은 “북조선내에 거주하는 전 조선민족”으로 규정되었다. 외국인은 외국공민증을 소지하거나 임시외국인공민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혈통을 기준으로 공민을 가름한 것이다. 그러나 1948년 헌법에서는 소련 헌법과 유사하게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민족 차별을 두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더욱이 소련 헌법에는 찾을 수 없는 조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민족은 조선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31조)는 조항까지 헌법에 삽입하였다. 이는 소련의 국제주의 요구와 더불어 조선내 중국 화교-중국내 조선족의 문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sup>13)</sup> 1963년 10월에 채택되는 국적법에

10) 최창익, 「人民은 歷史의 基本推進力」, 『勤勞者』 9, 1947, 13~15쪽.

11) 토지개혁과정에서 김일성은 소자산계급의 조급성과 복수성을 비판하고, 민족반역자 규정을 엄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평북 함남에서는 자작농의 토지까지를 몰수하였던 사실이 있다. 민족반역자 규정에 있어서 황해도에서는 面, 郡에서 민족반역자를 임의로 규정한 사실이 있으며 평북에서 區長 노릇할 때에 배급품을 떼어먹었다고 반역자로 규정(후에 수정)한 일이 있고 평남에서는 區長 理事長 노릇을 했다고 민족반역자로 몰았다. 그 이외에 농민의 복수성에 대하여 일부 당에서는 이것을 제지치 못하였다.”(김일성, 「토지개혁 사업의 총결과 금후 과업」, 『김일성장군 중요논문집』, 1948, 29~30쪽),

12) 『김일성장군 중요논문집』, 95·289·290쪽.

13) 김성보, 앞의 글, 89~92쪽.

도 국제주의는 유지되어 북의 공민은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공화국 공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공화국의 정치적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sup>14)</sup> 북한에서 국제주의는 소련 등 사회주의권과의 연대는 물론 제3세계와의 연대로 확대된다. 북한의 고립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인민 연대의 국제적 토대가 붕괴되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북에서 인민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민이 역사발전의 주체라고 할 때 그 역사발전은 기본적으로 민족을 단위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 혈통을 전제로 하는 민족의식이 인민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까지는 국제주의와 혁명의 지향성이 이 민족정체성을 상호 보완하고 견제하는 작용을 하면서 북의 대내외적 대응을 탄력성을 부여해 왔다.

## 2) 인민 정체성의 구조적 한계

이상에서 북한의 정부수립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민’ 정체성이 지니는 역동성에 주목해보았다. 다만 이 역동성은 남북분단이라고 하는 구조적 제약성과 사회주의이념의 경직성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역사발전의 주체로 선언된 ‘인민’의 자발성은 토지개혁, 전후복구 등에서 실제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 자발성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지도층이 설정한 길에 부합할 때에만 인정되었다. 즉 인민은 역사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당과 수령의 지도를 받을 때에만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당과 수령의 지도를 강조하는 시각은 주체사상 성립 이전인 정부수립 이전에 이미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을 지도자로 찬양하는 작업은 문인들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1947년도 최창익의 인민론에는 이미 인민이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올바른 영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지도자는 “반드시 인민대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김일성장군은 항상 인민대중과 굳게 연결되어있으며 누구보다도 가장 충실하게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에게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 스스로 조선민족의 유일하고도 위대한 영도자로 추대한 것”이라는 지도자론이었다.<sup>15)</sup> 인민의 역사의 주체이고 권력의 원천이라고 선언되었지만 혁명과 통일의 과정에서 지도를 받아야 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위치가 부여되었다.

인민은 지도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자신의 성격 자체를 개조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김일성은 조선민족이 고귀한 민족성을 지닌 위대한 민족이라고 예찬하였지만, 다른 한편 조선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압박과 야만적인 착취로 말미암아 식민지 민족으로 뒤떨어지게 되었다는 비판을 함께 하였다. 인민은 옛 잔재를 씻어내고 새롭게 건국과 경제건설, 통일에 나서기 위해 자신을 단련해야할 존재였다.

1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북한연구자료집 6』, 189~190쪽.

15) 최창익, 앞의 글, 23쪽.

“朝鮮人民은 앞으로도 더 다르게 더 심각하게 ‘變’하여야겠습니다. 人民의 意思대로 人民의 要求대로 人民의 힘에 依하여 더 좀 ‘變’하여야겠습니다. 옛날 社會의 모든 찌꺼기를 하루 바빠 씨쳐버리고 一切 親日的 反動的 찌꺼기들을 肅淸하고 정말 人民의 나라 새로운 民主主義의 나라로 ‘變’하여야겠습니다.”<sup>16)</sup>

‘옛날 社會의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민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사상의식과 애국심을 강조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지향한 바였다.<sup>17)</sup> 그리고 이는 “민주 건국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인민으로 개조하는 작업이었다.<sup>18)</sup> 인민의 재탄생은 이외에도 토지개혁과 선거 참여 등 인민으로서의 체험적 자각, 교양사업과 강연 등의 선전 선동사업, 각종 기념행사를 통한 동원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949년도의 예를 들면, 지방주민 대표들이 관광단을 조직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건설의 성과를 실물로 보게하는 사업<sup>19)</sup>, 겨울농한기에 산간 벽촌까지 선전대를 보내는 사업<sup>20)</sup> 등 ‘민주개혁’의 성과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궁벽한 지역의 인민에게까지 선전 사업이 확대되었다.

감시와 처벌도 인민 개조과정의 한 부분을 이룬다. ‘노획문서’들을 보면 북한정권이 체제에 수동적이거나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의 일상을 비교적 치밀하게 감시하고 때로는 처벌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산군 문무면 문구리 장로교회 목사 조봉환(趙鳳煥)은 반동사건으로 피소되었는데, 그 죄목은 전도강연 등에서 반동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다. ‘현물세 만세’라고 하는데 현물세를 영원히 내면 좋겠는가, 북조선에 당이 많으나 최종 승리할 당은 예수의 당이라던가, “지금 학교는 방학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나 기차도 방학을 했다... 왜정시에는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돈만 있으면 누어서 여행할 수 있었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발언은 어떤 조직적 성격을 띤 것도 아니었고 피소자 자신은 발언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였으나 징역 4년 형이 언도되었다.<sup>21)</sup> 「선천군 주일학교 조사관계철」을 보면 검열자들이 교회 주일학교의 교재 내용, 교수 방법, 출석 독려, 학동 실력 제고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자, 선생, 아동의 성별, 연령, 성분, 직업, 정당 소속, 지식정도, 지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감시와 처벌은 인민의 형성이 자발성만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각종 기제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보여준다.

16) 김일성, 「인민위원회의 선거총결과 금후의 중심업무(1947.3.22)」, 『김일성장군 중요논문집』, 276~277쪽.

17) 김재웅,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현실』 56, 2005, 267쪽.

18) 金煥, 「건국 사상운동의 생활화로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자(상)」, 『로동신문』1947.2.25 (『북한관계사료집 36』, 230쪽).

19) 「지방주민 대표들의 관광단 조직에 대하여」, 『결정집(1949.7~1951.12 당 중앙조직위원회)』,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5~26쪽.

20) 「동기간 산간 벽촌지대 선전 선동사업 조직에 대하여」, 위의 책, 120쪽.

21) 「목사 조봉환 반동선전사건 형사 제1심 소송기록」, 『북한관계사료집 20』, 543~546·572쪽.

22) 『북한관계사료집 10』.

### 3. 인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사이의 모호성과 변동

이 학술회의의 제1세션 주제인 분단국가에서의 국민(인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사이의 분열의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적되어온 바 있다. 김동춘은 분단국가의 성립이 민족(nation)과 국가(state)의 이해를 분리시켜 놓았음을 지적했으며<sup>23)</sup>, 허은은 그 결과 분단국가의 대내적 국민 통합 노력이 곧바로 민족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sup>24)</sup> 또한 신기욱은 한반도가 ‘한민족 전체를 향한 충성심’(종족적 민족주의)과 ‘분단국가를 향한 충성심’(정치적 민족주의)이라는 ‘정체성의 분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sup>25)</sup>

이상의 지적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발표자는 한반도에서의 문제가 정체성의 분열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정체성의 모호성, 또는 미분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면 상호간에 국민(인민) 정체성의 차이가 분명했으며, 민족 정체성은 내면에 존재하면서도 논의 자체가 급기시되어왔다. 그 속에서 상호 공존과 경쟁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비해 남북한은 민족 정체성이 매우 강한 반면에 이 정체성과 구분되는 국민(인민) 정체성은 분명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북에서 인민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인민 정체성 속의 민족성이 혁명성과 국제성의 제약을 받을 뿐이다. 인민적 민족, 또는 민족적 인민이라고 할 정도로 북에서 인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은 분리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구별이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성은 남한에도 나타난다. 남한에서 국민 정체성은 정부 수립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미완의 형성과정에 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리를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시민의식은 아직 미약하다. 다만 반공 반복의식이 북과의 거리감을 조성하고 그 부정의 논리 속에서 수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시민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에 속한다. 그런 가운데 남한 주민

23) 김동춘,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당대, 2000, 349쪽.

24)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326쪽.

25) Shin, Gi-Wook, James Freda and Gihong Yi, "The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in Korea," Nations and Nationalism, Vol.5, Part 4, 1999; 전재호,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 연구: '역사의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8-1, 2002, 137쪽에서 재인용. 신기욱은 한국 민족주의를 종족 민족주의로 간주한다. 종족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기능, 남북한의 지체된 산업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 통일과정에서의 통합 기능 등 순기능을 지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를 제한하였으며 남북간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을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신기욱 지음·이진준 옮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343~347쪽.

분단국의 충성심으로 이어지는 민족주의를 정치적 민족주의로, 한민족 전체에 대한 충성심을 종족적 민족주의로 규정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해온 통일민족주의는 정치성을 상실하고 단지 종족적 민족주의로 단순하게 규정되게 된다. 물론 통일민족주의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에 기반한 민족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는 단지 혈통이 같으니 하나로 뭉치자는 단순논리만을 가진 것이 아니며 한반도에 분단을 고착화시킨 외세와 국내 분단체력 전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분단 고착적 정치를 비판,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정치세력이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으로 남북의 국민·인민 정체성에도 종족 민족주의의 요소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의 집단 정체성에는 막연한 혈통을 기반으로 한 민족 정체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정체성은 이 민족정체성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그 자체의 국가의 구성원리로서가 아니라 이 국가가 민족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유에서 부차적으로 남한 주민에게 집단 정체성으로 들어와있다.

민족주의가 금기시된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에서 민족이라는 집단 정체성은 장기간 비판 자체가 금기시되는 영역에 속해왔다. 분단국가라는 실제 상황은 민족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세의 강요에 의해 타율적으로 형성된 것이며(북에게는 미제국주의라는 외세에 의해, 남에게는 소련 공산주의라는 외세 때문에), 따라서 분단 상황을 타파하여 1민족 1국가로 통일하는 것이야말로 일제 강점으로 좌절되었던 미완의 국민국가 건설을 완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주의국가로 헌법(1972년 제정) 제1조에 명시되어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에 의해 점령되어있는 식민지 통치지역일 뿐이다.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북의 사전을 보면 조선은 ‘단일민족국가’라고 되어있다.<sup>26)</sup> 분단국가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로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현실과 이념의 심각한 괴리 현상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민족정체성과 국민(인민) 정체성 사이의 미분화 현상은 민족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접근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그 민족정체성을 자신의 국민(인민) 정체성과 근접, 일체화하는 정당성 경쟁 속에서 상호 부정과 대립의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해왔다.

이러한 모호성 속에서 남북은 막연하게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념을 강하게 가지면서도 실제로는 그 민족에 대한 이해방식은 전혀 다르게 되어가는, 민족 정체성 자체의 분열을 겪고 있다. 북에 의하면 조선민족은 평양을 발상지로 하며,<sup>27)</sup> 김일성·김정일의 지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우수한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다. 여기서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이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 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높은 단결정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 신념,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락관주의,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등이다.<sup>28)</sup> 이러한 민족성의 재규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권의 동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조선민족 제일주의’에서 본격화되었다.<sup>29)</sup>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의 민족 정체성 강화와 재구성은 단순히 사회주의의 후퇴 속에 민족주의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틀 위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전체를 포괄하는 민족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북 자체만의 민족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수세적인 양상을 보인다.

남북을 포괄해서 볼 때 1980년대 후반 이후 남북의 정체성에는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남

26)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된다.”(『조선말대사전』, 1231쪽).

27) 장우진, 『조선민족의 발상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28)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30쪽; 김봉호, 『민족을 사랑하시는 김정일장군』, 평양출판사, 2006, 79쪽에서 재인용.

에서는 민족 정체성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국민 정체성이 사회 저변에서 형성되고 있다. 북에서는 그 이전의 인민 정체성의 복잡성과 역동성이 소멸하고 민족 정체성이 일방적으로 강화되면서 수세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4. 맺음말

북한에서 형성된 인민 정체성은 혁명성, 민족성, 국제성을 내포하면서 나름대로의 역동성을 유지해왔다. 다만 그 역동성은 북한 체제 자체의 구조적, 이념적 제약성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의 조선인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이념적 선언 속에서 인민 정체성을 남한에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자세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을 심화시켜왔다.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내세워온 남한도 역시 남북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켜온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동서독과 비교해볼 때 남북갈등은 국민(인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사이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그 분화가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모호성으로 인해 촉진된 측면이 강하다.

남북이 차이 속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집단 정체성(국민과 인민)을 각자 분명히 하고 그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그런 가운데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며 통일의 길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에서는 국민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점차 형성되고 있으나 그와 반비례하여 민족 정체성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 북에서는 인민 정체성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민족 정체성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그 민족 정체성을 전혀 새롭게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인해 이제는 남북간에 민족 정체성 자체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 월남민, 소수자, 그리고 민족정체성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사회학)

## 1. 문제제기

“선생님, 다문화가 뭐예요? 이쪽 사람들이 우리를 다문화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문화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다문화가 말입니다.”

얼마 전 탈북여성들과의 모임이 있었다. 몇 년째 선생과 학생으로, 간혹은 친구처럼 만나기도 하고, 또 간혹은 남의 집에 서로 방문하여 요리도 나눠먹고, 또 간혹은 토론 모임도 갖는다. 그 날은 탈북여성문제를 다루는 토론회 자리에서 한 여성이 이와 같이 문제제기를 했다.

그녀는 어디선가 탈북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는 걸 들은 모양이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 10년이 다되어 가고, 사회생활도 적응할 만 한 듯하다. 그녀는 한국으로 들어와 대성공사, 하나원을 거친 후 쉴 사이 없이 어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현재는 어느 은행의 북한 경제 분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북문제 재원이다. 한, 두 해가 바뀌고, 경력이 쌓일 때마다, 그녀의 외모는 남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제는 몇 내는 모습이 이제는 남한 사람의 시늉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남한 사람 못지않다. 외모뿐만 아니라 함경도 억센 억양도 무의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서울말 아래 잘 숨겨 두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요즘도 종종 남한 사람이나 문화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곤 한다. 노오란 머리, 영어에 대한 과잉집착, 서구 일변도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문화를 보면 은근히 화가 난다고 한다. 한국 아이들이 자기와 같은 탈북자 아이들을 영어도 못하고 촌스럽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태도를 보면 부아가 치민다고 얘기한다.

그런 그녀에게 왜 다문화가족이 문제인가를 물었다. 그녀에게는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쪽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안 그래도 주눅 들어서 할 말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질화시키는 것이 영 마땅치 않다고 불편해 한다. 예전에 동두천 보산리<sup>1)</sup>에서 기지촌운동을 했던 기지촌의 한 ‘언니’도 “내가 왜 다문화야?”라며 화를 냈다. 우리가 소수자로 말하는 기지촌 여성에게도 다문화는 ‘타자’화의 개념으로 들리는 것 같다.

타자가 편만되어 있는 사회에 타자, 소수자를 포장하는 말만으로 타자, 소수자가 해체되지 않

\* 이 글은 초고일 뿐만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글이므로 인용시에는 글쓴이의 확인을 요함.

김귀옥 freeox@hansung.ac.kr

1)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리 풍경 <http://blog.naver.com/cube53?Redirect=Log&logNo=110043900209>

는다. 설령 탈북자들은 불법 체류자나 조선족 동포들과 달리 주민등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사회에서 여전히 1등 국민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탈북 여성은 간혹 발견되는 현수막 때문에 화가 난 기억을 말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길가 전봇대에 걸린 현수막의 “북한여성  
과  
결혼하세요!”라는 글귀를 보며 한국 사람들의 몰지각한 인식에 화가 났다고 했다. 첫째, 자신들을 성노리개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들을 베트남 여성처럼 외국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생각 기저에는 우리는 베트남 여성과 달리 같은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탈북여성들이 불편해 하는 진실이 우리 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지 모른다.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다문화적 현실은 다양한 문화,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관용하며 상호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1등 국민을 중심으로 여러 소수자집단 간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invisible ceiling)이 세워져 있는 진실을 반영하고 있을지 모른다.

최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마치나 소수자들의 사회와 같다.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가족, 혼혈(하프), 성적 소수자, 거리에 나온 장애인... 그 가운데 인구학적으로 보면 2만명도 되지 않는데, 탈북자가 있다. 2009년 5월말 현재 1만 6천여명이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소수집단에 비해 잘 보인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분단에 의한 중첩되는 피해를 체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 속에서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위치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월남인은 해방 이래로 정치적으로는 지배권력 지향적 태도가 두드러졌고, 사회 조직 생활 속에서는 특혜와 차별로 양극화된 지위를 누렸다. 또한 월남인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함경도 북청물장수나 평안도 맹호부대로 대별되는 이미지 외에는 차별적 이미지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2등 국민이라는 인식도 부재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월남인이 소수자로서의 이미지의 부재를 가져 온 것은 무엇일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력해서 소수자로서의 위상은 부재해 왔던 것일까? 역으로 광의의 월남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탈북자에게 소수자의 이미지가 붙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문제를 반공의 코드와 민족정체성의 변화되는 좌표 위에서 추적해 보고자 한다.

## 2. 원조 월남인의 정체성

‘월남인’은 ‘이북에서 주민으로 살던 사람이 분단과 전쟁 과정에 이남으로 오게 된 사람’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 용어를 그간 고유명사화하여 해방기부터 한국전쟁기에 남하한 사람을 가리켜왔다. 해방기부터 한국전쟁기까지 월남인을 100만명으로 잡더라도 1950년대 초반 인구를 2000만명이라고 하면 최소 남한 인구의 5%를 차지하니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다.<sup>2)</sup>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월남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한편 정체성은 자신을 파악하는 주관적 의식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임의로 평가하고 파악한다기 보다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현재적인 조건과 결합하여 파악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은 ‘출현적 정체성(emergent identity)’<sup>3)</sup>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출현적 정체성으로서의 월남인의 정체성은 북한에서 원래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형성된 몇 가지 요소, 어느 지역 출신과 관계, 어떤 지역 문화 등을 가지고 있는가 외에 남한에서 어떤 학력이나 경력, 어떤 사회적 관계, 어떤 이주지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월남인 정체성의 단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월남인 정체성을 만드는 조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월남인은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쫓겨난 존재들이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 떠나오거나, 쫓겨 오는 줄거리로 시작된다. 착한 아벨이 이기적이며 경쟁심 많은 카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월남인의 이야기 구조를 황순원의 소설, 『카인의 후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농민대회는 소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개털오바청년은 잠시 말을 끊고 앞에 모여선 농민들을 둘러보고 나서 갈한 목청을 돋구어 가지고,....“이 반동 지주 박용제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면협의회원이 되어 놈들(의) 앞잡

2) 해방 후부터 1950년 6.25발발 전까지 450만 명이 월남하였다고 주장도 있다(김귀옥, 1999). 전쟁 전부터 조병옥이나 김구도 연설이나 담화문에서 전혀 사실에 뒤받침 되지 않은 그러한 주장을 하였고 조선민주당(460만 명으로 주장함, 1948년 3월 16일)이나 재남한 이북인 대회(1948년 3월 20일), 이북인 대표단(1948년 4월 5일) 등과 같은 월남인과 관련된 여러 사회단체들은 1948년 5월 10일 실시될 총선거에서 “재남한 이북인 450만 명”의 지분으로 ‘서북특별선거’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국편, 1973: 557, 605, 723).

3) “출현적 민족성(emergent ethnicity)”(Yinger, 1985)에서 빌린 개념임. 즉 출현적 민족성은 어떤 개인이나 민족 집단(ethnic group)이 어떤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그 문화적 속성에 따른 정체성을 획득하여 성원들간의 본래적 유대(primordial ties)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개념은 민족 집단이 처해 있는 상황, 즉 거주조건이 다른 민족 집단들로부터 격리되어 살거나 혹은 공통의 직업에 집중해 있거나 하는 구조적 조건들이 민족성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이 노릇을 하는 한편, 일제말기에 이르러서는 옷골에 저수지를 판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농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새롭소! 이 박용제를 우리 민주 발전 방해물로 규정짓는 데 이의가 없소? 있소?” “없소오! 반동 지주 박용제를 타도하자아!” 여기 저기서 쟁기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 대개가 오늘 각 동네에서 농민들을 인솔해 가지고 온 낫선 공작대원들이었다. (……) “다음은 반동 부재지주 윤기풍을 인민 재판에 걸기루(로) 하겠소! 이 윤기풍은 벌써 칠팔년 전에 평양에 들어가 집장사를 하는 한편, 고리대금업으로 수많은 농민의 피르 착취해 오는 악질 부재지주요. 이 악질 부재지주가 얼마 전부터는 옷골에 나와 갓인 흉계를 꾸며 가면서 우리 민주 발전을 방해하구 있소. 그 일례를 들면 순박한 농민들무들을 속여 토지를 팔아먹는 한편, 이 악질 반동 부재지주 윤기풍을 숙청하는 데 두 이의가 없을 줄 아오!”(황순원. 1954)

이 소설은 빨갱이가 카인의 후예이며, 그런 카인에 의해 착한 아벨의 후예들이 ‘반동 지주’나 ‘고리대금업자’, ‘지식인’으로서 숙청을 당했다고 해석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아벨의 후예들은 필연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착한 아벨이 있는 남한으로 피난해야 한다. 또한 이정호의 소설, 『움직이는 벽』(이정호, 1987)에서는 황순원이 말하는 것과 유사한 카인의 후예들을 피하여, 마치 터져준 6·25전쟁을 기회를 삼아 월남하게 된다.

다음으로 월남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조국을 찾아온 망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겠다는 권토중래, 반공통일정신의 발로이기도 하다.<sup>5)</sup>

우리는 중국으로 흘러갔던 한국 유랑민 자리에 월남 실향민을 대치하고, 중국에서의 항일 독립운동자리에 남한에서의 실향민들의 반공통일운동을 대치해놓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려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실향민들이 반공·통일·귀향운동에 무관심하고 꺼져버린 숫검덩이처럼 체념해 버리고 남한 정착생활에 안주해 버린다면 우리는 ‘꼬려방즈(高麗亡國奴)’ 아닌 ‘38 따라지’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이경남, 1998가)

위의 지적에 따르면 통일운동은 반공운동이며, 개인적으로는 귀향운동이다. 그러기에 월남인은 남한 생활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실향민’의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실향민은 서청[서북청년회]과 경찰과 국방경비대에 투신하여 남로당 평정에 신명을 바친 사람이며 6.25동란에서는 호국간성(護國干城)으로 청춘과 목숨을 바쳤으며, 휴전 후에는 북한의 남한 적화기도에 어느 계층보다도 예민한 조건 반사로 경종을 울려온 사람들이다(이경남, 1998나)

위의 지적에 따르면 실향민과 대한민국의 반공국가는 둘일 수 없다. 반공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실향민들은 절대 헌신을 해왔으나,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 위한 통일운동을 계속

4) 황순원 자신은 이 소설이 명확히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없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열어 놨을 뿐이다.

5) 물론 이러한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은 엘리트층 월남인이고, 일반 월남인의 경우 가급적이면 남한 사회에 잘 동화되어 ‘월남’이라는 코드가 눈에 띄지 않기를 희망했다. 정착촌 월남인의 경우, 정착촌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월남의 코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조건 정부 지향적 태도를 보였다(김귀옥, 1999).

해야 하기 위해서는 결코 남한 사회에 안주해서는 안 되었다. 그 결과 실항민에 머물러 있으려 하다 보니, 실항의식에 투철한 자신들에 대해 오히려 비판하는 목소리가 월남인 속에서 들릴 지경이 되었다.

우리 실항민도 언제까지나 ‘실항민’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어엿한 ‘주인공’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실항민이라고 하니 남들도 우리를 실항민이라고 부르게 된다. 실항민으로서의 ‘동향의식’은 소중하게 간직하되, 너무 의식적으로 실항민임을 자칭하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진성계, 1993)

그래서 월남인은 한편으로는 반공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항’의식이 투철한 ‘실항민’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실항 의식의 기저에는 급단의 벽이 놓여져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되,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복적이고 공산주의자들이나 빨갱이, 북한 사람을 증오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반공을 고백해야 하는 점이다. 왜냐면 한때 자신이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는 언제나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위치 지어질 가능성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반공을 고백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고발하는 일이다(김귀옥, 2004; 김동춘, 1997).

이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하지 못한 채 서울에서 소위 ‘잔류파’로 몰린 문인들의 운명과 비슷했다. 그들은 9·28서울 수복 이후, 부역자 색출 선포 이후 부역작가로 낙인찍힌 채, 오랫동안 ‘반공문학’을 생산하는 데에 동참함으로써 면죄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서동수, 2006).

어쩌면 일반 월남인들의 경우 문인지식인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반공의 고백식은 철저했는지 모른다. 그 경험을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강화 교동에는 전시로 부터 지금까지 지역민들과 월남인의 관계는 불편하다. 아래 옷집을 하고 살지만 거의 왕래가 없다. 심지어 과거에는 흔했던 품앗이 때도 지역민들은 월남인들을 배제시켰다.

불편함의 기원은 한국전쟁에 있다. 전시 교동에는 묘한 일이 원주민과 월남인간에 발생했다. 즉 월남인들이 동네 원주민을 심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sup>6)</sup> 그 심사자는 연백 피난민, 소위 ‘연백특공대’<sup>7)</sup>였다. 그들은 연백지역에서 후퇴한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소년단으로 엮히고설켜 있었다.

우린 소년단 단체단 말이야, 연백군 석산면 소년단 단체라가지구 해서 지금, 나오는게, 나오는게 통과시키더라구. 그때 치안대! 치안대들도 다 많이 나오고 했어요. (...)

한복이지 (웃음)한복, 한복. 우에는 양복떼기 입고, 아래는, 저, 허허, 저, 바지 입고, 신발은, 우린 우, 우리 큰 성이 신발 장사 하던 거 있됐어요. 거기서 장사 할 때! (...) 개풍

6)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월남인과 같은 낮은 피난민들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면 경찰이건 자치대이건 대개 ‘심사’의 과정을 거쳤고, 도민증이 없는 이북출신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무엇이든 제시해야 했고, 심각한 경우에는 비법적으로 즉결처분되는 증언들도 들을 수 있었다(김귀옥, 1999: 262~265).

7) 기록에 따르면 연백특공대의 정식 이름은 ‘해병특공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426)이지만 교동사람들은 흔히 ‘연백특공대’, ‘연안특공대’ 등으로 혼용했다. 이 글에서는 연백특공대로 통칭하겠다.

문으로서 건너서 (강화 양사면)철산리서 가서, 그때 나와서 조직한거이 뭐냐 하면은, 참 복잡하지 이거. (...) 교동이 비, 비고, (연안)특공대들이 교동 주둔하면서, 이북서 나오는 피난민들을 막 살해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 빨갱이가 모두 나올까봐, 그중에서도 색출한다고, 정보, 정보원이 들어올까 봐. 말을 못하면 죽인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우리 치안대 대장 황천성<sup>8)</sup>, 을지병단 대장이 됐어요(‘수철’의 구술, 1932년생, 남).

월남인 ‘수철’의 구술에 따르면 자신은 연백 석산면에서는 소년단이었는데, 강화 양사면으로 피난을 나와 현지에서 청방, 대한청년단 등으로 구성된 유격대 ‘을지병단’에 가입을 했고, 교동에서 연안특공대가 민간인 살해 소식이 들려 교동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수백명이 교동 전체적으로 살해되었는데, 2007년 교동 피해자조사에서는 최소 210명의 피학살자가 조사되었다(김귀옥, 2009: 97~98). 물론 월남인에 의한 원주민 학살의 과정에 원주민의 고발, 소위 ‘손가락총질’이 있었다.

교동의 월남인의 한 명인 ‘정식’은 학살의 이유로서, “(교동에) 빨갱이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여기가 요시찰 명단이 상당히 많아. 이북으로 다 넘어갔거든. 인사리 그 과부들은, 전부 다 남자들은 다 넘어갔는데 뭐”라고 주장하였다(김귀옥, 2009: 99). 교동의 대량학살사건은 아직도 진실규명되지 못한 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문 닫기 일보 전에 있다.<sup>9)</sup> 아무튼 그러한 고통의 기억은 인구 3천4백여명의 작은 섬을 분열시켜 두었다. 21세기에도 지역 원주민들과 월남인에게는 화해도 없었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연대감도 없었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분단과 한국전쟁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식을 분열시켰다. 흔히 한국전쟁을 동족간의 전쟁으로서 ‘동란(同亂)’이라고 부르지만, 전쟁 전후한 시기 과연 남북에는 동족이라는 민족의식, 민족정체성이 없었다(김동춘, 2000). 심지어 1948년 제주 4·3사건이나 여수·순천사건 당시 봉기를 진압하던 진압군에게 민간인은 그저 빨갱이, 빨갱이 부역자였을 뿐 동족이나 인간이라는 의식마저 없었다(김득중, 2004).

그러나 그런 과정에 월남인에게 역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이나 심지어 월남인 2세대 들조차 북한이나 북한 사람을 빨갱이로, 수십년간 교육을 받아 되자, 자연스럽게 북한이나 북한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역설이 형성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일시적인 자기 부정적 의식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갖지만, 자기 부정이 장기화되면 ‘무관심’을 통하여 의식의 중화작용이 형성된다.<sup>10)</sup> 특히 이러한 점은 월남인 2세대들에게서 잘 발견된다. 월남인 후세대들도 일반 이주민 후세대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고향을 잘 밝히지 않는 경향은 있겠으나 대개 많은 월남인 후세대의 경우 이러한 모습이 잘 발견되는 것에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인 인식, 즉 멸공적 반공의식의 팽배되었던 한국 사회가 가로질러 있다.

8) 황천성은 이후 타이거여단 제2연대 연대장이 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429).

9) 교동면을 제외한 강화군의 대량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 진실규명이 있었다(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10) 이러한 사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당하는 피수용인을 보는 다른 피수용인의 태도에서 입증되기도 했다.

박문송(전 시사통신 편집부장): 흔히 실향민 2세대 가운데는 “아버지의 고향이 이북이지 내 고향도 이북입니까”하는 반문을 받게 된다. 그 고향이 자유진영의 미국이나 그 밖의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공산당이 죽치고 앉아 있는 이북땅이고, 그 이북에 대해서 지난날 우리들의 교육이 ‘사람이 사람답게 못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이리떼가 사는 사회’로 가르쳐 왔다. 2, 3세대들은 바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오늘에 와서 혈통을 찾고자 하니 그 조직에는 설득력이 부족했다(박문송, 1990).

돌아보면 월남인에게 동족의식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 북한 사람을 ‘이리떼’, ‘승냥이’ 등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일은, 어쩌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일처럼 위험이 내장되어 있었다.

북한 사람을 인간으로 동족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렸다. 황석영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시와사회, 1993)도 1989년 처음 북한기행문의 형태로 정간지에 게재될 당시만 해도 정간지 주간이 구속될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다(김귀옥, 2009년: 57).<sup>11)</sup> 또한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인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sup>12)</sup>는 선언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을 민족으로 천명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동시에 상대를 적이 아닌, 동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적 사건이다. 비로소 우리는 북한 사람을 동족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게 된 것이다.

### 3. 탈북자: 동족인가 소수자인가

원조 월남인과 월남인 후계로서 탈북인이 만나기까지 냉전과 탈냉전의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 월남인이 남한에 정착하는 것은 냉전시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사회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전직 북한 사람으로서의 코드를 부정해야 했다. 그들은 강력한 반공국가의 한편으로는 전 위부대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국가의 무조건 지지자로서 자리매김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한 민족을 아우르는 민족정체성을 부정했다. 설령 민족주의적 발화를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반공적·반북적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는데 한국 사회에는 탈냉전 시대를 만나, 반공주의와 자본주의, 진보와 보수, 근대와 탈근대의 다양한 조류 속에서 자기 옹호와 검열의 기제를 작동시켜야 한다. 자기 옹호는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도 한민족의 구성원이고, 북한에서 나름대로 학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자기 변호해야 하는데서 기인한다. 자기 검열의 기제는 반공의 코드와 함께 자본주의적 코드 속에서 남한 사회에 동화되고 경쟁력 있는 인재로 자기 변신을 꾀하려고 할 때 발동한다. 더 이상 반공적 코드나 반공 민족주의로써 모든 것을 웅변할 수 있는 시대가 한국 사회에서 지나가 버린 것이다.

11) 황석영의 북한기행문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창작과비평사』 주간 이시영이 구속되었는데, 정작 이 글은 『신동아』에 1,2회 게재되었을 때는 시비가 일지 않았으나 ‘창비’의 게재분만이 문제가 되었음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레시안》 2003년 8월 25일자.  
 12) 극적으로 민족정체성 회복을 선언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4달도 미처 지나지 못해 “핵을 가진 자와 약속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 광의의 월남인의 한 유형인 탈북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sup>13)</sup>

우선 월남인과 탈북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작은 일화를 소개하도록 한다. 몇 년 전에 속초에서 함경도 월남인과 2000년대 입국한 함경도 탈북자가 상봉한 적이 있다. 그들은 복청을 한 고향을 두고 있던 처지라 서로의 비슷함을 기대했다. 고향의 형님, 아우 또는 부모 또는 자녀 세대로서 만났으나 그들은 서로의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그러면서 서로는 상대의 낯선 언어를 두고 월남인은 탈북자에게 “이북 말에 물들어 고향말이 변질되었네”라고 했다. 탈북자는 월남인에게 “이남 말과 속초 말에 물들어 고향말이 바뀌었네”라고 했다.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듯하지만, 아무튼 두 사람의 말은 다 맞는 것으로 보인다. 원조 월남인에게 탈북자는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비쳤다.

그렇다면 탈북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인가? 잠시 탈북자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1〉 탈북자의 입국 현황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5	합계
남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09	303	5,410
여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200	881	10,831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184	16,241

자료: 통일부

정전협정 이후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자는 2009년 5월말 현재 1만6천241명이다. 오늘날 탈북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가히 ‘탈북의 여성화’라고 할 만큼 여성 탈북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sup>14)</sup> 2002년부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아져, 2008년에는 여성이 남성의 세 배가 될 만큼 여성의 규모가 크다. 1980년대까지 남성 탈북자들의 경우 군인이나 정치가들로서 탈출이 가능한 상층간부들이 많았다면 1990년대 중반이래로 최근까지는 북한의 여성들은 노동자, 하층 사무직 층이 많다. 그나마 경제난 과정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만삭의 몸으로, 또 해산한 후에도 장사매냥을 지고 하루벌이를 해야 했던 여성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그들은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공안의 추격과 북송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으며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한 푼의 돈을 벌기 위해 여성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혀야 했던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 받았다. 남한의 일반여성에 비해 이탈주민여성들 속에서 산부인과질환이 많은 것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다(김영희, 2009).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에서 과거의 월남인처럼 상대적으로 친정부, 친보수적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월남인은 상층 엘리트층으로서 스스로 지배집단화되었거나, 반공으

13) 이미 글쓴이는 탈북자를 광의의 월남인의 틀로 설명하였고, 그들 역시 한반도 분단의 피해자이자, 이산가족의 한 유형으로 범주화한 바 있다(김귀옥, 2004).

14) 이는 이주의 여성화와 같이 맞물려 있다. 이주의 여성화의 배경에는 ‘여성의 빈곤화’ 문제가 깔려 있다(김현미, 2005).

로서 포장함으로써 지배집단의 친위대, 별동대로서 주변부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탈북자는 강경 보수적인 발언을 하고, 뉴라이트 세력의 일군으로서 현재 정부의 한 지지층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전 대통령인 부시의 총애(!)를 받았을 지언정 우리 사회에서는 배제와 박탈의 대상화로서 소수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해외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규모는 추측만 할 뿐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해외 체류 탈북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단연 중국 체류 탈북자이다. 그 외 태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지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개는 탈북단체에서 세운 일종의 ‘안가’에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캐나다, 중남미 등지에서도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자는 중국조선족과 함께 조선족이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2004년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채택한 이래로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탈북자가 92명이라는 보도가 있다.<sup>15)</sup> 21세기 세계화 시대 한국의 분산과 함께 비록 소수일지라도, 북한 역시 그 분산이 과거의 어느 때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21세기형 한민족의 분산이 20세기 한민족의 분산과는 다르게 계속 발생되고 있다.

#### 4. 탈북자의 사회적 소수자의 형태<sup>16)</sup>

이 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지위를 최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소수자적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탈북자의 사회적 소수자성은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는 한국 사회의 급박한 변화의 속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1) 경제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부닥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안정성 문제이다.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에 따라 2004년까지 단신 탈북자의 경우 3,590만원을 정착지원금으로 받았으나 2005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개선” 제도에 따라, 2,00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가 새로 도입돼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착금 일부가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일반 영세민이 받는 월 32만원의 배인 54만원으로 우대 지급하던 탈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생계급여 특례를 없애 자활 의지를 저해하는 생계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다. 건설교통부가 영세민과 탈북자 대상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임대지원금을 높여 탈북자에게도 규모가 큰 국민임대주택을 알선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러

15) 『자유아시아방송』과 『연합뉴스』 2009. 8. 25.

16) 시간과 준비의 부족으로 이 글은 다음의 글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김귀옥, 2008).

한 정부 당국의 변화된 조치는 남한의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쟁력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결과이다.

실제로 탈북자의 과반수가 사실상의 실업상태, 비정규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취업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렵다. 대략적으로나마 탈북자들의 취업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은 탈북자지원법에 제17조 2항에 따라 ‘고용지원금雇用支援金’이 지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雇用支援金이 지급되는 탈북자의 수와 직종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2〉 고용지원금 직종(직종별)별 분포 현황

	취업자 수	취업자수/입국자수	남	여	단순기술 (%)	기술직 (%)	사무직 (%)	서비스업·영업직(%)
2001년	251	0.43	185(74%)	66(26%)	42.2	12.9	13.3	31.6
2002년	296	0.26	219(74%)	77(26%)	44.1	19.2	13.2	22.9
2003년	281	0.22	189(67%)	92(33%)	31.5	35.0	17.4	15.7
2004년	269	0.14	163(60%)	106(40%)	39.5	27.6	16.8	16.1
2005년	446	0.32	255(57.2%)	191(42.8%)	60.5	11.9	12.8	14.8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2006. 6월말현재)

2000년대 들어 연간 입국자는 급증한 반면, 취업률은 반비례하였고, 특히 남성 탈북자의 취업률은 떨어지는 추세이다. 반면 여성 탈북자의 취업률은 남성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남:여 57.2:42.8을 보이고 있다. 한편 4대별 직종 분포를 보면 단순기술직이 급증한 반면, 사무직은 비슷하고, 서비스직과 영업직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술직은 일관성이 없다. 탈북자자치조직의 하나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약칭 새조위)” 측 간사의 증언에 따르면 “근년에 남녀 모두 단순기술직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남성은 ‘노가다’판으로 지칭되는 건설현장의 막일꾼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 식당이나 유흥업소의 종사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평균 90만원 정도를 번다면 남성은 평균 110~120만원 정도를 번다”고 한다. 이런 점은 한국말 구사가 자유로운 조선족 체류자의 취업활동과 거의 유사하다(권태환, 2005).

한국 노동 현실의 전반적인 ‘비정규직화’의 추세 속에서 현재 탈북자의 비정규직 추세에는 가속이 붙는 경향이 있다. 이미 2003년 여성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68%가 비정규직에 속해 있었다(이금순 외, 2003). 물론 김귀옥의 2000년 조사에서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은 59.8%에 달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탈북자의 비정규직화 문제나 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탈북자는 천 여 명에 불과하였고, 반공 및 북한 소개 각종 강연을 하였고, 교회나 종교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부조가 있었다. 그러나 탈북자의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부터 과거에 잠복되어온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탈북자 한 사람 당 정착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대략 1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소수의 탈북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하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 2004년까지 탈북자 한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4,000만원 달하는 정착금이 지원되었으나 정착 이 비용은 탈북자에게 고스란히 가지 못한 채, 탈북지원알선업자들에게 적게는 500~1,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불되어야 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남한 환율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이 부족하여 돈 씹셈이가 험프기 일쑤이고, 조급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증권 투자 등,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빈털터리가 된 경우도 많다. 또한 고향에 두고온 가족에게 송금을 하거나 유태준과 같이 나머지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골몰하다가 보면 경제적 부적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업과 비정규직화를 반복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 소수화되는 경험을 겪고 있다.

## (2) 정치적 소수자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일단 합동조사기구로부터 간단한 조사를 받고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재교육 기관인 하나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탈북자지원법”에 따라서 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선거권을 가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시민권’을 누릴 수 있다. 1990년대 이래로 한국은 차츰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일상생활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도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가 ‘작업장 민주주의’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남한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에도 직장의 회의시간에 자신의 발언은 참고는 될지언정, 자신에게는 아직도 의사결정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준전문직 연구원의 경우에는 자신은 소속된 연구소에서 자신을 받아준 것이 감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별로 불만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서울의 경우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양천구 등 노후한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 지역에 모여 살고 있어서 사실상의 남한 주민들 속의 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의 ‘주거지 격리’로 남한 주민들로부터 ‘사회적 낙인’(유지웅, 2006)이 찍히면서 풀뿌리민주주의, 즉 참여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과거 냉전시대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누렸던 정치적 특권은 거의 사라지면서, 탈북자들은 정치적 박탈감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는 탈북자들에게는 위기와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들은 정치적 소수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탈북자들도 자구책을 취하여 자치조직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친목과 정보를 교류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모임으로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1997년 설립)”가 있고, 자치결사체로는 “탈북자동지회(1999년 설립, 명예회장 황장엽)”,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2000년 설립, 회장 홍사덕)”<sup>17)</sup>,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내정치범돕기 시민연

17) 이 가운데 성격이 조금 다른 단체로는 ‘새조위’를 들 수 있다. 새조위는 북한이탈주민 적응돕기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북한 쌀 보내기(『오마이뉴스 Oh My News』 2005.7.19) 등도 하여 탈북관련 단체 가운데에는 비교적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합”,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민주화 운동본부(2003년 설립, 대표 장철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내정치범돕기 시민연합”,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본부”,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은 미국의 민간 CIA라고 불리우는 NED, 즉 “국립민주주의 기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북한의 민주화와 중국적으로는 북한의 붕괴를 위해 노력하며,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김귀옥, 2005).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세를 과시하면서 정치 세력화에 매진하고 있다.

〈표3〉 북한문제 관련단체에 대한 NED의 지원 현황 (단위 :달러)

단체명 (설립연도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계
북한인권시민연합	-	-	93,000	151,865	105,000	349,865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40,000	40,000	60,000	60,000	200,000
북한내정치범돕기 시민연합		78,000				78,000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75,000	75,000
북한인권정보센터					40,000	40,000

출처 : www.ned.org

### (3) 사회문화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심한 고통의 하나는 사회문화적 소수자 문제이다. 사회적 소수자화, 또는 사회적 소외의 문제는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친척이나 친구의 결핍이다. 한국 사회처럼 연고주의적 사회적 연결망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 친척이 친구의 결핍은 ‘사회적 자본’의 제한과 함께 인간적 고통을 심화시킨다. 몇 번에 걸친 탈북자 조사에서나 탈북자와의 경험적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탈북자들은 대개 친한 사람들이 다른 탈북자, 정부 관계자, 종교인들이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은 직장동료들이다. 그들은 대개 직장동료들로부터 직, 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했고, 따돌림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어려워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소외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로 언급된 바가 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적극적인 아이들일지라도 학교에서 자신이 탈북자 출신임을 말하지 않고, 그 결과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고, 생일파티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날에도 친구들을 초대하지 못한다. 또한 연애에 적극적인 한 청년대학생은 파트너와 일정한 신뢰를 쌓게 되어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으면 여지없이 파트너로부터 절연을 당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러한 결핍감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가능한 한 탈북자끼리 통혼(김영화, 2006)을 하며 사회적 소외감이나 부적응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

둘째, 문화적 소외감이다. 탈북자의 일상적인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남한 사람들과의 관계로부

터 회피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 이질감이다. 청소년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에는 촌스러운 북한 말씨(정병호 외, 2006)나 세련되지 않은 화법(話法)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텔레비전 방송이나 컴퓨터, 인터넷 앞에서 한 없이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친구들과 텔레비전을 같이 시청할 때도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대중매체에 도배질되어 있는 영어식 단어, 영어와 한글의 합성 약자, 개인주의적 사고나 태도, 엽기적 태도와 문화를 보고 들으면서,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문맹이 아닌가를 혼동스러워 하며 한민족(韓民族) 정체성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셋째, 대다수 탈북자들이 안고 있는 트라우마(홍창영 외, 2006) 역시 남한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된다. 탈북자들에게 몇 중(重)의 충격과 상처가 마음 깊숙이 남아 있다. 북한에서의 기아와 절박한 생계난, 가족들과의 이별과 조국에 대한 분노, 월경(越境)과 입국,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긴장과 위기, 공포, 정착 과정에서의 긴장과 염려, 두고온 고향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가족 내 갈등과 폭력, 여성이나 어린이의 인신매매 경험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전혀 치유되지도 않은 채, 탈북자들은 남한에서의 척박하고 경쟁적인 분위기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 나쁜 것은 탈북자들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한지 5년 이상되는 탈북자일수록 만성질환이나 우울증 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김정철, 2006).

넷째, 코리아드림(Korean Dream)과 현실과의 거리감도 사회문화적 소외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과도 유사하지만, 민족적 동질의식이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두려움과 우려 속에서도 월경을 하거나 극도의 긴장 속에서도 '기획망명'에 참가하고, 심지어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까지 가서라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코리아드림' 때문이다. 한국의 서울을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El Dorado)'처럼 여겨, 서울에만 들어오면 부자가 되고, 그간의 모든 서러움을 떨칠 수 있으며 헤어진 가족들도 불러들여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실의 한국과 서울은 냉정하기만 하다. 그 반작용으로 그들에게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이 대안으로 매력을 끌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외에도 그들은 주민등록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여러 가지 시민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는 해외여행의 자유에서 제한을 받는다거나 특정 사회조직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도 일상의 커다란 불편함과 함께 사회적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된다.

## 5. 민족과 시민 사이

100만명이 넘는 월남인 1세대는 분단 60년이 넘는 기간, 국민과 반국민의 사이에서도 무사히 '시민'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시민의 지위를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규모의 수를 갖고 있음과 반공의 무장화를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방기 월남인과 한국전쟁기의 월남인 사이에는 정체성의 차이를 빚는 경험과 사실의 균열이 존재한다(김귀옥, 1999). 그래서 해방 이래로 1990년대까지도 월남인의 리더는 반공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해방기 월남인들이 차지했다.

반면 탈북자의 경우에도 1980년대까지 경제난 이전의 탈북자와 1990년대 이래의 탈북자간에는 ‘반공’이라는 코드를 따라가면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전자가 탈북의 원인에 있어서 반공·반북주의자로서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 반면 후자는 탈북의 많은 원인이 생계, 생존의 본능에 연원을 두고 있어서 반공의 코드가 약하다. 그러나 탈북자와 월남인을 가로지르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 냉전과 탈냉전의 경계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대다수는 탈북자는 이데올로기적 코드 위에 서있기 보다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의 코리아드림(Korean Dream)이라는 경제적 코드를 잡고 있다.

월남인은 냉전시대에 반공주의를 앞장세울 수 있는 생체적·문화적 상징이라면, 1990년대 이후 탈북자는 탈냉전시대에 남한 국민에게 반공의 코드를 주입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남한 사람들에게 탈북자가 더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민족’정체성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시민’정체성이다.

한국의 민족정체성은 언어 정체성을 필두로 하여 약화일로로 가고 있다. 그들이 남한 사람을 한민족의 정신을 ‘노랑게’ 팔아먹는 배신자로 몰아 부쳐도 이러한 현실을 되돌기는 어렵다. 탈북자의 탈북행위는 남과 북에 대한 선택과 배제로서 이해되어 탈북자가 ‘민족’ 논리를 구사할 경우에는 이중잣대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시민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현재 소수자의 위상은 설득력이 있다. 그들은 아직도 시민권적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시민사회에는 수많은 소수자로서의 시민이 있는데, 왜 탈북자들에게만 특혜를 베풀고 있는가 하는 반론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탈북자에게 왜 시민권을 보장해야 하는가의 문제의 기저에는 민족의 문제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민족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착, 적응의 문제 이면에는 통일이후 남북 주민들의 삶과 사회문화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탈북자 문제를 다른 소수자처럼 시민권적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한편 대다수 월남인은 남한 사회에서 60년을 살면서 사회적 동화를 경험하면서 북한 고향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공적 의미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문화적 동화는 방임되었다. 최근 탈북자 역시 공식적 삶의 방식에서 남한적인 것을 수용하기만 하면, 일상생활의 문화적 동화 역시 개인의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세계 수준에서는 월남인이나 탈북자의 문화적 동화는 개별적 속도와 방식에 맡겨져 있다. 물론 탈북자의 경우 남한 문화=근대적 표준적 문화로 수용되는 경향은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에게 남한 문화를 수용하는 나름의 경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 십 년간 북한에서 살면서 받아온 민족정체성과의 조화 여부일 것이다.

최근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각 연구소에서도 ‘다문화적인 것’에 대한 연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계화 시대 열려 있는 공간 속에서 사람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앞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 지는 하나의 추세에 놓여 있다. 탈북자 자신은 다문화적이길 거부하더라도, 거부하는 탈북자의 문화 역시 다문화적 요소의 하나이다. 나아가 남북이 국가 대 국가, 사회 대 사회로 만나게 될지라도 다문화적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북의 이질화된

문화 개념은 “이질적 요소를 배제하고 원래처럼 하나로 되자”는 뉴앙스를 갖지만, 이제 남북 모두 분단되기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는 없다. 문화적 공통성, 언어적 공통성, 역사적 공통성을 갖고 있기에 하나의 민족성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분단 60년 간 상호 달라진 문화, 의미화의 과정을 과거로 분단되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주민들이 상호 존중받고, 그 문화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공존의 노력은 절실하다. 사회주의적 북한 문화를 만든 것이 “빨갱이의 소행”으로 돌릴 수 없듯이 자본주의적 남한 문화를 만든 것도 “배신 행위”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민족의 코드가 다문화적인 것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권태환 편저. 2005.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철 외. 2006.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만족도 분석.”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같은 곳 펴냄.
- 국사편찬위원회. 1973. 『자료대한민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 김귀옥, 2009가. “한국전쟁과 이산가족.”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 한울.
-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귀옥. 2004. “왜 월남 실향민은 반공수구 세력이 되었을까?: 월남 실향민의 반공·반북의 역사적 만남.” 『인물과사상』. 제30권(3월호).
- 김귀옥. 2004. 『이산가족, ‘빨갱이’도, ‘반공전사’도 아닌: 이산가족을 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비평사.
- 김귀옥. 2008. “韓國社會における北朝鮮脱北住民(脱北者)の適應の問題點.” 『現代韓國民主主義の新展開』. 東京: 御茶の水書房: 183~201.
- 김귀옥. 2009나. “세계화 시대의 열린 민족주의: 한국의 민족문제와 민족주의를 둘러싼 성찰과 전망.” 『탈경계 인문학』제2권 1호: 41~75.
- 김동춘. 1997.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6·25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 김득중. 2004.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9. “정부의 새터민 여성 지원 현황과 발전 방안.” 『북한이탈주민여성 1만명시대 삶의 현장』. 국회의원 이미경의원실 주최 토론회 발표문(2009. 7. 3).
- 김영희. 2006. “유형별 북한이탈주민가족적응의 어려움과 차이- 분단구조와 남한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 박문송. 1990. “실향민 2세 왜 화합에 약한가.” 『월간 동화』 6월호: 360~368.
- 서동수. 2006. “한국전쟁기 문학담론 연구-반공텍스트의 기원과 고백의 정치학”. 『우리어문연구』 제27집: 385~418.
- 유지웅. 200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연구-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남. 1998가. “실향·이북도민은 ‘통일역군’이나, ‘고등난민’이나?” 『월간 동화』 1월호: 16~21.
- 이경남. 1998나. “특집/이북도민은 ‘김대중시대’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월간 동화』 1월호: 16~29.
- 이금순 외. 2003.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연구』. 통일연구원.
- 이정호. 1987. 『움직이는 벽』. 현암사.
- 임순희. 2004. “탈북자 문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현대북한연구와 남북관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정병호.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 진성계. 1993. “뿌리의식 강하고 건전사고의 통일차세대.” 『월간 동화』 3월호: 68~77.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같은 곳.
- 황순원. 1954. 『카인의 후예』. 중앙문화사.
- 홍창영 외. 2006.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 Yinger, J. Milton. 1985. “Ethnic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51-180.

# 재일과 민족

## 윤건차 (카나가와대)

세 개의 학회·연구소 주최로 이렇게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의 메인 테마의 부제가 “분단, 디아스포라, 아이덴티티의 사회사”인 것은 역사와 현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의욕의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며, 이것은 제가 분담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의의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게 요구된 제목은 “재일과 민족”입니다. 이것은 주최자측이 정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재일조선인과 민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조선인”의 약칭으로 “재일(자이니찌)”이라는 말을 쓴 것인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저 “재일”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재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일조선인”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그것과는 구별되는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은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안”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것 자체가 역사, 이데올로기, 그밖에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 개념을 둘러싼 오늘날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민족이나 국민, 아니면 민중이랄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재일조선인의 존재가 그냥 지워버릴 수 없는 문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물론 조선반도 바깥에 살고 있는 동포로는 중국 조선족이며 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선 근현대의 역사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민족공동체와 그 존재방식,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을 논의할 경우에는, 재일조선인은 간과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 그보다도, 남북으로 분단된 본국의 현실을 고찰할 경우에는, 공통의 역사성을 가진 외부 동포의 시선을 더해놓는 것이 불가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일조선인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생겨난 하나의 민족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식민지 지배의 소산이며, 게다가 옛 중주국에서 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채, 기본적 인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른바 “외국인” 취급이지만, 실제로는 보통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외국인”도 아닌, “무국적자” 내지 “제3국인” 같은 극히 피차별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일조선인은 식민지시대에 태어나서 조선어로 말하는 등 자의식의 중요한 부분이 조선적인 것으로 길러져온 1세로부터, 지금은 3세, 4세의 시대가 될 정도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일본의 패전/조선의 해방 직전에 교토에서 태어난 2세지만, 실제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여정을 보면, 확실히 전후 일본과 분단시대를 살아온 경계인입니다. 말하자면 세 개의

국가의 틈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마이너리티이자 디아스포라이며, 거기에서도 필연적으로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공동체란 무엇인가, 또 그 안에서의 제 자신은 대체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의 탐구에 까불려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올 7월에 저는 두 권의 한국어 번역본을 동시에 출판했습니다. 하나는 창비에서 낸, 600쪽이 넘는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1945년 이후의 한국·일본·재일조선인』인데, 이 책은 작년에 이와나미서점에서 출판된 『思想体験の考察』의 번역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어판과 거의 동시에 화남출판사에서 낸 시집 『겨울숲』입니다. 사회과학서는 지금까지 여러 권 낸 적이 있지만, 시집은 이번에 처음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둘 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것들을 집대성하려고 해본 것인데, 특히 시집은 아이덴티티를 탐구하면서 어려웠던 과거들을 돌이켜보는 것으로, 제 자신, 그리고 “재일”의 생활상을 응축해서 활자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집을 출판해 보니, 사회과학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섬세한 부분을 문학적 형식으로 어느 정도 그려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선을 싫어해  
일본에 동경해  
일본에 버려져  
조선을 발견한다  
또 조선에 버려져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서 ‘자이니찌’를 자각한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들려 움직이는 진자  
(「진자」)

물론, 재일조선인에게 민족적 갈등, 즉 민족에 관한 아이덴티티의 탐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인류의 일원인 이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생활감정이랄까 보편적인 사고라는 것을 갖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겨울 햇살을 받아  
눈 위에 떠오르는 당신의 그림자  
고독과 자애와 사랑스러움  
사는 것의 애환이 눈을 기어간다  
(「겨울숲」)

이런 시 몇 줄은 특별히 재일조선인이 아니라도 쓸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만 제 시집에 수록된 한에서는, 역시 그 의미내용은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그것에 대한 고민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세계는 글로벌화가 추진되면서, 지구사회가 점점 좁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

동이 활발해지고, 어느 나라에서나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과 그밖의 마이너리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그런 사람들의 생존양식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연 살아가는 일의 괴로움은 아이덴티티 탐구의 어려움이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틀림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출신(出自)이나 거기에 따른 민족, 공동체, 국가, 기타 현세의 온갖 것들이 거기에 겹쳐져왔습니다. 게다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일견 평온하게 나서 자란 일국내의 다수파의 아이덴티티 및 각양각색의 존재방식을 비취주는(照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일정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상황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는 동안, 좋고나쁨에 관계없이 그 의미내용은 적지 않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재일조선인”이라는 범주를 고려하는 한,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일본에 약 45만 명 정도의 “재일”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심은 이미 3세 혹은 4세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 아이덴티티의 존재방식은, 1세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고는 해도 그렇다고 “일본인”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조선국적 내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거기에는 식민지조선 그리고 분단조국과 끊을 수 없는 무언가가 확실하게 계승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민족”이라든가 “민족의식”, “민족적 아이덴티티” 등 어떤 식으로 정리된 언어로 표현해도 좋을지 어떨지, 하는 데 이르면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게다가 그것은, 일견 아무 상관도 없이 생을 영위해가는 한국 젊은이들의 아이덴티티, 공동체의식 혹은 민족관, 조국관이라고 하는 것과는 적지 않아 교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를 포착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과연 사회과학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문학의 힘, 예술의 힘을 빌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도, 사회과학과 문학·예술이 한데 엮일 수 있을 때야말로, 인간 삶의 복잡함, 미묘함을 더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일”의 경우, 그것은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것에서 하나의 방법론을 구하게 됩니다.

재일조선인 문학에 대하여 조예가 깊은 이소가이 지로오(磯貝治良)에 따르면,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재일조선인문학은 시기적으로 세 단계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1945-1960년대 전반기: 식민지체험의 극복과 정치의 계절  
(『민주조선』 창간, 1946. 3.)

1960년대 후반-1980년대: 민족주체의 탐구로부터 고조기로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명칭의 일반회, 1970년대 들어 여성작가·시인이 등장)

199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문학으로부터 <재일>문학으로  
(가치관의 다양화, 제3세대의 대두, “민족을 넘어서”라는 담론의 등장 )

단적으로 말해, 해방후의 재일조선인문학, 따라서 재일조선인들의 생활과 사상은 정치의식·민족의식이 강한 시대를 걸어온 것이며, 거기서는 민족의식, 민족적 자각이라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는 일본인가 “조국”인가, 일본인과 조선인, 북인가 남인가, 총련인가 민단인가, 일본어인가 조선어인가, 본명인가 일본명인가 하는, 혼히는 이항대립적·이분법적인 발상, 그리고 그것이 강요된 시대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상의 긴장, 이데올로기의 강렬함, 그 큰 진폭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갈등·고민, 게다가 일상의 생업에서 겪는 어려움. 씩씩하게 “재일을 산다”는 어려움을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하는 명제가 전면에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재일”의 주체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의 문제지만,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기회복·자기회구라는 것은, 차별/피차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피차별의 고발에 머무르지 않는 인간성 추구·보편성 탐구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민족적 자각, 민족적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야만 의미있는 것이 되겠지만, 과연 그 당시를 산 재일조선인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문학의 과제도 또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서는 “민족”이 확실하게 하나의, 그것도 가장 큰 명제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주지하다시피, 이미 아이덴티티, 특히 민족을 핵으로 하는 아이덴티티의 존재방식은 시대와 함께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말하자면, “재일성”은 그 자체가 변용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일조선인이 마이너리티, 경계인, 주변인, “외국인”에 머무는 한, 그것은 역시 역사와 사회, 세계사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겨안은, 팔호가 달린 “민족” 집단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당연히, 재일조선인이 스스로에 구애되는 것은 세계의 제문제를 모두 생각하는 것에 연결됩니다. 이것은, 다수자·강자는 소수자·약자를 무시하기 쉽지만, 소수자·약자의 입장에 서는 것은 다수자·강자를 똑바로 보면서 “보편성”에 이르는 회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련됩니다.

최근의 급격한 글로벌화 속에서 “재일”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고발하고 넘어서는 사람들, 혹은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필사적으로 운동해온 사람들로서는, 현재의 사회상황·의식상황은. 일견 참기 어려운 폐색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으로 가득찬 현실과의 싸움의 무산, 사는 보람의 상실, 자기확인의 어려움 등등. 그리고 젊은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처음부터 싸움을 포기하고,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 즉 지구시민=“코스모폴리턴”이라고자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시대상황의 변화 속에서 왜 재일조선인이라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는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남북분단에 얽혀서 그렇게까지 사상이다, 이데올로기다, 국가다, 하고 서로 갈등하면서도, 왜 “재일”은 계속되고 소멸되지 않는 것일까요? 1980년대에 그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생각으로 “재일조선인”이 아니라 “재일”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게 된 젊은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재일”의 길을 걷고 “재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체 왜일까요?

거기에는 역시 개개인의 삶을 초월한, 스스로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선택불능의, 즉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서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과 바로 정면으로가 아니라도 각자 나름대로 대치해 가지 않을 수 없는 내면의식, 역사의식이

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식을 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일조선인의 다수는 지금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남북분단의 과거와 현실을 질질 끌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

사회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재일조선인은 일본과 조선에 의해 규정된 존재이며, 더욱이 일본과 조선의 근현대사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 근현대사의 특징을 든다면, 반제반봉건의 투쟁, 식민지근대의 강요, (반(半)식민지적) 남북분단이라는 세 가지가 그 기둥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대해 일본 근현대사의 특징, 세 개의 기둥은 서양열강의 일본 침략, 천황제 국가의 창출, 아시아 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이로 보아 그 아이덴티티는 서양승배,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시아 멸시관 세 개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제 나름대로 말한다면, 일본의 사상과제는 천황제의 극복과 조선 멸시관의 불식에 있어 왔다고 생각해도 좋을 듯합니다. 재일조선인으로서 말하자면, 지금 서술한 조선과 일본 각각의 세 개씩의 기둥, 통틀어서 여섯 개의 기둥을 언제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재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될 터입니다. 시·문학으로 말하자면 이 여섯 개 과제를 잊지 않는 역사의식을 직조해 넣은 것이 “재일조선인문학” 혹은 “재일문학”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의 사회·세계는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의 폐색, 북핵문제, 세대교체, 일본사회로의 융해 등등. 그러니까 남북의 분단구조는 더 불투명하고 위험한 것으로 되어가는 것 같고, 다른 한편 세대교체 속에서 민족의식은 희박해지고, 거기에 한국으로부터의 뉴 커머(new comer)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일”사회는 전전(戰前) 이래의 특별영주자 더하기 뉴커머라는 구조로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 학술대회의 메인 테마는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분단, 디아스포라, 아이덴티티의 사회사”입니다. 재일조선인의 일원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재일”의 현황, 그리고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어디에 있을지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하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재일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는, 그 핵심은 민족이라거나 국가, 조국이나 고향, 전통, 문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출신” 내지 “내력(來歷)”의 자각이나 거기 구애됨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좋든 싫든 재일조선인은 예전의 종주국이자 지금도 과거를 반성·사죄하지 않는 일본 땅에서, 식민지조선과 남북분단을 질질 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개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민족”에 연루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미래와 꿈을 좇으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실제, 그것을 자각해야만 “재일”은 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일본과 남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을 업신여기는 섬나라  
남북이 분단된 바다 저편  
세 개의 나라 사이에서 노래한다

낙하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솔직하게 태생을 벗어나  
바로 정면으로부터 부딪힐 뿐

자이니찌는 약하다고 누가 말했는가  
자이니찌가 자각할 때  
그 노래 소리는 하늘의 탄생  
(「하늘의 탄생」)

---

\* 번역: 방미화(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통합과정). 다만 인용된 시는 윤건차 시집 『겨울꽃』의 번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원문]

## 在日と民族

尹健次

三つの学会・研究所の主催で、こうして「民族共同体の現実と展望」について議論する機会を得たことを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この大会のメインテーマの副題が「分断、ディアスポラ、アイデンティティの社会史」となっているのは、歴史と現実とに即して具体的に考えてみようという意欲の表れであると考えてよく、私が分担する在日朝鮮人の立場からしてもたいへん意義深いものと言えます。

私に求められた題目は「在日と民族」です。これは主催者側が決めたもので、正しくは「在日朝鮮人と民族」ということであろうと思います。「在日朝鮮人」の略語として「在日」という言葉が当てられたのか、あるいは別の意図があって単に「在日」とされたのかは分かりませんが、厳密にいうなら、「在日」というのは「在日朝鮮人」を意味するものであるとともに、またそれとは区別される特定の意味をもったものだと言えます。

現在日本に居住する「在日」は「在日朝鮮人」「在日韓国人」「在日コリアン」など、さまざまに表現されますが、これ自体、歴史やイデオロギー、その他、在日朝鮮人というひとつの歴史的概念をめぐる今日の複雑さを示すものだと言えます。これについては後にまた触れることとなりますが、いずれにしても、韓国で民族や国民、あるいは民衆というか、人びとの日常生活に関わる共同体について論じようとする、在日朝鮮人の存在が消去しえない問題として浮上してきます。もちろん朝鮮半島以外に暮らす同胞には、中国朝鮮族やアメリカ在住の人たちもいますが、朝鮮近現代の歴史とその延長線上にある現在そして未来の民族共同体とそのあり方、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ったものを議論する場合には、在日朝鮮人は見逃すことのできない存在となります。というよりは、南北に分断された本国の人びとのあり方を考察する場合には、共通の歴史性をもった外部の同胞の視線を組み込むことが不可欠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在日朝鮮人は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の結果生まれたひとつの民族共同体といえるものです。つまり植民地支配の所産であり、しかもかつての宗主国で暮らしながらも、基本的には宗主国の国籍をもたないまま、基本的人権も十分に保障されない存在です。いわば「外国人」という扱いですが、実際には普通使われる意味での「外国人」というものでもない、「無国籍者」ないし「第三人」といったきわめて被差別的な存在としてみなされが

ちです。

在日朝鮮人は日本の植民地時代に生を受け、朝鮮語を話すなど、自意識の重要な部分を朝鮮的なもので育まれた一世から始まり、いまでは三世、四世の時代になるくらいに世代交代がすすんでいます。私自身は日本の敗戦／朝鮮の解放直前に京都で生まれた二世ですが、実際今までの自分の歩みを見ると、確かに戦後日本と分断時代を生きてきた境界人です。いわば三つの国家のはざままで生きざるをえなかったマイノリティであり、ディアスポラであり、そこから必然的に民族とは何か、民族共同体とは何か、またそのなかでの自分はいったい何者なのか、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の探求に翻弄されてきたとも言えます。

この7月に私は2冊の韓国語訳の本を同時出版しました。ひとつはチャンピから出た600頁を超える『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 일본·한국·재일조선인』で、昨年岩波書店から出版された『思想体験の考察』の翻訳です。もうひとつは日本語版とほぼ同時期に出版された華南出版社の『윤건차 시집 겨울숲』です。社会科学書はこれまでに何冊も出したことがあります。詩集は今回初めて出版したものです。ともにこれまで自分が学んできたことを集大成しようとしたもので、とくに詩集はアイデンティティ探求の困難な過去を振り返ることによって、自分自身、そして在日の生きざまを凝縮して活字化しようとしたものです。実際に詩集を出してみると、社会科学書では表現できない自分の内面の些細な部分を文学的な形である程度描き出すことができ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朝鮮を嫌い  
日本にあこがれ  
日本に捨てられ  
朝鮮を発見する  
また朝鮮に捨てられ  
日本と朝鮮のはざまで「在日」を自覚する  
右に左にゆれ動いた振り子  
(「振り子」)

조선을 싫어해  
일본에 동경해  
일본에 버려져  
조선을 발견한다  
또 조선에 버려져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서 ‘자이니찌’를 자각한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들려 움직이는 진자  
(「진자」)

もちろん、在日朝鮮人にとって民族的な葛藤、つまり民族に関わるアイデンティティの探求が重要な意味をもちますが、人類の一員である以上、一人ひとりの人間がもつ生

活感情とか普遍的な思考といったものをもつのもまた当然のことです。

冬の陽ざしを浴びて  
雪の上に浮かぶおのれの影  
孤独と慈しみと愛おしさ  
生きることの哀歎が雪を這(は)う  
(「冬の森」)

겨울 햇살을 받아  
눈 위에 떠오르는 당신의 그림자  
고독과 자애와 사랑스러움  
사는 것의 애환이 눈을 기어간다  
(「겨울숲」)

この数行の詩は別に在日朝鮮人でなくとも書ける内容でしょうが、ただ私の詩集に収められたものであるかぎりにおいては、やはりその意味内容は、在日朝鮮人の歴史とそこにおける苦悩と深く関わったものであると言うことができます。

\*

近年世界ではグローバル化がすすみ、ますます地球社会が狭くなっていくようです。人びとの移動が盛んになって、外国人労働者がどの国でも増える一方です。またさまざまな理由で、難民その他のマイノリティが急増してもいます。ディアスポラという言葉もそうした人びとの生存様式と深く関わっています。当然生きていくことの苦しみはアイデンティティの探求の困難さという形で表れます。そこには間違いなく自分が選択しえなかった出自やそれにまつわる民族や共同体、国家、その他現世の諸々のことが覆い被さってきます。しかもそれはよく考えてみると、一見平穏な形で生まれ育った一国内の多数派のアイデンティティその他、さまざまなあり方を照射する意味をもつこととなります。

しかし例えば、「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ったものを考えてみると、それは一定不変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時代状況が変わり、世代が代わるなかで、好むと好まざるとに関わらず、その意味内容は少なからず変化します。しかし同時にまた、「在日朝鮮人」という範疇を考えるかぎりにおいて、そこには変わらないものもあるはずで、現在日本には約45万人の在日がいるといったとき、その重心はすでに三世ないし四世に移りつつありますが、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あり方は一世のそれと大きく違おうとしても、だからといって「日本人」と同じ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日本国籍をとらず、朝鮮籍ないし韓国籍を維持している限りにおいて、そこには植民地朝鮮そして分断祖国を引きずる何かが確実に継承されているとあって間違いありません。ただそれを「民族」とか「民族意識」「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ったある意味で整序された言葉で表現

していいのかどうか、となると、少なくない問題が浮上してきます。しかもそれは一見何の関わりもなしに生を営んでいる韓国の若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あり方、共同体意識、あるいは民族観、祖国観、といったものと少なからず交差するものとしてあるのではと思われます。

問題の捉え方、分析の仕方は非常に難しいです。これを果たして社会科学的にきちんと整理できるのか、というと、正直なところ、自信がありません。社会科学でうまくいかないとき、文学の力、芸術の力を借りることになります。というよりは、社会科学と文学・芸術が一緒になって取り組んでこそ、人間の生の複雑さ、微妙さをよりの確に表現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のです。在日の場合、それは「在日朝鮮人文学」なるものにひとつの方法論を求め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在日朝鮮人文学について造詣の深い磯貝治良（いそがい・じろう）によりますと、解放後から今日まで、在日朝鮮人文学は時期的に三つに分類できるといいます。

1945-1960年代前半：植民地体験の克服と政治の季節

（『民主朝鮮』創刊、1946.3.）

1960年代後半-1980年代：民族主体の探求から高揚期へ

（「在日朝鮮人文学」という呼称の一般化、1970年代に入って女性の作家・詩人が登場）

1990年代以降：在日朝鮮人文学から〈在日〉文学へ

（価値観の多様化、第三世代の台頭、「民族を超える」言説の登場）

端的に言って、解放後からの在日朝鮮人文学、したがって在日朝鮮人の生活と思想は政治意識・民族意識の強い時代を歩いたのであり、そこでは民族意識、民族的自覚といったものが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たと考えて間違いないでしょう。しかもそこでは、日本か「祖国」か、日本人と朝鮮人、北か南か、総連か民団か、日本語か朝鮮語か、本名か日本名か、といった、往々にして二項対立・二分法的発想、またそれが強要された時代状況があったと考えていいでしょう。思想の緊張、イデオロギーの強烈さ、その振幅の烈しさのなかでの生き方の葛藤・苦悩、しかも日常のなりわいの困難。いきおい「在日を生きる」ことの困難さといかに闘うかという命題が前面に出てこざるをえませんでした。

それを別の言葉でいえば、在日の主体性をいかに確保するかの問題ですが、普通にいうなら、その自己回復・自己希求とは、差別／被差別の現実を直視しつつ、被差別の告発にとどまらない人間性追求・普遍性探求を志向したものとなるべきでしょう。民族的自覚、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言葉もその意味で使ってこそ意味をもつことになりますが、しかし果たしてその当時を生きた在日朝鮮人がそうした自らの姿を示し得て

いたかどかは難しい問題であり、そこにまた文学の課題もあったと思います。いずれにしろ、そこでは「民族」が確実にひとつの、そしてもっとも大きな命題であったことは確かです。

けれどもすでにご承知のように、アイデンティティ、とくに民族を核と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のあり方は時代とともに大きく変わります。私なりの言葉でいえば、「在日性」はそれ自体、変容概念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同時に、在日朝鮮人がマイノリティ、境界人、周辺者、「外国人」ととどまるかぎりにおいて、それはやはり、歴史と社会、世界史の矛盾を集約的に抱え込んだ括弧付きの「民族」集団としてありつづけることになります。当然、在日朝鮮人が自らにこだわることは、世界の諸問題をすべて考えることにつながります。このことは、多数者・強者は少数者・弱者を無視しやすいが、少数者・弱者の立場にたつことは多数者・強者をみすえ、「普遍性」にいたる回路を確保することにつながりうる、ということに関わってきます。

近年の急激なグローバル化のなかで、「在日」が多様化してい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ことです。差別を告発し、乗り越えようとしてきた人びと、あるいは南北の統一を願い必死に運動してきた人びとにとって、現在の社会状況・思想状況は一見耐えがたい閉塞状況であるようにも映ります。矛盾に満ちた現実との闘いの霧散、生きがいの喪失、自己確認の難しさ、など。そして若者の少なからぬ者は最初から闘いを放棄して、世界に生きる個、つまり地球市民＝「コスモポリタン」たろうとすることを公然と口にもします。

たださきほども言いましたように、こうした時代状況の変化のなかにあつて、なぜ在日朝鮮人というひとつの民族共同体はなくならないのか。南北分断と絡んであれほどまでに思想だ、イデオロギーだ、国家だ、とあって、互いにいがみ合いながらも、なぜ「在日」は継続し、消滅しないのか。1980年代にそうした葛藤を少しは小さくするつもりで、「在日朝鮮人」ではなく「在日」という言葉を好んで使うようになった若者たちが、いまなお「在日」に踏みとどまり、「在日」として生きようとしているのはいったいなぜなのか。

そこにはやはり個々人の生を超えた、自分ではどうしようもない、選択不能の、つまり受け入れざるをえない、それを認めて生きざるをえない、厳然たる事実としての歴史があり、それと真正面からでなくても、それなりに対峙していかざるをえない内面意識、歴史意識といったもの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ものがもともと歴史意識を核とするものであると考えるなら、在日朝鮮人の多くはやはり今でも、その意味で、植民地・南北分断の過去および現実を引きずって生きていくと言ってまず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

社会科学적인いうなら、在日朝鮮人は日本と朝鮮によって規定された存在であり、しかもその日本と朝鮮の近現代史は表裏の関係にあるものです。いま朝鮮近現代史の特質

をあげるなら、その三つの柱は、反帝反封建の闘い、植民地近代の強要、南北分断(半植民地的)であると言えます。それにたいし日本近現代史の特質、三つの柱は、西洋列強の日本侵出、天皇制国家の創出、アジア侵略であると言えます。日本人についてだけいいますと、ここからして、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は、西洋崇拜、天皇制イデオロギー、アジア蔑視観の三つによって特徴づけられます。私なりにいうなら、日本の思想課題は天皇制の克服と朝鮮蔑視観の払拭でありつづけていると考えていいはずで、在日朝鮮人でいえば、いま述べた朝鮮および日本のそれぞれの三つの柱、合計六つの柱をいつも考えざるをえず、それを克服しようとするのが「在日を生き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詩・文学でいうなら、この六つの課題を忘れない歴史意識を組み込んだものが「在日朝鮮人文学」ないし「在日文学」として留まりう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はと思います。

現実の社会・世界は激しく動いています。在日朝鮮人を取り巻く環境も大きく変化しています。日本社会の閉塞、北核問題、世代交代、日本社会への融解……。つまり南北の分断構造はより不透明な、危険なものとなりつつあるようであり、一方世代の交代のなかで民族意識は希薄化し、それにたいし韓国からのニューカマーが増大しつつあります。いまや在日社会は戦前来の特別永住者・プラス・ニューカマーという構図で考えたほうがよさそうなくらいです。

この学術大会のメインテーマは「民族共同体の現実と展望—分断、ディアスポラ、アイデンティティの社会史」です。在日朝鮮人のひとりとして、いまここで、在日の現状、そして志向すべき方向性はどこにあるかを提示せざるを得ません。現状についてはすでに素描しました。それなら現時点での「在日性」はどこにあるのか。私は、その核心は民族とか国家、祖国や故郷、伝統や文化であるというよりは、むしろ「出自」ないし「来歴」の自覚、あるいは、こだわりではないのか、と思います。良かれ悪しかれ、在日朝鮮人はかつての宗主国であり、現在も過去を反省・謝罪しない日本の地で、植民地朝鮮と南北分断を引きずって生きています。その事実を認め、その延長線上で生きていくことしか道はありません。それは当然、個々人がそれなりに「民族」にまつわる共同体の一員として、よりよい未来と夢を追って生きていくことを意味します。しかも実際のところ、そのことを自覚すれば、「在日」は強く生きていけるし、日本や南北の皆さん、そして世界の人びとと喜びを分かち合いながら生きていけるはずで、

朝鮮をさげすむ島国  
南北分断の海のかなた  
三つの国のはざままで 歌をうたう

落后するか 突破するか  
素直に出自を認め  
真正面から ぶちあたるのみ

在日は弱いとは 誰が言ったのか  
在日が自覚するとき

その歌声は 天の誕生  
(「天の誕生」)

조선을 임신여기는 섬나라  
남북이 분단된 바다 저편  
세 개의 나라 사이에서 노래한다

낙하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솔직하게 태생을 벗어나  
바로 정면으로부터 부딪힐 뿐

자이니찌는 약하다고 누가 말했는가  
자이니찌가 자각할 때  
그 노래 소리는 하늘의 탄생  
(「하늘의 탄생」)



#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박광성 (중앙민족대학교, 중국 북경)

## 1. 들어가며

“초국적 사회공간”의 출현은 세계화가 가져온 중요한 사회적 결과 중의 하나로서 기존의 국제 사회의 공간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국제사회의 공간개념이 주로 “본국”과 “타국”으로 정의 되었다면 오늘날은 민족국가의 물리적 속박에서 벗어나 국가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형성되는 “초국적인 사회적 공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민족국가공간”이 영토와 국경과 같은 하드웨어에 기초하고 있다면, “초국적 사회공간”은 사회관계에 기초한 초국적 네트워크라는 소프트웨어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과 더불어 “초국적인 사회공간”과 “민족국가공간”간에 관계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앞으로 “초국적 공간”과 “민족국가공간”간에 상호관계문제가 중요한 이론적,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에 있어 국가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본, 상품, 정보 등이 중요한 초국적 활동주체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초국적인 이민”문제도 점차 각국 정부와 학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모든 국가에 있어 초국적 이민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되고 있다. 가령, 단일민족국가전통이 강해 외국인민에 대하여 소극적이던 일본도 최근에는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대비하여 획기적인 이민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조선족은 세계화의 붐을 타고 “지역적인 농민집단”에서 “초국적인 시민집단”으로 급변신한 집단이다. 동북지역에 정부관리들에게서 “해외노무경제”가 조선족의 민생경제(民生经济)라는 말이 오갈 정도로 조선족은 여러 국가로 퍼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외 노동력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본 문에서는 저자의 현지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조선족의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공동체의 변화를 고찰해보고, 그 이론적, 현실적 의미를 조명해보려 한다.

## 2. 초국적 인구이동의 형성과 현황

조선족의 대규모 인구이동은 세계화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그 중요한 계기가 중한수교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종식과 정보혁명의 힘입어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이나 중국을 막론하고 국제교류확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중한수교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동안 주변부에 위치하여 지역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조선족에게 좁은 삶의 터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즉 조선족 이동은 초기부터 단일한 국내요인이 아닌 국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이는 조선족의 이동이 기존의 민족국가 내에서 진행되었던 노동력 이동과 다른 특징을 나타낼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2002년 9월, 2003년 1월, 2005년 상반기에 걸쳐 진행된 세 차례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이동 초기 이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 가족도 모두 외지 진출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령, 2003년 1월 현지 조차시 연길 인근 IP촌의 당서기인 P씨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상해에 가서도 우리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임시 돈벌이로 떠났지 그곳에서 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낯선 곳에서 무슨 멋으로 삽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결국 다 마을로 돌아오게 될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고 고향에 와서 잘 살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지만 결국 외지 진출이 시작된지 20여년이 가까이 된 오늘날 진출한 사람들의 귀환 보다는 지속적인 진출이 계속 이루어져 동북지역의 많은 조선족농촌이 “노년생활형”마을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 2008년 7~8월에 진행된 동북지역8개 조선족마을 주민 거주지에 대한 조사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동북지역 일부 조선족농촌 주민 거주지상황 (2008)<sup>1)</sup>

촌	총인구	본촌	비율	국내도시	비율	국외	비율
WX <sup>2)</sup>	445	154	34	133	30	158	36
XH	2370	1024	43	310	13	1036	44
MJ	553	199	36	131	24	223	40
MY <sup>3)</sup>	2660	1590	60	122	4	948	36
XX	2680	1126	42	447	17	1107	41
YH <sup>4)</sup>	245	97	40	76	31	72	29
YP	859	359	42	227	26	265	32
HL	138	61	44	42	30	37	26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마을주민들의 현 거주지가 원 거주지(원 거주지 내의 이동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국내 연해도시, 국외지역으로 고르게 나누어져 있다. 흑룡강성 농촌들의 경우는 국외 거주 인구가 본 지역 거주 인구를 다소 추월하며, 요녕 심양근교의 농촌들은 국내 도시 진출은 미미한 반면 본 지역과 외국 거주 인구가 비슷하게 나와 있다. 연변 지역 농촌의 경우는 본 지역 거주와 국내 도시 거주인구과 국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북지역의 조선족인구가 이동을 거쳐 이미 원 거주지, 국내 연해도시, 국외 지역으로 삼분화되어 있음을 설명해준다.

- 1) 마을 이름은 중국식 발음의 영문 첫 문자로 표시, 총인구는 호적인구를 가리킴.
- 2) WX, XH, MJ촌은 흑룡강성 해림시 산하에 마을들임.
- 3) MY은 요녕성 심양시 근교 마을이며, XX촌은 심양시 소가툽구 근교마을임.
- 4) YP, YH, HL촌은 각기 길림시 연길시·도문시·용정시의 근교 마을임.

〈표 2〉

국내 연해 도시 진출 조선족인구 상황

지역	연도	호적인구	임시거주증	실제거주인구
북경시	2000	20369		6~7만 명
천진시	2007	20356		5만 여명
장강삼각주	2006년	25356		5~6만 명
주강삼각주	2008			103000여명
산동 연태시	2008	4020	6000	4~5만 명
산동 위해시	2008	6866	8857	3~4만 명
산동 청도시	2008	12050	36251	15만 여명
합계	2008			50~55만 명

표 2는 국내 연해 도시 진출 조선족인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북경시의 호적 인구수는 2000년 중국인구센서스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천진시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수치는 해당 지역의 민족사무위원회에서 2008년에 완성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조선족인구상황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이다. 이 중 천진시와 장강삼각주의 호적인구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산동반도의 조선족인구수는 저자가 참여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산동반도 조선족인구조사팀의 현지조사에서(2009년 1월 조사) 확인된 수치이다. 실제 거주인구는 각 지역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현지에서 조선족공동체의 발전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 인구의 1/4을 초과하는 조선족인구가 연해지역에 진출하여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

〈표 3〉

국외진출 조선족 인구상황

국가	진출 인구	진출 시기	목적
한국	44만 여명 <sup>5)</sup>	1990년대 초기	노무, 혼인, 유학
일본	5~6万人 <sup>6)</sup>	1990년대 중반기	유학, 취직, 혼인
북미	8만 여명 <sup>7)</sup>	1990년대 후기	노무, 유학, 취직
러시아	2~3만 명 <sup>8)</sup>	1990년대 초기	상업
기타	1~2만 명	1990년대 중반기	노무, 유학, 상업
합계	60~65만 명		

표 3은 국외진출 조선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국내 연해도시로의 진출은 산동반도에 다소 집중된 반면 넓은 지역으로 고르게 퍼져 있지만, 국외 진출은 절대수에서 한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수도 조선족 총 인구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다. 북미의 지역으로 진출도 꾸준히

5) 한국 행정안전부, 2009-8-5, “국내거주 외국인 현황”, 서울경제, 2009-8-5.  
 6) 한광천, “재일 조선족현황”, 흑룡강신문, 2005-2-2.  
 7) 한국 외교통상부, “2009재외동포현황”, 연합뉴스, 2009-8-3.  
 8) 임국현, “러시아 보따리 장사군의 천하 - 만주리”, 흑룡강신문, 2006-6-2.

늘고 있어 이미 8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일본지역도 실제적으로는 이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지역과 호주, 아르헨티나 등 남반구 지역에서의 조선족의 활약상도 언론을 통하여 간간히 소개되고 있다. 추정치를 보면 외국진출인구가 국내진출 인구를 초과하고 있는데, 조선족인구이동에서 한국으로의 진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표 4〉 2004년 이후 조선족의 한국진출상황<sup>9)</sup>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2004	128,287	2006	221,525	2008 <sup>10)</sup>	370,048
2005	146,338	2007	310,485	2008 <sup>11)</sup>	386,527

표 4는 2004년 이 후의 조선족의 한국진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족의 한국진출열풍은 점차 사그러져가기보다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방문취업제”가 실시된 2007년 한 해에도 한국진출 조선족 수가 근 1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금융위기가 확산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사이에도 진출자 수가 근 5만 여명 증가되었다(행정안전부의 2009년 8월 집계에 기초).

조선족은 본격적인 인구이동이 시작된 20여년 간에 총 인구의 60%정도가 지역 내 이동은 아닌 원거리 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들 발자취는 국내를 벗어나 5대양 6대주로 퍼졌다. 조선족의 인구이동은 기존의 민족국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도시화과정에서의 노동력 이동이나 혹은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국제이민 형태와 다른 동시적으로 다양한 지역과 국가로 퍼져나가는 초국적인 이민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3. “조선족타운” - 초국적 네트워크의 결절점

중한수교 후의 20여년 간의 이동을 거쳐 조선족은 이미 지역적 집단으로부터 초국적 집단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의 확산은 조선족을 분산시켜 개개인으로 고립되게 만들지 않았다. 이는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꼬리물기식”이동으로 이동지에서 새로운 “파생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러한 공동체가 현지생활에서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sup>12)</sup>. 이처럼 조선족의 인구이동은 “확산”과 “재결집”이라는 상반된 특징을 띠면서 조선족의 거주특징을 “일정 지역 내의 집중거주”형태에서 “초국적 범위의 분산거주”형태로 변화시켰다. 진출지에서

9) 한국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 “국내체류 중국동포현황”, 2008-11-4.

10) 2008년 9월까지의 통계치.

11) 한국 법무부, “외국인통계월보”, 2008-11-28.

12) 구체적인 내용은 박광성, 2008,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변화》, 한국학술정보, pp. 86-101를 참고하기 바람.

형성된 조선족공동체는 여러 가지 유형을 나타내면서 조선족 초국적 네트워크의 결절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집거지 - 친목단체 - 사이트” 결합형이다. 북경 왕징, 서울 가리봉동, 청도 성양, 상하이 룽바이, 뉴욕 플러싱 등지에 유사한 조선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지역들을 보면 우선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 조선족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상가들이 운집하여 그 존재감을 알린다. 또한 “조선족기업가협회”, “조선족노인협회”, “동포협회”, “친목회” 등 각종 공식적 단체와 비공식적 친목회들이 조직되어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 지역의 조선족이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교류의 역할을 담당한다.

가령, 미국 뉴욕의 플러싱지역을 보면 2~3만 명의 조선족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유니온스트리트 일대에 식당, 미용실, 내일업소, 한의원,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직종의 조선족경영업체가 100여개 집중되어 있다. 또한 “뉴욕조선족동포협회”와 “전미조선족동포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결성되어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선투데이(www.chosuntoday.com)와 니카(www.nikca.com)와 같은 조선족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이트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교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sup>13)</sup>. 국내의 연해도시에서는 더욱 규모가 큰 조선족커뮤니티들이 형성되고 있는 데, 가령, 2005년 산둥성 즉묵시에서 경제발전을 위하여 본 지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해결해주는 정책을 발표하자 9000여가구 되는 신축 아파트단지 분양에서 조선족이 6500여가구를 구입하여 큰 도시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sup>14)</sup>.

둘째는 “친목단체 - 사이트” 결합형이다. 일본에 진출한 조선족이 구성한 공동체가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일본으로 진출한 조선족은 주로 유학생과 현지 취직을 목표로 하는 지식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집중거주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할수는 없지만, 반면 지식인집단으로 조직화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친목단체를 조직하는 형식을 통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의 목적을 이뤄가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학술단체로 “재일중국조선족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친목단체로 “천지협회”와 같은 조직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가고 있다. 이밖에 조선족마당(www.kcw.com)과 아룸(www.arumnet.cn) 등 조선족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상호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셋째는 “친목단체중심”형이다. 이는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적게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 조선족이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방식이다. 가령, 러시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지에 진출한 조선족은 이와 유사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조선족동포협회”가 조직되어 교류협력의 친목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재불조선족동포협회”,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르헨티나조선족동포협회”가 조직되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가고 있다<sup>15)</sup>.

이와 같이 조선족은 새로운 진출지에서 개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파생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개인단위가 아닌 집단단위로 현지 사회에 접목되어 적응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선족 공동체는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아닌 국내외의 대중도시들에 확산되

13) 구체적인 내용은 박광성, 2008,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변화》, 한국학술정보, pp.173-175를 참고하기 바람.  
14) 2009년 1월에 있는 산둥반도 조선족인구상황 현지조사에서 확인.  
15) 구체적인 내용은 박광성, 2008,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변화》, 한국학술정보, pp.103-125를 참고하기 바람.

어 있는 “타운”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다.

#### 4. 전통적 연결망의 확산에 기초한 글로벌 네트워크

네트워크이론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연결의 전제조건인 결절점이 필요하며, 또한 각 결절점을 연결해줄 수 있는 관계요인이 필수적이다. 세계 각 지에 형성되어 있는 조선족타운과 공동체도 각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요인이 없다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족이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갈 수 있는 데에는 혈연과 지연이라는 전통적 요인이 중요한 연결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조선족의 인구이동이 짧은 기간 내에 급속히 진행된 데에는 혈연과 지연이라는 전통적인 사회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으로 이주한 후 오랜 시간동안 이주가 적은 폐쇄적 생활세계를 형성해가면서 혈연과 지연은 조선족이 사회적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의 역할을 하여왔다. 따라서 그 유대관계는 일반 주류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비해 끈끈한 것이었다. 이동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유대관계는 이동을 돕는 상호지지체계기능을 수행하면서 먼저 진출한 사람이 그 후 진출자를 돕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외지 진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두 가지 결과가 가져 오게 되는 데, 한편으로는 진출지에서 새로운 지연, 혈연공동체가 재결성되도록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혈연, 지연관계가 넓은 지역적 범위로 확산되게 만들었다. 현재 대부분 조선족에게 있어 혈연관계와 지연관계는 이미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어 있다. 가령, 필자의 경우만 보아도 기존에 흑룡강성과 길림성에 국한되었던 친척관계가 국내로는 청도, 대련, 북경 국외로는 한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러시아로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확산이 결코 친척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현재 인터넷을 위주로 하는 통신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신과 교통이 낙후하던 예전에 비하여 상호 연계가 훨씬 편리하며 연결 횟수도 많다. 이는 조선족의 초국적인 가족연결망을 설명해주고 있다.

한국에 유학 중인 조선족유학생P씨(남, 28세, 길림성 용정시 출신)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저의 고등학교 동기 54명 중 13명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12명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2명이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그외 20명이 국내 각 도시로 퍼져 있으며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은 6명 밖에 안됩니다.” P씨의 사례는 학연과 결합된 지연의 지역적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역시 넓은 지역으로 퍼져 있지만 이러한 지역적 확산이 동기관계가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동기들의 외지진출상황을 이처럼 똑똑히 파악하고 있을 수 없다. 오늘 날에 있어 물리적인 지역적 거리는 이미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혈연, 지연연결망에 기초한 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다민족국가에서 소수집단으로 생활해 오면서 혈연과 지연이라는 전통적 관계를 끈끈히 다져온 조선족은 이를 기초로 새로운 진출지에서 공동체를 재결성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이용하여 초국적인 연결망과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다. 물론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은 현시대의

발전한 통신기술과 편리한 교통, 국가간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류환경이다. 그러나 현재의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는 혈연과 지연과 같은 전통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흐르는 것이 주요하게 가족에게 보내지는 송금이나 혹은 안부와 같은 “정”(情)적인 요인들이다. 즉 매우 현대적인 산물인 네트워크 내에서 매우 전통적인 내용들이 흐르고 있는 셈이다.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조선족사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의 글로벌네트워크가 단순히 전통적 내용의 흐름의 장이 아닌 정보, 문화, 자본, 지식의 교류의 장이 되어 조선족의 품격과 지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2006년 10월 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의 주취로 북경에서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연구를 위한 학술심포지움을 가졌으며, 2007년 11월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제의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두 회의의 연구성과들이 《글로벌코리아 경제문화네트워크》라는 책 제목으로 2008년 9월에 북경민족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온라인을 통하여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가령 연변에서는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조글로(www.zoglo.net)라는 사이트 개설되어 사이버공간에서 교류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미국에 진출한 조선족에 의하여 운영되는 니카(www.nikca.com)사이트에서는 “세계조선족네트워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해외에 진출한 조선족이 추축이 되어 폭넓은 교류의 장을 구축해가고 있다.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는 이미 인구이동을 통한 조선족공동체의 성격변화와 특징을 표현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되어가고 있다.

## 5. 나오면서 -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의 이론적 현실적 의미

앞서 지적했듯이, 유형의 “민족국가공간”과 무형의 “초국적 공간”간에 상호작용문제가 세계화 연구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국제관계와 국제이민연구에서도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가 중요한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이민 연구에서는 “초국적 이민”<sup>16)</sup>이라는 개념이 제기되어 새로운 이민형태를 조명하는 이론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국적 이민”에 대해서는 대체로 민족국가정체성을 손상시키는 위협적 요인으로 판단하는 시각과 민족국가능력을 신장시키는 수단으로 파악하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전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헌팅턴과 같은 사람이며, 후자의 시각은 초국적인 이민네트워크를 국가경쟁력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으로 해외 동포가 많은 나라의 연구들에서 자주 나타난다. 즉 초국적인 이민집단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국들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쟁점으로 되고 있다. 만약 이와 연계시켜 본다면, 현재 조선족이 당사국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갈 것인가가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연구

16) See Linda G. Basch, Nina Glick Schillier and Christina Blanc-Szanton, *Nation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Langhorne, PA: Gordon and Breach, 1994, p.9; Alejandro Portes, Luis E. Guarnizo and Patricia Landolt,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 No. 2, 1999, pp. 217-237.

는 “초국적 이민집단”의 성격과 기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초국적 이민집단의 생활세계에서 어떤 변화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가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된다. 왜냐 하면, 이에 대한 접근이 세계화가 우리의 생활세계에 가져다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초국적 생활공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공동체의 변화는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밑으로부터의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연구에서 당면의 중요한 과제는 초국적인 생활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하는 문제이다. 가령, 현재와 같은 이동국면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재구조화 될 것인가? 외국으로 진출한 조선족이 계속 국외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귀환할 것인가? 귀환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남아있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서로 다른 사회문화환경에서 장시간의 생활이 조선족의 문화적 동질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앞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결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경제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의 계층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등등의 문제는 비단 조선족의 앞날을 조망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초국적인 생활세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족연구는 작은 문제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스포츠와 민족정체성: 월드컵의 사회사

정준영 (방송통신대)

원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족경계 넘나들기

박준규 (인류학박사, 전남대)

## 1. 서론

1998년 11월에 시작한 금강산관광은 국가관광기구인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하고 대규모집단지업인 '현대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이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다른 어느 관광과는 배경과 성격이 명백하게 다르다. 먼저 금강산관광은 관광객으로서의 남한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호스트로서 북한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남북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가 배경이 되어 있다. 이에 호자는 초기에 금강산관광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관광이라고 평가한다(강원택 1999; 서대숙 1999; 서동만 1999). 이미 여러 관광학 학자들은 관광이 어떻게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는지를 연구한 바 있다(Bultler 1999; D'Amore 1988; Kim and Crompton 1990).

금강산관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를 주적(主敵)으로 바라본 남북이 문화교류와 접촉을 시도하는 접경지역관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금강산관광의 시작으로 일반인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영토에 위치한 금강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관광은 금강산 탐승뿐만 아니라 관광 도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문화가 접촉하는 관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처럼 금강산관광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사람들이 만나는 문화접촉공간이며, 상이한 국가와 문화를 넘나드는 접경지역관광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관광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산관광이 갖는 문화접촉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관광인류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관광과정과 함께 생겨나는 문화·정치·사회·경제적 영향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광인류학은 금강산관광을 고찰하는 데 적절한 방법론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관광인류학자들은 관광을 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는 다층적 문화과정으로 이해하고 문화접촉, 문화정체성, 문화적 변화, 타자(진정성)와의 만남 혹은 경험을 통한 자아 발견, 타자의 상품화, 전통의 재발명, 대안적 경제발전 등을 연구해왔다(문옥표 2000; MacCannell 1999; Urry 1990; Graburn 1989, 1983; Smith 1989). 구체적으로 본 논문과 관련된 주제는 '관광과 정체성'이며 이중에서도 관광과 민족주의 또는 민족정체성과의 관계이다(Lanfant 1995a; Pretes 2003). 이에 본 논문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을 넘나드는 금강산관광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작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의 민족-국가 건설 과정의 핵심 이념이었던 단일민족주의와

민족을 영원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보는 본질주의적(essentialist)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그 이유는 민족을 자연적이고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단일민족 개념은 더 이상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일민족주의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민족-국가를 건설하여 단일민족으로 살아야한다는 바람이나 이념의 표현이다. 남한의 단일민족주의는 반공주의와 결합하여 북한을 진정한 민족-국가인 국가를 참칭하는 집단으로서 바라보면서, 이 집단이 남한에 속해 있어야 할 ‘민족’을 억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사실상 한반도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냉전에 의해 남북으로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정치·경제로 분단된 두 개의 국가인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민족에 대한 자신의 이념과는 달리 서로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오히려 적대적 관계 속에서 독자적으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남북은 이중적이고 복잡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을 넘나드는 금강산관광의 시작은 그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남북 관계가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제 금강산관광은 원초주의적 단일민족주의와 이분화되고(dichotomized) 복잡한 민족정체성이 서로 경합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현장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내전’과 50여 년 동안의 분단으로 인해 쌓인 불신과 증오를 가라앉히고 화해와 상호이해를 촉진시켜 민족통합을 이루는 사업으로 기대되었던 금강산관광은 오늘날 남북통합 과정의 불안정성과 남북의 매우 다른 문화 혹은 서로 다른 ‘소속감’을 재확인하는 사회·정치적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고,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며, 또한 남북 간의 교류와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동일한 문화와 민족성을 지니는 것으로 기대되었던 두 집단이 사실상 불안정한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이질적인 문화와 ‘소속감’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바 있다(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엮음 1996; 조한혜정과 이우영 엮음 2000; 장정아 2003; 정병호 2005; Borneman 2005). 홍콩 반환 후 중국본토 자녀들의 홍콩 거주권을 둘러싼 갈등을 연구한 장정아(2003)에 의하면 불안정한 통합과정—그것이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문화적 통합이건, 후기냉전으로 인한 정치적 영토적 통합이건—에서도 경계는 끊임없이 상상된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경계는 민족공동체 안에 동질적인 것으로 상상되었던 특정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특정집단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집단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경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정아 2003; Tsuda 200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논문은 분단된 한반도를 상징하는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는 금강산관광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하여 민족정체성과 자아와 타자를 구별 짓는 민족경계에 대한 재고를 시도하려고 한다. 금강산관광 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광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은 2003년 12월 19일-21일의 1차 관광부터 2005년 1월 10일-12일의 2차관광까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남북이 경쟁적 협력관계의 문화접촉을 위해 형성한 금강산관광의 관광구조와 관광공간 속에서 자아(관광객)와 타자(북한)를 구별 짓는 문화적 공간적 경계가 어떻게 구획되는지, 그리고 관광객은 이 경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고, 더 나아가 이들의 경험이 경계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출입경 과정

현지조사 중 연구자가 만난 한 통일부관계자는 금강산을 출입하는 행위를 ‘출입국’이 아닌 “홍콩과 중국본토를 출입하는 것과 같은 ‘출입경’”으로 표현했다.<sup>1)</sup> 출입경 과정을 감독하는 정부의 부처는 통일부 산하에 있는 남북출입사무소이다.<sup>2)</sup> 현재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와 금강산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가 있다.

‘출입경’ 개념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약칭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에 명시된 “남과 북의 관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반행위를 민족내부거래 관계라고 한다”는 규정에서 기원한다. 출입의 절차는 민족 ‘내부’ 거래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분단선을 넘는 것이 출입‘국’이 아닌 출입‘경’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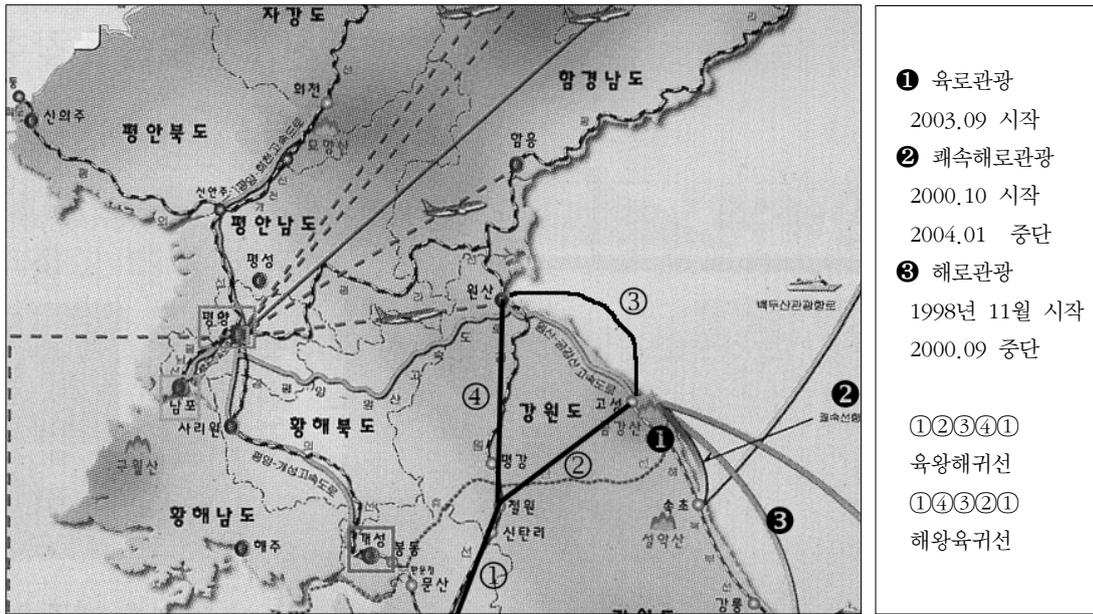
그러나 금강산 출입경 과정 자체는 국경을 넘는 과정과 동일하다. 이 과정은 세관(Custom), 출입국(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약자인 CIQ 포인트를 지나게 된다. 이를테면 국제관광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경우에 입국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의 CIQ 포인트를 지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 심지어 금강산관광 공식 홈페이지와 남한 언론들까지 출입국과 출입경을 혼돈하고 있다.<sup>3)</sup>

### 1) 금강산관광의 노정

최남선(2000 [1928]: 35-36)에 의하면 서울에서 금강산을 구경 가는데 흔히 이용하는 노정은 세 종류다. 하나는 경원선으로 철원까지, 철원에서 다시 전차로 창도까지 가서 그 뒤로 자동차로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차례로 보고 장전에서 기선(汽船)으로 원산을 경유하여 돌아오는 육왕해귀선(陸往海歸線)이 있다. 다른 노정은 이것을 역행하는 해왕육귀선이다(<지도 1> 참조).

- 1) 역사적으로 홍콩과 중국본토 사이의 이동은 ‘국가 내의 이주’로 간주되어 출입국이 아닌 출입경으로 불렸다. 영국의 점령 후에도 마찬가지로 1923년 식민정부는 ‘호조조례’(Passport Ordinance)를 선포하여 외국인들은 홍콩 입경시 여권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중국국민은 여기에서 면제되었다고 한다(장정아 2003: 56). 홍콩과 중국본토 사이의 출입경에 대해서는 장정아(2003) 참조.
- 2)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간 수송 장비의 운행 승인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확인; 남북간 철도 및 도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남북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남북간 출입에 따른 긴급 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북간 출입장소 및 관련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남북간 출입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남북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3) 현대아산과 남측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출국’이 아닌 ‘출발’로 명명하며, 이 관광을 ‘특수한 국내관광’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출국’으로 규정한다. 한 출입심사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외국에서는 남측과 북측을 각각 별도의 두 개의 정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여권을 가진 나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대신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으로 신고하고, 출입심사관은 여권에 ‘속초항↔장전항’으로 적힌 출국 도장을 찍는다.

〈지도 1〉 금강산관광의 노정



자료: 현대아산

유홍준(2003: 53)에 의하면 1914년 8월 경원선이 개통된 이후 이른바 ‘금강산 열’이 일어났다고 한다. 경원선은 서울과 철원을 쉽게 갈 수 있게 하여 금강산까지 들어가는 일정을 단축하였다. 그러나 많은 금강산 관광객들은 1931년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연결하는 금강산 철도와 1932년 통천에서 장전을 거쳐 외금강까지 연결하는 동해북부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최남선이 지적한 것처럼 원산을 거점 도시로 하여 원산과 장전 사이를 오가는 기선을 사용했을 것이다. 세 번째 노정으로는 원산에서 장전으로 가서 온정리에서 금강산의 들미인 온정령을 끼고 돌아 내외금강으로 더듬어 나와 왔던 길로 돌아오는 해왕해귀선이 있다. 세 종류의 노정은 1900년대 초기부터 대중교통의 발달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탐승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당시가 일제식민지시기임을 감안한다면 금강산관광을 대중관광으로 보기에 한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강산 가듯 한다”는 옛말처럼 금강산은 과거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버리고 버리면서 정작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장소로 남아있는 것 같다.

현대그룹이 시작한 금강산관광의 노정은 최첨단 교통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는 3박 4일의 일정이었다.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해항여객터미널에서 현대전용 유람선을 타고 장전항에 도착하여, ‘외금강 탐승의 방사점(放射點)’으로 불리는 온정리에서 금강산 명승 구역 22개 중 2개의 코스와 해금강을 탐승하고 다시 배를 타고 동해항으로 돌아오는 현대그룹식 해왕해귀선 하나뿐이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아산이 굳이 유람선을 이용하는 해로노정을 택한 이유는 육지와 항공 교통수단과는 달리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해왕해귀선은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단체로 수용하고 독립적으로 고급수준의 숙박은 물론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크루즈의 장점 때문이었다(Dowling and Vasudavan 2000: 19).

그러나 크루즈 상품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높은 가격과 비용이 큰 문제였다. 현대아산이 처음 내놓은 4박5일 일정의 관광 요금은 138만원이었다. 현대아산이 장전항 부두시설 등 공사비로 투자한 돈은 9,200만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또 2척의 관광선 용선료와 인건비 등이 하루 16만달러씩 지출된다고 한다(〈한겨레21〉 1998.11.19). 가격과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아산은 일정을 4박5일에서 3박4일로 줄여 요금을 86만원으로 내린다. 요금과 비용을 낮추려는 현대아산의 노력은 계속되어 여객정원을 464명으로 하며, 17.8노트의 속력을 내는 쾌속선 현대설봉호가 투입된다. 일정도 2박3일로 줄어들어 비용도 절감되었다. 해로관광이 중단되기 직전에는 해로로 갔다가 육로로 돌아오는 관광비용이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금강산관광의 재정악화라는 상황으로 현대아산은 1월 10-12일 설봉호의 운항을 끝으로 해로관광을 종료한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해로관광의 중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은 오히려 배로, 버스로, 기차로, 비행기 등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으로 금강산관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겨레〉(2004. 02.15)는 현대아산이 “해로관광을 계속하자니 손해가 크고, 하지 말자니 명분이 없어져” 2004년 1월 10일 중단된 금강산 해로관광의 재개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하였다. 현대아산의 공식 입장은 해로와 육로관광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다.

고민 끝에 현대아산은 해로관광을 유지하는 대신 비용은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현대설봉호보다 용선료가 훨씬 싼 경수로 인력수송선을 해로관광에 투입하고 운항 횟수도 종전 격일에서 2주일에 한 번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2월 초부터 재개하겠다는 계획이 운수회사 측과의 계약 난항으로 점점 늦어지다 결국 금강산 해로관광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현대아산이 해로관광 재개 방침을 분명히 하는 데는 해로관광이 금강산관광을 출범시켰다는 상징적 명분 외에 또다른 이유가 있다. 육로가 막힐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로관광은 국제연합군의 통제를 받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로관광보다 훨씬 크다(〈한겨레〉 2004.02.15).

2006년 6월 현재 금강산관광은 2박3일, 1박2일, 당일 일정의 육로노정뿐이다.<sup>4)</sup> 육로노정은 2003년 2월 21일 시작하였으며 강원도 고성군 소재 통일전망대에 위치한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CIQ 포인트)’에서 전용셔틀버스로 출발하여 동부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의 고성항 또는 장전항에 위치한 출입연락사무소를 통해 온정리에 도착하여 관광한 후 다시 온길로 돌아가는 육왕육귀선이다. 흥미롭게도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의 최남선이 언급한 육왕육귀선, 해왕육귀선, 해왕해귀선 등 세 종류의 노정이 모두 운영되었다.

다양한 교통수단이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현대아산은 보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노정을 개설하려 하고 있다. 관광버스를 사용한 육로노정에 이어 현재

4) 1박2일 일정의 현대금강산관광은 2004년 3월 31일 실시된 시범관광으로 시작되었다. 현대아산 고성 사무소에 따르면 1박2일 금강산관광 시범관광에 나서는 193명의 관광객들은 오전 10시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출발하여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오전 8시30분 집결지인 고성군 금강산콘도미니엄에 모여 관광증을 교부받으며 관광을 마치는 1일 오후에 돌아오게 된다. 현대아산은 오는 5월계부터 본격적인 1박2일 관광상품 판매에 나설 계획이며 시범관광에서 적용한 요금 20만원과 오전 10시 출발 등의 시간일정은 정식관광에서 조정될 예정이다(현대아산주식회사 n.d.c).

는 동해북부선 철도를 사용하는 육로노정 계획이 진행된 바 있다. 남한에서 동해북부선은 영동선의 일부인 북평↔경포대 간 철도를 지칭한다. 이는 원래 경원선의 안변역에서 한 갈래 꺾어져 동해안을 타고 내려와 양양까지 이어진 총 192.6미터의 철도라고 유홍준은 쓰고 있다(2003: 54). 이 철도가 1929년부터 안변↔흡곡 간을 이었고 1932년엔 통천↔장전↔외금강까지 연장된 후 1937년에 고성↔간성↔양양까지 놓여지면서 금강산 유람길이 본격적으로 기차여행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2005년이 되면, 남과 북의 디젤 열차가 1년 단위로 서로 바뀌가며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를 따라 남북을 통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2003.12.14). 최근의 전력사정 악화로 북한이 전철운영에 부담을 겪고 있고, 남한도 환경보호를 위해 디젤차를 전철화하는 중이지만 남북철도는 향후 상당기간 디젤차로 운행될 전망이다. 디젤방식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군 저진리↔금강산 온정리 구간을 달리게 된다.

동해선은 예상 일정보다 빨리 착공되어 2004년 4월 17일 선로가 복원되었다. 그러나 열차 시험운행은 2004년 연말에 실시 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현실화 되지 못하고 2007년 5월 17일에 와서야 제진역과 금강산역간의 시범운행이 실시되었다.<sup>5)</sup> 2004년 북한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 협의회를 연기하였다. 다시 남북은 2006년 5월 25일 시험운행에 합의 하였지만 이번도 북한의 전날 통보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다시 남북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하여 2007년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동시에 진행했다. 시험운행을 마친 동해선은 실질적인 열차운행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같이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또다시 비행기의 서울-원산 직항로를 개설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으며 북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겨레〉 2003. 11.18). 금강산관광의 노정은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다차원적으로 뒤섞인 속에서 변화를 겪는 만큼 그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sup>6)</sup>

## 2) 금강산콘도 집결지

2005년 현재 모든 금강산 관광객은 강원도 속초시에 자리한 현대 금강산콘도에 일단 집결하게 되어 있다. 이곳에서 관광에 필요한 여행문서를 수령하고 반입금지 및 규제물품을 확인받은 후, 통일전망대 아래에 임시로 마련된 동해선 출입사무소로 출발한다. 2004년 1월에 중단된 해로관광의 경우에는 현대속초항 여객터미널에서 출발수속을 밟았다.

5) 제진역(猪津驛)은 2006년 3월 15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와 함께 준공되었다. 한자표기는 지역이름인 저진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글 표기는 '제진'으로 했다.

6) 현대아산에서는 2004년 10월 25일부터 '통일로 가는 금강산 관광열차'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출시하였다. 금강산 관광열차는 철도청과 연계해 주 2회씩 월요일과 금요일에 서울역에서 전용열차로 출발, 화요일과 토요일에 동해역에 도착하여 금강산 당일관광을 하고 수요일과 일요일 새벽 서울역에 도착하는 무박 3일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 기차로 금강산까지 가는 관광노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에 사는 관광객이 금강산관광 집결지인 속초의 금강산콘도에 가는 경로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아산이 지정한 수송업체가 운영하는 금강산지정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주로 단체 관광객들이나 패키지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사들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극소수가 사용하고 있다.

현대아산에서는 강남과 강북 지역으로 나뉜 두 개의 관광버스 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금강산지정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에 맞춰 서울→속초, 서울→통일전망대, 통일전망대↔집결지(금강산콘도)↔속초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금강산지정버스' 요금은 2003년에는 왕복 2만8천원, 2004년에는 왕복 3만원이었으며 이 요금은 관광요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또 현대아산은 거주지로부터 자가용이나 단체로 전세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 5일전까지 버스번호와 탑승인원 등을 반드시 통보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차량번호를 사전에 관할 군부대에 통보해야만 별도의 신고 없이 민간인 통제구역의 검문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이동한 후, 속초에서 통일전망대행 시내버스 1번, 1-1번을 타고 종점에서 하차하면 된다. 약 1시간 20분~30분정도 소요된다. 이 경우 서울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약 4시간이 걸리고 다시 시내버스로 1시간 30분을 가야 하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을 위한 사전여행만 5시간 30분이 걸리는 셈이다.

금강산 관광 초기에 유람선을 이용한 해로관광에서는 여기에 다시 14시간 동안의 유람선여정이 덧붙여졌다. 이후 2000년 10월 쾌속선인 '현대 설봉호'가 투입되면서 운항시간은 4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육로관광이 개시되면서 셔틀버스를 통한 출입경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금강산관광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관광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남한 내에서만 5시간 30분이 걸리는 시간상의 문제를 심각한 결함으로 지적한다.<sup>7)</sup>

고성 금강산콘도는 동해 바다 해변가에 세워진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관광숙박시설이다. 이곳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지하 1층에 위치한 관광증 발권장소에 정해진 시간인 2시부터 관광증을 받은 후 동해선출입사무소로 이동한다.

관광증 발권장소는 큰 회의실 같은 방에 자리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관광등록 순서대로 오른 쪽에서 왼쪽까지 'Γ-Γ'자 형태로 안내판과 책상이 놓여 있었다. 조금 어수선하여 공식적인 시설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이 관광객의 신원과 여행문서(여권과 비자) 확인을 하는 공식적인 중요한 장소이다. 즉 이곳이 비행기 탑승권을 발권하는 국제공항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1차 출경 심사과정이 진행되는 곳이다.

---

7) 2002년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재방문 의사가 없는 이유로 8.2%가 "금강산까지 이동시간이 너무 길다"로 답하였다(남성욱 2004: 18).

〈사진 1〉 여행문서가 담긴 관광증 패키지



먼저 관광객은 자신이 속한 조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오른쪽 책상에서 대기하는 현대아산 직원에게 이름을 말한다. 직원은 관광객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한 뒤에 조 번호를 알려 준다. 나중에 확인되지만, 등록을 담당한 직원들은 관광일정 전체 기간동안 관광객을 인솔할 관광조장들이다. 조 번호를 알고 나서는 그 옆에 놓인 책상으로 이동한다. 책상에는 조 번호판이 놓여 있고, 그 뒤로 조별로 담당자가 한 명씩 서 있다. 관광객들은 자신의 조를 찾아가 신분증을 보이고, 담당자는 몇 가지 설명과 주의를 당부하며 금강산관광이용권을 포함하여 관광증과 출입경에 필요한 여행문서가 담긴 비닐 패키지를 교부한다(〈사진 1〉 참조). 주의 사항은 관광증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다른 성가신 절차를 겪게 되므로 여행기간 동안 절대 깨끗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광증에 낙서나 훼손을 하지 마시오”라는 노란 경고 쪽지가 들어 있는 비닐 관광증 패키지는 줄이 달려 있어 목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패키지에는 관광증 2장(원본, 예비), 금강산 관광카드(원화입금 충전식 카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신고서, 출입국신고서 2장(출발, 도착), 검역질문서(Health Questionnaire), 금강산관광이용권이 들어있다.

삼등분으로 된 금강산관광이용권은 이곳을 떠나 동해안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비무장지대를 건너기 전 전용셔틀버스에서 관광조장 또는 버스 기사가 회사용과 회수용을 수거한다. 남은 부분은 관광객이 관광기간 내내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머물게 되는 숙소와 객실 방번호, 반/조가 적혀 있다.

안쪽에 금강산 관광증(Tourist)이라고 적힌 관광증은 A5 규모의 두꺼운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만든 것이다.<sup>8)</sup> 관광증의 원본은 북한이 보관하기 때문에, 이 관광증이 관광객의 신원증명 및 신분을 보장하는 유일한 증명서이다. 관광증은 북한을 떠날 때 북한 출입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 2> 참조).

관광객들의 관광증은 연한 녹색이며 일부는 핑크색 관광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핑크색 관광증은 관광이 아닌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으로 금강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관광증 표지에는 개인의 정보와 관광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한 사진이 스캔되어 붙어있었다.

<사진 2> 관광증



관광증 제일 위의 왼쪽에는 관광증의 고유번호가 있다. 예를 들어 2차 현지조사 중 연구자의 번호는 육로-금강-02-29 영어로는 HLH-KumGang-02-29로 적혀 있었다. 육로는 노정을 의미하고 02는 2조 29은 개인의 번호 29번을 뜻한다. 금강은 연구자가 머물 숙소인 금강산호텔이다.<sup>9)</sup> 또한 커버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 여권종류/ 여권번호/ 직장직위/ 거주지/ 기간 등의 내용이 모두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다. 흥미롭게도 민족 란에는 ‘조선(Chosun)’이라고 적혀 있고 직장직위 란에는 ‘에치정신문화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라고 적혀 있었다. 에치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한국의 약자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어로 표현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공식명칭을 ‘남측’으로 고칠 수는 없으니까 영어약자로 대체한

8) 미국국적을 가진 연구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관광증은 바탕이 흰색이다. 2000년 2월 2일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금강산관광 또한 매우 저조하다(<한겨레> 2000.02.02). 2004년 12월까지 연구자와 같은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총 4,511명이다(한국관광공사 2005).

9) 이외에도 포레스트돔은 소나무반, 호텔해금강은 해금강반, 펜션타운은 통나무반, 금강벨리지는 해변반, 온천벨리지는 온천반으로 구별된다.

타협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영어약자를 ‘H’ 대신 한글로 표기를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하고 남북 교류와 접촉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문제들 중 대표적인 문제인 남북한 부르기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위 관광증 표지에서 조선이란 국호는 도장으로 찍혀 보이지만 한국이란 국호는 코드화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이 위의 상황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즉 ‘조선’이라고 도장 찍힌 관광증은 금강산관광이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이라는 ‘진정성’을 한층 더 부각시켜주는 동시에 북한이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일련의 상징적 요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이며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은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들은 북한 국가를 더 이상 주적으로 또는 괴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업체로, 출입경과 금강산관광 전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당국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 3〉 반입금지물품 확인 창구



다시 절차로 돌아가자. 관광증 패키지를 받은 관광객들은 다시 또 왼쪽으로 이동하여 반입금지물품과 반입규제물품을 확인하는 책상으로 간다. 여기서 현대아산 직원은 모든 관광객들에게 ‘금강산관광 지침금지 물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혹시 해당되는 물품을 여행가방이나 배낭에 지참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후 관광객들은 반입금지물품인 핸드폰과 배터리를 맡기고 휴대하는 사진기가 규제물품이 아닌지를 확인받는다(〈사진 3〉 참조).<sup>10)</sup> 이 모습은 인화물, 폭발물이나

10) 아직은 어차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이 왜 반입금지 물품인지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이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한 무전기와 핸드폰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휴대가 금지된 손톱깎이와 문구용 가위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점은 지침금지 목록에는 무기와 마약과 같은 국제관광의 금지품목 외에도 또다른 특별한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다.<sup>11)</sup>

반입금지물품과 반입규제물품들은 그 자체로 금강산 관광의 특수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 물품들은 국경 통과에 따른 일반적인 보안이나 검역심사를 위한 규정사항과 다르다. 이 지역이 일종의 특수지역, 즉 지난 50여 년간 통과가 금지된 금단(禁斷)의 땅이기 때문이다. 지역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도 ‘주적(主敵)’으로 적대시되었다. 이곳이 이처럼 특별한 지역에 대한 관광이기 때문에 물품들에 대한 규제가 남다른 것이다. 한 관광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소개되어 있다.

금강산지역은 특수지역이므로 장전항의 입출항 시, 세관통과 시, 버스 이동 중 사진촬영이 엄격히 중지됩니다. 또한 관광 중 현지인과의 접촉 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남북 정치, 경제적인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금강산닷컴 금강산관광안내문에서).

사실 금강산 관광객들은 일반관광과는 다르게 자신의 여행가방을 꾸리는 시점에서부터 신경을 쓰게 된다. 심지어 연구자가 인터뷰한 한 관광객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진 찍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금강산에 같이 오려고 하였으나 줌렌즈가 달린 사진기가 반입금지물품인 것을 알고 난 후 매우 실망하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아산이나 금강산닷컴과 같은 여행사가 배포하는 안내문을 통해 관광객은 관광 준비단계에서부터 금강산관광지가 북한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 50여년 동안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해 왔던 관광객에게 자신이 북한지역에 간다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연구자는 북한이 ‘적’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공포 때문에 금강산관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들을 간혹 만났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을 한 물리학교수는 “내 전공이 핵물리학이었는데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하려고 나를 납치하면 어떻게 하나”며 연구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또한 몇몇은 북한이 외화수입을 위해 금강산관광을 시작하였다면 관광객들에게 사소한 일에도 온갖 트집을 잡아 벌금을 물게 하여 돈을 벌 생각이면 어떻게 하나며 “그들을 믿을 수 없으니 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실향민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관광객들의 신변안전뿐만 아니라 북한을 합리적인 국가로 인정

---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라며, 금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또 어느 관광객은 아무도 모르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몰래 카메라’라는 별명이 붙은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 금지대상인데, 그 기능이 없는 핸드폰과 구별하기 힘들니까 북한에서 모든 핸드폰을 금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것도 금강산에서 무용지물인 핸드폰을 왜 금지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11) 금강산관광의 운영이나 개발을 규제하는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 제7조에 의하면 반입금지물품은 다음과 같다.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정해진 확대배수 이상의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기, ‘목화촬영기(비디오카메라),’ 무전기와 그 부속품, 독약, 마약, 방사성물질 같은 유해물질,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록음록화물(테이프),’ 애완용이 아닌 짐승, 기타 관광과 관련이 없는 물건 등이다.

하는지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럼 왜 현대아산은 처음부터 안내문에 ‘지참금지’ 목록과 금강산관광지가 특수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관광 질서에 주의할 것을 안내할까?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답이 존재한다. 하나는 통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관광은 자유와 유희, 여가, 쾌락 등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지만 모든 관광은 통제된다. 관광객은 ‘비일상’적인 관광행위 속에서 흔히 자신들이 통제와는 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 관광객은 여행을 통해 일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관광지에는 어떤 통제나 규제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Crick 1996). 일단 일상을 통제와 규제로 구성되는 사회로 생각하면서 그 일상을 떠나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로움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행이 그 자체로 자유로운 과정은 아니다. 모든 관광은 관광 전부터 그 과정 속에서 통제를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통제의 과정을 관광객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인식하지 못하여 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금강산관광에는 관광에 대한 통제와 관광객들의 유희 사이에 놓인 매우 모순적이고 복잡한 상호관계양상이 드러난다. 특히 금강산관광이 남과 북 두 국가가 서로 경쟁적 협력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서로에게 행사하려는 사회·정치적 장이라는 점에서 관광객과 관광 당국 그리고 일선에서 관광객을 통제하는 관광중재자(가이드) 간의 관계는 매우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관광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일부 관광인류학자들은 관광을 자신이 날마다 겪는 일상에서 잠시 떠났다 돌아오는 성스러운 여행으로 해석하여, 이를 위해 관광객들은 다양한 통과 의례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Graburn 1989). 이를테면, 회사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여행가방을 꾸리고, 여권을 만들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출입경 심사를 받는 것 등이 일상과 다른 통과 의례 절차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수한 조건 속에서 이뤄지는 금강산관광은 매우 특별한 통과 의례 절차를 가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들은 여행가방을 꾸리는 시점에서부터 금강산 관광지는 일상과는 다른 매우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현대아산의 안내문은 통과 의례의 의식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안내문은 금강산관광지가 ‘적’으로 간주되는 북한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안내문에 나온 절차에 따라 준비를 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무전기, 남한 신문이나 잡지, 북한에 관한 인쇄물 등 북한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인쇄물”들이 포함된 ‘지참금지’ 목록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자신은 그 어떤 정치적 또는 다른 이유가 아닌 관광(금강산 탐승, ‘북한’관광)을 목적으로 ‘북측’을 방문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준다.

## 2)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관광증을 수령한 관광객들은 각자 온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금강산콘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로 이동한다. 통일전망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넘어 민간인통제지역에 있다. 민통선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검문을 하는 군인에게 준비된 허가증을 보이고 통과한다. ‘민통선’은 남방한계선 바로 아래 5-20킬로미터 범위에 설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측

과 유엔-남측 군이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와 달리 남한군의 통제 하에 있다. 버스 왼쪽 창 밖으로 군부대와 군 장비들이 보이며, 오른쪽 창밖으로는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이 동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다. 관광객들은 창 밖 풍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분단선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20-30분 후 관광객들은 통일전망대 밑에 임시로 설치된 동해선출입사무소에 도착한다. 단층 임시 가건물인 출입사무소는 직사각형의 임시건물로 되어있다.<sup>12)</sup> 마치 하나의 큰 창고 같이 보이는데, 양쪽으로 출입문이 뚫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주차장에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금강산 관광객들의 관광버스와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의 차로 북변 여느 관광지와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주차장 입구와 한 구석에 군 차량이 세워져 있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광경에서 일반 관광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어떻게 보면 동해선출입사무소를 지나는 금강산관광은 지난 30년 동안 남북접경지역 곳곳에 조성되었던 ‘안보관광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5년 5월 현재 문화관광부(중앙정부)와 강원도(지역정부)는 현 출입사무소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철도 동해선의 제진역(驛)과 새로운 출입사무소와 함께 ‘남북교류타운’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환경운동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50년 넘게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민간인통제구역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면 그동안 보호됐던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이 야기될 것이라는 이유였다(〈오마이뉴스〉 2005.04.28). 이 한 사례만 보아도 북측과 관련된 관광과 개발이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연구자가 경험한 출경심사과정이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 세 사람은 버스에서 짐을 챙긴 뒤, 출입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출입사무소에 들어서니 정문에 안내문이 보였다. “관광증 발권은 2시에 시작합니다.”는 안내문에 이어 “출경 심사는 3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는 안내문과 마주하면서 ‘시간’의 엄수가 생경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잠시 후 건물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금강산관광을 막 끝내고 입경하는 관광객들이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 사무소는 출입이 동일한 심사대에서 진행된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먼저 입경심사를 받으며 우리가 서 있는 쪽으로 들어온다. 심사를 받고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 휴대품 검사기를 통과한 후 출구로 나간다. 입경하는 사람들이 출입사무소를 떠난 뒤, 출경하는 사람들의 심사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관광을 마치고 입경하는 관광객들이 모두 빠져 나가고, 안내 방송대로 출경 관광객들의 출경 심사가 시작된다. 관광객들은 공항에서와 같이 짐을 엑스레이 검사대에 올리고 금속탐지기를 통과 한 후 출입경심사관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외국인은 여권)과 관광증에 들어 있는 출입신고서(출발)를 제시한다. 내국인의 경우 심사관은 심사라기보다는 거의 형식적으로 신분을 확인하였고 극장직원이 입장권을 확인하듯 출발용 출입신고서만을 수거하였다.

이처럼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을 국제관광이 아니라고 했지만, 금강산관광의 수속절차는 일반 국내관광과 다르며, 오히려 국제관광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처럼, 출발

12) 2003년 12월 나의 첫 번째 금강산관광은 쾌속선인 현대설봉호를 타고 가는 해양육귀 노정이어서 이 곳이 아닌 속초항 터미널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은 육로를 사용하였기에 이곳을 통과하였다. 당시 출입사무소의 명칭은 임시남북출입연락사무소였다.

과 도착 전에 동해선출입사무소에서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도착지인 북한 또한 도착과 출발 전에 장전항에 위치한 북한 출입사무소에서 출입경 심사를 요구한다. 흥미로운 것은 관광유람선인 현대금강호나 현대설봉호를 타고 금강산해로관광을 가서 관광일정 동안 유람선에 숙박한 관광객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 이유는 유람선의 국적이 남과 북이 아닌 제3국이고 육지가 아닌 바다에 정박해 있기에 국제영역으로 간주하여 매번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 엄수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금강산관광은 대량의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단체관광과 비슷하다. 특히 여러 관광거리와 지역을 단기간에 관광하는 대중관광의 경우, 여행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분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고 관광객들에게 시간을 엄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의 경우는 다른 일반관광과 다르다. 여기서의 시간 엄수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관광의 '통제'와 연관되어 있다. 관광의 일정이 상당부분 분단지역을 담당하는 군의 일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군에 이미 정해진 시간에 따라야만 한다.<sup>13)</sup>

### 3. 분단선 넘기

〈지도 2〉 분단선 넘기



자료: 현대아산

출경심사를 마친 관광객은 비무장지대로 들어가기 전 버스에 탑승하여 자리를 잡고 앉아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버스 정면에 달린 TV의 비디오를 시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 비디오

13) 2003년 첫 번째 현지조사 중 만난 한 관광조장은 “당일에 양측 군에서 협의한 시간을 변동하여 움직임이 진행되면, 일종의 ‘도발’행위로 간주되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급히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설명했다.

에는 북한 방문관련 주의사항이 담겨 있다. 이 절차는 공식적으로는 ‘안내교육’으로 불린다.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이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에 의하면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문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 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문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통일부 2002: 39).<sup>14)</sup>

비디오가 끝날 무렵, 관광조장이 버스에 올라타며 분단선 넘기의 사전준비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관광조장은 일반적으로 관광 가이드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가이드’란 용어가 생소해서 ‘관광조장’이라 부른다. 관광조장의 소개와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 전용셔틀버스에 대한 설명 등 관광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끝나면 관광객은 군(軍)이 통행허가명령이 내릴 때까지 잠시 기다리게 된다.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 관광객은 ‘분단선’ 넘기를 기다리며 느끼는 긴장감과 흥분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버스가 치이익하는 소리를 내며 출입문을 단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봐라. 초등학교시절 반공포스터, 글짓기, 웅변대회를 겪었으며 수많은 반공도서를 읽으며 독후감을 쓰던 그런 우리가, 머리가 자라 대학시절 민족이며 통일을 부르짖을 때는 뱃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떨칠 수 없던 우리가 몇 분 후면 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 북녘땅에 들어선다니. 그 때의 긴장감과 기대감. 사실 그것이 금강산 육로여행의 가장 큰 묘미일 것이다.

곧 통행허가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버스가 일사불란하게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향해 출발한다. 본격적인 ‘분단선’ 넘기가 시작된 것이다. 관광객은 커튼이 없는 전용셔틀버스의 창밖으로 전방지역의 풍경을 보게 된다. 지나가다 보이는 한 전봇대에는 ‘졸면 죽는다’는 표지판이 붙여있다. 버스가 2004년 12월 개통된 새로운 도로를 이용하여 군사분계선을 향해 천천히 이동한다.

도로표지판에는 “일반국도 북(N)7”이라고 적혀 있었고, 거리 표지에는 금강산 21킬로미터로 되어 있었다. 도로가 일차도로인데다 여러 대의 버스가 행렬을 이루기 때문에 버스는 시속 40킬로미터 정도로 움직인다고 했다. 조장은 북한 북방한계선에서의 검문절차도 있기 때문에 표지에는 21킬로미터로 적혀 있지만, 도착시간은 지금부터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에는 이 도로가 공사 중이어서 당시는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사용했던 기억이 낫다.

14) 꽤속 관광선인 현대설봉호를 타고 해로로 방문했을 때에도 안보교육은 있었다. 배가 출항하자마자, 북한에 입항하기 전의 과정에서 비디오를 봐야 했다. 개인 관광객은 선실에서 내부회로방송으로 나오는 비디오를 시청하고, 단체 관광객은 큰 강당에서 안내교육 비디오를 본다. 당시에는 관광조장이 일일이 선실에 들어와 비디오가 방송되는지를 확인하며 점검했다. 그러나 큰 강당에서 단체로 이뤄지는 안보교육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단체 관광객 중 거의 모든 관광객이 자신은 안보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너무 사람이 많고 웅성거리서 집중을 해서 비디오를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비디오의 첫 번째 내용은 ‘해상안전수칙’으로 한국해운조합에서 제작되었다. 이후 북측방문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비디오가 연이어 상영되었다. 내용은 주로 금강산관광에 관한 것으로 관광 중 침을 뱉어 적발되면 벌금을 낸다거나, 김일성과 김정일 기념비 주변의 돌 구획선에 앉으면 안 된다거나, 김일성 글자를 손으로 지적하면 안 된다거나, 버스가 움직이는 도중 안에서 창문 밖을 향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유의사항이었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천천히 반원을 그리며 해변가로 내려온 버스들은 통일전망대와 동해선출입사무소를 뒤로 하며 서서히 북으로 나가갔다. 도로 왼쪽은 도로공사 때문에 잘려나간 산이 절벽을 이루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푸른 동해바다와 북구 중에 있는 동해선 철도가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금강산 자락과 산봉우리들이 얼핏 보였다. 관광객은 마치 사과리동물원을 관광하듯이 양쪽 창밖을 바라보며 50년 동안 사람의 통행이 금지되었던 비무장지대를 하나라도 더 많이 자신의 시선에 담으려고 두리번거렸다. 일반적인 관광이라면 관광객이 사진기를 꺼내 정신없이 사방을 찍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군사지역이자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남과 북 모두 사진 찍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었다.

베를린 시(市)를 동과 서로 나누는 베를린장벽과 같이 높은 벽이 있거나 통행을 방지하는 초소 등과 같은 구조가 있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군사분계선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다. 심지어 철조망조차 없다. 관광객 일부는 “어? 이게 뭐야. 무시무시하지 않네?”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일반적으로 분단의 상징으로 알려진 철조망은 남방한계선과 민간인 통제선을 표시하는 군사지역경계선의 일부이다. 그나마 이 철조망마저 관광진흥과 환경보호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분단선’은 존재하는 실체이기 보다는 남방한계선, 민통선, 군사시설보호구역경계선 등 다양한 경계선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래 ‘분단선’은 1948년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기 위해 북위 38도선에 그은 일종의 경계선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국내의 정치력이 부재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격화되어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수립되면서, 이 단순한 경계선인 북위 38도선은 한반도를 둘로 나누는 ‘분단선’으로 정착되고 말았다. 현재의 ‘분단선’은 남과 북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 화해할 수 없는 적대감을 갖게 한 ‘한국전쟁(1950-1953)’의 정전협정으로 정해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이다.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조인된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각 2킬로미터씩 물러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띠 형태로 만든 폭 4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DMZ)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분단선’의 이미지는 자신의 출입과 통과를 통제하기 위해 둘러쳐진 철조망에서부터 시작된다. 남한의 경우 일반인에게 가장 가까운 분단선은 군사분계선의 남방 15킬로미터 범위 안 지역, 군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민간인통제지역의 경계선이다. 북측에는 군사분계선 북방 18킬로미터 범위 안 지역에 만든 여행금지구역의 경계선이 있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여행금지구역)은 군 행정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출입과 통과가 엄격히 금지되는 일반인에게는 구별되지 않는 커다란 하나의 ‘분단선’ 범주이다. 오늘날 이 분단선에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두 개의 통로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는 서쪽에 위치한 판문점 통로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금강산육로관광 통로이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분계선 표시물 설치에 관해 군정위의 지시에 따라 분계선을 명백히 표시하고 표식판의 건립을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54년의 군사분계선은 임진강 강변에 세워진 0001호 표식물(標式物)을 시작으로 하여 한반도의 허리를 질러 동해안에 세

워진 마지막 표식물 제1,292호까지 총 1,292개의 표식물이 심어져있다. 어느 표식물 앞에 서든 좌와 우로 보았을 때 다음 표식물이 보여야 하며, 표식물 사이의 거리는 분계선이 직선일 때는 500미터, 굴곡일 때는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체 표식물 중에서 696개는 국제연합군측이 관리하고 나머지 596개는 중국과 북측이 관리하기로 했다. 표식물은 황색바탕에 흑색 글씨가 쓰여 있는 간판이다. 남쪽을 향해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북쪽을 향해서는 국문과 중국어로 “군사분계선”이라고 써어 있고, 그 밑에 표식물 번호가 적혀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표식물이 손실되고 유실되었고, 남아 있는 것들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금강산 관광객이 버스 안에서 관광조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적하는 곳에 따라 보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바로 제1,292호이다.

흥미로운 점은 군사분계선이 육지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이 왼쪽의 파주시를 지나 한강 하구의 중심으로도 연결되어 서해 앞바다의 서해 5개 도서군(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과 북한 황해남도 연안 사이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문향은 이것이 큰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유엔군 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직을 맡았던 이문향은 정전협정 조문 그 어느 조항에도 그리고 후속합의서 그 어디에도 서해에 그려진 해상분계선, 군사분계선 연장선이나 북방한계선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이문향 2001: 87).

이문향에 의하면 1999년 6월 15일과 2002 6월 29일 두 차례의 서해교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존재하지 않던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이란 용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1차 서해교전은 북한 해군 어뢰정과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영해를 침범하여, 이를 저지하는 남측 해군이 함포공격을 받고 응사하면서 시작되어 북한 어뢰정 1척이 침몰하였다. 3년 뒤 다시 벌어진 2차 교전은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교전으로 번져, 남측은 사망 4명과 실종 1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북한 경비정 1척이 화염에 휩싸였다. 두 차례의 서해교전 모두 서해 꽃게잡이가 한창이던 때에 발생한 것으로 매년 4-6월이면 영해침범 주장이 끊이지 않아 서해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는 합의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쌍방이 각기 2킬로미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쌍방은 모든 비무장지대로부터 혹은 이 내부나 이를 향하여 어떤 적대행위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비무장지대에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해당 지역 사령관의 특별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로 출입이 허가된 군인과 민간인의 수는 해당 지역 사령관이 결정하지만, 어느 일방이라도 허가 인원의 총수가 1,0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와 휴대하는 무기도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하며, 다른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허가 없이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정전협정의 내용과 다르다. 쌍방 2킬로미터씩 후퇴라는 원칙은 철저히 준수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는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따라 수많은 군인과 막강한 화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총격전들도 종종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는 이름과 달리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중무장(重武裝)지대’로서 한반도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다.

이처럼 군사적 정치적 경합 속에서 구성되었으며 일반인에게 굳게 닫혔던 분단선이 금강산 육로관광을 통해 열리게 되었다. 물론 이전에 남북한 왕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위급 인사회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임수경, 문익환 목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기존의 관문점을 통한 통로로 왕래가 있었다. 비록 관광을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인이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적(敵)으로 간주하여 서로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분단선’을 확고하게 그었던 상황에서 금강산육로관광은 한반도 분단사에서 그 선을 뚫은, 하나의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어느 관광객의 ‘분단선’ 넘기 경험이다.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는 않았지만 조금 후 철조망이 두겹으로 쳐져 엄하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남방한계선, 즉 비무장 지대에 들어왔다. …… 드디어 바로 눈앞에 군사분계선이 나타났다. 우리의 버스가 가는 도로상의 군사분계선에는 철조망으로 된 커다란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 그 문 앞쪽 주변 여기저기에 초소가 두 군데 눈에 뜨인다. 초소는 모래로 만든 푸른색 마대로 쌓아 올려 구축한 참호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사방 3미터 정도의 정방형으로서 높이는 가슴 정도나 되어 보였다. 여기에 우리 국군 용사 3명이 들어가서 M16 소총을 휴대한 채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다. 순간 나의 가슴이 무척 착잡하였다. 주변이 확 트인 개활지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몸을 숨기면서 경계할 수가 없어서 마대 자루로 만든 참호에 의지하여 경계 근무를 하는 이 용사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과 몇 10미터 안에 적이 있다. 상호간에 소총의 오발로 인한 충돌이나 서해 교전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만일 사건이 터진다면 우리의 젊은이인 이 국군들의 생명은 어찌 될 것인가? 다만 옛날 내가 군 생활을 할 무렵은 한 명씩 경계 근무를 했는데 좁은 공간에 세 명이 함께 있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무척 그들이 안쓰러웠으며 그들의 부모들이 현장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초조할까하는 생각이 스치는 중에 벌써 버스는 군사분계선에 세워진 철조망 문을 지나 버렸다. 문을 지나니 북한의 인민군들이 바로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참호도 없이 길옆에서 정복을 입은 채로 단정하게 여기저기에 서 있다. 이크! 이것이 북한의 인민군이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나는 긴장이 되었다. 오랜만에 보게 되는 이 인민군들이 내가 일곱 살 무렵에 남한에 내려와서 설쳐대던 공포의 대상이었고 몇 해전 서해교전에서 우리 병사들을 전사하게 한 사람들이라 생각할 때 오싹하는 전율이 가슴을 스쳤다(남성, 인터넷 자료: <http://www.myapt.org/essay/story/>).

이처럼 관광객은 각각 다른 군복장과 무기로 무장한 두 국가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분단선을 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사분계선, 철조망, 군인과 같은 사물이나 인물 그 자체가 아니다. 이들의 존재보다 이들이 연상시키는 기억, 사상, 개념, 그리고 행위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관광객이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분단선을 넘는 경험에서 더 명확히 나타난다.

겨우 몇 시간 전만 해도 “금강산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산다,” “북한도 우리 민족의 땅이다”라고 말하며 남과 북을 구별하지 않았던 관광객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상상된 공동체가 존재함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여전히 침예한 군사적 긴장과 대립 속에 진행되었던 초기의 금강산육로관광의 국경 넘기는 분단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남한 관광객에게는 관광의 체험보다는 남과 북의 차이와 ‘적군’과 ‘아군’의 구별을 체험하게 하는 안보교육에 가까웠

다.

안보교육을 위한 ‘안보관광’을 잠시 살펴보자. 안보관광은 용어 그 자체로 매우 모순적으로 보인다. 안보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관광은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순적인 개념은 한반도의 분단, 즉 평화상태가 아닌 휴전상태라는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맞물려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장승호(1995)는 “안보와 관광은 자기영역의 목적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상대영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안보관광은 안보영역으로는 집단구성원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안보적 속성인 비밀성, 통제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관광은 자발성, 대중성, 대량성이 높은 유형/무형의 자원을 안보영역으로부터 제공받아 관광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현식(1999)은 안보관광의 일차적 목적이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통제되는 민간통제선 지대를 관광함으로써, 절박한 남북 대치상황과 대북 안보상황을 확인하고 이해하여 자발적인 안보의식 강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광적인 즐거움도 제공받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금강산관광 초기의 육로를 통한 관광여정은 바로 이런 역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의 ‘안보관광’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만남 없이 북한의 남침 계획 즉 호전성을 폭로하고, 북한의 이념인 ‘공산주의’의 열등성을 강조하는 소위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통제 및 교육방안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이와 달리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북한을 ‘직접’ 방문한다. 그리고 지극히 일부이며 ‘무대화’된 것이긴 하지만 현실을 보며 북한사람과도 만난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은 50년 넘게 굳게 닫혔던 분단선을 통과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기존의 안보관광이 작위적으로 의도했던 것을 넘어서 체화된 이데올로기를 재확인하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관광은 기존의 안보관광적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한 다른 관광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근본적인 변화는 1년 남짓한 사이에 또다른 한 단계 변화를 거쳤다. 지금은 냉전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교육’의 일환에서 벗어나, ‘국경’ 넘기는 하나의 매우 흥미로운 관광거리가 되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군사지역을 통과하는 느낌보다는 사과리 자연공원이나 테마공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새롭게 깔린 도로를 타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시야가 넓어졌다. 왼쪽 오른쪽 시야 모두가 확 특이면서 관광객은 갈대밭이 펼쳐진, 그리고 그 위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풍경이 자아내는 평화스러운 평야를 마주하게 된다. 분단과 전쟁, 무장한 대치상황은 오간데 없고 평화로운 느낌과 안정감이 관광객에게 전해진다.

---

15) 안보는 안전보호의 준말로써 일반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국체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뜻과 함께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또는 취해야 하는 제반조치까지를 포함한다. 안보의 문제가 적용되는 영역은 그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세력으로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인, 대물, 대공간의 엄격한 제한성, 차단성, 비밀성, 강제성을 갖는다(장승호 1995). 역사적으로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남한의 안보개념은 반공산주의에 입각한 적화통일의 노선을 견지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간으로 남한과 미국간의 군사정치적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 4. 북한측 출입경 과정

북방한계선을 넘은 버스는 북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여행금지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이제 관광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북한지역에 들어온 것이다. 관광객은 이 사실을 둘째 철조망인 북방한계선을 통과하면서 알게 된다. 그러나 경계선의 통과보다 눈앞에 보이는, 남한과 너무 다른 지형을 바라보며 자신이 북한지역에 왔음을 알게 된다.

관광객은 몇 십분 이전에 자신이 보던 풍경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가장 먼저 관광객의 시선을 끄는 것은 도로 주변에 붉은 깃발을 손에 들고 부동자세로 500미터 간격으로 서서 지나가는 버스를 감시하는 북한군인이다. 이들은 관광객이 버스 안에서 사진촬영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존재들이다. 여전히 사진촬영은 금지된다. 다음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는 남한의 산과 달리 나무를 찾아보기 힘든 바위산을 바라보며 차이를 확인한다.<sup>16)</sup> 간혹 보이는 건물도 색깔이나 형태가 남한의 것과 너무 다르다.

### 1) 북한군인과의 만남

북한군인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시선의 주요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북한군인은 사진기를 통한 관광시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리고 이들과의 대화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실상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시선’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관광경험에 대한 기억과 이들에 대한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재구성된다.

남한 국방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며 100만명에 달하는 정규 육군은 대규모 선제공격이 가능한 세계 3위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장명순 2001).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한 통일·평화운동가는 북한의 군사력이 전방인 군사분계선 근처에 모두 집중해 있는데, 이는 미국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과 북한의 경제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에게 북한군의 이런 군사력은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관광객은 이처럼 불확실한 정보를 자신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욕심’을 부린다.

나는 아주 자세히, 카메라로 찍지 못하는 대신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짙은 국방색 군복과 테가 등글고 딱딱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앞가슴에는 무슨 훈장 비슷한 배지가 서너 개 부착되어 있었고, 칼이 꽂혀진 총을 수평으로 남쪽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몸집보다 모자가 몹시 커 보였고, 말라서 그런지 하나같이 광대뼈가 나온 듯 했다. 모자 가운데는 노란색바탕 위에 유난히 크고 붉은 별이 하나 있는데,

---

16) 관광조장은 마치 관광객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이 왜 이지역의 산에 나무들이 없는지를 설명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북측의 식량난과 에너지난 때문에 북측 사람들이 거의 모든 나무를 베어서 식량과 땀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관광조장은 이것이 추측일 뿐이며 지질학적으로 암반구간이 많은 이지역의 지형 자체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 별이 왜소한 병사의 초라함을 커버하는 듯 했다.

나는 그 병사와 시선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첫 번째도, 두 번째 병사도 나와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나는 물론, 우리들 누구와도 그들은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서로 시선 속에는 들어오지 않기로 시선은 맞추지 않는다. 아주 고도의 훈련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라. 우리들은 지금 서로 소 닭 보듯이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사람이란 시선을 맞추면 무슨 표정이든 짓게 마련이다. 미소든 냉소든. 완벽한 무표정이란 없는 법이다. 그런데 시선을 맞추지 않으니, 아예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표정이 실종한 것이나 다름없는 노릇이었다(남성 인터넷 자료: <http://www.myapt.org/essay/story/>).

사진기로 담을 수 없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위의 관광객은 뚫어지게 군인을 바라보며 어떤 확실한 정보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왜소한 병사의 초라함이나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잡아내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실패다. 위의 관광객이 찾아낸 북한군인의 특징은 고도의 훈련된 행동을 통한 ‘무표정함,’ 마르고 광대뼈가 나온 생김새다. 무표정함은 관광객이 초기에 북한 환경관리원에게서 받은 인상과 비슷하다. 이들의 외양이 정말로 그런 동질성을 갖는지, 아니면 관광객이 과거에 교육받은 반공주의에 의해 이미 이들을 무표정한 대상이라고 선입견을 내린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런 특성을 이들의 이미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인터뷰에서 확인된다.

관광객1: 표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뚝뚝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관광객2: 웃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관광객3: 무서워. 너무 딱딱하잖어.

이처럼 무표정하고 딱딱한 이미지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관광객에게는 더욱 공포스럽게 그려진다. 시선은 북한군인의 존재를 바라보지만, 관광객의 기억은 과거의 상흔을 되살려내고 있다. 다음은 효도관광으로 금강산 온 60대 후반 여성 관광객의 설명이다.

물론 저 놈들이 6.25를 일으킨 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일성이랑 한패잖아. 보기 싫지. 인민군이라고 생각하면 괜히 떨리고, 내가 차 안에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버스 안에 탈 때는 겁이 나더라고. 그때처럼 우리 다 잡아가면 어쩌나 하는 괜한 생각도 들고 말이야. 버스에 타지 않고, 그냥 멀리서만 봤으면 좋겠어.

이 관광객처럼 50여 년 동안 남북관계가 가지고 있던 긴장과 전쟁의 상처는 개인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sup>17)</sup> 그리고 이 공포와 상처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면서 관광객 개인의 시선을 서로

---

17) 여기서 버스는 관광객을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 일종의 보호막으로 기능하는 버스나 크루즈를 두고 관광인류학자들은 ‘관광버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잭슨(Jackson 2004: 44)에 의하면 ‘관광버블’은 원래 보호벽을 의미하는 ‘환경버블’이란 개념에서 유래했으며 크루즈가 정박하는 관광지에서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버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면서 환경의 용어가 다른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교육환경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접미사가 되는 것에 주목하여 ‘관광버블’의 개념을 만들었다. 잭슨은 학술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대중적 용어이기도 한 관광버블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관광버블을 형성하는 물질적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 태도, 신념 등과 같은 관광객의 내면을 의미하는 관광버블의 심리학적 측면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

잡으며 다시금 재구성된다. 그런데 이 재구성의 과정 속에서 변화도 존재한다. 북한군인은 일부 관광객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지만, 또다른 관광객에게는 오히려 풍자의 대상이 된다. 북한군인의 딱딱함과 무표정함은 일부 관광객에게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촌스러움으로 대체된다. 다음은 군사분계선 통행과정에서 느꼈던 공포감이 순식간에 웃음의 소재로 변한 한 관광객의 경험이다.

차 속에서는 금강산에 올 때 검문하던 인민군 장교의 목소리 흉내 내기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쇼”를 외쳐댄다. 별로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으나 거의 비슷한 사람의 목소리도 간혹 있었다. 그럴 때마다 버스 속은 까르르하는 폭소로 가득했다.

이처럼 관광객은 공포와 긴장의 순간에도 ‘유희’의 측면을 놓치지 않는다. 관광객 중 일부는 북측 군인과의 만남의 순간에 이것이 ‘실전’이 아니라 ‘볼거리’임을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북측 군인의 딱딱함은 공포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 속에서 웃음마저 가능해진다. 현실이 아니라 ‘관광’의 공간 속에서 북한군인의 실제 이미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희화화된 이미지로 관광객의 ‘볼거리’로 기억될 뿐이다.

## 2) 검문심사

곧이어 모든 버스가 ‘구선봉’이라 부르는 지점에서 정차한다. 북한군인으로부터 검문을 받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이다. 북한의 1차 입경 심사이다. 나갈 때는 2차 출경 심사가 된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신비함은 사라지고 다시 긴장감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긴장감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는 남한 군 시설을 통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서는 ‘아군’이 아닌 ‘적군’이 검문을 하기 때문이다.

북한 군인들은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먼저 수하물 칸의 내용을 검사하고 버스에 올라와서 차내 승객의 인원수를 검사한다. 관광조장은 이때 관광객에게 미리 당부를 한다. 군인을 보고 웃거나 해서 ‘비웃는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살펴보는 동안 바닥을 쳐다 보는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 정면을 바라보라는 것이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한 관광객에는 선글라스를 벗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긴장감은 더욱 더 고조된다. 앞서 인용된 관광객은 자신이 경험한 북한군인의 검문을 이렇게 표현했다.

도로상에서 버스는 정지하였다. 인민군의 검열이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탄 버스에 인민군 장교 두 사람이 올라왔다. 한 사람은 앞쪽에 서서 살펴보고 또 한 사람은 버스의 뒷좌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검열을 알리는 한마디의 코멘트나 인사도 없이 날카로운 눈동자로 사람들을 주시했다. 내 차에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탄 관계로 이분들은 겁도 없는지 하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수군대고 있었다. 뒤로 가던 인민군 장교가 “조용히 하쇼”라고 빠른 금속성의 소리를 내 지르자, 차 속은 그야말로 공포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휩쓸었다. 인민군이 내리자 버스는 다시 출발하였다. 여기서부터 북한 CIQ가 있는 장전 향까지 버스

---

로 밀접하게 관계된다.

는 비포장도로 위를 먼지를 내면서 저속으로 40분가량 달렸다(남성, 인터넷 자료: <http://www.myapt.org/essay/story/>).

1차 입경 심사인 검문이 끝나면 버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관광객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북한 출입사무소에서의 입경 심사를 향해 이동한다. 이 단계에서 관광객은 금강산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과 도로 주변에 보이는 온정동 마을과 양지마을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긴장감은 신비함에 대한 흥분감과 호기심으로 전화된다. 조사자의 2차 현지조사 때에는 한 관광객이 “우와 자전거도 있다”라고 외치자, 관광조장이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자전거가 없겠느냐”고 맞받아쳤다.<sup>18)</sup> 북한지역에 위치한 금강산관광지구는 공포스러운 ‘적의 지역’이 아닌 흥미로운 관광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단선 넘기라는 통과의를 거친 관광객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순식간에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연스런 관광의 볼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금강산관광 통과의례의 마지막 단계인 북한 출입사무소 입경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버스가 드디어 북한 출입사무소가 있는 장전항에 도착하였다. 메가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관광객들을 반겼다. 이미 TV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노래였다.<sup>19)</sup>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출입사무소 건물 속으로 들어갔다. 건물에는 군복을 입고 있는 북한 출입사무소 출입경 심사관들이 있었다. 이들을 보는 순간 관광객들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관광조장들은 조별 순서대로 2줄로 서서 입경심사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었다. 특히 심사대에서 심사관에게 제시할 때 관광증을 반드시 비닐커버에서 빼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의와 강조를 들으면서, 관광객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관광증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다루게 된다. 관광객들은 관광증이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관광조장들의 반복되는 충고를 쓸데없는 잔소리로 치부하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증을 훼손하지 않고 지니고 다니려는 부단한 노력을 보인다.

차레가 다가오고, 연구자가 속한 금강 2조의 관광객들은 관광조장의 지시에 따라 관광증을 비닐커버에서 뺀 후 한 사람씩 심사대에 다가가 북한 심사관으로부터 입경심사를 받았다. 남한의 출경심사와 비슷하게 심사원은 신원을 확인한 후 관광증에 “조선★금강산”, 날짜, 그리고 “통행 검사소”가 찍힌 도장을 찍어 준다. 관광객들은 찍힌 도장보다는 난생 처음 직접 대면하는 북한 사람과의 만남에 설레임을 갖는 것 같았다.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떨리긴 하지만, 궁금하니까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다. 심사원들은 1년 전만 해도 한 사람마다 이것저것 짧고 무뚝뚝한 소리로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심사를 마친 관광객은 동해선출입사무소의 구조와는 반대로 절차를 밟는다.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하는 것처럼 입국심사를 마친 후 엑스레이로 휴대품을 검사 받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관광조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꼭 누군가가 휴대금지품목인 160밀리미터 이상

18) 관광조장의 답변은 북한을 타자화하려는 남한 관광객을 무수히 봐온 데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 동시에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하라는 암시일 수도 있다.

19) 북한과 사업을 하는 한 사업가는 남북경협과 교류로 북한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많은 것이 변한 것 같다고 했다. 그 중 하나가 “언제부터 노래방이나 TV에서 북한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사람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의 망원렌즈가 달리 사진기나 줌렌즈가 달린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와 압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별 문제없이 입경 심사과정을 마친 관광객들은 출입사무소 반대 쪽 출구로 걸어 나가면 된다. 반대 편 로비에는 현대그룹의 마스코트인 반달곰 복장을 한 직원과 다른 현대아산 직원들이 대기하여 심사대를 빠져 나오는 관광객들에게 일일이 환영인사를 한다. 관광객들은 이들의 인사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건물 밖으로 나와 버스에 올라탄다. 관광객들은 이 시점부터 금강산관광지구에 들어 온 것이 된다.

요약하면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관광의 통과외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감정의 낮은 점과 높은 점을 단계별로 구별하는 그래번의 모델과 같이 관광객이 느끼는 긴장감의 변화에 따라 8단계로 나눌 수 있다(Graburn 1989, <표 1> 참조). ‘분단선’을 넘는 관광객의 긴장감은 비무장지대의 시작인 남방한계선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잠시 여행금지구역에서 낮은 풍경을 보고 신비함을 느끼며 조금 줄어들었다가 여행금지구역이 끝나는 구선봉 경계지점에서 북한군으로부터 검문을 받을 때 절정에 오른다. 관광객은 난생 처음으로 보게 되는 북한 마을풍경에 잠시 긴장감을 신비함과 기대감으로 전환시켰다가 장전함에 위치한 북한 출입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긴장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낀 후 신비하고 다른 세상인 금강산관광지구에 들어서게 된다.

<표 1> 금강산관광의 ‘분단선’ 넘기 단계

출경 심사	분단선						입경 심사
	남방한계선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	여행금지구역	구선봉 검문	북측 마을 풍경	
긴장 기대	조금 높은 긴장	높은 긴장	더 높은 긴장	신비함	매우 높은 긴장	신비함	높은 긴장

## 5. 접경지역관광으로서 금강산관광의 특성

지금까지 금강산관광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출입경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경계넘기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금강산관광은 일종의 ‘접경지역관광(borderlands tourism)’이라고 볼 수 있다. 접경의 남쪽인 남한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오늘날 세계경제규모(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1위에 올라 있는 곳이며, 다른 지역은 세계경제로부터 고립된 스탈린주의 경제 및 정치체제를 가진 북한이다. 경제적인 상황차이뿐만 아니라 분단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강산관광은 세계에서 국경 투과성이 가장 낮은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접경지역관광이다.

앞서 인용되었던 분단선을 넘는 관광객이 느낀 기대감과 긴장감이 접경지역관광으로서 금강산관광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금강산관광의 일차적 매력은 바로 이 접경지역을 경험하는 특징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반공교육과 이를 통해 상상했던 공간을 실제로 접하면서 관광객들은 색다른 관광경험을 한다. 이 때 색다른 경험은 금지되었던 곳, 적들이 살던 곳을 통과하면서 느끼게

되는 공포를 수반한다. 왜 이들은 이런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가? 이에 대해 티모시는 장소를 수집하는 욕구 때문으로 설명한다. 티모시(Timothy 1991: 54)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경지역관광의 관광동기를 장소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장소를 수집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장소를 수집하는 욕구는 그 자체가 경쟁력을 지닌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방문한 곳을 열거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 심지어 그것이 공포스러운 것이어도 수집하는 욕구를 충족한다면 시도한다. 색다른 장소를 방문하면 할수록 그 경험은 누적되어, 수집을 시도하는 수집가로서 관광객에게 일종의 특권이 된다. 남다른 경험에 대한 특권인 것이다.

금강산관광의 '분단선' 넘기에서는 새로운 관광거리가 생겼다. 출경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분단선' 넘기를 시작하는 관광객을 태운 전용셔틀버스들은 기차와 같이 일렬로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며 분단선을 통과한다. 이 때 관관조장은 규칙상 모든 버스가 함께 그리고 동시에 움직여야 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관광객에게 뒤를 보라고 이야기 한다. 선생님의 지시를 받은 학생들처럼 모든 관광객들은 고개를 돌려 버스 뒤쪽 창문을 통해 마치 하나의 긴 기차처럼 긴 선을 이뤄 부드럽게 움직이는 전용셔틀버스들의 행진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장면을 사진으로 담지 못하는 것에 아쉬워한다. 과거, 아니 1년 사이에 동일한 장소는 맥락을 전혀 달리 하는 새로운 장소가 되었다. 관광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억, 풍경, 광경 등을 만들어 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관광의미를 부여하여 관광의 볼거리로 만드는 것을 절감하면서, 그 의미를 통해 변화되는 현실정치의 무게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관광은 고유하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삭제도 포함하여)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1년 남짓한 사이에 비포장도로에 여기저기 군 초소가 보여 전쟁터를 연상케 했던 금강산육로관광 도로는 '관광화'되어 정말로 일반적인 '일반국도 7번'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전에 국경을 넘는 경험에서 오는 긴장감이나 정치적 의미는 많이 약화되고, 오히려 볼거리로서의 관광의 의미가 증가한 것이다.

연구자는 금강산 접경지역관광이 급속하게 관광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금강산관광 육로공사가 완성되기 전(2003년)과 후(2005년)를 경험한 연구자는 육로를 통하여 분단선을 넘으면서 분위기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2003년에는 공사 때문에 여기저기 흙더미가 쌓여 있었고, 주변으로 낡은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은 마치 전쟁터를 통과하는 느낌을 주었다. 전쟁의 와중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방지역을 통과하는 긴장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전용셔틀버스에 탄 모든 관광객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 긴장 속에서 눈에 익숙한 남측 군인들이 서있는 남방한계선 통문을 지나서야 관광객 거의 모두가 한결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다. 당시 한 관광객은 "역시 조국이 좋구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분단선을 중심으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는 행위가 강렬한 긴장감을 준 것이다. 이때 군사적 공포와 익숙하지 않는 풍경에서 익숙한 풍경으로 넘어오는 것은 큰 안정감을 준다. 이 관광객은 자신이 느낀 안정감을 마치 국제관광에서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분단선 넘기에 대한 관광객의 실제적인 만족도를 살펴보자.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 점을 살펴볼 수 있다. 2002년 금강산 관광객들의 분단선 넘기에 대한 '만족'은 30.7%(매우 만족 6.7% + 만족 24.0%)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통'은 44.9%, '불만족'은 23.7%(매우 불만

족 7.6% + 불만족 16.1%)로 조사되었다(2003: 15). 2004년도 조사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에서 개선 및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출입국 절차'(1순위: 37.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2005: 68). 이로 미루어 볼 때, 관광객들은 위험이 따르는 '현실' 체험보다는 오히려 체험이 그 자체로 탈군사화되고 기호화된 것을 선호한다. 즉 공포체험을 원하지만, 공포가 그 자체로 체험되기 보다는 위험이 없는 '관광'행위로서 진행되는 분단선 넘기 체험을 통해 과거의 공포를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상의 복잡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의 분단선 넘기는 점점 탈군사화하고, 군사적 긴장감도 기호화하는 관광적 과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바이른(O'Byrne 2001)은 오늘날 세계화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권(passport)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물이 되는 국민-국가의 국경과 여권/비자가 너무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행의 자유라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를 우려한다. 오바이른은 여권이 어찌면 민족-국가 체제의 가장 중요한 상징일 수 있다고 한다(위의 글, 404). 이렇게 볼 때, 여행문서는 민족주의나 민족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여권은 민족-국가 체제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족-국가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여권당국은 여권발급 승인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누구는 민족의 일원으로 여행할 수 있지만 누구는 그렇지 못함을 규정하는 권위를 갖는다. 여권은 내용에서도 각 민족-국가의 민족주의와 민족정체성을 표현한다. 여권에는 민족의 역사를 요약한 글에서부터 여권을 발급한 민족-국가에 대한 여권소지자의 충성 선언문, 그리고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 각 주의 상징들까지 다양하지만 여권은 모든 민족-국가 건설의 수단으로서 아니면 각 민족-국가가 가지고 있는 민족-국가 체제를 확인하는 데 그 존재의 의의를 가진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권은 단순한 여행문서 이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여권은 신분증의 한 종류로서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국가들은 국제경찰 및 국경 통제기구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국의 국민이 어느 출입국 포인트를 지나갔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은 여권과 여행자의 신체 정보를 통해 여행자의 출입국을 감시하기도 한다. 금강산관광은 출입국이 아닌 출입경 관광이지만,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이동하는 접경지역관광이라는 특성으로 여행문서를 필요로 한다. 외국인인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남측에서 북한으로 출입경을 통과한 것이 아닌 출입국을 통과한 것으로 기록된다. 남한 관광객의 경우는 출입경 관광이라 여권은 필요 없지만 신분증은 필요하다.<sup>20)</sup> 북한은 남한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비자 성격을 띠는 금강산 관광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관광증에 출입국 도장을 찍는다. 이는 북한, 쿠바, 중동지역 등 국제관계에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자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찍지 않음으로써 방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관례에서 시작된 것이다(Timothy 1991).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미국국적을 가진 연구자의 여권에는 북한의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

이처럼 관광객들은 다른 일반 국제관광처럼 금강산관광의 경우에도 필요한 여행문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비록 종이로 만든 간단한 관광증이지만, 북한은 이 관광증을 통해 자신의 민족-국

20) 관광이 여행 목적인 아닌 관광가이드, 현대아산직원, 남북경협사업가들은 여권과 비슷한 방문증명서 책자를 소지해야 한다.

가 체제를 정당화하고 권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면담한 관광객은 관광증을 이렇게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증은 목에 거는 명찰이었는데, 말하자면 여권과 같은 구실을 해주는 거였다. 이 명찰을 우리들은 개목걸이처럼 관광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목에 걸고 다녀야 했다. 관광증에는 [육육-나반-xx-xx] 같은 번호가 붙어있었다. 이 번호는 여권 번호를 대신하는 거였다. 관광일정 사흘 동안 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 번호로 통했다.

모든 관광객은 관광증을 늘 목에 걸고 다녀야 하며 관광증을 각별히 취급할 것을 현대아산 직원과 관광조장으로부터 귀 따갑게 듣는다. 관광증이 구겨지거나, 때를 묻히거나, 파손되는 경우 북한 출입사무소 군인들에게 경고를 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이 벌어져, 되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관광증을 민족-국가 체제를 상징하는 일종의 여권이나 비자처럼 생각하여, 각별히 그 상징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존중할 것을 관광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첫 번째 관광에서 같은 조에 있던 한 관광객은 관광일정을 마치고 전용관광버스를 타고 남한으로 돌아 온 순간 “북은 현대그룹의 장비와 옷과 헬멧과 석유와 자본으로 변하고 있는데 남은 볼보(Volvo)나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나 하는 외국 장비와 옷과 자본이 판을 치고 있구나”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 바 있다. 이 관광객을 비롯하여 금강산관광객들은 더 이상 이념적이거나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제3세계 가난한 국가로 전락한 북한을 —비록 그것이 금강산 중에서도 극히 일부이며 북한사회의 매우 제한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체험한다. 그리고 접경지역관광이라는 금강산관광의 특성 때문에 관광객들은 북한에 대한 체험의 기억과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분단선을 넘어 오늘날 세계경제 11위에 위치한 남한을 새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기업이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 방식과 흡사한 방식으로 실현시킨 금강산관광은 관광객들에게 타자를 보러 갔다 자신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때 관광객들의 의식 속에서 분단선은 점점 국경선으로 변화되면서, ‘국경’의 이미지가 강화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김재한

2002 「접경교류의 개념과 의미」.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방안』. 서울: 통일부.  
전자문서: [http://www.unikorea.go.kr/kr/unipds/unipds\\_publication.php?cur\\_page=&pdm=&pmd=view&num=135](http://www.unikorea.go.kr/kr/unipds/unipds_publication.php?cur_page=&pdm=&pmd=view&num=135).

남성욱

2004 「개성관광의 발전방향과 남북한 수익성 확보 분석 연구」. 『개성관광 토론회』. 한국관광공사, 개성사랑회(준). 2004년 3월 4일 개성관광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11층 배움터,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통일소모임 엮음
- 1996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남과 북이 함께 읽는 책』.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문옥표
- 2000 「관광을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하회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3.2: 79-108.
- 2006 「단체여행의 기원과 사회조직」. 『일본인의 여행과 관광문화』. 문옥표·황달기·권숙인지음. 서울: 도서출판소화.
- 민족21
- 2003-2005 <http://www.minjog21.com/>.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 1984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 금강산의 자연과 전설 관광안내』.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서대숙
- 1999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이 민족화해협력 및 남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오마이뉴스
- 2001-2005 <http://www.ohmynews.com>
- 유홍준
- 2003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금강예찬 하』. 서울: 중앙M&B.
- 장명순
- 2001 「[심층분석] 북한 군사력의 실체」. 『국방저널』 6월(통권330).  
<http://www.dapis.go.kr/journal/200106/journal.html>.
- 장승호
- 1995 「한국의 안보관광자원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 DMZ(화천·양구·인제)지구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아
- 2003 「'홍콩인' 정체성의 정치: 반환 후 본토자녀의 거류권 분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박사학위논문.
-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 2000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 공존을 위한 모색』. 서울: 삼인.
- 주현식
- 1999 「비무장지대의 안보관광 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강/원/광/장』 27(4월): 65-75.
- 진중현
- 2005 「금강산 관광의 경험과 담론분석: '관광객의 시선'과 자연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 지리』 제17권 제1호: 31-46.

최남선

2000 『금강예찬』. 홍일식 감수, 황형주 역주. 서울: 동명사.

통일부

2002 『남북교역실무안내』. 서울: 통일부.

한겨레

1998-2006 <http://www.hani.co.kr>.

한겨레21

1998 <http://www.hani.co.kr/h21/data/L981109/>

한국관광공사

2002 『2002년 금강산관광 실태조사』. 인터넷 문서: <http://www.knto.or.kr/>.

2003 『2003년 금강산관광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인터넷 문서:  
<http://www.knto.or.kr/>.

2004 『2004년 금강산관광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 인터넷 문서:  
<http://www.knto.or.kr/>.

2005 「2004년 12월 관광수지 통계」. <http://www.knto.or.kr/>.

현대아산주식회사

n.d.a 『우리는 지금 금강산으로 간다』. 서울: 현대아산주식회사.

현대아산주식회사

n.d.b 『현대아산 주식공모』. 서울: 현대아산주식회사.

현대아산주식회사

n.d.c 『금강산관광 공식사이트 이벤트소식』. [http://www.mtkumgang.com/8help/sHelp\\_event.asp](http://www.mtkumgang.com/8help/sHelp_event.asp).

현대아산주식회사

n.d.d 『금강산관광 공식사이트 금강산여행기』. [http://www.mtkumgang.com/6comm/sComm\\_report.asp](http://www.mtkumgang.com/6comm/sComm_report.asp).

현대상선주식회사

n.d. 『금강산 관광안내』. 서울: 현대상선주식회사.

## 2) 외국문헌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Borneman, John

1992 *Belonging in the Two Berlins: Kin, state, 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Anticipatory Reflection on Korean Unification: How is German Unification

Relevant?" Paper presented at the Korea University 10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y 24, Korea University, Seoul.

Bruns, Peter M.

2002 [1999] *An Introduction to Tourism and Anthropology*. London: Routledge.

Butler, Richard W. and Tom Baum

1999 "The Tourism Potential of the Peace Dividend."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1 (August): 24-29.

Cohen, Erik

1996 [1984] "The Sociology of Tourism." In *The sociology of tourism: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eds. Yorghos Apostolopoulos, Stella Leivadi, and Andrew Yiannakis, 51-71. London: Routledge.

Crick, Malcolm

1995 "The Anthropologist as Tourist: an Identity in Question." In *International Tourism: Identity and Change*, eds. Marie-François Lanfant, John B. Allcock, and Edward M. Bruner, 205-223.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Tourism in the Social Sciences: Sun, sex, sights, savings, and servility." In *The sociology of tourism: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eds. Yorghos Apostolopoulos, Stella Leivadi, and Andrew Yiannakis, 15-50. London: Routledge.

D'Amore, L. J.

1988 "Tourism — A Vital Force for Pea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269-283.

Dann, Graham and Erik Cohen

1996 "Sociology and Tourism." In *The sociology of tourism: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eds. Yorghos Apostolopoulos, Stella Leivadi, and Andrew Yiannakis, 301-314. London: Routledge.

Dowling, Ross K. and Thandarayan Vasudavan

2000 "Cruising in the New Millenniu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5.3: 17-27.

Graburn, Nelson H. H.

1983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1: 9-33.

1989 "Tourism: The Sacred Journey." In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Second Edition, ed. Valene Smith, 21-36.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Jaakson, Reiner

2004 "Beyond the Tourist Bubble? Cruiseship Passengers in Po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1: 44-60.

Kim, Yong-Kwan and John L. Crompton

- 1990 "Role of Tourism in Unifying the Two Korea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 353-366.
- Lanfant, Marie-François
- 1995 "Introduction." In *International Tourism: Identity and Change*, eds. Marie-François Lanfant, John B. Allcock, and Edward M. Bruner, 1-23. London: Sage Publications.
- MacCannell, Dean
- 1999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Byrne, Darren J.
- 2001 "On Passports and Border Control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2: 399-416.
- Pretes, Michael
- 2003 "Tourism and National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1: 125-142.
- Smith, Valene
- 1989 "Introduction." In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Second Edition, ed. Valene Smith, 1-17.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Timothy, Dallen J.
- 2001 *Tourism and Political Boundaries*. London: Routledge.
- Tsuda, Takeyuki
- 2003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Urry, John
- 1990 *The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 남과 북의 건축문화와 민족정체성

- 전통건축과 민족건축을 중심으로 -

##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남과 북이 각기 민족의 정체성을 건축으로 표현할 때, 그 결과물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이데올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축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에서 보면 매우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정체성의 건축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말까지 이 땅에서 보편적이었던 건축양식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남과 북이 자신들의 민족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 공히 사용하고 있는 전통건축양식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뛰어넘고 있는 것일까?

본 발표에서는 해방이후 남과 북의 사회에서 각기 전통건축(또는 민족건축)이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존재였는지 살펴보고, 전통건축(또는 민족건축)의 변화과정 속에 남과 북이 지난 60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 1.

우리는 ‘건축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건축을 보면 사회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은 마치 건축을 보면 해당 건축을 만들고, 그 건축과 함께 살아온 사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말의 역은 사실이 아니다. ‘건축이 사회를 반영한다.’는 명제는 사실이지만, 이 명제의 역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휴머니즘의 상징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시대였던 르네상스기의 건축양식이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건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양식이 서구에서 산업혁명기 대자본과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공공건축물에서 가장 선호되는 건축양식이었고,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자본주의 민주체를 구성한 미국에서 이민국의 다양성을 통합하는 국가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가 지구상에 첫 선을 보였던 소련에서 스탈린치하의 사회주의 건축양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에게서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적 건축양식이었던 아픈 기억이 더해진다. 이는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은 각 시대에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었지만, 현존하는 건축의 양식만을 통해서

1) 본 발표는 2007년 통권 제28호 ‘공간과사회’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민족을 표방하는 남과 북의 건축’을 본 심포지엄의 주제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것임.

는 그 사회를 충분히 읽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건축만으로 읽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 2. 해방공간의 남과 북의 국민주택현상 공모

남과 북이 6.25전쟁이후 건축에서 동시기에 동일한 주제를 대상으로 고민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실체에 대해 남과 북이 얼마나 다른 생각과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나마 남과 북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 해방공간에서 있었다. ‘국민주택현상공모’였다. 해방직후 남과 북은 공히 주택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에서 1947년 국민주택 현상공모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북에서도 국민주택현상공모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당시에 남한에서 발행된 조선건축기술협회의 기관지인 ‘조선건축’에 실렸다.

1945년 11월에 실시된 현상설계는 도회지 또는 도회지 교외에 위치한 15평, 20평, 25평 규모의 국민주택 공모였는데, 방수, 재료 및 구조는 설계자에게 일임되었으며, 주최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

당시 출품작은 2가지 경향을 띄었는데 하나는 서구지향적 계획으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의 서구식 입식생활을 수용하는 계획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시스템인 온돌과 입식생활과의 조화를 꾀하는 안이었다. 당시 공모전의 심사기준은 ‘현실에 적응하고 장래성이 있는 이상안과 혁신적인 의견을 중점으로 심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남한의 국민주택 현상설계 당선안에서는 당시 주택부족이 현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어떻게 현대적인 삶의 모범답안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반해 동시기에 북에서 이루어진 국민주택현상공모에서는 설계요강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여 경제적이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을 요구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풍토와 역사를 수용하는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주체 측에 의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 3. 북의 현대건축과 민족건축<sup>2)</sup>

- 2) 발표에서 사용하는 ‘전통건축’과 ‘민족건축’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남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짓고 사용해온 전래의 건축을 ‘전통건축’이라고 부르지만, 북에서는 같은 대상을 ‘민족건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남북이 ‘전통’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서 기인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통건축’이라는 용어의 경우, 일정한 시기 이전의 건축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 시기 이전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 것을 오늘과 격리된 것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전통을 ‘화석화’시킬 우려가 있고, 상당 부분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통’을 살아 있는 실체로 인식하는 북에서는 ‘전통건축’이라는 말 대신에

조선건축<sup>3)</sup>에 따르면 오늘의 북한 건축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보장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건축’이라고 한다. 그렇게 형성된 북의 건축을 남측 기준으로 보면 신고전주의풍의 역사주의 양식건축, 전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전통건축양식 그리고 모더니즘풍의 현대건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모습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

### 3.1 소련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 도입

#### (1) 해방직후의 소련건축의 도입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건축을 사회개조의 유용한 수단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건축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결합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건축가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상을 담고자 러시아에서 시작된 러시아 구성주의 예술가들의 각종 실험들이 문화예술의 건축은 물론 회화, 조각 등 각 장르에서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소련의 예술가들이 유럽의 타 국가에 비해 보다 의욕적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체제의 신생국 소련이 당시 예술가들이 고민하던 과거의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근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회주의 체제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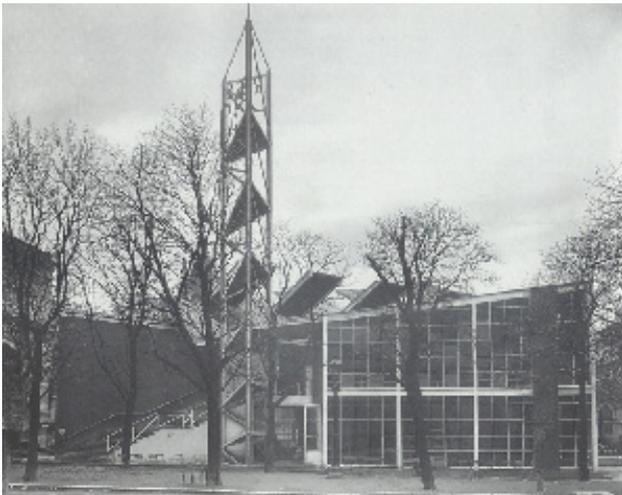


그림 1 1925년 파리박람회 소련관



그림 2 모스크바 아파트(1932-34)

그러나 시대를 선도하며 변화에 앞장서 나가던 구성주의(도판 1)가 스탈린의 집권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스탈린은 점점 추상화되어 가는 예술경향이 대중적 수용에서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러시아 구성주의가 형식화되었다고 비판하며,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술양식의 사용을 주장했다.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로 인해

<sup>1)</sup> '민족건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건축의 재료와 구법 등에서 융통성있는 입장을 갖고 있다.

<sup>3)</sup> 황재평,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건축창조를 위한 근본 담보', 조선건축 1990년 1월

당시 세계의 모더니즘을 선도하던 소련의 건축은 스탈린의 집권과 함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도판 2)을 선택하면서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사회주의에서 예술은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하고, 일반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예술관이 새 시대에 맞는 조형언어를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재료로 촉발된 건축 실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후 소련은 그리스와 로마건축에 기초한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소련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의 전환은 1960년대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성립과 함께 전통건축양식이 본격적으로 현대건축에 수용되는 것과 비견할 만하다.

해방 직후 소련의 지원으로 성립된 북한정권 하에서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신축된 건축물은 신고전주의 건축의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이는 해방과 함께 북한에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이 빠른 시간 내에 국가체제를 갖추도록 소련이 각종 건축프로젝트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동 시기에 남한에서 대규모 건축공사가 전무하였던데 비해 북한에서 건축 활동이 활발했던 것은 일제강점기하에서 일본은 식민지 경영을 위한 각종 사회 인프라를 서울에 집중적으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 평양의 경우 국가 경영을 위한 공공건축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병원, 만경대혁명학원, 해방호텔 등을 비롯하여 각종 극장과 호텔 등이 지어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당시 신축 건축물의 설계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건축물의 규모와 양식으로 볼 때, 북한의 건축가보다는 소련의 건축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 직후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음에 따라 소련의 노선을 따랐으며, 해방직후 북한에서 국가건설을 위해 진행된 주요 공공건축물 건축에서 소련의 지원은 절대적이었고, 그 영향은 주요 공공건축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동시기에 남한의 건축계가 미국 주도의 인터내셔널리즘의 경향을 따르고 있었던 것과 비견된다.



그림 3 김일성종합대학 본관

## (2) 6.25전쟁과 전후복구기 신고전주의 건축과 변이

전후복구기의 북한의 도시와 건축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이 곳곳에 배어있다. 이는 동구 사회주의권이 북한 도시의 전후복구를 적극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독 도편수 레셀의 북한 추억<sup>4)</sup>’에 나타나듯 동독은 함흥시 재건을 지원했고, 자연스럽게 동독건축이 이 지역 건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는 체코, 헝가리 등이 북한 주요도시의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했는데, 지어진 공공건축은 예외없이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이 시기에 평양에 건축된 대표적인 건축물이 평양역사(1954), 모란봉극장(1954), 대동문영화

4) 백승중, 에리히 레셀, 동독 도편수 레셀의 북한추억, 효형출판, 2000

관(1955), 종합청사, 미술관 및 박물관, 평양학생소년궁전 등이 있으며, 동 시기에 건축되어 강연회와 연극공연장 등으로 사용된 각종 인민회당에도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즐겨 사용되었던 고전주의 건축양식이 채택되었다.



그림 4 대동문영화관



그림 5 평양역

그런데, 이 시기에 지어진 건축중 대동문영화관과 평양역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과는 다른 모습도 가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대동문영화관에 사용된 기둥과 평양역사의 중앙 탑의 모습이다. 서양의 역사주의 양식건축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8각형이 대동문영화관의 기둥과 평양역사의 중앙 탑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8각형이 주요 건축어휘로 사용된 것은 북한에서 8각형을 자신들의 전통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8각형의 조형언어는 북한에 소재한 고구려의 역사유적 곳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평양에서 발굴된 금강사(498년)외에도 정릉사, 반룡사 등에서 8각탑의 기단이 발견되고 있을 뿐 아니라, 2개의 기둥이 발견되어 쌍영총(雙楹塚)이라 불리는 남포시 용강군의 쌍기둥무덤의 기둥도 8각형이다. 부분적이지만 전통건축의 요소를 채용한 것은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민족건축형식의 등장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 3.2 북한식 사회주의 건축양식의 등장: 민족건축양식

건축 모습에 대한 변화는 1954년 3월 26일 ‘전국 건축가 및 건설기술자 대회’에서 예고되었다. 김일성은 ‘민족적 건축 예술’을 화두로 전후 복구기에 새로운 건축예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 선조들의 건축예술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민족적 특성을 현대적 미감에 맞도록 재현해야한다고 언급하며, 건축설계는 ‘민족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부터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모든 건축물들이 근로인민의 요구에 적합’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민족형식이란 ‘자기 민족이 좋아하고 자기 민족의 구미에 맞는 건축 형식’으로서, ‘건축은 자기 나라의 지역적 및 기후적 특성과 자기 민족의 생활감정과 구미에 맞게 창조되며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건축의 민족적 특성은 계급적 성격을 띤다’고 설명한다. 즉 ‘건축의 사회주의적 내용은 곧 건축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이다. 건축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는 민족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내용은 민족성을 띠며, 그 실현 방식과 수단으로서의 형식도 민족성을 띠게 된다는 것’<sup>5)</sup>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80년대 이후 ‘건축창조에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옹계 결합시켜야한다’는 주체건축론과 어울리면서, 주체건축이 전통건축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주체건축론을 유지한 채 문화시설 등에서 서구의 국제주의 건축경향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한다.

그 첫 실적이 <평양대극장>과 <옥류관>이었다. 이를 계기로 건축은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건축에서 전통건축양식이 채택되기 시작하고, 다층 집합주거에는 온돌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보통의 경우 전통건축 양식을 갖춘 현대건축물은 주체사상의 물적 표현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주체사상이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전통건축양식의 도입의 당초 의도는 주체사상과는 무관하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평양대극장

‘민족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침이 건축에 반영된 것은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이후 ‘제1차 7개년계획기’ 이후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1964년 12월에 개최된 ‘조선건축가동맹’ 제2차 대회에서 ‘건설 분야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였다’는 보고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소련 사회주의 건축의 영향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건설분야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해야한다’는 말은 스탈린이 구성주의를 형식주의로 비판하면서 역사주의 건축양식으로 회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련에서 형식주의 비판이 자신들의 고유건축문화인 서구 역사주의 양식으로의 회귀를 가져왔다면, 북한에서는 전통건축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건축계는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의 창조’가 독려되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민족건축양식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민족건축양식은 문화시설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 민족건축양식을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평양대극장(1960), 옥류관(1960), 개성학생소년궁전(1961), 인민문화궁전(1974), 국제친선전람관(1978), 인민대학습당(1982)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전통건축의 모습으로 현대적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변안되었다.



그림 7 인민문화궁전

이에 비해, 1974년에 완성된 인민문화궁전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내용을 완전히 담은 건

5) 김정일, ‘건축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축물'로 평가되는 건물이다. 천리마거리에서 현대식 평양체육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인민문화궁전은 평면의 요철이 심한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목가구의 구성이 드러나는 벽체의 1층과 2층위에 강한 수평 띠를 두름으로써 전반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위에 얹혀진 크고 작은 20여개의 지붕들은 군집한 조선식건축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1978년에 건축된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은 단청을 사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전국 건축가 및 건설기술자 대회'<sup>6)</sup>에서는 새로운 건축예술 창조를 위해 '선조들의 건축예술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광범위한 역사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우수한 점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이야기한 바 있는 김일성은 단청이 우리민족이 이룩한 중요한 예술적 성과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김일성은 일찍이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sup>7)</sup>에서 북한의 대표적 전통건축인 보현사 대웅전의 단청에 대해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의 고유한 색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단청술이 대단히 발전하였으며 색소의 질도 높았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sup>8)</sup>라고 칭찬<sup>8)</sup>을 아끼지 않은 바 있고, 이러한 생각은 '동명왕릉과 동명왕릉건설 총계획사판, 도면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sup>9)</sup>에서 제당에 사용하는 단청을 옛날 맛이 나도록 잘하라고 지시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의 단청은 무미건조한 색채의 콘크리트로 된 민족건축형식에 전통의 색채미학을 가미한 새로운 시도라고 하겠다.

### 3.3 민족건축양식의 현대화-개방화시대의 건축1

한편, 전통건축요소를 직접적으로 수용하던 60년대와는 달리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요소를 현대화시키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1975년에 완공된 2.8문화회관과 1976년에 완공된 만수대예술극장 그리고 1984년에 완공된 함흥대극장이 그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되면, 1982년에 완공된 평양의 개선문 역시 전통건축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전통건축의 요소를 현대화하는 작업은 지붕에 기와지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건축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경사지붕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았지만, 목구조의 결구 특성을 구조체로 표현하면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갖추는데 건축적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 결과는 지붕의 처마를 돌출시키고 처마 밑은 콘크리트로 서까래의 디테일을 만들거나 단순화시키며, 기둥과 보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목구조의 결



그림 8 2.8문화회관



그림 9 만수대예술극장

6) 『김일성저작집』 제 6권, 1954년 3월26일

7) 『김일성저작집』 제 6권, 1949년10월15일

8) 김일성의 이러한 생각은 박정희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고, 역사를 빛낸 인물의 역사유적을 복원하고 사당을 건설하면서, 단청 대신에 계란색을 칠하게 함으로써 계란색 단청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필자 주

9) 『김일성저작집』 제41권, 1989년 4월 2일

구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렇게 형성된 건축물에서는 목구조의 결구 특성으로 생기는 벽면 중 창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기초한 형상화들로 채워지기도 했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건축은 마땅히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이러한 건축은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것인 만큼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 형식’을 갖추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히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편리하고 아담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3.4 모더니즘 건축 - 개방화시대의 건축2

전통건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사용하려는 노력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변화는 1980년대 이후 평양의 개발방향<sup>10)</sup>을 국제도시화, 문화도시화, 혁명도시화로 설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중 문화도시화는 사회주의 이념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의 건설과 계획이념에 따른 주거환경의 보호와 공해 방지 등을 주력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어지는 공공문화시설은 이전의 민족건축형식에서 탈피하게 된다. 이는 국제도시화를 지향하면서 조선의 고유한 건축양식을 고집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경향성을 좇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체건축론에서는 ‘건축창조에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옹계 결합시켜야한다’는 네 번째 강령을 통해서 ‘민족의 구미에도 맞고 인민대중의 현대적 미감에도 맞는 건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1988년에 완공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역시 민족건축형식에서 탈피하여 현대적으로 지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역사주의 양식의 흔적을 갖고 있는 1963년의 평양학생소년궁전이나 전통건축 모습을 갖고 있는 1961년의 개성학생소년궁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변화 양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그림 11 평양교예극장



그림 12 국제문화회관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지는 각종 문화시설은 더 이상 민족형식을 고집하지 않았고, 현대적인 건축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9년의 평양교예극장<sup>11)</sup>과 청년중앙회

10)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4

11) 광복거리에 다각으로 건설된 평양교예극장은 광복거리에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그 배치는 중앙

관<sup>12)</sup>, 동평양대극장, 평양국제영화회관 등과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비하여 건설한 만경대 청춘거리의 경경기장, 중경기장, 탁구경기장, 배드민턴경기장, 역도경기장, 수영경기장, 농구경기장, 핸드볼경기장 등은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리고 다각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평양교예극장과 역동적인 지붕으로 구성된 청년중앙회관 그리고 바람개비형상을 갖고 있는 평양국제영화회관 등에서는 조형적인 실험의 경향성도 보여준다. 특히, 1982년에 완공된 빙상관은 북한 건축가들 역시 외국의 현대건축흐름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 13 청춘거리 체육시설



그림 14 빙상관



그림 15 고려호텔

이들 건축물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현대적인 감각의 건축경향이 적용됨으로써, 이전 건축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던 재료들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건물 표피에는 커튼 월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윤이상 음악당과 평양국제문화회관 그리고 동평양대극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커튼 월의 사용에 따라 이전 시기의 건축에서 건축물 외부에 자주 등장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기초한 사실화들이 건축물의 외부에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도 구법과 장식의 상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림 16 평양산원

#### 4. 남한의 현대건축과 전통건축

북과 달리 남한에서는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건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학계나 정부의 관심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경제제일주의 정책은 합리와 비합리, 역동성과 정체성,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 구조를 내세우며 이를 근대와 전통의 대립구도로 몰고 갔으며, 이러한 구도는 전통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평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국근대화의

의 6각형 주 건물을 중심으로 좌우에 작은 6각형 건물을 각각 배치하고 부속시설을 후면에 배치하여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적인 대칭형 미학에서 탈피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미학의 기준에서 보면 비록 외관은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었으나, 배치는 고전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17개의 날개가 부은 수차가 돌아가는 듯한 동적인 형식으로 평면을 구성하고 기본출입구는 대동강의 흐름과 평행을 이루게 조직함으로써 강안에서 보는 투시적 효과를 더욱 부각시켰다.

구호아래 일소대상이었던 전통이 선택적으로 재탄생되고 재생산이 구조화도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남한 건축에서 전통건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제3공화국의 출범과 맥을 같이한다. 구데타로 집권한 제3공화국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조국 근대화'에서 찾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적 전통의 제거와 새로운 전통의 확립을 내세웠고, 자연스럽게 '문민'중심의 유교적 전통을 '무인'중심의 구국적 전통으로 치환했다. 애국선열조상위원회의 동상의 건립은 그 가시적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선별적으로 살아남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 추진은 민족문화를 보호하는 민족주의자로서의 이미지 확립을 통해 전통의 보호육성자로서의 이미지를 민족의 정통성 계승자로 치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하겠다.

전통문화에 대한 체제정비는 해방과 함께 미군정하에서 구황실사무청에서 문화재 관리업무에서 시작되었다. 1955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된 문화재관리업무는 1961년 10월 2일 문교부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었으며, 1968년 7월 24일에는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되어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개입되기 시작하였다.

#### 4.1 민족문화개발연구위원회와 '전통'의 역할

5·16 세력은 문화재 관리국을 정비·통폐합하고 대표적인 문화재 복원을 시작하였다.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화재 복원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관련되어있다.

전통의 보호와 육성은 민족의 정통성 확보와 관련된다. 전통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연결시킨 후 이렇게 형성된 국민정서를 정권의 정통성 확보로 치환시키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첫 프로젝트는 국보 제1호인 '남대문 중수공사'였다. 박정희도 준공식 치사(1963.5.14)에서 언급하였지만 '수도 서울의 관문에 위치하여 서울은 물론 나라의 상징으로서 우리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인 보물'을 수리·보존한다는 것은 민족문화를 중시하는 혁명정부의 면모를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고 지원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박정권은 이를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다짐하며 옛 문화의 전통에 뒤지지 않는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건을 다짐하였다.

소실된 문화재복원사업도 이루어졌다. 1970년 광화문이 복원된 것이다. 총독부 신축과 함께 가까스로 철거 위기를 모면한 채 건춘문 한편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6·25 전쟁기에 부서져 버린 광화문을 복원한다는 것은 무너진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동시에 민족정기의 복원과 민족적 정통성의 계승을 제3공화국으로 치환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국민이 지니고 있는 반일감정을 적절하게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1968년 6월11일 우리나라의 전통적 고유예술의 원형을 발굴, 표준화하기 위해 공보부산하에 '민족문화개발연구위'를 신설했다.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족한 이 연구위는 1. 숨어있는 민족고유문화의 발굴, 2. 민족문화의 가치체계의 확립, 3. 고유문화의 표준화작업

및 보존 4. 고유문화의 진흥발전 등 4대사업을 계획하였는데, 민족문화개발위가 설정한 과제중 고유문화의 표준화작업이 눈에 띈다. 이는 복고주의의 근대적 발생으로 해석된다.

## 4.2 공공프로젝트와 전통 그리고 복고주의건축

### (1) 국립종합박물관, 강봉진 작

국립종합박물관은 건축계에서는 처음으로 전통 논쟁을 불러 일으킨 작품이며, 1966년 1월 8일 문화재관리국이 발표한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당국이 ‘전통’에 대한 입장이 표명되었다.

문화재 관리국은 “유구한 역사를 이룬 전통적 유형 내지 무형 문화의 발전상을 시대적 유물로서 보존함과 동시에 나아가 새로운 우리나라 고유양식의 창의를 발휘하여 이를 후세에까지 전할 수 있는 문화의 전당을 건립함에 있어 그 최선의 안을 택하고자 다음 요령에 의한 설계안을 공모한다”고 공고하였다.<sup>13)</sup>

결과적으로 당선작은 대표적 전통건축인 범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등 9개의 전통 건축을 확대·조합하고 세부 상세까지 콘크리트로 모사하여 당시 모더니즘을 신봉하는 젊은 건축가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당초에 국립종합박물관은 ‘종합민족문화센터’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는 종합박물관 기공식(1966년 11월 22일)에서, 종합박물관은 “우리가 문화민족이었다는 긍지를 드높이고, 문화한국의 건설을 위한 의욕과 자신을 진작시킴으로써 국민의 진취적이며 생산적인 자세를 더욱 굳혀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며, 민족문화의 개발이 조국근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국립종합박물관의 건설목적이 국민의식의 개조와 이를 통해 조국근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정신의 함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와는 달리 한국에서 어떻게 전통과 근대가 공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논리라고 하겠다.

### (2) 어린이회관의 2가지 모습

전국 시도에 고르게 1개씩 있었으면 좋았을 어린이회관을, 서울은 2번씩 가질 기회가 있었다. 하나는 지금은 서울과학교육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산의 어린이회관이고, 다른 하나는 광진구 능동에 있는 현 어린이회관이다. 흥미로운 것은 두개의 어린이 회관은 비록 5년의 시차를 가지고 지어졌지만 같은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당시로서는 최신의 디자인을 뽐냈던 현대건축양식으로 지어졌고, 다른 하나는 전통건축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그림 17 국립중앙박물관, 강봉진작

13) 총 10점이 응모하였으며, 심사위원은 김윤기(건설부장관)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인국(홍익대), 홍봉의(한양대), 김형걸(서울대), 하갑청(문화재 관리국장)으로 구성되었다.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시절에 지어진 어린이회관이 오히려 옛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미, 장충동의 자유센터를 통해서 권력자의 의지가 건축 자체뿐 아니라 건축이 입지하게 될 장소와 결합되어질 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경험한 바 있는 박정희가, 서울의 도심을 조망으로 하는 남산중턱에 어린이회관을 건축한 것은, 마치 일본의 근대기에 북해도를 개척하면서, 일본의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었던, 'Boys, Be Ambitious!'(William S. Clark)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당시 박정권은 제1차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제2차경제개발계획을 추진중이었고, 공업입국을 통해 조국근대화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동남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으로 과학지식을 장려했다. 과학이 희망이었던 시절, 자연스럽게 어린이회관은 당시로서는 최신 과학실험 장비와 천문대를 비롯하여 TV방송국은 물론 회전전망대까지 갖춘 가장 현대적인 건물(이광노 작)로 완공되었다. 이러한 어린이회관의 건설의 뒤에는 당시 영부인이었던 육영수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이 있었다.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방문하였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갔을 것이다. 그리고 발아래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꿈을 펼치기를 기성세대는 기대했을 것이다.

어린이회관은 '남산 우뚝히, 동양최대, 동심의 궁전'이라는 신문기사의 제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분명,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기엔 충분한 꿈의 궁전이였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해 당시로는 초고층으로 건축된 회관이 어린이 시설로는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제한된 대지로 인해 확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공 5년만에 능동의 어린이 대공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당시로는 서울의 외곽이었던 능동에 새로운 어린이회관을 계획하면서, 박대통령과 육여사는 1. 건축양식은 한국식으로 하되,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해서 3층 이하로 한다. 2.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다. 3. 회랑과 방 내부를 널찍하게 만든다. 4. 지붕에 기와를 씌운다는 기본계획을 같이 마련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육여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국제전시관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직접 어린이대공원을 대지로 선정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육여사는 8.15경축행사에서 사망하였지만, 박정희는 그 유지를 충실히 이어갔다.

그런데, 새 어린이회관에서, 조국근대화를 내세우면서, 왜 근대와는 대척점에 있는 전통건축양식을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시설에 사용한 것일까? 한옥의 사용은 회관 뿐 아니라 어린



그림 18 남산어린이회관,이광노



그림 19 능동 어린이회관

이대공원의 입구에도 사용되었다. 전통건축양식의 사용은 우리 어린이들이 서구의 되바라진 퇴폐문화에 물들지 말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가치와 문화를 지니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된 마음의 발로였을까?

박대통령과 육여사가 어린이회관을 전통건축양식으로 짓기로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왜 전통건축양식을 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어린이회관이 신축되던 사회분위기를 살펴보면, 순수한 의도로 지어진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1968년 6월11일 전통적 고유예술의 원형을 발굴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공보부산하에 '민족문화개발연구위'를 신설했던 정부는 동년 7월 문교부산하의 문화재관리국을 문화공보부산하로 개편하였다. 이어서, 1972년 유신체제를 출범시키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박정희정권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한국적인 것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고, 동시에 충효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순국선열의 역사유적지 단장이 본격화되었고, 그들 건물은 예외없이 콘크리트구조의 전통한옥양식으로 지어졌다. 능동의 어린이회관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맑고 티없이 자랄 어린이들에게 전통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제의 말살정책도 견디어온 우리의 전통가치가 산업화과정에서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와하며 이를 보호하고 장려해야한다는 사회적 명분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박정희)와 부모에 순종하는 후속세대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어린이회관을 한옥으로 지은 것에 대한 박정희의 만족감은 대단했던 것 같다. 당시 신축 어린이회관 준공식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면, '박대통령은 골조공사 때부터 준공될 때까지 틈이 날 때마다 공사장을 찾았다. 그 때마다 공사진척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건물이 웅장하고 마음 먹은대로 잘되고 있군"이라고 흐뭇해했다'고 한다. 그는 준공식에 참석한 어린이에게 시멘트로 된 서까래와 기둥을 가리키며 "학생은 저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느냐"고 물었고, 어린이가 "나무 같습니다"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빙긋이 웃었다고 한다. 이어서, 박대통령은 과학관과 문화관을 다 돌아본 뒤 "한국의 전통건축양식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은 없을 것이며 목재를 쓰지 않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서까래와 기둥을 저렇게 모양있게 만든 것은 건축기술의 일대 혁명"이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콘크리트 한옥건물의 발상에 박정희가 깊이 관계했고, 그 결과물에 대해 박정희가 대단히 만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3) 전통건축의 교육시설에 담긴 전통적 가치관의 역할

어린이회관에 적용했던 전통건축양식은 이름도 예사롭지 않은 청소년교육원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 1973년 경주에 화랑교육원이 세워졌고, 1974년에는 현충사가 위치한 아산에 충무교육원이 세워졌다. 이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호국교육원(1978-1979)이, 강릉에는 사임당교육원(1977)도 세워졌다. 이들 건물들은 예외없이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당시 한국에는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표준설계에 기초한 무미 건조한 박스형 콘크리트 학교건축이 전국적으로 지어지던 시절이었다.



그림 20 경주 화랑교육원

경주 남산기슭에 지어진 화랑교육원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삼국을 통일했던 '화랑'의 정신

을 이어받아 ‘남북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역군을 만들어내지는 뜻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충무교육원’ 역시 국난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낸 충무공이순신을 본 받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미 세종로 한복판에서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들 교육원은 아무나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곳이 아니었다. 중고교 학생들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향후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확률이 높은 청소년과 학도호군단 간부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사임당교육원은 여학생을 상대로 신사임당을 모델로 화랑교육원과 같은 목적 하에 운영되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가를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정권은 국난을 이겨낸 순국선열과 자신의 이미지를 동일시 하려했고, 전통가치인 충효사상을 통해서 대통령=왕이라는 인식의 관성이 여전한 한국사회에서 국가(=대통령 박정희)와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속세대의 양성을 기대했던 것이다. 전통건축양식은 이러한 목적성을 띤 기능의 건축물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국민교육헌장, 1968)’ 현실적인 정치, 경제적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미래로의 도약을 꿈꾸었던 기성세대의 바람이 유신체제의 성립과 함께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는 콘크리트 한옥으로 지어지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에서 잘 드러난다.

### 4.3 모더니즘과 전통건축의 현대화

#### (1) 전통건축에 대한 건축가의 태도

전통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시절에 김중업의 초기 대표작 프랑스대사관이 보여준 지형을 이용한 배치, 하늘을 나는 듯한 곡면 지붕과 지붕을 사뿐히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연출하는 공간감은, 현대건축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어 젊은 건축가들을 크게 자극했다. 이러한 김중업의 시도는 전통 모티브의 추상화를 통해 얻어진 성과로 전통에 있어 보편성을 현대



그림 21 프랑스대사관, 김중업작

적인 것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아왔다.

절두산성당으로 알려진 순교복자기념관(1967)은 이희태의 대표작으로 작가의 디자인 의도가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소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온화한 작품으로 ‘한국적인 곡선의 융합’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절두산성당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장소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김억중의 평가도 있지만 협소한 대지면적과 절벽에 위치한 입지상의 특성을 활용하고 대지의 고저 차를 이용해 안정감있게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작가의 조형언어’를 구사하여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좀더 설득력을 갖는 건물이다

이후에도 이희태는 경주박물관, 공주박물관과 같이 현대적 기능의 건물이지만 민족의 정체성 표현에 대한 요구가 강한 건축물 설계를 통해 모더니즘을 신봉하는 건축가가 어떻게 전통건축을 현대건축에서 수용했는지 보여준다.

(2)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 논쟁

부여박물관 논쟁은 1967년 8월 19일자 동아일보 사회면 첫 머리 기사로 게재된 “부여 박물관 건축양식에 말썽-일본신사 같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비롯되었다. 기사의 신축 박물관 양식이 “일본 도리이(鳥居)와 신사의 지기(千木)를 연상시킨다”는 보도에 식민지 잔재와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결부시키는 비건축 전문가의 진단이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문제가 확대되어 갔다. 건축인으로는 김중업씨가 ‘妄舉 扶餘博物館 設計圖를 보고’라는 논제를 통해 “본관은 신사의 신전을 데포르메한 것에 불과하다”며 건축작품으로써 양식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개진하였고, 건축가 이천승은 ‘김수근씨의 충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가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왜색시비에 대해 김수근은 “이 설계는 백제의 양식도 일본의 신사양식도 아닌 현대건축을 전공으로 하는 바로 김수근의 양식이라는 것이다”라고 반박하였으나, 부여박물관 건축양식에 대한 원색적 시비는 이전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일반 여론에서 견잡을 수 없는 감정을 유발시켜, 정상적인 비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림 22 부여박물관 왜색시비논쟁의 시작, 동아일보, 1967년 8월19일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여박물관 논쟁은 비록 관점은 다르지만 ‘전통’의 인식에 있어 전문가 집단과 관, 그리고 대중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여박물관 사건은 여론의 질책 속에서 건축계가 건축가의 창조성을 옹호한 데 반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논쟁에서는 건축가의 비난 속에 국민 일반은 관대한 입장에 서있었다. 이는 제3세계 국가가 안고 있는 문화이식과 토착화 그리고 근대화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국립종합박물관에 자신을 얻은 관은 가난과 무력과 타의로 강제 이축되는 고생 끝에 화재까지 겪은 총상 투성이의 광화문 기단의 석조 부분을, 콘크리트 모조품 광화문(1968년 11월)을 건설하면서 한낱 잡석재로 콘크리트와 섞여 묻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부여박물관 논쟁은 건축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본 논쟁이 “건축가들의 전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어느 정도의 논점이 도출되었으며, 전통의 진정한 계승은 무엇이고, 전통의 창조와 모방의 한계점, 그리고 새로운 전통창조를 위한 건축적 탐구가 건축가들 사이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고 했지만<sup>14)</sup> 많은 건축인들이 언론매체를 이용할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후 유일한 건축언론 매체인 월간지 『공간』을 소유한 김수근이 자신의 과제를 『공간』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였으며, 공간 가족의 전통에 대한 지나친 일방향적 관심으로 인해 전통 논의와 실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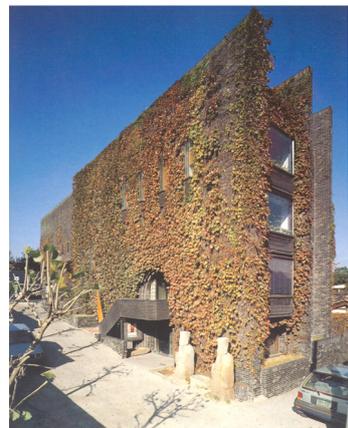


그림 23 공간의 숲, 김수근작

14) 정인하, 김수근건축론

다양성이 상실되어 버렸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통의 창조적 해석과 탐구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만 지고의 가치를 가질 뿐, 형태계승 문제가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인식된 것은 부여박물관 논쟁이 남겨놓은 가장 큰 해악이다.<sup>39)</sup>

(4) 민족문화센터(현 국립극장)



그림 24 민족문화센터 국립극장, 이희태작

1967년 4월 25일의 종합민족문화센터 기공식에서도 박정희는 종합박물관에서의 치사와 같은 일관성을 보여준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본으로서의 민족의 주체의식을 확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의 찬란한 민족문화는 ‘모두가 확고한 민족주체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희의 이러한 말은 문화재 보호와 민족문화 보존과 개발이 조국근대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장충동 국립극장은 전통적 모티브를 현대적 감각으로 소화시키려고 한 노력(누마루를 돌리고 그 위에 열주를 세우고, 처마 끝을 치켜올리는 등의 한국적 감각의 표현을 시도)이 두드러진다고 평가 받는 건물이다. 실제로 작가는 전통양식의 현대화에 대한 고심과 노력이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sup>15)</sup>

(5) 국회의사당에서 표출된 한국건축의 정체성

이승만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남산의 국회의사당이 5.16쿠데타로 무산된 이후, 숙원사업이던 국회의사당건립계획이 여의도개발과 함께 다시 추진되었다.

국회의사당건축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의사당건축의 기본방침은 건축양식에 있어서 건축양식은 현대의 재료공법을 사용하여 한국문화의 전통과 장래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건물설계는 간명단순한 공간구성 및 불변의 고귀한 표현을 갖도록 하여 민주전당의 권위를 지님과 동시에 그 상징적인 표상을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림 25 국회의사당 당선안

15) 이희태, 「국립극장 계획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축사, 1970. 4

것이였다.

한편, 설계자료조사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국외사례조사이외에 한국건축양식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1967년 말, 의사당 건물설계에 우리나라 민족적 긍지와 고유한 건축문화의 전통을 부각시키고자, 경복궁을 비롯한 29개소의 현존 고건축물을 대상으로 배치계획, 공간의 구성, 세부의장수법 등을 한국건축양식 연구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측 조사케하였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한국건축학계에서 한국건축에 대한 첫 연구프로젝트이자, 한국건축사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국회의사당 설계를 책임진 김정수는 “본 건물은 한국사람으로 처음 가져보는 우리나라 국회의 사당이고,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지어지는 건물인 만큼...(중략)... 한국적이며 영구성이 요구되는 것을 특색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며 “현대건축으로서 너무 장식적이 아니냐 하는 반문을 들을 각오로써 각 체에 한국적 장식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여 주최 측이 얼마나 ‘한국적 분위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준다.

#### 4.4. 전통건축의 콘크리트 복제 비판 재고

1950년대 말부터 건축가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축활동이 활발해졌고, 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과 함께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평가받아왔지만, 이 시기에 전개된 많은 시도중 전통건축의 콘크리트 복원 또는 재현이 건축계의 주목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 1960년대 말에 광화문 복원을 계기로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광화문이 조형물로서 전통건축의 콘크리트 재현이었다면, 아산 현충사(1968)년 남산의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내부공간을 갖는 전통건축의 콘크리트건축이라는 점에서 달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박정권의 호국선열에 대한 경외심 양양을 목적으로 건물의 외형은 전통 목구조건축양식을 갖춘 콘크리트조로 건축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광화문과 다른 측면을 갖는다. 양식은 전통건축을 따랐지만, 재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디테일의 간략화와 변화 및 채색의 변화를 박정희 스타일이나 계란색 단청을 치부해 버리는 것은 당시의 박정권에 대한 불온한 의도와 부정적 시각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사회적 공감을 가졌지만, 건축적으로는 재고할 여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목구조건축양식에 대한 콘크리트 재현에 대해,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비난으로 일관했고, 이에 대해 어느 건축가도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유사한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전통건축의 콘크리트 복제는 주로 민족과 문화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관광지의 건



그림 26 국회의사당 완성모습



그림 27 복원된 광화문



그림 28 남산 안중근기념관

축물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박정권의 정치적 음모로 간주되거나 천박한 자본주의의 산물로 간주되어 비판도 아닌 비난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건축적인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서양의 근대건축 형성기에 새롭게 등장한 건축재료인 철과 콘크리트가 초기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용도가 점점 확산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전통건축의 콘크리트 복제는 일방적으로 비난할 만한 일도 아니다.



그림 29 한국민속관, 엄덕문

사실, 콘크리트로 전통건축양식을 재현해내는 시도는 위키힐 프로젝트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위키힐 프로젝트중 한국관을 설계한 엄덕문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한국관을 설계하면서, 콘크리트로 전통건축을 재현하였는데, 지붕처리에 있어서 전통건축을 현대화 한 방식이 주목할 만하다.

현대건축이 불연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전통건축의 건축양식의 채용이 필요할 경우 자연스럽게 선택될 수 있는 재료가 철과 콘크리트일 것이다. 더구나 콘크리트는 서양의 경우 백년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콘크리트는 한국건축의 주재료였던 목재와 흙을 대체하는 대체재로서의 신 재료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조형언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말

1960,70년대 남과 북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밀착된 도시와 건축을 서구건축사조에 대입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단체제하의 체제경쟁에서 북한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길은 '조국근대화'였고, 이 과정에서 건축가들이 집착했던 서구 모더니즘의 미학은 '조국근대화'의 상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전통은 보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 사회에 존재했다. 일제 강점하에서 식민지화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선사회와 문화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전통'에 대한 폄하와 멸시를 추진했던 일본에 맞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반해, 해방후 군사정권하에서 근대화의 대척점에 설정했던 전통이 정치적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로 선택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왜색시비 논쟁이 건축계의 논의를 심화시키지 못한 채 우리의 전통에 관한 담론은 축소되고 말았다.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과 대립하는 근대의 개념이 남한사회에서는 일부 지식인 사이에서 관념적으로는 형성되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었다. 오히려 정치 경제적 상

황과 맞물리면서, 공존과 배척의 복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북의 전통/민족건축에 대한 관심은 사회주의 기본이념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북한도시와 건축계획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는 소련이나 동구사회주의국가와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평양이 동구권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유럽과는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도 있지만, 전쟁으로 거의 완벽하게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도시 평양의 흔적과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전면적인 도시구조 개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도시와 건축을 만들었지만, 주체사상에 기초한 '민족형식'이 부가되어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의 도시와 건축 모습이 형성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스탈린 시대에 소련에서 세계적으로 모더니즘건축을 선도하였던 구성주의를 포기하고 신고전주의를 선택한 스탈린의 선택과 북한에서 신고전주의건축양식을 포기하고 민족건축형식을 채택한 김일성의 선택이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에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남과 북은 60여년을 서로에 대한 철저한 통제 속에서 대치해 왔지만, 서로에게 남북한의 도시와 건축을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차원이외에도 이데올로기가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남북한의 사례는, 독일이나 베트남 그리고 예멘과 같이 분단을 경험한 나라들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해방이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분단과 대치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체제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경쟁했기 때문에, 같은 역사적 뿌리와 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상이한 체제이데올로기로 인해 도시와 건축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예가 된다.

그러나 남북한 건축의 비교연구가 세계사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